

2007년도 아시아 NI간
인권현안 공동사업 연구용역보고서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책임연구원: 김현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공동연구원: 김기돈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상담실장)
김민정 (사회복지사)
김정선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박사과정)
김철효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연구조원: 박용원 (CLC용인이주민센터 운영실장)
이가원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인턴)

2007. 12. 26.



Research on Labour and Marriage Migration Process from Mongolia and Vietnam to Korea and the Impact on Migrant Rights

Principal Researcher: **Kim, Hyun Mee** (Associate Professor, Yonsei University)
Researchers: **Kim, Gi - Don** (Chief Consultant, Korea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Center)
Kim, Min - Jeong (Social Worker)
Kim, Jung Sun (Ph D Candidate, Ehwa Womans University)
Kim, Chulhyo (Project Coordinat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Research Assistants: **Park, Yong - Won** (Manager, CLC Yong In Migrants Center)
Lee, Ka - Won (Inter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6 December 200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Geumsegi Building, 16 Euljiro-1-ga, Jung-gu, Seoul 100-842, Korea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200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NI간 인권현안 공동사업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7. 12. 26.

책임연구원: 김현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공동연구원: 김기돈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상담실장)
김민정 (사회복지사)
김정선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박사과정)
김철효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연구조원: 박용원 (CLC용인이주민센터 운영실장)
이가원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인턴)

감사의 글

몽골과 베트남 출신 이주자들과의 면담과 두 나라에서의 현지 조사는 연구자 모두에게 큰 배움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고, 그때마다 너그러운 응답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국내와 현지에서 인터뷰에 응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신 한국, 몽골, 베트남 정부의 공무원들, NGO 활동가들,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 입국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한국에서의 이주 후 새로운 희망 또는 고통을 안고 살고 계신 분, 그리고 본국으로 귀환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분들 덕분에 고용허가제 이후의 노동이주와 결혼이주의 전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현지의 특수한 문화적 맥락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수행된, 일종의 인적 네트워크의 결과물이다. 연구가 초국적인 성격을 지닌 것처럼 다국적의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았다. <모이세 이주여성의 집> 여경순 소장과 <엠마우스> 강승호 실장, <한국 여성의 전화> 신연숙 선생님, <사랑마을이주민센터> 김철수 대표, 몽골의 <Center for Gender Equality Right>의 활동가들, IOM 인신매매방지 컨설턴트인 Ruth Rosenberg씨, 몽골외교부 3등 서기관 Ganbold Dambajav씨, 인권활동가 Solongo Sharkhuu씨, IOM 베트남 사무소의 Andrew Bruce 대표와 Tran Thanh Ha씨, Patrick Corcoran 호치민 사무소장님께 감사드린다. 국내와 베트남에서 베트남 이주자를 소개하고 통역해주신 이혜수, 임왕복옥, 운드라, 황안투안, 광반, 찌쑤언씨, 베트남 현지에서 통역을 도와주신 투완씨, 몽골에서의 현지 조사에 도움을 주신 어유나, 나라씨, 몽골어 통역을 해주신 나라, 어뜨기, 자야, 보따, 바이르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안전한 연구'를 위해 몽골과 베트남에서 연구자들을 안내해 주신 투완씨와 친데씨께도 감

사드린다. 통역, 소개, 안내를 해주신 분들의 헌신적인 지원 덕분에 현지 조사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의 계획, 집행, 마무리의 모든 단계에서 많은 아이디어와 조언을 제공해주신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최현모 대표, 한국 IOM의 이정혜 대표, 꼼꼼하게 자문을 해주신 <공감>의 소라미, 황필규 변호사님께 감사드린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우리와 함께 나눠주신 귀환 이주자분들에게는 여전히 빚진 것이 많다. 부족한 연구지만 모든 이주자들의 '안전한 이주'와 인권을 열망하는 연구자들의 공통된 소망이 담겨지기를 기대해 본다.

차 례

| | |
|---|----|
| 제1장 서론 | 1 |
|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
| 제2절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5 |
| 1. 노동이주 송출과정 관련 | 5 |
| 2. 결혼이주 과정 관련 | 6 |
| 제3절 연구 내용 및 범위와 연구 방법 | 8 |
| 1. 연구 내용 및 범위 | 8 |
| 2. 연구 방법 | 10 |
| 제4절 보고서의 구성 | 18 |
| | |
| 제2장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와 관련한 한국의 제도와 실태 | 19 |
| 제1절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본 노동이주 절차와 실태 | 21 |
| 1. 고용허가제의 도입배경 | 21 |
| 2. 고용허가제를 통한 노동이주과정 | 23 |
| 3. 고용허가제 실시 현황 | 25 |
| 제2절 중개업을 통한 결혼이주와 관련한 제도와 실태 | 30 |
| 1. 한국의 결혼이주의 역사 | 30 |
| 2. 한국남성과 혼인 신고한 이주여성 현황 | 32 |
| 3. 한국의 국제결혼 중개 관련 제도 변화 | 34 |
| | |
| 제3장 한국행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과정의 실태와 문제점: 몽골 | 37 |
| 제1절 몽골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배경과 이주 | 39 |
| 1. 개혁·개방이후의 몽골 사회의 변화와 이주 | 39 |
| 2. 한·몽골 교류 현황 | 43 |
| 3. 한국 내 몽골 이주자의 현황. | 46 |
| 제2절 노동이주 | 48 |
| 1. 노동이주 관련 공식 절차 및 제도 | 50 |
| 2. 노동이주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경향 | 59 |
| 3. 노동이주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 | 62 |

| | |
|--|-----|
| 제3절 결혼이주 | 68 |
| 1. 한국행 결혼이주의 경향과 특징 | 68 |
| 2. 결혼 이주 관련 법률 및 제도 | 72 |
| 3. 한국행 결혼 이주 과정에서의 주요 문제점 | 74 |
| 4. 결혼 이주 후 정착 과정에서의 문제점 | 87 |
| 5. 귀환한 여성의 사회적 '낙인화'와 경제적 결핍 | 93 |
| 제4장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과정에서 나타난 실태와 문제점: 베트남 | 95 |
| 제1절 베트남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배경과 이주 | 97 |
| 1. 개혁 개방이후의 베트남 사회의 변화와 이주 | 97 |
| 2. 한국·베트남 교류 현황 | 99 |
| 제2절 노동이주 | 101 |
| 1. 베트남의 노동이주 관련 공식 절차 및 제도 | 101 |
| 2. 노동이주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경향과 실태 | 110 |
| 3. 한국행 노동이주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문제점 | 116 |
| 제3절 결혼이주 | 118 |
| 1. 한국행 결혼 이주의 경향과 특징 | 118 |
| 2. 결혼 이주 관련 법률 및 제도 | 122 |
| 3. 한국행 결혼이주 과정에서의 주요 문제점 | 125 |
| 4. 결혼 이주 후 정착 과정에서의 문제점 | 137 |
| 5. 귀환 이후의 문제점 | 141 |
| 제5장 한국행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과정의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분석 | 151 |
| 제1절 이주과정과 관련한 국제인권기준과 분석의 틀 | 153 |
| 1. 이주의 과정과 분석의 틀 | 153 |
| 2.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관련 주요 국제인권기준 | 156 |
| 3. 몽골 및 베트남의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 현황 | 158 |
| 제2절 노동이주 과정에서 발견된 인권침해 요소 | 162 |
| 1. 과도한 비공식 송출비용 | 162 |
| 2. 공식절차에 대한 정보부족과 송출사기, 직업선택의 제한 | 163 |
| 3. 균등한 고용기회의 제한 | 164 |
| 4. 가족결합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의 문제 | 165 |
| 5. 비정규이주에 의한 각종 인권침해의 위험 | 167 |

| | |
|---|-----|
| 6. 기타 | 168 |
| 제3절 결혼이주 과정에서 발견된 인권침해 요소 | 168 |
| 1. 혼인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의 침해 | 168 |
| 2. 인신매매, 예속상태,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 | 169 |
| 3.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 | 172 |
| 4. 여성에 대한 폭력 | 173 |
| 5.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평등권과 가족결합권 침해 | 175 |
| 6.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권의 차별 | 176 |
| 7. 기타 | 177 |
| | |
| 제6장 결론 | 179 |
| | |
| 참고문헌 | 185 |
| | |
| 부록 | 199 |
| <부록 1> 대한민국 대법원 호적예규 제715호: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201 |
| <부록 2> 몽골 단체 Khos Bagana 웹사이트 | 212 |
| <부록 3> 몽골 정보지 한국행 국제결혼 중개 광고 (번역) | 218 |
| <부록 4> 몽골 국제결혼중개업체 계약서 | 223 |
| <부록 5> 베트남 동탑 법무부의 결혼등록거부공문(번역) | 230 |
| <부록 6> VWCC: - 여성 연맹의 협력 하에 진행되는 결혼 절차, 의의 | 231 |
| <부록 7> 베트남 결혼중개업체가 소개하는 한국에서의 생활 | 233 |
| <부록 8> 베트남 Decree 69 (영문) | 237 |
| <부록 9> 고용허가제 근로계약서 (몽골 노동자) | 245 |
| <부록 10> 조사 질문지: 몽골, 베트남 | 247 |

표 차례

| | |
|--|-----|
| <표 1 - 1>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의 관계 | 11 |
| <표 1 - 2> 사전 조사를 위한 국내 면접 대상 신상정보 | 12 |
| <표 1 - 3> 베트남 방문 및 면담기관 정보 | 14 |
| <표 1 - 4> 베트남 이주자 심층면접 대상 신상정보 | 15 |
| <표 1 - 5> 몽골 방문 및 면담기관 정보 | 16 |
| <표 1 - 6> 몽골 이주자 심층면접 대상 신상정보 | 17 |
| <표 2 - 1> 고용허가제 도입노동자의 각 국가별 계약체결현황 (2007년 10월 말 기준) | 26 |
| <표 2 - 2> 고용허가제 도입노동자의 성별 계약체결현황 (2007년 10월 말 기준) | 27 |
| <표 2 - 3> 고용허가제 도입노동자의 구직등록기간 및 구직기간 초과로 인한 국가별 미등록처리현황 (2007년 10월 말 기준) | 28 |
| <표 2 - 4> 고용허가제 도입노동자의 구직등록기간 및 구직기간 초과로 인한 성별 미등록처리 (출국대상자) 현황 (2007년 10월 말 기준) .. | 28 |
| <표 2 - 5>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 건수 및 사유 (2007년 9월 기준) | 29 |
| <표 2 - 6> 2001년 - 2006년까지 한국남성과 혼인신고 한 여성결혼이주자 수 | 32 |
| <표 2 - 7> 2004 - 2005년 한국남성과 혼인 신고한 이주여성의 특성 | 33 |
| <표 3 - 1> 연도별 몽골의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 (2007년 10월말 현재) .. | 50 |
| <표 3 - 2> 몽골 공식송출비용 세부항목 | 56 |
| <표 4 - 1>: 베트남 공식송출비용 세부항목 | 106 |
| <표 5 - 1> 몽골, 베트남, 대한민국의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 현황 | 160 |
| <표 5 - 2> 몽골, 베트남, 대한민국의 이주 관련 주요 ILO협약 가입 현황 .. | 161 |

그림 차례

| | |
|--|-----|
| <그림 2 - 1>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과정 | 24 |
| <그림 3 - 1> 몽골 현지 고용허가제 인력송출 과정 | 50 |
| <그림 3 - 2> 공식적인 송출과정과 드러난 실태 | 58 |
| <그림 4 - 1> 베트남 현지 고용허가제 인력송출 공식 절차 | 104 |
| <그림 4 - 2> 송출 공식신청과정과 현지 실태의 차이점> | 111 |
| <그림 4 - 3>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결혼 중개 과정 | 127 |
| <그림 5 - 1> 이주의 과정 | 154 |
| <그림 5 - 2> 분석의 틀 | 155 |

서 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최근 한국으로 오는 노동이주자 및 결혼이주자의 수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주자들이 국내에 입국하기 전 송출과정 중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국 관할권 밖의 일로 여겨져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국제이주의 특성상 이주자들이 유입국 내에서 처하는 어려움 중 많은 부분의 근본원인(root - cause)은 출신국으로부터의 이주 과정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노동이주자들은 본국에서 불법중개인에게 고액의 송출비용을 지불하고 빚을 진 상태에서 유입국에 오게 된다. 빚을 갚고 돈을 더 벌기 위해 이주자들은 정해진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머물거나, 더 높은 임금을 얻기 위해 작업장을 이탈하면서 소위 '불법' 노동자가 되기도 한다. 결혼이주자들 또한 본국에서의 맞선 과정에서 결혼중개업자나 남편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결혼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입국 후 원하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이주해 온 여성들은 가정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정부의 이주 정책이 여러 면에서 발전한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이주자들을 제조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과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는 대상으로 동질화시켜내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출신국에 따른 이주자들 간의 차이나 어려움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편이다. 이주 정책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는 한국으로 오는 다국적 이주자들이 '안전한 이주'를 통해 자신들의 이주 목적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이주자를 노동권, 문화권, 젠더 권리를 갖는 인권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정책 및 민간 활동에서 이주자 인권의 주류화(human rights mainstreaming)는 이주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없애기 위해 총체적 시각을 갖고 안전한 이주를 현실화시켜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아시아 2개국(몽골 및 베트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행 노동 이주 및 결혼이주와 관련하여 이주 과정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과정 중에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국제적 인권기준에 비추어 분석하여, 정책 및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몽골과 베트남은 이주 체제와 이주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적절한 사례이다. 몽골의 경우 몽골인들의 이주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목적국'(country of destination)이 한국이므로, 한국으로의 이주 '붐'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영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2004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가장 많은 노동 이주자를 한국에 송출한 나라이며, 또한 최근 몇 년 간 베트남 출신의 여성과 한국 남성의 혼인 건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나라이다. 주요 송출국인 몽골과 베트남은 자국 이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본 연구는 국제적 인권 기준에 따라 이주자들이 경험하는 인권 침해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가간 협력 사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1. 노동이주 송출과정 관련

노동이주 송출과정과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국제이주기구가 수행한 『12개 송출국가 노동이주 관리체계 및 운영조사 보고서: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동티모르, 우즈베키스탄』(2005, 국제이주기구, 영문)과 역시 동 기구가 수행한 『6개 송출국가 노동이주 관리체계 및 운영조사 보고서: 방글라데시, 이란, 카자흐스탄, 미얀마, 네팔, 우크라이나』(2006, 국제이주기구)가 있다. 이 두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노동부와 고용허가제로 인력을 송출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거나 협상 후보국으로 선정된 국가들(기존 산업연수생 송출국가)의 송출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 조사의 결과물이다. 두 보고서 모두 현지의 국제이주기구 사무소에 의한 사전조사 및 노동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방문조사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각국의 노동이주 관련 정책, 법률, 정부구조, 송출통계, 정부주도 인력송출 절차, 출국 전 교육 과정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각국에서 자국민 해외 노동이주자 및 귀환 노동이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제도 및 법률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보고서: 고용허가제 시행 1년, 그 실태와 개선방향』(2005, 이주노동자인권연대),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보고서』(2006, 이주노동자인권연대)를 발간하였다. 특히 2005년 조사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노동이주자 1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스리랑카 및 인도네시아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 결과 밝혀진 인도네시아 정부의 송출비리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노동인력 송출이 일시 중지된 바 있다. 한편 2006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국내에 입국한 노동이주자 342명을 대상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송출과정 가운데 겪었던 문제점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베트남 및 스리랑카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방문조사에서는 양국가의 노동인력 송출관련 정부기관을 면담하고 베트남 30명, 스리랑카 34명의 한국

행 노동이주 희망자 및 귀환자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결과 베트남에서는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민간송출 브로커들이 개입하고 있고, 정부송출 시스템에 대한 노동이주 희망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이 때문에 노동이주자들은 공식송출비용의 6 - 8배가량의 송출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으며, 출발 전 직업교육 및 한국어교육 과정에도 비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동이주 송출과정에 관한 해외연구로는 Dang Nguyen Anh 등이 작성한 '베트남의 인력송출현황 실제의 문제와 정책'(2003, 베트남 사회과학연구원)을 들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해외인력송출 과정에서 발견되는 중간브로커들로 인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불안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인력송출모집에 관한 정보가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배포되어야 하며, 노동자들로 하여금 송출비용을 쉽게 대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등의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2. 결혼이주 과정 관련

<베트남 처녀와 결혼 하세요. 재혼, 장애인 환영>이나 <베트남 절대 도망가지 않음>이라는 현수막이 상징하듯이, 결혼 중개 시장이 주도하는 한국 사회의 국제결혼은 표피적으로는 '결혼'의 형식을 취하지만, 중개 과정 자체가 '매매혼'이나 '인신매매'의 성격을 지닌다. 현재 관행화된 중개 방식은 비용 전액을 지불하는 남성의 이해와 욕구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을 뿐 아니라 최대 이윤의 추구라는 시장 논리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결혼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유린에 대해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중개 과정 자체에 내재된 이러한 젠더 불평등은 결혼 후 가족 내에서 여성에게 대한 착취와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국제결혼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가 사회 문제로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성학적 연구들은 국제결혼을 젠더 권력의 문제로 인식하고 여성의 '피해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따라서 고유한 인격을 지니는 여성을 글로벌 결혼 시장에서 거래가능 한

‘상품’으로 위치 짓는 중개방식이나 불평등한 가부장제적 가족 내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통제나 억압, 폭력, 학대, 착취의 현실을 드러내고 이를 비판해왔다(홍기혜 2000, 윤형숙 2003, 윤정숙 외 2004, 김현미 2006).

같은 맥락에서 상업화된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이나, 입국 후 결혼 생활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체류자격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이주 여성 지원 단체들은 인권 유린의 현실과 피해 실태를 드러내고, 인권의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을 한국 정부에 촉구해 왔다(이금연 2003, 두레방 2005, 고현웅 외 2005, 김민정 2006a, 김민정 2006b, 소라미 2006, 김재원 2006, 한국염 2006, 소라미 2007). 특히,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 베트남·필리핀 현지실태조사』보고서는 현재 상업화된 결혼 중개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드러내고, ‘처벌법’을 통해 중개업을 규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 인신매매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006년 4월 26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대책¹⁾이 마련되면서, 최근 국제결혼에 관한 논의는 ‘피해 실태’로부터 ‘이민자 적응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국제결혼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들(설동훈 외 2005, 설동훈 외 2006, 정기선 외 2007)은 여성들이 ‘이민자로서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응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경제적 빈곤이나 사회 서비스로부터의 소외,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 갈등과 같이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분석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지배 담론이 되고 있는 이러한 이민자 사회 통합 담론은 유입 과정 보다는 ‘정착’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개별 가족의 틀 안에서 생활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문제의 핵심으로 간주함으로써, 폭력, 학대, 착취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가족을 유지하고 싶지만

1) 2006년 4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①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②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③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 ④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⑤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 ⑥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⑦추진체계 구축이다. 자세한 내용은 2006년 4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안 참조 할 것.

유지할 수 없는 이주 여성들의 문제를 비가시화 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한편 학문적 연구들은 이주 여성들이 실제 한국의 가족 안에서 생활하면서 동화의 압력에 직면해 겪게 되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갈등을 분석하고(하밍타 잉 2005, 한건수 2006), 정착과정에서 여성들의 전략적 협상에 주목한다(윤형숙 2004, Freeman 2005, 김민정 외 2006). 또한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이나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 편협한 동화주의에 기반한다는 비판(김지은 2006, 2007)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유입국 사회와의 관계뿐 아니라 모국과의 관계나 물리적, 정서적 안정망으로서 이주 여성들의 자조 공동체에 주목하는 연구들(임안나 2005, 김정선 2007)이나 다문화주의에 관한 논의들(김이선외 2006, 문경희 2006, 김영옥 2007, 김현미 2007)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제3절 연구 내용 및 범위와 연구 방법

1. 연구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몽골과 베트남의 현지 조사를 통해 각국의 이주자들이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이주 체제를 분석한다. 이주 체제는 이주에 관여하는 제도와 법, 이주를 통해 영리를 만들어내는 이주 산업을 포괄한다. 이주자들이 이러한 이주 체제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적 특수성을 밝혀내어 향후 한국과 몽골, 한국과 베트남간의 국가 간 협력 사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한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 한다 .

- ① 몽골 및 베트남 정부는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절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송출절차는 어떠한가?
- ② 몽골 및 베트남 정부의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정책 및 제도와 한국과의 국가 간 협정(MOU 등)들은 국제인권기준에 얼마나 부합하게 제정되었으며,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되는가?

- ③ 몽골 및 베트남에서 한국행 노동이주자 및 결혼이주자들은 실제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주하고 있는가?
- ④ 몽골 및 베트남에서 한국행 노동이주자 및 결혼이주자들이 이주과정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문제들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어떠한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존연구 검토: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의 송출과정과 관련한 기존의 국내외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2) 몽골 및 베트남의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절차 관련 정책 및 제도 조사: 고용허가제 송출국들은 대한민국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행 노동이주자 송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식적인 모집, 선발, 계약, 출발 전 교육 등의 과정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양국이 한국과 체결한 노동이주 관련 협정(MOU 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노동이주와 관련한 각국의 법률은 한국행을 포함한 일반적인 노동인력송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한편 결혼이주자가 많은 출신국들은 자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 민간중개업체에 의한 국제결혼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제결혼 관련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베트남여성동맹 산하 결혼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이 같은 결혼이주 과정의 관리 및 결혼이주자 보호를 위한 양국의 정책 및 제도를 조사하였다.

(3) 몽골 및 베트남의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과정 실태 조사: 대부분의 노동 송출국에서는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노동인력 해외송출산업이 복잡다단하게 뿌리내려 왔다. 해외송출비용은 대체로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행 노동이주의 경우 국내에서 필요한 노동인력에 비해 송출국에서 이주희망자가 월등히 많아 해외송출비용 시장가가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크다. 고용허가제는 이러한 노동시장을 배제하고 송출국 정부가 직접 송출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송출비용의 감소를 꾀하는 제도이다.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실제 노동이주자들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들여 입국하는 지 단계별로 실태를 조사하였다.

한편 국제결혼의 경우 한국행 대부분이 민간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혼 당사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 결혼이주자들이 실제 어떠한 경로를 통해 국내로 입국하게 되는 지 실태를 조사하였다.

(4)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관련 제도, 정책 및 실태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평가: 위에서 조사된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와 관련한 정부의 제도, 법률, 정책들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실제 이주자들이 겪게 되는 실태들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어떠한 인권침해로 규정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크게 (1) 사전조사, (2) 현지 방문조사, (3) 연구 및 분석의 3단계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며, 각각의 단계에는 다음의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다.

(1) 사전조사

- ① 문헌연구
- ② 관련기관 방문 (주한 대사관등)
- ③ 국내 체류 중인 몽골,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 면접조사

(2) 현지 방문조사

- ① 몽골 및 베트남 정부기관 방문 및 면담
- ② 몽골 및 베트남 관련 민간단체 및 연구소 방문 및 면담
- ③ 한국행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희망자, 수속 과정 중인 이주자, 귀환

자 면접 조사

(3) 연구 및 분석

- ① 문헌연구
- ② 연구자 내부토론회
- ③ 자문회의

각 연구내용별로 사용된 연구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본 조사는 주로 관련 기관의 방문 및 면담을 통한 자료수집과 개별 이주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기간 동안 국내 29건, 베트남 31건, 몽골 36건 등 총 96건의 면담 및 심층면접이 실시되었다.

사전조사와 관련하여 몽골인의 한국행 이주 흐름과 한국 내 몽골인 이주민의 일반적인 실태에 대한 이해를 위해 2007년 10월 11일 주한 몽골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담당 영사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주한 베트남대사관의 경우 2006년 이주노동자인권연대의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때 실시한 면담기록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1 - 1>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의 관계

| 연구내용 | 연구방법 | | | | |
|----------------|-------|---------|---------------|----------------|--------------|
| | 문헌 연구 | 정부기관 면담 | 민간단체 및 연구소 면담 | 국내 및 현지방문 면접조사 | 내부토론회 및 자문회의 |
| (1) 기존연구 검토 | ○ | | | | |
| (2) 정책 및 제도 조사 | ○ | ○ | | | |
| (3) 이주과정 실태조사 | | | ○ | ○ | |
| (4) 인권침해요소 평가 | ○ | | | | ○ |

또한 국내 체류 중인 몽골,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의 실태

에 대한 사전 이해를 위해 8월부터 12월 간 국내에 체류 중인 몽골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몽골 국제결혼 알선 관련자, 몽골 관련 활동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베트남 국제결혼 알선 관련자 등 총 2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신상정보는 <표 1 - 2>와 같다. 면접 참여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면접 사례는 K 숫자 형식으로 표시했다.

<표 1 - 2> 사전 조사를 위한 국내 면접 대상 신상정보

| 번호 | 분류 | 국적 | 성별 | 조사장소 | 조사일 | 비고 |
|-----|------------|-----|----|------|-------|-------|
| K1 | 베트남여성문화센터 | 한국 | | | 9/5 | 전화인터뷰 |
| K2 | 주한 몽골대사관 | 몽골 | | 서울 | 10/11 | |
| K3 | 베트남 중개업자 | 한국 | 여성 | 서울 | 8/27 | |
| K4 | 베트남 결혼이주자 | 베트남 | 여성 | 안산 | 8/28 | |
| K5 | 베트남 결혼중개업체 | 한국 | 남성 | 평촌 | 8/29 | |
| K6 | 베트남 결혼이주자 | 베트남 | 여성 | 수원 | 8/31 | |
| K7 | 베트남 결혼이주자 | 베트남 | 여성 | 천안 | 8/31 | |
| K8 | 몽골 결혼이주자 | 몽골 | 여성 | 병점 | 9/3 | |
| K9 | 주한 몽골인 협회 | 몽골 | 여성 | 서울 | 9/6 | |
| K10 | 주한 몽골인 협회 | 몽골 | 여성 | 서울 | 9/20 | |
| K11 | 몽골 결혼이주자 | 몽골 | 여성 | 서울 | 9/28 | |
| K12 | 몽골 결혼이주자 | 몽골 | 여성 | 서울 | 9/28 | |
| K13 | 몽골 결혼이주자 | 몽골 | 여성 | 서울 | 9/28 | |
| K14 | 몽골 이주노동자 | 몽골 | 여성 | 인천 | 10/4 | |

| | | | | | | |
|-----|------------------------|-----|----|----------------|-------|---------------|
| K15 | 국내 여성인권 활동가 | 한국 | 여성 | 서울 | 10/5 | 몽골현지 조사경험자 |
| K16 | 몽골 결혼중개업체 | 한국 | 남성 | 서울 | 10/5 | |
| K17 | 몽골 결혼이주여성 | 몽골 | 여성 | 성남 | 10/6 | |
| K18 | 몽골 결혼이주여성 | 몽골 | 여성 | 성남 | 10/6 | |
| K19 | 몽골 결혼이주자 | 몽골 | 여성 | 일산 | 10/14 | |
| K20 | 몽골 결혼이주자 | 몽골 | 여성 | 수원 | 10/14 | |
| K21 | 몽골 이주노동자 | 몽골 | 남성 | 인천 | 10/14 | |
| K22 | 몽골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부인) | 몽골 | 여성 | 인천 | 10/14 | |
| K23 | 몽골 이주노동자 | 몽골 | 남성 | 인천 | 10/14 | |
| K24 | 몽골현지 결혼중개업 통역자 | 몽골 | 여성 | 1차 수원 2차 전화 | 10/15 | |
| K25 | 베트남, 캄보디아 결혼중개업자 | 한국 | 여성 | | 11/16 | 전화인터뷰 |
| K26 | 베트남 결혼이주자 | 베트남 | 여성 | | 11/17 | 전화인터뷰 |
| K27 | 베트남 결혼이주자 | 베트남 | 여성 | | 11/29 | 전화인터뷰 |
| K28 | 베트남 결혼 중개업체 | 한국 | 남성 | | 11/30 | 전화인터뷰 |
| K29 | 베트남 결혼이주자 | 베트남 | 여성 | | 11/30 | 전화인터뷰 |
| K30 | 노동부 | 한국 | | 과천 | 12/12 | |

현지 조사는 베트남의 경우 2007년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북부지역의 하노이(Hanoi), 하이즈엉(Hai Duong), 하이퐁(Hai Phong), 도손(Do Son), 남색(Nam Sac), 박린(Bac Linh)을, 9월 16일부터 23일까지는 남부지역의 호치민(Ho Chi Minh), 떠이닌(Tay Ninh), 안양(An Giang) 을 방문했다.

베트남 조사를 위해 노동전상사회부, 베트남여성동맹 등 베트남정부기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베트남사무소 등 베트남 주재 한국 정부기관, 국제이주기구(IOM) 베트남사무소 등 국제기구 등 총 10개의 기관을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주노동 희망자, 이주노동귀환자, 결혼이주 희망여성, 결혼이주 귀환여성 등 총 21명의 이주자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공식적인 기관 방문의 경우 면담자의 신상을 제시했고, 개인 면담자의 경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V 숫자로 표시했다. 조사대상에 대한 정보는 <표 1 - 3>과 <표 1 - 4>와 같다.

<표 1 - 3> 베트남 방문 및 면담기관 정보

| 번호 | 기관명 | 면담자 | 조사일 | 비고 |
|-----|-----------------|-----------------------|------|----|
| V1 | 노동전상사회부(MOLISA) | Vu Minh Xuyen (부소장) | 9/10 | |
| | 해외노동자센터 (OWC) | Le Manh Hung (차장) | | |
| V2 |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 이상철 영사 | 9/11 | |
| V3 | 베트남여성동맹(VWU) | Cao Thi Hong Van (위원) | 9/11 | |
| V4 | IOM 하노이사무소 | Andrew Bruce (대표) | 9/11 | |
| V5 | 한국산업인력공단 | 지인웅 소장 | 9/11 | |
| | 베트남사무소 | | | |
| V6 | 노동부 하이퐁사무소 | Tran Xuan Gioi (부소장) | 9/12 | |
| V7 | 하이퐁 여성동맹 | Do Than Le (부위원장) | 9/12 | |
| V8 | 하이퐁 결혼지원센터 | | 9/13 | |
| V9 | 주호치민 | 김진영 영사 | 9/21 | |
| | 대한민국총영사관 | | | |
| V31 | 호치민 결혼지원센터 | | | |

<표 1 - 4> 베트남 이주자 심층면접 대상 신상정보

| 번호 | 분류 | 국적 | 성별 | 조사장소 | 조사일 | 비고 |
|-----|----------------------|-----|----|------|-------|-----------|
| V10 | 이주노동 귀환자 | 베트남 | 남성 | 하노이 | 9/11 | |
| V11 | 이주노동 귀환자 | 베트남 | 남성 | 하이즈엉 | 9/13 | |
| V12 | 이주노동 희망자 | 베트남 | 남성 | 하이즈엉 | 9/13 | 초점 집단 인터뷰 |
| V13 | 이주노동 희망자 | 베트남 | 남성 | 하이즈엉 | 9/13 | 초점 집단 인터뷰 |
| V14 | 노동희망자 | 베트남 | 남성 | 하이즈엉 | 9/13 | 초점 집단 인터뷰 |
| V15 | 노동희망자 | 베트남 | 남성 | 하이즈엉 | 9/13 | 초점 집단 인터뷰 |
| V16 | 한국인 결혼중개업자 | 한국 | 남성 | 하이퐁 | 9/13 | |
| V17 | 현지 결혼중개통역자 | 베트남 | 여성 | 하이퐁 | 9/13 | |
| V18 | 현지인 결혼중개업자 (중간마담) | 베트남 | 남성 | 도손 | 9/13 | |
| V19 | 결혼이주 희망자 | 베트남 | 여성 | 도손 | 9/13 | 초점 집단 인터뷰 |
| V20 | 결혼이주 희망자 | 베트남 | 여성 | 도손 | 9/13 | 초점 집단 인터뷰 |
| V21 | 노동이주 희망자 가족 (부인) | 베트남 | 여성 | 남색 | 9/14 | |
| V22 | 노동이주 희망자 | 베트남 | 남성 | 남색 | 9/14 | |
| V23 | 노동이주 희망자 | 베트남 | 여성 | 하이즈엉 | 9/14 | |
| V24 | 결혼이주 희망자 | 베트남 | 여성 | 하이즈엉 | 9/14 | |
| V25 | 노동이주 희망자 | 베트남 | 여성 | 박린 | 9/15 | |
| V26 | 노동 송출업자 | 베트남 | 남성 | 하노이 | 9/15 | |
| V27 | 귀환 결혼이주여성 | 베트남 | 여성 | 떠이닌 | 9/15 | |
| V28 | 귀환 결혼이주여성 | 베트남 | 여성 | 떠이닌 | 9/16 | |
| V29 | 귀환 결혼이주여성 | 베트남 | 여성 | 호치민 | 9/21 | |
| V30 | 귀환 결혼이주여성 | 베트남 | 여성 | 호치민 | 9/21 | |
| V32 | 귀환 결혼이주여성 | 베트남 | 여성 | 견떠 | 11/23 | 전화 인터뷰 |

<표 1 - 5> 몽골 방문 및 면담기관 정보

| 번호 | 기관명 | 면담자 | 조사일 | 비고 |
|-----|-----------------------------------|-----------------------------------|-------|-------------------|
| M1 | 법무내부부(MOJHA) 국가시민등록정보센터(SCCRI) | Bat-Erdene (부소) | 10/23 | |
| M2 | 법무내부부 이주귀화외국인청(OINFC) | Muren Dshdorj (청장) | 10/23 | |
| M3 | 노동사회복지부(MOLISA) 노동정책조정과 | Enkhtuya Tumur-Ochir (과장) | 10/23 | |
| M4 | 노동사회복지부 인구개발사회보장정책조정과 | Natsagdologor Tsend-Ayush (과장) | 10/23 | |
| M5 | 몽골 국가인권위원회 | Oyunchimeg Purev (위원장) | 10/23 | |
| M6 | 노동사회복지부 산하 해외인력센터(COE) | Bilegsaikhan Gombosuren (대표이사) | 10/24 | |
| M7 | 해외인력센터 출발전 교육장 | | 10/24 | 면담 없음 |
| M8 | 한국산업인력공단 몽골지사 | 이귀석 지사장 | 10/24 | |
| M9 | 인권개발센터(CHRD) | | 10/25 | 현지 NGO |
| M10 | 법무법인 한몽 | | 10/25 | 현지 한국인운영 법률사무소 |
| M11 | 몽골 양성평등센터(MGEC) | Ganbayasgakh G. | 10/25 | 현지 NGO |
| M12 | 전국폭력방지센터(NCAV) | Muhksaruul Mijiddorj | 10/25 | 현지 NGO |
| M13 | 국제엠네스티 몽골지부 | Otgonchuluun Erderne | 10/26 | 국제 NGO |
| M14 | 몽골 중소기업노동자협회 | Bathdohd | 10/26 | 현지 NGO |
| M15 | 몽골뉴스 | | 10/26 | 인력송출업체 |
| M16 | 몽골주재 한국대사관 | 이강석 영사 | 10/26 | |

몽골의 경우는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수도 울란바토르(Ulaanbaatar)시에서 현지 조사를 했다. 몽골 조사를 위해 법무부 이주귀화외국인사무소, 노동사회복지부, 몽골 국가인권위원회 등 몽골정부기관,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 등 몽골 주재 한국정부기관, 몽골 양성평등센터(MGEC: Mongolian Gender Equality Center), 국제엠네스티 몽골지부 등 관련 NGO 및 기타 기관 등 총 16개의 기관을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 대기자 6명, 이주노동귀환자 및 왕복노동자 5명, 결혼이주 귀환여성 5명 등 총 20명의 이주자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몽골의 경우는 M 숫자로 사례를 표기했다. 조사대상에 대한 정보는 <표 1-5>와 <표 1-6>과 같다.

<표 1-6> 몽골 이주자 심층면접 대상 신상정보

| 번호 | 분류 | 국적 | 성별 | 조사장소 | 조사일 | 비고 |
|-----|--------------------|----|----|-------|-------|-----------|
| M17 | 귀환 이주노동자 | 몽골 | 여성 | 울란바토르 | 10/25 | |
| M18 | 고용허가제 대기자 | 몽골 | 남성 | 울란바토르 | 10/25 | 초점 집단 인터뷰 |
| M19 | 고용허가제 대기자 | 몽골 | 남성 | 울란바토르 | 10/25 | 초점 집단 인터뷰 |
| M20 | 고용허가제 대기자 | 몽골 | 남성 | 울란바토르 | 10/25 | 초점 집단 인터뷰 |
| M21 | 고용허가제 대기자 | 몽골 | 남성 | 울란바토르 | 10/25 | 초점 집단 인터뷰 |
| M22 | 고용허가제 출발전 교육생 | 몽골 | 남성 | 울란바토르 | 10/25 | |
| M23 | 고용허가제 출발전 교육생 | 몽골 | 여성 | 울란바토르 | 10/25 | |
| M24 | 고용허가제 출발전 교육생 | 몽골 | 남성 | 울란바토르 | 10/25 | |
| M25 | 방송국 PD | 몽골 | 여성 | 울란바토르 | 10/25 | |
| M26 | 여성인권 관련 NGO 활동가 | 몽골 | 여성 | 울란바토르 | 10/26 | |

| | | | | | |
|-----|--------------------|----|----|-------|-------|
| M27 | 여성인권 관련 NGO 활동가 | 몽골 | 여성 | 울란바토르 | 10/26 |
| M28 | 귀환 결혼이주여성 | 몽골 | 여성 | 울란바토르 | 10/27 |
| M29 | 귀환 결혼이주여성 | 몽골 | 여성 | 울란바토르 | 10/27 |
| M30 | 귀환 결혼이주여성 | 몽골 | 여성 | 울란바토르 | 10/27 |
| M31 | 귀환 결혼이주여성 | 몽골 | 여성 | 울란바토르 | 10/27 |
| M32 | 노동이주 희망자 | 몽골 | 남성 | 울란바토르 | 10/27 |
| M33 | 노동이주 희망자 | 몽골 | 남성 | 울란바토르 | 10/27 |
| M34 | 노동이주 희망자 | 몽골 | 남성 | 울란바토르 | 10/27 |
| M35 | 왕복 이주노동자 | 몽골 | 남성 | 울란바토르 | 10/29 |
| M36 | 결혼이주 귀환자 | 몽골 | 여성 | 울란바토르 | 10/29 |

제4절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는 여섯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연구내용 및 범위와 연구 방법을 제시한다. 제2장은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와 관련한 한국의 제도와 실태를 소개한다. 노동이주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결혼이주의 경우 중개업을 통한 결혼이주의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제3장과 제4장은 한국행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과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다루는데, 제3장은 몽골, 제4장은 베트남 사례를 분석했다. 각 국가별로 경제적 및 사회적 배경과 이주, 노동이주 관련 공식 절차 및 제도와 문제점, 결혼이주의 경향과 법률 및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행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과정을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주과정과 관련한 국제인권기준을 설명하고,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으며, 노동이주와 결혼이주로 나누어서 각 과정별로 발견된 인권침해 요소를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결론을 제시한다.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와 관련한 한국의 제도와 실태



제2장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와 관련한 한국의 제도와 실태

제1절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본 노동이주 절차와 실태

1. 고용허가제의 도입배경

1980년대 후반부터 국내 제조업체의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통상산업부 및 사용자단체를 중심으로 외국 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91년에 <해외투자법인연수생제도>가, 1993년에는 <산업기술연수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위의 제도들은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연수생'의 신분으로 도입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이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였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 및 산재보상법 등의 적용에서 배제되었고, 사업장에서는 강제적립, 폭언폭행, 감금노동, 여권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및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1991년에 도입된 해외투자법인연수생의 경우 고용주가 이들의 체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인력관리를 맡게 되어 있고, 1993년에 도입된 업종별 산업연수생의 경우는 중소기업중앙회(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한 수협, 농협, 건설협 등의 민간 이익단체들이 인력도입 및 관리를 담당함에 따라 송출

비리와 사후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이탈을 가속화시켜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이들 각종 연수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고강도의 노동과 저임금, 일상적인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고통을 받아야 했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을 이탈한 이주노동자들은 강제추방정책으로 인해 최소한의 인권적 삶의 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1995년부터 이주노동자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이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1996년 고용허가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재오의원 대표 발의)」과 노동허가제를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방용석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사용자단체의 반발과 제 15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다.

그 후 정부는 산업연수생에 대해 최저임금과 산재보상법 및 노동관계법의 일부조항을 적용하였고, 2000년부터는 연수취업제를 시행하여 총 3년의 체류기간 중 2년을 '연수생'으로 노동한 이후, 1년은 노동자신분인 '연수취업생'으로 노동을 할 수 있게 허가했다. 2002년부터는 그 기간을 1년'연수생', 2년'연수취업생'으로 완화하였으나 산업연수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송출비리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 결과로 2003년 전체 36만 명의 이주노동자 중 29만 명이 미등록신분이 되어, 미등록자의 비율이 80%에 달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은 점점 더 열악한 처지로 치닫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지속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및 인권보장을 위한 법안에 대한 입법청원운동 등으로, 2002년 대선 당시 여야 양당이 고용허가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외국인력정책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03년 3월 고용허가제 도입을 결정하였고,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 및 인권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2002년 11월 제출)을 토대로 하여 2003년 8월 16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가 본격적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안을 제정할 당시 논란의 핵심이었던 산업연수제의 폐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산업연수제를 유지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선별적으로 합법화시키는 것으로 결말을 맺었다.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계를 갖은 채 고용허가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2007년에 산업연수제도가 폐지되었고, 현재는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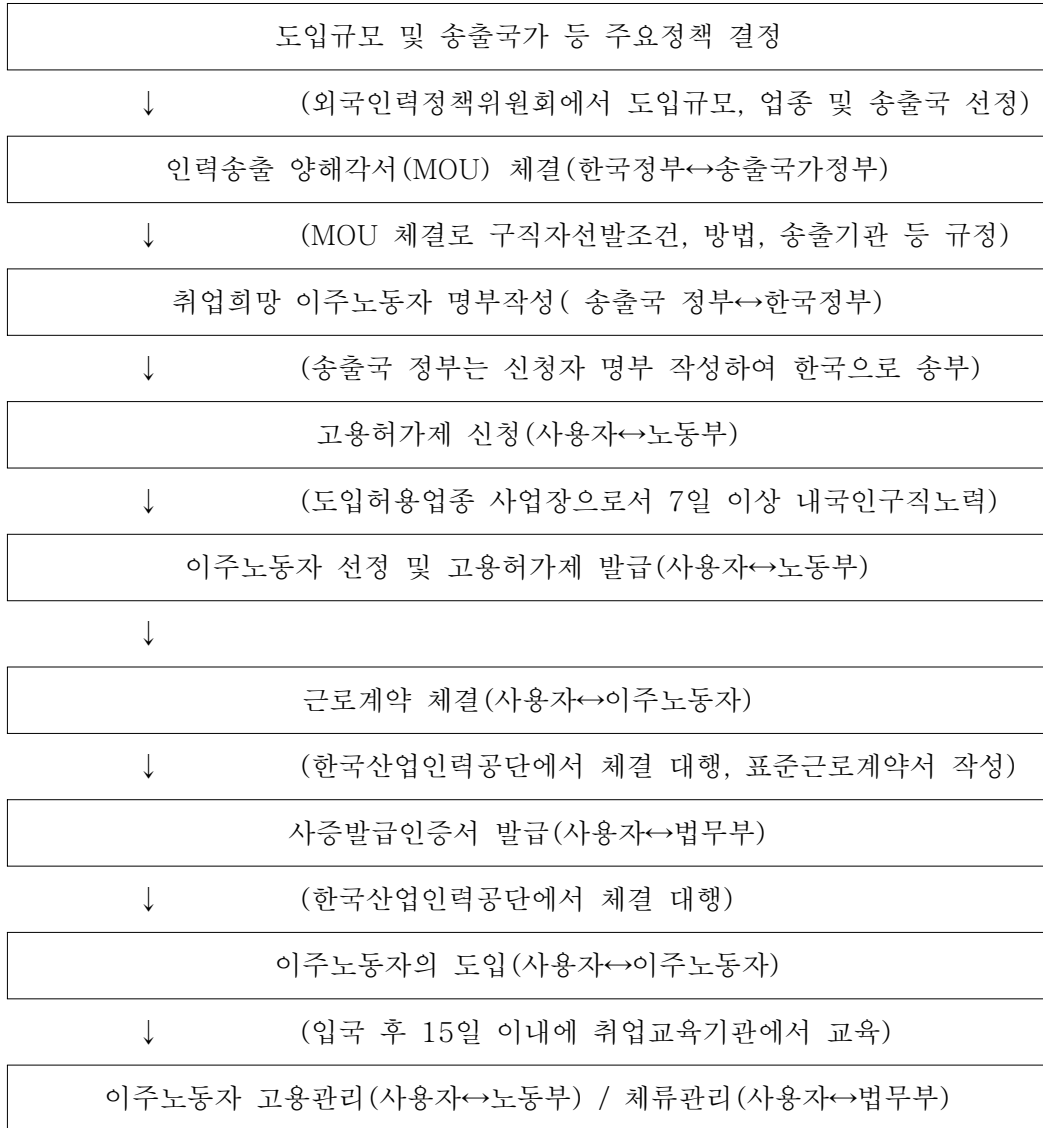
2. 고용허가제를 통한 노동이주과정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매년 적정한 외국 인력의 도입규모와 업종에 대한 결정을 하고, 송출국가를 선정한다. 이후, 선정된 송출국의 노동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와 한국 노동부 간에 국가 간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담당정부기관을 제외한 민간기관의 송출과정에 대한 개입은 배제된다.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는 인력송출업무에 대한 평가를 거쳐 매 2년마다 갱신된다. 송출국 정부는 한국으로 송출될 인력들을 모집하여 구직자명부를 작성하고 한국으로 송부한다. 이때 구직자의 필수조건은 1)만 18세 이상자, 2)유효한 여권 소지자, 3)신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한국어 능력시험 합격자, 5)건강검진 통과자 이다.

고용허가제 하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를 통해 한국어 능력 시험이 필수사항으로 규정되었고, 2005년 8월부터 실시되었다.

고용허가제 도입 허용업종의 사업주는 7일 이상 내국인에 대한 구인노력 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 고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다. 이후, 3개월 이내에 외국인구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그 외 송출국에 주재원을 파견하여 현지 송출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구직자명부 송부,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신청 및 해당 구직자에게 이를 송부하는 일을 대행한다.

<그림 2 - 1>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과정



출처: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eps.go.kr>>

송출 전 현지 사전교육은 송출국가가 실정에 맞게 운영하며 한국 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2006년 이전에는 150시간 이상 사전교육을 받도록 했지만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이후에는 85시간으로 줄었다. 교육내용은 한국어, 한국문화의 이해, 고용허가제 이해, 산업안전교육, 업종별교육과 이탈방지 교육으로 구성된다. 사전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구직자는 현지 한국공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고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 입국을 하여 15일 이내에 취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된다.

한국에 입국한 노동자는 1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3년간 한국에서 노동할 수 있으며, 2007년 6월 1일 재고용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3년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노동자 중 사업주와 재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는 본국으로 출국 후 1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3년간 한국에서 노동할 수 있다.

2004년 고용허가제 운영당시 한국 정부는 6개국(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과 인력송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04년 10월 필리핀, 이후,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중국, 파키스탄, 미얀마 등과 인력송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3. 고용허가제 실시 현황

2004년 8월 17일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2007년 10월 현재 총 187,066명이 고용허가제 단순노무인력(E-9)인력으로 도입되었으며, 고용특례로 입국한 외국적동포를 제외한 일반고용허가제 도입인원은 88,720명에 달한다.

일반고용허가제로 인력을 송출하는 국가 중 베트남이 가장 많은 수의 인력을 송출하고 있으며, 필리핀, 태국, 몽골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중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은 2007년에 MOU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아직 도입인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표 2 - 1> 고용허가제 도입노동자의 각 국가별 계약체결현황
(2007년 10월 말 기준)

| 연도별 구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 | | | 총계 | |
|---------------------------------|------------|--------|--------|--------|--------|-------|-------|-------|---------|--------|
| | | | | 소 계 | 3월 | 6월 | 9월 | 10월 | | |
| 취업현황 (총계) | 7,095 | 60,473 | 79,199 | 40,299 | 3,323 | 4,121 | 3,714 | 7,359 | 187,066 | |
| 일 반 고 용 허 가 제 | 소계 | 3,167 | 31,659 | 28,976 | 24,918 | 2,113 | 2,896 | 2,136 | 4,899 | 88,720 |
| | 베트남 | 704 | 8,619 | 5,712 | 8,983 | 805 | 1,015 | 899 | 1,675 | 24,018 |
| | 필리핀 | 832 | 5,308 | 8,434 | 4,894 | 472 | 731 | 245 | 803 | 19,468 |
| | 태국 | 558 | 5,964 | 6,746 | 4,215 | 246 | 447 | 330 | 1,090 | 17,483 |
| | 몽골 | 500 | 4,433 | 4,703 | 1,586 | 245 | 145 | 31 | 220 | 11,222 |
| | 인니 | 359 | 4,361 | 1,215 | 3,151 | 219 | 355 | 402 | 606 | 9,086 |
| | 스리랑카 | 214 | 2,974 | 2,166 | 1,608 | 126 | 203 | 94 | 278 | 6,962 |
| | 중국 | - | - | - | 236 | - | - | 63 | 121 | 236 |
| | 우즈벡 | - | - | - | 91 | - | - | 29 | 30 | 91 |
| | 파키스탄 | - | - | - | 138 | - | - | 39 | 69 | 138 |
| | 캄보디아 | - | - | - | 16 | - | - | 4 | 7 | 16 |
| 소계 | 3,928 | 28,814 | 50,381 | 15,381 | 1,210 | 1,225 | 1,578 | 2,460 | 98,346 | |
| 특 례 고 용 | 한국계 중국 | 3,920 | 28,778 | 50,139 | 15,301 | 1,206 | 1,211 | 1,566 | 2,447 | 98,138 |
| | 한국계 러시아 | 5 | 7 | 7 | 17 | | 1 | 2 | 4 | 36 |
| | 기 타 | 3 | 29 | 77 | 63 | 4 | 13 | 10 | 9 | 172 |

출처: 노동부.

〈표 2 - 2〉 고용허가제 도입노동자의 성별 계약체결현황
(2007년 10월 말 기준)

| 구분 | 계 | 남 | 여 |
|--------|--------|---------------|---------------|
| 계 | 88,720 | 78,535(88.5%) | 10,185(11.5%) |
| 베트남 | 24,018 | 21,988(91.5%) | 2,030(8.5%) |
| 필리핀 | 19,468 | 16,764(86.1%) | 2,704(13.9%) |
| 태국 | 17,483 | 14,766(84.5%) | 2,717(15.5%) |
| 몽골 | 11,222 | 9,403(83.8%) | 1,819(16.2%) |
| 인도네시아 | 9,086 | 8,361(92.0%) | 725(8.0%) |
| 스리랑카 | 6,962 | 6,810(97.8%) | 152(2.2%) |
| 중국 | 236 | 202(85.6%) | 34(14.4%) |
| 우즈베키스탄 | 91 | 88(96.7%) | 3(4.3%) |
| 파키스탄 | 138 | 137(99.3%) | 7(0.7%) |
| 캄보디아 | 16 | 16(100.0%) | 0(0.0%) |

주: 특례고용허가제 : 남성 73,427명(74.7%), 여성 24,919명(25.3%)

출처: 노동부.

일반 고용허가제로 온 노동자의 성별 계약체결현황을 살펴보면 총 도입인원 88,720명 중 78,535명(88.5%)가 남성이고, 10,185명(11.5%)가 여성이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계약체결이 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남성노동자에 대한 선호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성비불균형적 유입이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과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몽골과 같이 인구수가 적은 나라의 경우 주로 결혼적령기의 젊은 남성노동력이 대규모로 송출됨으로써 현지의 노동력 부족을 일으키거나 여성과 남성의 성비불균형으로 인해 결혼적령기의 여성들이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는 노동이주가 좌절된 여성들이 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으로 이주하려하기 때문에 결혼이주와 노동이주의 동기가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인력은 국내에서 노동을 하는 동안 최초근로계약을 맺

은 사업장에서 타 사업장으로의 이전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총 3회의 사업장변경을 인정하고 있으며 3회의 사업장변경횟수를 초과하면 미등록자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사업장 변경 시 구직등록기간 1개월을 초과하거나 구직기간 2개월을 초과할 시에도 미등록자로 처리된다.

현재까지 총 도입인원 88,720명 중 2,795명(3.1%)이 구직등록기간 및 구직기간 초과로 인해 미등록자로 처리되었다. 이는 2005년 스리랑카 노동자의 총 도입인원수인 2,974명에 근접한 수치이다.

<표 2 - 3> 고용허가제 도입노동자의 구직등록기간 및 구직기간 초과로 인한 국가별 미등록처리현황 (2007년 10월 말기준)

| 국가 | 출국대상자 (미등록 처리자) |
|-------|-----------------|
| 총계 | 2,795 |
| 몽골 | 1,046 |
| 필리핀 | 384 |
| 태국 | 492 |
| 중국 | 1 |
| 베트남 | 549 |
| 스리랑카 | 190 |
| 인도네시아 | 133 |

출처: 노동부.

<표 2 - 4> 고용허가제 도입노동자의 구직등록기간 및 구직기간 초과로 인한 성별 미등록처리 (출국대상자) 현황 (2007년 10월 말기준)

| 총계 | 남 | 여 |
|-------|-----|-------|
| 2,795 | 581 | 2,215 |

출처: 노동부.

총 미등록처리인수 2,795명 중 남성은 581명(20.8%)이고 여성은 2,215명(79.2%)였다. 이는 여성도입총인원수 10,185명의 21.7%에 달하는 인원이 미등록자로 처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남성노동자 미등록처리 건수의 4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인력도입이 어려울 뿐더러 한국에 입국해 노동을 하는 중에도 여성노동자들이 구직에 있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주가 남성노동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 할지라도 총 도입인원의 21.7%의 여성이 구직을 하지 못해 미등록자로 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에게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를 발급해주는 것이 제도 운영의 중요한 핵심이다. 따라서 사업주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용허가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와 고용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적절히 규제해 제도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 고용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의 2006년 상담통계결과 총 1,491건의 상담건수 중 고용허가제 노동자가 사업주의 근로 조건 때문에 신청한 상담건수가 337건으로 총 상담건수의 22%에 달하고 있다. 사업주의 근로조건에 대한 위반건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32건이며, 그 중에서도 근로조건 위반으로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이는 외국 인력을 고용한 사업장의 근로조건위반건수가 적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허가취소를 일선에서 매우 신중하게 처리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표 2 - 5>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 건수 및 사유
(2007년 9월 기준)

| 년도 | 현황 | 고용허가취소사유 |
|-------|----|--|
| 계 | 32 | - |
| 2006년 | 12 | ·허위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 : 11건 ·근로조건 위반 : 1건 |
| 2007년 | 20 | ·허위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 : 20건 |

출처: 노동부.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송출의 전 과정 및 입국 후 구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절 중개업을 통한 결혼이주와 관련한 제도와 실태

1. 한국의 결혼이주의 역사

1990년대 ‘농촌 총각 결혼시키기’ 사업으로부터 시작된 한국 남성과 아시아 여성들의 국제결혼이 2000년 이후 ‘결혼 붐’을 이루면서, 2007년 현재 11만 명의 결혼 이주자가 존재한다. 한국 사회의 국제결혼은 1990년대 초 농촌의 인구 감소를 위기로 인식한 지역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외국인 신부’를 들여오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88년에 시작된 ‘농촌총각 연변처녀 짝짓기 운동’(홍기혜 2000:34)은 조선족 여성들의 유입을 통해 농촌의 인구 재생산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예이다.(박혜란1996:219 ; Freeman 2005:84 재인용)

이러한 행정 주도형 국제결혼은 한국 사회의 고유한 현상은 아니다. 1980년대 이후 일본,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 지역 신흥 부유국들은 자국의 신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아시아 지역의 저개발국 여성들의 결혼 이주를 목인하거나 장려해 왔다. (Suzuki 2002, Nakamatsu2003, Wang & Chang 2002, Hsia 2004, 김현미 2006)

초기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주도되었던 국제결혼은 90년대 중반 이후 상업화된 중개업체와 특정 종교단체가 개입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 국제결혼이 급증하며 ‘붐’을 이루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중개업이 허가제에서 신고만 하면 가능한 자유업이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행정 기관의 허락과 감독을 받아야 했던 중개업체들이 1998년 이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짐으로써,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1998년 당시 700여개 이던 중개업소가 2005년 2천개 이상으로 급증하게 되

었다(고현웅 외 2005, 한건수 외2006). 중개업은 초기 투자 자본 없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익 사업이며, 사무실 없이 전화 연락처나 인터넷을 통해 영업이 가능하다. 중개업의 영업 관행을 규제하는 법률이나 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중개업자들은 초국적 결혼 시장을 확장해 나갔다.

중개업에 의한 국제결혼이 여성, 남성 모두의 고유한 권리인 결혼 결정권을 매매 가능한 상품으로 전락시킨다는 시민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국제결혼비용 지원 사업이란 이름으로 지역 남성들의 국제결혼을 독려하고 있다.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전국 전체기초자치단체의 24.7%인 6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남성 주민 574명을 대상으로 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최순영2007:7 - 17) 그중에서 제주도와 경상남도 그리고 보령시 등 24개 시군이 관련한 조례²⁾를 제정하기도 하는데, 결혼을 하려는 한국남성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평균 500만원으로 이와 관련되어 책정된 총 예산은 28억 4천 8백 5십만 원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을 배정한 58개 시,군 중 54개 지자체가 결혼이주자 여성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 지원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결혼비용지원사업으로 편성하여 비난을 받았다.

대다수의 이러한 지원 사업이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상대방 국가의 실정법을 어긴 결과를 낳게 되었다. 왜냐하면 베트남, 중국 등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을 매개로 성사되는 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가 지원한 대다수의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들과 결혼을 했는데, 최근 들어 이 부분은 베트남에서 최고의 정치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등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국제적으로도 베트남여성관련 학대나 인신매매 사례가 최근 몇 년간 보고되면서 베트남 정부관계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자국 내에서의 행태를 ‘베트남 국가의 자존심³⁾’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

2)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조례에서 ‘...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영어 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생활영위’를 그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2007:50)

3) 이윤을 위한 국제결혼중개행태는 베트남 사회질서를 침해하고 있다. 많은 사례는 베트남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를 떨어뜨리고, 국가 자존심을 손상시킨다.(VnExpress, 2005년 3월2일자) 분노한다. 베트남 여성들뿐만 아니라 베트남인에게 치욕과 아픔이다. 이 사건은 우리 국가 자존심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하여, Laborer online, 2006년 5월1일자) - 재인용 Belanger, Hong & Wang 2007

다.(Belanger, Hong & Wang 2007)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처럼 기초자치지 자체가 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을 계속 할 경우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2. 한국남성과 혼인 신고한 이주여성 현황

200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0년 한국남성과 혼인 신고한 외국국적의 여성의 수는 619명에 불과 하던 것이 2006년에는 30,208명으로 늘어나 1990년에서 2006년까지 총 190,150명의 이주여성이 한국남성과 혼인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추이는 1996년을 기점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2000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6년 혼인 신고 한 30,208건은 같은 해 한국 내에서 총 혼인신고 건수에 9.1%에 차지하게 된다. 특히 2006년 혼인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성중 41.0%가 외국 국적자 여성과 혼인 한 것으로 나타났다.(2007, 통계청)

<표 2 -6> 2001년 -2006년 한국남성과 혼인 신고 한 여성결혼이주자 수

| | 2001 | | 2002 | | 2003 | | 2004 | | 2005 | | 2006 | |
|------|--------|-------|--------|-------|--------|-------|--------|-------|--------|-------|--------|-------|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 계 | 10,006 | 100.0 | 11,017 | 100.0 | 19,214 | 100.0 | 25,594 | 100.0 | 31,180 | 100.0 | 30,208 | 100.0 |
| 중국 | 7,001 | 70.0 | 7,041 | 63.9 | 13,373 | 69.6 | 18,527 | 72.4 | 20,635 | 66.2 | 14,608 | 48.4 |
| 베트남 | 134 | 1.3 | 476 | 4.3 | 1,403 | 7.3 | 2,462 | 9.6 | 5,822 | 18.7 | 10,131 | 33.5 |
| 몽고 | 118 | 1.2 | 195 | 1.8 | 318 | 1.7 | 504 | 2.0 | 561 | 1.8 | 594 | 2.0 |
| 필리핀 | 510 | 5.1 | 850 | 7.7 | 944 | 4.9 | 964 | 3.8 | 997 | 3.2 | 1,157 | 3.8 |
| 일본 | 976 | 9.8 | 959 | 8.7 | 1,242 | 6.5 | 1,224 | 4.8 | 1,255 | 4.0 | 1,484 | 4.9 |
| 캄보디아 | - | - | - | - | 19 | 0.1 | 72 | 0.3 | 157 | 0.5 | 594 | 2.0 |
| 기타 | 1,267 | 12.7 | 1,496 | 13.6 | 1,915 | 10.0 | 1,841 | 7.2 | 1,753 | 5.6 | 1,640 | 5.4 |

출처: 통계청, 2007

한국남성과 혼인 신고한 이주여성 중 중국여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지만, 2000년 이후부터 베트남 여성이 꾸준히 늘어나 2006년에는 전체 혼인건수의 33.5%를 차지하게 된다. 또한 2003년이후 캄보디아 국적 여성이 꾸준히 늘어나 2006년에 한국남성과 혼인 신고한 여성은 전년도에 비하여 151.0%가 증가하였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여성의 급격한 증가 현상은 본 보고서에서 서술하고자 하는 국가 간에 존재하는 고이윤을 창출하는 조직화된 결혼중개업체의 왕성한 활동에 의한 결과로 보여 진다.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한국인 남성과 혼인 신고한 이주여성 49,408명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분석한 자료는 <표 2 - 7>와 같다.(Cheong Seok Kim, 2007)⁴⁾

아래 표에서 보여 지듯이, 본 보고서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베트남 여성의 평균연령은 혼인 신고 당시 21.5세로 다른 국적여성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 통계자료(Gender statistic book 2004)에서 밝히고 있는, 베트남 농촌지역 여성의 평균 혼인연령인 22.9세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남성은 필리핀이나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경우 초혼자의 비율이 높고, 중국여성과의 혼인의 경우 재혼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 - 7> 2004 - 2005년 한국남성과 혼인 신고한 이주여성의 특성

| | | 필리핀 | 베트남 | 몽골 | 중국 | 계 |
|-------------|----|-------|-------|-------|--------|--------|
| 혼인신고 건수 (건) | | 1,917 | 8,149 | 1,040 | 38,302 | 49,408 |
| 평균연령 (세) | 여성 | 25.4 | 21.5 | 27.9 | 36.1 | 33.1 |
| | 남성 | 38.0 | 38.8 | 34.6 | 48.2 | 43.1 |
| 연령차이(세) | | 12.6 | 17.3 | 10.9 | 7.2 | 9.2 |
| 초혼율 (%) | 여성 | 98.4 | 98.5 | 85.5 | 33.5 | 47.8 |
| | 남성 | 70.1 | 73.3 | 59.3 | 26.8 | 36.9 |

4) <표 2-7>은 표는 통계청자료를 분석한 것을(Cheong - Seok Kim, 2007 :7) 재정리한 것임.

3. 한국의 국제결혼 중개 관련 제도 변화

한국의 국제결혼중개업의 인권침해적인 행태는 2000년 초부터 보고되었다.⁵⁾ 국제결혼중개과정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고현웅외 2005, 한건수와 2006)를 통해 이 문제가 공론화되었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2005년 2월에 김춘진 의원에 의해 발의 된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서였다. 이후 2006년 4월26일, 제74회 국정과제 회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 및 혼혈인. 이주자의 사회통합 지원방안’ 속에 전체 7개의 정책과제 중 첫 번째 정책과제가 탈법적인 결혼중개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였다. 이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는 ①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및 불법행위 단속 강화 ②결혼사증 발급심사 강화 ③외교채널을 통한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④ 결혼 당사자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⁶⁾

현재 국제결혼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NGO 의 활동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

2005년 2월 김춘진 의원이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를 하면서 국제결혼중개업의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 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정되어진 법인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이 2007년 11월 22일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의 주 내용은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외국의 현지법령 준수, 허위, 과장된 표시, 광고의 금지, 개인정보의 보호, 관계기관의 협조, 교육,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처벌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었던(소라미, 2006), 중개업체에 대해 결혼쌍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 하는

5) 한국일보 2001년 2월20일 : 국제결혼 사이트 탈선 조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03년 2월8일 : 국제결혼업체 무책임한 행태 고발 등

6) 제74회 국정과제회의자료 2006:37 - 39

것, 한국의 중개업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명시하는 것, 현지 법령을 위반 했을 때 처벌 관련 조항, 국제결혼중개업에 의해 피해를 본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 등은 현재의 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국제결혼중개업에 의한 많은 피해 사례가 상대방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였음에도 이러한 피해를 감소시킬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이 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중개업을 불법화하는 현지법을 어겼을 경우에 국내에서 처벌을 받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2) 대법원 호적예규 제715호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지침]

2006년 7월21일 대법원은 한국인이 베트남인과 혼인 신고할 때, 필요한 절차에 대한 사무지침을 만들었다.⁷⁾ 타국적자와의 혼인지침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베트남 국적이 선별된 것은 그 만큼 베트남의 경우, 중개업에 의한 결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지침에 의하면,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한국에서 혼인신고 할 때, 베트남 배우자의 경우에는 베트남 지역 인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혼인상황확인서' 한국주재 대사 또는 영사명의로 '혼인요건인증서' 당사자 베트남인의 국적이 베트남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결혼의 진위 여부나 엄격한 절차를 강조한다는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지만 부작용을 낳는 것도 사실이다.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주재 대사 또는 영사명의로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한국주재 베트남 대사관은 이 과정에서 한국남성에게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인중개업자가 소요 경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었다.

한국주재 베트남 대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받는데 공식적으로 드는 비용은 12만 5천원이다. 일주일일 걸린다. 건강진단서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7)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1>에 첨부되어 있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초기에는 건강검진 병원을 서울에 2곳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비용과 시간이 더 들었다. 이로 인해 50만원 가까이 더 들어 많은 이들 애를 먹었다. (사례 K5)

3) 국가간 협력 사업 및 시민 사회의 활동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한 부작용의 심각함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한국과 베트남 정부의 공식적인 협력 사업이 성사되기도 했다. 한국 여성가족부는 국제이주기구와 함께 베트남 남부지역에서 결혼을 통한 이주의 위험성을 알리는 정보 제공 사업을 2007년 9월에 실시하였다. 이는 관련 사안에 있어 최초로 실현된 정부 간 협력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사업에서는 베트남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국행 국제결혼중개업자 피해사례들과 한국의 관련정책들을 설명하고, 베트남 내에서 많은 여성들이 국제 결혼한 타이닌(Tay Ninh)과 양양(An Giang)지역에서의 '안전한 이주'를 주제로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되었다.

또한 한국의 민간단체인 한국유엔인권정책센터는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2007년 9월 이후 부터 현재까지, 국제이주기구 호치민 사무소와 협력하여 한국 입국 전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과정에서 나타난 실태와 문제점: 몽골



제3장 한국행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과정의 실태와 문제점: 몽골

제1절 몽골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배경과 이주

1. 개혁·개방이후의 몽골 사회의 변화와 이주

몽골의 공식 명칭은 몽골공화국(Republic of Mongolia)이다. 행정구역은 수도인 울란바트로(Ulaanbaatar)와 다른, 에르데네트(Erdenet) 특별시와 총 21개의 아이막(Aimag, 한국의 도 단위)로 구성된다. 몽골은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의 중간 형태를 띠는 의회공화국이다. 1921년 사회주의 혁명으로 몽골공화국이 건국되었다가 1924년에 몽골인민공화국(Mongolian People's Republic)으로 국호가 변경되었다. 동구권과 소련이 해체되기 전까지 70년간 몽골은 '작은 소련'이라 불릴 정도로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김홍진 2007). 1988년 12월 단행된 몽골판 페레스트로이카인 신첼렐(Shinechelt) 정책이 등장하고 1989년 몽골민주화 동맹이 결성되면서 사회주의 정권이 종식되었다(조은경 2004). 1990년 집권정당인 몽골인민혁명당(Mongoli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 이하 MPRP)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로의 개혁·개방을 표방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이일청 2006:130).

1992년 1월 개방정책의 상징으로 국호를 몽골 공화국으로 고쳤고, 이후 자유 선거 제도의 도입, 사유권 인정, 민영화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 1996년 총선거에서는 야당연합인 ‘몽골민주주의 연합’이 승리했으나 집권 4년간 혼란과 경제위기를 경험했다. 1999년 몽골인민혁명당이 다시 선거에서 승리하며 2000년 몽골인민혁명당과 야당의 ‘연정’이 시작되었다 (이일청 2006:). 1990년대 이후 몽골 사회에서 일어난 급격한 변화는 “행복한 옛날’이라는 향수에 젖은 나이 든 세대와 민주주의 정신과 서구 사회의 분위기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 간의 갈등”으로 대변되기도 한다.

몽골은 1921년 사회주의 체제 도입이후, 집단농장제를 실시하면서 유목 생활이 제한을 받았지만 최근까지도 유목 문화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박환영 2007). 특히 1990년대 사유 재산이 인정되면서 양, 염소, 말, 낙타 등의 짐승의 수가 재산의 척도로 이해되면서 ‘재유목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몽골의 산업구조는 주로 구리, 금 등의 천연지하자원과 관련된 광산업과 목축업에 집중되어 있었다(이일청 2006:131).

몽골에서 ‘이주’가 급증하게 된 것은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기의 사회 혼란과 깊은 관련이 있다. 예전에는 국가의 통제 하에 고용되어 있던 몽골인들이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기에 실업자로 전락되었고, 빈민이 양산되었다. 또한 전반적인 월급 인하로 인해 소득 수준이 낮아졌다. 몽골인들은 보다 나은 조건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 ‘이주’를 선택하게 되었다(몽골사회보장노동부 2005). 즉, 몽골의 시골에서 도시 지역으로의 국내 이주뿐만 아니라 몽골에서 러시아, 중국 등지로 보따리 장사를 떠나는 해외 이주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1990년 초기만 하더라도 몽골인 들은 중국과 러시아에 ‘비자 없이’ 갔다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보따리 장사를 나갔다. 마침내 1992년 18세 이상인 몽골인 누구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헌법이 공포됐다. 헌법이 공포된 이후로 몽골인은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 해외에 나가게 되었고, 이것이 해외 이주의 큰 기폭제가 되었다.

2001년 몽골 정부는 해외로의 밀입국을 막기 위해 <외국인 인력, 전문가 도입, 해외인력 송출법>을 제정했지만 여전히 많은 몽골인 들이 국경을 넘어

밀입국 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해외 취업을 알선하는 공식 - 비공식 체제가 구성되었고, 우편이나 송금 등 국가 간 이주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업들이 번창했다.

그러나 '이주'라는 새로운 흐름은 몽골 사회에 만연한 다양한 부패 구조와 얽힘으로써 거대한 이권 또는 영리 사업이 되었다. 몽골 사회의 급격한 사회 변화와 이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은 공무원들 사이에 광범위한 '부패'를 낳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1990년대 이전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국민들이 개별적인 재산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 집단 간의 갈등도 별로 없었고, 국가 투명성이나 부패 문제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공산당의 상위계층이나 특권층에서는 부패 행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으나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조은경 2004: 211). 몽골의 부패는 시장경제로 이행 과정에 나타난 민영화,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각종 이권 사업과 가족주의 문화가 결합된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몽골은 특히 가까운 친족뿐만 아니라, 친구와 이웃과도 긴밀한 유대감과 결속력을 가지는 경향이 강하다(박환영 2007). 또한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는 전통이 강해서 선물과 뇌물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고, 처벌도 상당히 미약하다(조은경 2004:212). 몽골은 이렇게 '인적네트워크'에 의해 일을 성사시키는 사회이므로, 이 과정에서 다양한 특혜와 부패가 일어날 소지가 높다고 한다. 특히 내각의 장관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특별한 인허가를 수여할 수 있는 책임이 갖게 되면서 정치권력과 경제적 이권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된다.

부패구조와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이주'는 거대한 영리 사업으로 등장하게 된다.⁸⁾ 이주의 전 과정에 개입되는 다양한 알선 네트워크와 차등적으로 관리되는 인맥, 정보 등의 중층적 구조 때문에 그만큼 '부패'가 일어날 소지가 아주 높은 영역이다. 특히 이주자들은 이주를 하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이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속성비 명목으로 돈을 많이 쓰게 된다. 2004년 한국에 진출한 393명의 몽골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8) 1996년에 부패방지법(Law Against Corruption)이 제정되었으나 이 법의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조은경 2004:220)

한 설문 조사에서는 비자 받을 때 평균 미화 2703.8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몽골사회보장노동부 2005). 비공식적인 '거래' 비용을 합하면 그 규모가 엄청날 것이라 평가된다. 관련 공무원 또한 법적으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결과에 따라 권력을 잡은 정당에 의해 해임 사례가 반복되어 있어남으로써(조은경 2004: 213), 자신이 특정직에 있을 때 최대한 많은 이윤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한다. 공무원이나 경찰직의 봉급이 낮기 때문에 '권력'이 개입될 수 있는 곳마다 이권 경쟁이 일어난다. 이 때문에 최근 고용허가제 이후 한국 측의 요구로 송출 사업을 몽골 정부에서 관리하기 전까지 이주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매년 증가 해왔다.

여성들의 경우에도 '이주'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만, 고용허가제 이후 한국의 사업주들이 남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로로 이주하는 것은 쉽지 않다. 1990년 중반 이후, '결혼이주'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몽골 여성들이 이주 노동을 하기 어려운 조건과도 관련이 있다. 또 한편으로 몽골 여성들이 몽골 사회에서 느끼는 특수한 결혼압박에도 원인이 있다. 한국 사회와 달리 몽골의 젠더 불균형은 남자들의 학교 중퇴율이 높고, 여성들의 고학력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남성들은 '학력'보다는 '재산'을 늘리려 애쓴다.

몽골에서는 대학 졸업장이 높은 취업가능성이나 고소득의 직장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긴 취업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무직보다는 당장의 가난과 궁핍을 불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노무직을 선호하며 더구나 이들에게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강신 2007: 160)

결혼 적령기의 '적당한' 남성을 구하기 힘든 점도 있고, 대부분 고학력인 여성들에게 저학력인 남성과의 결혼은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높다. 이 때문에 몽골의 가난한 여성뿐만 아니라 고학력 여성들 또한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된다.

현재 몽골 여성과 한국인 남성을 중개하는 업체는 8군데 정도이다. 몽골에서는 결혼이 상업적 거래가 되는 것을 막고는 있지만 뚜렷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법이 제정된다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왜

나하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성매매 알선등도 지역 경찰과 뇌물 거래를 통해 쉽게 무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몽골 사회가 지난 18년간 갑작스런 체제 개혁으로 혼란을 경험한 것은 사실이나 2000년 이후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도 늘어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홍진 2007). 또한 최근 몇 년간 NGO의 활동이 증가되고 있고, 그 활동 범위 역시 매우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조은경 2004: 218). 시민 사회의 성장이 급속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은 국제 NGO등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몽골의 고학력자들의 사회의식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노동자, 어린이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적극적이라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예를 들어, 1995년 이후 활동해 온 비정부 NGO 단체인 National Center Against Violence (NCAV)는 가족 내 폭력 문제에 대한 몽골 시민 사회의 인식을 계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지난 2005년 가족 내 폭력 방지 법안을 만들어내는데 큰 기여를 했다.(National Center Against Violence, 2006).

2. 한·몽골 교류 현황

1990년 3월 26일 전격적인 한·몽 수교 이후 한국은 몽골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주 국가로 부상했다. 특히 1991년 10월 몽골대통령의 방한, 1994년 11월에 서울 - 울란바토르간 직항로가 개설되면서 한·몽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졌다 (김선호 2006). 직항이 열리면서 몽골인들은 한국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한국으로 몰려들었고, 한국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과 함께 많은 몽골인들이 'Korean Dream'을 찾아 한국에 왔다고 한다(이진안 2002: 218). 몽골 출입국관리소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몽골 방문자 수는 1999년 4,600명, 2000년 7,500명, 2001년 9,119명, 2002년 13,347명, 2003년 16,861명, 2004년 25,918명, 2005년 31,22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몽골인의 한국 방문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9년에 11,600명, 2000년 12,500명, 2001년 11,687명, 2002년 8,840명, 2003년에 12,111명, 2004년 17,290명, 그리고 2005년에는 22,626명에 달한다

(강신 2007: 154).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과 몽골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교류도 활발할 뿐만 아니라,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 의료 사업, 기술이전이나 대학 교류 사업, 기독교를 매개로 한 교류도 활발하다 (이진안 2002). 한국식 경제모델에 대한 관심, 한국 드라마의 인기와 자동차를 비롯한 한국 제품 등의 유입 등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생겨나고, 소위 '솔롱고스식'이라 불리는 한국풍이 몽골 사회에 확산되었다.⁹⁾ 몽골인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폭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의 몽골 진출도 늘어나고 있다. 2005년 12월 현재 약 2,000명의 교민이 몽골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중 음식점, 유흥업소, 건축, 무역, 자동차 판매 및 정비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가 1,300명에 이른다(강신 2007: 152~153). 1996년 7월 11일 울란바토르시에 '서울의 거리'가 생겼으며 서울문화정보센터가 개설되었다(이진안 2002).

김선호는 한국인의 몽골 진출을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김선호 2002). 첫 번째 시기는 한 몽 수교 직후에 몽골인과 손을 잡고 한국에서 소자본으로 들어온 사람들로서 주로 요식업이나 유흥업, 봉제공장이나 보세 의류 사업에 진출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한국에서 자기 자본을 들고 와서 몽골에 정착한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한국에서 거대한 투자자를 얻어 진출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몽골에 진출한 한국인들은 크게 비즈니스 그룹과 선교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1997년부터는 여름을 맞아 몽골을 찾아오는 한국인을 위한 관광 산업도 부흥하게 되었다. 한국인의 몽골 진출 과정에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력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주로 한국인 비즈니스 그룹은 유흥업 등에 투자하여 몽골 사회에서 한탕주의의 부작용을 낳았고, 선교단들은 인구가 적은 몽골 사회에서 선교단간의 경쟁으로 신자를 빼앗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김선호 2002: 61).¹⁰⁾

9) 1994년 <투깝스>가 TV에서 방송되었지만 큰 반향을 없었다. 1999년 몽골국영방송에서 방영한 <모래시계>가 큰 인기를 끌면서 몽골에 한국 드라마 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2001년 <장미와 콩나물>, <첫사랑>등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옷과 핸드폰 등의 액세서리가 굉장히 유행했다고 한다 (김선호 2002: 65).

10) 2002년 현재 전 인구의 0.3%가 기독교인으로 추정되고 대부분 한국 선교사에 의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몽골에 진출한 한국인 자본들이 현재까지도 관광업과 유흥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름 한철 대규모로 몽골을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과 몽골의 신흥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유흥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울란바토르 시내의 유흥업소의 90%를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다. 주로 한국과 몽골의 남성 고객을 위해 몽골의 젊은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호텔이나 유흥업소에서 결혼 중개업자들에 의한 맞선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 한국 남성 관광객이 국립공원인 테레지 등에서 벌이는 몽골 여성과의 '짝짓기'와 성매매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주의 시대의 양성평등의식이 강하고 명예와 자존심이 강한 몽골인들에게 한국인들의 행태는 자본주의로의 이행기에 나타나는 부정적 산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인구가 적은 몽골은 외국 문화의 범람이나 확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많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강한 나라이다. 한국인의 몽골 진출이 주로 선교와 유흥이라는 두 가지 이미지로 각인될 때 몽골에서 한국인들의 이미지는 나빠질 수밖에 없다. 1950년대 중국 노동자들의 대규모 이주가 울란바토르 시를 '중국화'하자 몽중관계의 악화를 계기로 중국 노동자들을 추방하였던 경험이 있다 (김선호 2002: 60). 이런 역사적 교훈을 되돌아 볼 때, 몽골 사회가 지향해 온 문화적 가치를 위반하거나 위협이 되지 않게 한국인들이 좀 더 신중하고 건설적인 교류를 펼쳐 나가야 한다.

몽골에 진출한 한국인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과는 별개로 한국은 몽골인들이 선호하는 이주 국가 중 하나이다. 상대적으로 가깝고, 편리하며, 임금 수준이 높다는 점이 한국으로의 이주를 추동하는 요인이다. 1990년 개혁 개방 이후 2000년까지 몽골 인구의 10%인 20만 명이 한국을 다녀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의 수는 2006년 5월 기준으로 2만933명으로, 고용허가제로 온 몽골인이 7,557명, 산업연수생 2,920명 등 '합법'체류자는 1만477명으로 추산된다. 미등록노동자의 수는 전체 몽골

전도되었다고 한다(이진안 2002: 209). 몽골의 주류는 여전히 라마교의 신봉자이다.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 하에서 억눌렸던 라마 불교가 다시 부흥했고, 몽골 정치인의 94%이상이 라마교 신자라고 한다(이진안 2002).

이주자의 50%인 1만455명에 이르고 있다.(노충래·홍진주 2006:133). 이는 몽골 인구 총 280만의 100분의 1 정도의 숫자이고, 한국은 세계에서 몽골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 국가이다 (박환영 2007). 2006년 10월 현재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와 산업 연수생을 합해 13,000명이 취업중이다. 또한 몽골은 인구비율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나라이다. 한 예로,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유학이나 취업 등을 위해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도 급증했는데, 1991년에 불과 15명이던 한국어 전공자가 1994년 230명, 1997년 302명, 2000년 600명이었고, 2006년에는 2,507명으로 늘어났다(강신 2007: 151). 1991년 몽골 국립대학에 한국학과가 설립된 이후 한국어 교육이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 폭 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1999년부터는 울란바토르에서 정기적으로 한국어 능력시험이 실시되었다 (김선호, 위글: 66).

3. 한국 내 몽골 이주자의 현황.

2004년 몽골사회보장노동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외에 이주한 몽골 노동자 중 60~70%가 20~35세의 젊은이들이다 (Ministry of Social Welfare and Labour). 2004년에 실시된 이 조사에서는 한국 내 몽골 이주자의 57.3%가 관광비자로, 15.5%와 관공 비자, 13%가 노동 비자로 입국했다. 이중 44.3%가 비자 만료 이후에도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노동자였다. 특히 미국, 체코, 한국에 온 몽골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비교 조사한 본 연구에 의하면 한국에 온 이주 노동자의 86%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위생 조건,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이 다른 두 나라에 비해 높았다. 노동자들이 해외로 취업해서 기술 습득을 해서 돌아오겠다는 열망과 달리, 한국의 경우 전문 기술을 습득했다는 비율(8.9%)이 다른 두 나라, 체코(18.5%)나 미국(25.5%)보다 낮았다. 이 조사를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몽골인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육체노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내 몽골인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는 동대문운동장 부근의 '몽골타

위'이다. 몽골타워는 몽골 음식점을 비롯해 몽골 관련한 상점이 들어서 있는 건물이다. 또한 2005년에 만들어진 재한 몽골인들의 모임인 '달라인 살히'(바다의 바람)은 재한 몽골인들의 상부상조와 권익 옹호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모임은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자는 뜻으로 설립되었고, 인터넷 모임인 바다의 바람, 몽골사업인 모임, 몽골 여성모임, 몽골근로자 모임 등 5개의 소모임이 있다(박환영 2007). 몽골 커뮤니티는 몽골의 대표적인 축제인 나담(naadam) 축제와 자간살(tsagaan sar) 때 함께 모여 축제를 즐기고 있다.

한국 내 몽골 이주자들이 다른 외국인 이주자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들이 가족 이주를 선호한다는 점이다. 몽골 정부의 담당자에 의하면 몽골이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이주의 경험이 짧기 때문에 목적국의 법이나 제도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다고 한다. 현지에서 만나 본 한국행을 준비하는 이주자들 중에서도 한국이 가족 이주를 불허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가족 동반 이주는 이들이 오랜 유목 시절, 가족 간의 이주가 당연시 되어 온 관습과 가치관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몽골 이주자들이 '가족' 이주를 선호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 이주 노동자의 학령기 아동의 70%인 1,700여명이 몽골 출신으로 추산되고 있다(노충래·홍진주 2006:132). 몽골 노동자의 자녀들을 위한 재한 몽골학교는 1999년 12월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에 의해 설립되었고, 2005년 2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외국인 학교 인가를 받았다(이해영 2007:480). 2002년에는 몽골 정부로부터도 학력 인정을 받고 몽골 사립학교 협회에도 가입한 상태이다(이진안 2002:215). 교육과정은 몽골학제에 따라 1학년부터 9학년, 초등과 중등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총 60명의 학생이 등록 중이나 학생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 중에는 부모가 아이를 데려왔으나 추방이나 자발적 의사로 몽골로 돌아간 경우, 혼자 한국에 남아 있는 학생도 있고, 부모가 한국에 있어도 기숙사에서 생활하여 부모와 떨어져 있는 학생도 있다 (이해영 2007:481). 이들은 한국에 오면서 발생된 1년에서 5년까지의 교육적 공백 때문에 자신의 나이보다 낮은 학년에서 공부를 하기도 한다 (이해영 2007:482)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몽골 이주 노동자 자녀들을 수용하기에는 시설, 재정 등 여건상에 어려

움이 있는 상황으로 교육 시설의 확충 및 교육 기회의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노충래·홍진주 2006). 더욱 시급한 것은 몽골 노동자 중 미등록 체류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법적 지위가 아이들의 지위에 그대로 반영되어 아동의 인권에 큰 침해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향후 미등록 노동자의 자녀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식 제고가 시급이 요청되고 있다.

제2절 노동이주

70년 동안 사회주의 하에서 살아왔던 몽골인들이 89년 이후 급속하게 시장 경제로 편입되면서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해외 이주를 선택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체코의 구두공장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이후 독일, 폴란드 등으로 넓혀갔다(몽골 중소기업노동자협회 2007). 한국으로의 노동이주는 93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98년부터 공식적으로 해외 인력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500명의 몽골인이 산업연수생으로 처음 한국에 입국했다고 한다. 2001년 6월 제정된 <해외인력송출, 외국인력 및 전문가 도입에 관한 법률>로 몽골인의 해외고용과 외국인의 몽골 내 고용 및 그들의 권익 보호에 관한 내용이 제정되었다.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무지개나라’ 혹은 ‘형제의 나라’로 불리며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법무부가 2007년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포함한 장기체류자는 20,212명으로 미등록노동자 13,354명을 포함하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몽골인은 33,566명으로(법무부, 2007), 몽골 전체 인구가 2,951,786명(CIA 2007. 7 기준)임을 감안할 때 전체 인구의 1% 넘게 한국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받는 임금이 몽골 평균 임금의 몇 배의 수준으로 노동이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력적인 선택임에 틀림없다(레이버투데이 2006).

그러한 결과를 반영하듯 몽골은 고용허가제 도입 국가 10개국 중 4번째로 많은 외국인근로자를 입국시킨 나라로 꼽힌다. 몽골은 2004년 5월 3일 인력송출 MOU를 체결하였고 그해 10월 5일 몽골노동자 69명이 최초로 한국 땅

을 밟았으며 그 후 3년이 경과한 2007년 10월 말 현재 11,222명이 입국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노동부 2007).

하지만 그간 한국으로의 노동이주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았다. 2차례의 인력도입 중단사태가 벌어졌다. 첫 번째는 지난 2004년 12월 7일부터 2005년 3월 27일까지 3개월가량인데 몽골 노동자들의 잦은 사업장이탈 문제로 인력도입이 중단되었다(레이버투데이 2006).

두 번째는 지난 2006년 한국어시험 부정사건으로 인해서이다. 당시 1만명 규모로 한국어능력시험을 보기로 잠정 합의하고 4천명은 한글학회에서 6천명은 해외인력청(MBE)에서 실시하기로 한다. 하지만 해외인력청이 임의로 4천명을 추가로 접수받아 복사된 시험문제지로 시험을 치루면서 '가짜시험'문제가 불거지게 됐고 이로 인해 한국어능력시험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머니투데이, 2006).

고용허가제 실시 후 많은 몽골 노동자가 노동이주를 통해 한국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이주과정에 대한 실태파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2006년 이주노동자인권연대에서 실시한 국내 실태조사에서 몽골은 다른 MOU체결 국가와 비교해 민간송출회사를 통해 들어온 비율이 전체의 66.7%로 매우 높았으며 송출비용도 평균 1,638달러로 공식비용 900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신청 후 입국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평균 8.41개월로 조사 국가 중 가장 길게 나타났다(이주노동자인권연대 2006).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볼 때 몽골에 대한 실태파악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몽골은 아직까지 연구가 미진한 분야로서 본 연구가 갖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하겠다. 현재 몽골에서 한국으로의 노동이주 절차는 공식적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지만 초청비자 등을 통해 한국에 들어와 그 기간을 넘겨 일을 하거나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왕래하며 일하는 이주 노동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도입을 중심으로 이주 과정을 분석한다.

1. 노동이주 관련 공식 절차 및 제도

2004년 양국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 후 2004년 500명을 시작으로 현재 까지 11,222명의 몽골 이주자가 한국에 왔다. 이는 전체 도입국가 중 베트남, 필리핀, 태국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숫자다. 2006년 6월 한국어시험 부정으로 인해 송출이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2007년 8월에 다시 재기되어 예전의 도입 규모를 되찾아 가고 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노동부 산하에 신설된 해외인력센터(Center for Overseas Employment)가 고용허가제를 통한 한국으로의 인력송출을 전담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송출과정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특징을 짚어 보았고 현지에서 행한 인터뷰를 통해 이주자의 경험을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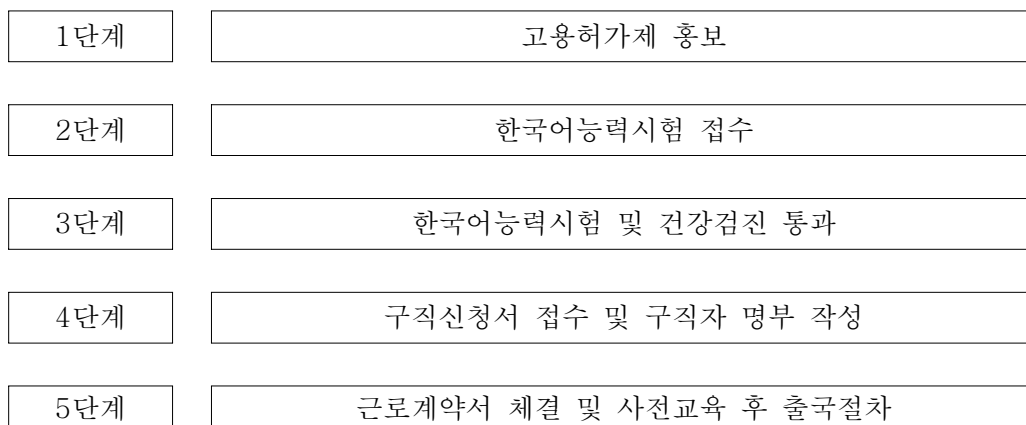
<표 3 - 1> 연도별 몽골의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 (2007년 10월말 현재)

(단위 : 명)

| 연도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 | | | 총계 |
|-----|-------|-------|-------|-------|-----|-----|----|-----|--------|
| | | | | 소계 | 3월 | 6월 | 9월 | 10월 | |
| 인 원 | 500 | 4,433 | 4,703 | 1,586 | 245 | 145 | 31 | 220 | 11,222 |

출처: 노동부.

<그림 3 - 1> 몽골 현지 고용허가제 인력송출 과정



1) 고용허가제 홍보

고용허가제에 대한 홍보는 한국어시험 실시 2개월 전부터 한국어시험 접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텔레비전 뉴스와 신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울란바토르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홍보를 위해 비정기적으로 낙후된 지방으로 설명회를 나간다. 몽골이 국토가 워낙 넓고 이동이 쉽지 않아,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지방에는 홍보의 효과가 미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

TV 광고를 통해 알게 되었다. 몽골에서 한국으로 1만 5천명 정도 인력을 보낸다고 했고 등록할 수 있는 날짜가 안내되었다. 3일 동안 등록을 받는다고 나왔다(사례 M24).

시간이 되면 외지로 나가거든요. 거리가 1,300킬로 1,500킬로는 힘들고 2~300킬로는 한번씩 돌아요. 시골이기 때문에 전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TV도 없고 그래서 직접 나가요. 도지사도 만나고 지역주민들을 공공장소에 모이게끔 해서 설명회도 갖고. 그 자리에 모이는 것이 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몰려 드니깐요. 설명회 해주면서 그 자리에서 대화를 하고 나중에 개인별로 이야기를 할 때 혹시 어떤 브로커 있는지 확인하고... (사례 M8: 한국산업인력공단 몽골지사)

고용허가제 이외의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방법 또한 텔레비전이나 신문 광고를 통해 알려진다. 또는 아는 사람을 통해 브로커를 소개 받는 경우도 있다. UNFPA(2006)자료에 따르면 한국으로의 노동이주 경로로서 관광비자(Tourist Visa)를 통해서가 전체의 57.3%, 공무비자(Official Visa)가 15.5%를 차지해 많은 수의 몽골인이 노동이주 방법으로 비공식 통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 보내준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갔다. 그 사람은 3,000불을 달라고 했고, 먼저 1,500불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돈을 주었는데, 돈 만 받고 한국에 보내주지 않았다(사례 M34).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면 한국에 빨리 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광고를 신문하고 TV 라디오에서 봤어요. 말은 그대로 아니고... (사례 M18)

아는 사람 통해서 브로커를 만났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비자 만들어주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 지금 감옥에 많이 갔다(사례 M35).

2) 한국어시험 접수

고용허가제를 통한 한국으로의 노동이주에서 가장 큰 관문은 선착순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시험 접수라 할 수 있다. 전에는 각 지방에서 나누어 접수를 받았지만 2007년에는 수도 울란바토르 나담경기장¹¹⁾에서 개별 선착순 접수를 받았다. 한국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15,000명을 접수받기로 한 후,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한국어 시험 접수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어 시험 접수를 위해 3일전부터 경기장 부근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경기장에 줄은 선 인원이 3만 명이 넘었으며 가족까지 포함하면 5 - 6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5월17일부터 받기로 했는데 5월 12일부터 나담 경기장 그 주변에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 3~4일 전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접수하나 받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 많습니다. 그 당시에 몽골 사람들 접수 같은 거 하게 되면 혼자오지 않고 가족들이 다 옵니다. 줄을 서 있는데 나담 경기장을 몇 바퀴를 서서 줄을 서 있습니다. 이쪽에 밖에는 가족들이 서 있고 이 사람이 화장실가면 다시 줄을 서주고. 밥 먹을 때는 밥을 갖다 주고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사례 M8: 한국산업인력공단 몽골지사).

한국어시험 접수는 한글학회에서 주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준비부족으로 인한 무질서와 경찰 등에 의한 폭행과 자기 사람 끼워 넣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과정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어시험 접수는 5월 17일 마감되었으며 접수인원은 당초

11) 문학경기장으로도 불리는 몽골 최대의 경기장으로 울란바토르시에 위치.

목표치인 15,000명으로 남성 10,000명, 여성 4,900명 정도였다.

3) 한국어능력시험 및 건강검진 통과

한국어시험 접수자 15,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3일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한국어능력시험(KLPT)이 실시되었다. 시험은 울란바토르대학 및 47개 고등학교 등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실시되었다.

어려웠다. 듣기평가는 테이프를 했는데 잡음이 심했다. 한 교실에 200명이 시험을 봤는데, 스피커도 너무 작았다. 감독하는 사람은 6~7명 정도가 들어왔다. 앞, 뒤에 2명씩 서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또 있었다. 그래서 신경하는 사람은 없었다(사례 M34).

시험 실시 3~4주 경과 후 인터넷 사이트와 한글학회, 대사관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합격자가 발표되었고, 전체 응시자 15,000명 중 13,000명이 합격하여 86.7%의 합격률을 보였다.

해외인력센터에 따르면 7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건강검진은 4군데로 나뉘어 실시되었고, 간염 및 성병 등의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1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11,000명이 통과했다고 한다. 고용허가제로 오는 이주자들의 경우, 건강검진은 한국어 시험 통과 후, 사전교육 실시 후, 한국입국 후 등 총 3차례를 받아야 한다. 상대적으로 간염 보균자가 많은 몽골의 경우, 건강검진에 합격하기 위해 뒷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금 건강하다고 건강검진 결과가 나와서 한국사업주와 계약을 하고 나면, 또 건강검진을 한다. 그리고 한국에 입국해서도 또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그런 부분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사례 M34).

2006년 5월 중에 접수한 후 6월 4일 한국어 시험을 봤고, 2주일 후 합격 통지를 받았고, 건강검진을 받았다. 건강검진은 B형/C형 간염, 폐결핵, 매독/성별/AIDS이 있는지 보는 것이다. 건강검진은 이제까지 세 번 받았다. 매년 신

청할 때 마다 받아야 하니까 2005년에는 50불 줬고, 2006년에는 50불, 지금 가기 전에 또 받았는데 2007년에는 45불을 지불했다(사례 M23).

병원에 돈을 주고 좋은 결과를 받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결과를 바꿔달라고 했다. 200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0만원을 줬다. 그 사람은 병원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병원 의사와 간호사를 아는 사람이었다(사례 K23).

이 밖에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경찰서에서 범죄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꺼번에 몰려 길게 줄을 서야 하는 수고를 겪었다고 한다.

경찰서에 범죄사실확인서를 받았다. 범죄사실확인서는 울란바토르에 있는 경찰서에서 확인서를 받기위해 줄을 길게 서고 난리가 났었다(사례 M34).

4) 구직신청서 접수 및 구직자명부 작성

해외인력센터는 한국어시험 및 건강검진 통과자를 대상으로 구직신청서를 접수 받아 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 산업인력공단으로 전송하게 된다. 해외인력센터에 따르면 2007년의 경우 11,000명의 구직신청서를 접수 받아 산업인력공단으로 통보했으며,¹²⁾ 10월 20일 현재 5,600명만이 인증되어 명부에 올라 간 상태다.

문제는 15,000명을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에 구직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5,000명만이 한국 노동부한테 간 거죠. 한국 노동부에서 제조업에다 근로자를 줘야 하는데 5,000명밖에 안됐으니까 그 중에서 선택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센터에서 만천명 명부를 보내줘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오천 명밖에 명부를 안줬습니다.(사례 M6).

구직자 명부 작성 시 한국어능력시험 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자리 분야

12) 산업인력공단의 경우 건강검진 및 결격사유로 못가는 인원을 제외하고 9,000명의 명부를 통보 받았다고 밝혀 차이를 보였다.

에 제한을 둔다. 예를 들어 200점 만점에 120점 이상이면 제조업을 포함하여 모든 분야에 지원할 수 있고, 60점 이상은 냉동 창고와 농축산업 분야에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현재 7,000명 정도의 제조업 인원과 2,000명 정도의 농축산업 인원이 확보된 상태다.

120점 이상이면 공장도 갈 수 있고, 농업, 어업등 모두 갈 수 있고, 120점 이하의 경우는 공장에 갈 수 없다고 알고 있다. 40~100점 사이는 냉장업, 농업, 어업등에 갈 수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40점 이하는 불합격이다 (사례 M34).

이번에는 다행히도 농축산업 분야는 어느 나라든지 희망하지 않거든요. 전부 제조업을 희망하거든요. 농축산업에 가는 사람들이 없으니깐 한국어 시험 점수를 낮춰주자 그래가지고 농축산업 분야는 듣기 읽기 영역에서 30점씩 총점 60점만 맞으면 갈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M8_산업인력공단).

5) 근로계약 체결 및 사전교육 후 출국 절차

해외인력센터를 통해 산업인력공단으로 전송된 구직자 명부를 보고 한국 사업주가 근로자를 선택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주자들 또한 한국으로 가는 것이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지 않는 계약 내용이라도 실제적으로 거부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는 해외인력센터에서 실시하는 2주간의 사전교육을 받게 되는데 주된 내용은 한국어교육 80시간, 한국문화 교육 및 고용허가제 관련 교육 13시간, 산업안전교육 15시간, 전문직업교육 35시간 등으로 구성된다(레이버투데이 2006). 2주 교육기간 동안 비자 신청 및 입국날짜를 통보받게 된다.

6) 송출비용

한국어시험 접수부터 항공료 지불까지 한국정부가 발표한 공식 송출비용은 아래의 표와 같이 870달러로 나타났다. 현지에서 면접한 한국행을 대기하는 몽골 이주자들이 지불한 비용도 이와 비슷했다. 이러한 결과는 2006년 이주노동자인권연대의 1,638달러, 2007년 유길상의 1,730달러와 비교해 볼 때, 송출비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발 전 사전교육 이수자들에게 들어간 송출비용을 조사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공식송출비용 870불과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지출된 항목에는 약간의 차이를 드러냈다. 이 중 가장 큰 차이를 드러낸 부분은 항공료 부분으로 정부가 발표한 항공료는 385불이었으나 당사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항공료는 735불로 드러났다. 이는 사전교육비용 170불과 항공료 385불, 기타 180불을 합친 금액으로 당사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 30불, 건강검진 45불, 접수비 10불, 비자신청 50불, 비행기 표 735불, 이외 비용은 낸 것이 없다(사례 M23).

<표 3 - 2> 몽골 공식송출비용 세부항목

| 구분 | 금액 (단위: USD) |
|---------|--------------|
| 한국어시험 | 30 |
| 건강검진 | 45 |
| 신청접수 | 10 |
| 여권/비자 | 50 |
| 사전교육 | 170 |
| 항공료/항공세 | 385 |
| 기타 | 180 |
| 총계 | 870 |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EPS 시스템 (2007. 6)

비자를 만드는데 50불이 들었고, 비행기 티켓을 735,000 투그릭이 들었다. 건강검진 45불, 교육비 40불, 계약대행 10불이 들었다. 이곳에 내는 돈은 850불을 내는 것이다(사례 M24).

실제로 현지에서 만난 몽골국가중소기업노동자협회 대표는 870불 중 100달러 정도를 사후관리비(사회복지비)로 받는다고 설명하고 송출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나아가 한국 입국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정부와 NGO의 역할 분담이 필요한 영역이라 주장하였다. 고용허가제 입국자들이 자신이 낸 송출비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870불은 비행기 값, 건강보험비, 언어학원비등으로 쓰고 100달러 정도는 사회복지비로 받는다. 한국에 가려면 870불을 외국인력송출센터에 내는 것이다. NGO들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송출비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사례 M14: 몽골국가중소기업노동자협회).

그 밖에 단기종합(C-3)비자 및 관광비자 등의 초청으로 방문하여 들어오는 경우에는 정해진 비용이 없으나 평균 500만원 안팎의 송출비용을 브로커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한국과 몽골을 왕복하는 경우와 한국에 들어와 계속 체류하는 경우로 나뉘며 각각의 경우에 비용은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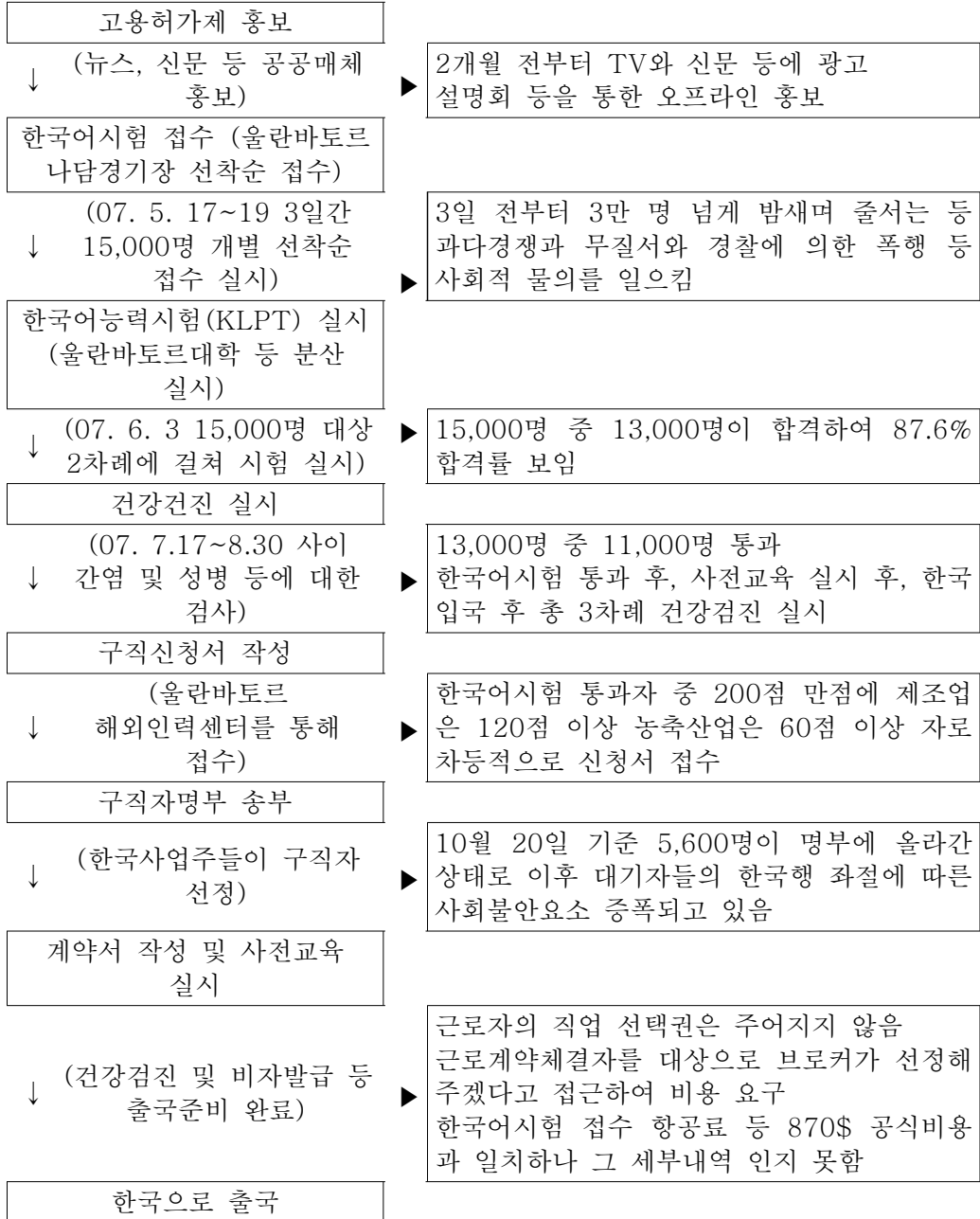
다른 사람들은 보통 500만원을 주고 들어오는데, 나처럼 C-3비자를 가지고 몽골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400만원, C-3비자로 들어와서 그냥 계속 일할 경우에는 500만원을 준다(사례 K23).

이상에서 살펴본 인력도입과정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보았다(그림 3-2). 공식적인 인력도입과정과 현지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구분하여 각각의 차이점과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그림 3 - 2> 공식적인 송출과정과 드러난 실태

< 공식적인 신청 과정 >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난 실태>



2. 노동이주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경향

몽골의 경우 고용허가제 송출업무를 해외인력청(MBE)과 몽골뉴스에서 각각 담당해오다 2007년 들어 정부 기관인 해외인력센터(Center for Overseas Employment)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정부 기관인 해외인력센터로의 업무 이관은 현재로선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1) 큰 폭의 시스템의 변화

2006년 발생한 한국어시험 부정사건으로 인해 2007. 1. 1일을 기점으로 기존 민간기관인 해외인력청(MBE)에서 노동부 산하 해외인력송출센터(COE)로 고용허가제(EPS)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큰 폭의 시스템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송출이권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법정싸움이 벌어졌다고 한다.

한국어시험을 2006년 6월 3일날 4일날 이틀간 봤는데, 3일 날 시험 본 문제지를 복사 해 가지고 4일 날 4천명을 또 본거예요. 그래 가지고 대사관에서 진상조사를 해 가지고 '부정이다' 그래서 이 나라 경찰에다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이 기관이 100% 국가기관이 아니고 민간지분이 75%이고 국가지분이 25%인 민영기관이다. 그래서 송출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안 된다 새로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국가지분을 51%이상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사례 M8: 한국산업인력공단 몽골지사).

이 결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력도입과정에서 절대적인 결정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고, 지역단위의 단체접수에서 개인 선착순 접수로 접수 방식을 전환했다.

여기는 지역별로 단체 접수를 원했어요. 제가 와서 병폐가 뭐냐 지역구역별로 국회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별로 몇 명 할당을 주더라구요. 72명 국회의원한테 한 사람당 몇 백 명씩 할당을 해주고 단체로 접수를 받으니까. 진짜로 한국가고 싶은 서민들은 못가고 특정인들만 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가

지고... (사례 M8: 한국산업인력공단 몽골지사).

2) 노동이주 기회의 확대 및 송출비용의 상대적 감소

선착순 한국어시험접수를 통해 시험 응시의 기회가 확대되었고, 브로커 개입의 여지를 감소시킴으로써 송출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새롭게 송출업무를 담당하게 된 해외인력센터가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리개입의 소지가 적었다는 추측도 가능케 한다. 실제로 현지에서 고용허가제로 대기 중인 사람들은 새롭게 바뀐 시스템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 나라에서 하는 게 좋아요. 돈도 많이 받지도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해주니깐. 원칙에 받는 돈만 받고 하니깐... (사례 M22).

이번이 더 좋다. 처음엔 헛갈리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 지 설명도 잘 안 해 주고. 텔레비전에서 나오지도 않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국에서 직접 시험 보러 온다고 텔레비전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어렵지 않았다(사례 M32).

하지만 현지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과거에 송출이권에 권력이 있던 사람들이 자기 사람을 해외인력센터에 심어 넣었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또, 현 시스템 안에서도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빨리 보내주겠다는 것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고 한다. 또한 한국 사업주들이 선정한 노동자의 정보를 몽골 브로커에게 미리 넘겨주면, 브로커는 '선정해 줄테니 2,3000불'을 내라는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 대기를 하고 있는 여성(사례 M23)도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기 3일 전에 이러한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3) 몽골수도 울란바토르시를 통한 제한적 고용허가제(EPS) 운영

울란바토르시 안에서만 한국어시험의 접수를 포함한 제반 모집과정이 이뤄

졌기 때문에.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산업인력공단 또한 극히 소수의 인력만으로 노동자들의 모집 과정을 통제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울란바토르외의 지역에서 온 몽골인들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했다.

만천명중에서 육천명 정도가 울란바토르고 나머지 사천명은 각 지방에서 올라왔습니다. 어려운 점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근로자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그 근로자가 선택권이 오면 한 달 동안 울란바토르 시내에 있어야 하는 데 그 사람들이 있을 자리도 집도 없기 때문에 마땅치 않아 어려움이 많다(사례 M6: 해외인력센터).

그러니깐 변두리에 오는 사람들은 며칠 전부터 와 있는 거죠. 이번 접수 분포도를 보면요 울란바토르시가 100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봐서도 시골에서 온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접수하나 받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도 많습니다(사례 M8: 한국산업인력공단 몽골지사).

한국어시험 접수뿐만이 아니라 서류 접수에 필요한 범죄사실 확인서도 울란바토르시 경찰중앙관리소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불편을 호소하는 이도 있었다.

4) 초청비자 발급을 통한 노동이주 등 통로의 다양화

몽골인들은 고용허가제(EPS)를 통한 노동이주 방법 이외에 한국의 사업주 초청을 통하거나 관광 비자를 통해 입국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3개월 체류 후 귀국을 반복하는 몽골인의 숫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업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방법으로 한국에 사람을 보내는 게 많이 생겼다. 4번째 한국에 입국했다. 5번째로 C-3 비자로 입국하면 비자를 안 받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몽골에서는 별도의 비자를 받지 않고 한국에

입국하면 한국출입국에서 그동안의 출입국기록을 보고 비자기간을 찍어준다 (사례 K23).

몽골에서 이러한 방법이 가능한 이유는 가족단위 혹은 인맥을 기반으로 한 이주가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에서 단기간에 일자리를 얻어서 체류에 대한 불안정성이 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물론 그 기저에는 비자발급이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의 방조 혹은 담당 공무원과의 커넥션이 있기에 가능하리라 보아진다.

3. 노동이주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

1) 송출과정에 있어서 송출국 정부의 자율권에 대한 지나친 개입

한국 정부는 송출과정에 있어 몽골 정부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함으로써 고용허가제 담당기관 및 본국 정부로부터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다. 직접적으로는 한국어시험 접수 방식에서 몽골 정부의 행정체계를 무시하고 한 차례 개별 선착순 접수라는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불만은 우리가 만난 해외인력센터는 물론, 현지 NGO 격인 몽골국가중소기업노동자협회 관계자로부터도 동일하게 들을 수 있었다. 한국어시험 접수를 투명하게 진행하면서 이를 송출국 행정시스템 안에 녹여 내는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한 나라 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에다가 한 나라에 노동부가 있습니다. 노동부에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울란바토르 정부. 다 있는 데도 왜 그것을 통해서 받지 않았느냐. 울란바토르에서만 3만명 질서없이 만오천명을 접수 받느냐. 몽골 국민에 대한 신뢰가 없는 행동이다(사례 M6: 몽골 해외인력송출센터).

그때 당시 모든 신문에서 한국어시험 접수 문제를 다루었고, 우리 신문에서도 그 내용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당시 국회의원들도 너무나 처사라고

한국정부에 항의해야 한다고 했다. 아무리 못 산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라고 국회의원들도 분노했다. 당시에 밤새우고 있던 사람들의 사진도 있을 것이다(사례 M15: 몽골뉴스).

2) 한국어 시험 응시자격 선착순 접수과정에서 드러난 경찰 등 국가기관의 폭행 및 준비 미비에 따른 문제 발생

수도 울란바토르 한 곳에서 같은 시간에 선착순 접수를 받다 보니 3만 명이 넘는 응시자들이 몰려들었고 가족까지 포함하여 5~6만 명이 3일 넘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자기 사람을 끼워 넣기 위해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는 등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졌으며 나담경기장 주변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청 대기자들이 겪어야 했을 육체적 심적 고통은 매우 컸을 것이며 몽골국민들이 이를 보고 느끼는 자괴감 또한 짙어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광경이 언론을 통해 그대로 노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실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예상하고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한글학회 등도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이젠 그렇게 안하고 싶다. 3일 했는데 더 연장에서 4일 했고. 차라리 기간을 더 오래 해갔고 한꺼번에 동물처럼 하는 것이 싫었다. 죽을 지경이었다. 본인은 이틀해서 접수 할 수 있었다. 동물처럼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싫다(사례 M32).

작년부터는 울란바토르 시 경기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밤새워 줄을 서서 접수를 했는데, 진짜 안 좋은 방법이었다. 몽골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한국 측에서 이것을 조직해서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몽골 TV에서도 여러 가지 반대를 많이 했다. 몽골사람을 가축보다 더 무시한다고 TV에서 방영되었다. 그래서 몽골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욕하고 난리가 났었다. 왜냐하면 1만 3천 명이 한꺼번에 접수를 받기 때문에 3일 동안 밤 새워서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다. 그때 화장실도 못 갔다. 화장실에 가면 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냥 음료수 병에다 소변을 보고, 여자들은 더 힘들었다. 경찰들이

사람들을 때리고 하는 것이 TV로 다 나왔다(사례 M15: 몽골뉴스).

경찰들도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들 데리고 와 가지고 집어넣고. 줄을 막 흐트러놓고 집어 넣고. 그냥 막 이런 불법이 많이 생기고 폭력상태 이런 것이 심각했습니다. 줄 서 있는데 전기충격기를 지급해 가지고 막 쏘서 대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딱~ 움직이고 그러면 자기가 데리고 온 한 10명 있잖아요 집어넣고... (사례 M8: 한국산업인력공단 몽골지사).

3) 구직신청서 접수 후 한국행에 대한 지나친 기대 심리 및 한국행 좌절에 따른 사회적 불안요소 증폭

현지조사 시 구직 신청을 한 몽골인들이 해외인력센터 게시판에 게시된 한국행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십 명씩 찾아오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렇듯 한국으로의 노동이주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앞날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행을 위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거나 생업을 정리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EPS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접근권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갈 수 있게끔 되었는지 안 되게 되어있는지 정보를 알 수 없어가지고 너무 답답했다. 시골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백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울란바토로에 당분간 살고 있는 경우에 맨날 오구요. 시골에 있는 경우에 한달에 두 번 씩 정도. 지금은 당분간 친척집에서 살고 있습니다(사례 M18).

또한 한 해 송출규모를 넘어선 과도한 대기인원 선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몽골 한 해 송출규모가 2004년의 경우 4,433명, 2006년의 경우 4,703명 등 5,000명 내외임을 감안하면 2007년 올 한 해 11,000명의 대기자 선발은 이후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소지가 있으며 이후 대기자 적체 문제도 예상된다.

지금 와서 한국어 시험 합격자 11,000명 중에 5,000명만 받을 수 있다고 국

민들에게 알려주면 큰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만 삼천 명중에서 삼천 명만 일 자리 얻었다 그러면 나머지 팔천 명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반발이 심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접수만 받으면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 팔고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사례 M8).

4) 한국어시험의 변별력 문제 및 한국어 학원의 난립과 과대 비용 징수 문제 발생

한국에 들어가기 위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강사는 교육대상자들이 한국어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조사팀이 만나본 몽골 사람들은 한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합격률은 86.7%에 달했다. 한국어 시험 변별력에 의문이가는 부분이다¹³⁾.

만 오천명 가까이가 한국어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오천 명 정도가 합격을 할 것이라 예측을 했는데 의외로 만천명이 합격을 한 것입니다. 만 오천 명 접수로 한국어시험을 받는데도 만 오천 명 다 한국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만 삼천 명 가까이가 합격했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험이 문제인지 시험 운영한 기관이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사례 M8: 몽골 해외인력송출센터).

실제적으로 한국어시험 접수 및 통과가 고용허가제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울란바토르에는 한국어 학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대개 한달 교육에 드는 학원비가 많게는 18만원에서 적게는 6만원으로 한달 월급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몽골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어학원을 다녀야 하는 실정이었다. 문제는 이렇게 배운 한국어가 한국에 온 후 효용성이 높지 않다는 데에 있다. 얼마 전 실시한 사업체 실태조사에서 고용주

13) 노동부자료에 따르면 2007. 11월까지 실시한 4차례의 한국어시험 응시자는 27,074명으로 이 중 합격자는 18,410명(68.0%)으로 조사됨.

가 외국인근로자를 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에 한국어능력은 신체조건, 연령, 출신국가 다음으로 조사돼(유길상, 2007), 지금과 같이 한국어시험이 유일하게 당락을 결정하는 현 상황에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선발방법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러한 방법이 이후 송출국 사회에 끼칠 영향, 특히 고비용 구조를 조장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달에 6만 오천원이고요. 학원서 두 번 정도 다녔는데 12만원이 나왔어요. 하루에 3시간 공부하고 일주일에 5번씩. 학원에 40 명 정도 공부하러 와요 (사례 M18).

5) 남성 노동자 편중 선발에 따른 성비 불균형 초래 및 가족해체 문제 발생

고용허가제는 근본적으로 개인 이주만 허용함으로써 이주에 따른 장기간 가족분리는 이후 가족해체로 이어지는 문제를 낳고 있다. 특별히 몽골의 경우 이러한 가족해체 문제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가족 단위의 이주를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로 노동이주를 떠나는 주된 계층이 18~25세까지의 젊은 남성들로 이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남녀 성비 불균형 문제까지 초래하게 만들었다. 14). 하지만 한국정부는 이 문제를 고용허가제 틀 안에서 해결하기 힘들다는 입장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몽골 사회에서는 이주로 인한 이혼, 가족 해체, 가족 재결합 권리 등이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출현하고 있다. 몽골인들은 확대가족, 대가족 형태로 생활하며, 가족 구성원들 간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사례 M3: 몽골 노동사회 복지부).

많은 몽골 여자들이 한국에 가려고 접수를 하는데 뽑히지 않아 한국에 갈 수 있는 여성은 많지 않다. 남자만 뽑아 가는 것은 문제다. 몽골 인구가 적고 저

14) 2007. 10월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몽골노동자는 11,222명으로 이 중 남자가 9,403명(83.8%), 여자가 1,819명(16.2%)로 큰 차이를 드러냄(노동부, 2007). 또한, 해외로 이주해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60-70% 가량이 20-35세의 젊은 노동자로 보고 됨(UNFPA, 2006).

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젊은 남성을 다 한국으로 데려가는 것은 문제다. 한국 정부에게 여성을 뽑아달라고 말하고 싶었다(사례 M23).

6) 한국 노동이주에 대한 지나친 사회적 열풍 및 브로커 개입 문제

몽골 사람 중 많은 이가 한국으로의 노동이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나친 열망은 고용허가제라는 제한된 기회를 차지하기 위한 과다 경쟁과 브로커가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한 공식적인 절차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비공식적인 통로는 피하기 힘든 유혹이 되고 있다.

이 나라의 최대 관심사가 한국 송출입니다. 한국 가는 것이 꿈이에요. 한국에 가면 일단 모든 법적보호를 받기 때문에 선호하고 또 먹고 잘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시간외 근무까지 하면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이 여기에서 1년 정도 벌어도 힘들 정도로 큰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가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사례 M8: 한국산업인력공단 몽골지사).

또한 한국으로 노동이주를 보내주겠다는 광고가 공공연하게 텔레비전과 신문에 등장하고 있으며 한국으로의 노동이주를 미끼로 한 사기 등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가 만난 몽골국가중소기업노동자협회 관계자도 해외 인력송출 분야에서 한국이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 문제 또한 가장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에 보내준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갔다. 그 사람은 3,000불을 달라고 했고, 먼저 1,500불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돈을 주었는데, 돈만 받고 한국에 보내주지 않았다. 돈을 받은 사람은 지금 잡혔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아주 많다고 들었다. 한명이 150명 정도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몽골에 많다고 경찰서 형사들에게 들었다(사례 M34).

체코나 대만의 경우는 한국처럼 문제가 심하지 않다. 한국처럼 어렵거나 힘든 문제는 없다. 현재는 한국에 많은 인력이 송출되었기 때문에 중심이 한국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에도 몽골노동자들을 많이 송출하는데 한국처럼 문제가 심하지 않다. 한국에 가기 위해 870불을 낸 후에 한국에 입국을 기다리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한국에 갈 수 없게 되면 인력송출을 담당하는 관리들에게 부탁을 하게 된다. 500~600불을 관리들에게 주고 먼저 보내달라고 하게 된다. 증거는 없지만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다. 빨리 가기 위해 누군가에게 돈을 더 주고, 사기를 당하고, 가정이 파탄이 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사례 M14: 몽골중소기업노동자협회).

고용허가제는 송출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했지만, 몽골 사회에 한국 이주 ‘붐’을 일으키며 부정적인 영향도 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몽골의 특수한 사회적 조건에 맞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3절 결혼이주

1. 한국행 결혼이주의 경향과 특징

몽골인의 주된 거주 형태인 겐(ger: 텐트)은 몽골 구성원 사이의 결속을 상징한다. 몽골어로 ‘혼인한다’는 게르릭호(gerleh)란 말은 문자 그대로 ‘텐트를 세우다’라는 의미로서 몽골 사회의 결혼의 의미는 매우 크다(박영환 2000:239~240). 지난 70년간의 사회주의 기간 동안 혼인은 두 명의 사회주의 시민의 결합으로 간주되었고, 정부는 혼인한 부부에게 비교적 싼값으로 아파트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의 부부들은 핵가족 형태를 유지하며 살아왔다(박영환 2000: 242). 1990년대 시장경제로의 전환 이후에 나타난 몽골의 독특한 현상은 혼인에 있어 자유로운 두 개인의 만남이 증가했지만 혼인 의식에 있어서는 전통적 라마교의 의례가 복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몽골인들은 ‘적법한(사회적으로 인정된) 혼인은 적절한 의식을 필요로 한다’는 믿음이 강하고, 몽골인들은 “에슬지아바귀 볼 에흐네르 비시(esolj avaagui bol ehner bish: 적절한 의식 없이 데려 온 아내는 적법한 아내가 아니다)”라는 말로 혼인 의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혼인식을 친족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중요

한 기회라고 생각했다(박영화 2000: 242).

혼인의 의미에 있어 자유로운 연애에 의한 두 당사자의 결합에 대한 인식은 증가했지만, 정교한 혼인 의례를 통해 친족 간의 결속을 만들고자 하는 믿음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 내에서 최근 중개업자에 의한 국제결혼의 증가, 혼인식 없는 사실혼형 부부관계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혼인을 통한 친족 네트워크의 확장이 주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진 몽골 사회에서 결혼을 통해 해외로 이주해 가는 것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은 편이다. 울란바토르에서 만난 몽골의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은 '국제결혼은 학력이 낮은 시골 출신 여성들이 피임에 빠져 하는 것'이라 치부했지만 한국으로 결혼 이주를 온 몽골 여성들 중에는 고학력 도시 출신도 많다.

국제결혼 자체가 아직은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있는 몽골 사회에서 한국 남성과 몽골 여성의 결혼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가장 많은 몽골 여성들이 결혼 이주를 하는 국가이다.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몽골 여성과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은 총 1,648건으로 전체 국제결혼 (일본, 중국, 독일, 미국 등 포함) 2,106건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다(소소마 2006). 한국의 출입국 관리소의 통계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 남성과 혼인 신고한 몽골 여성은 118명(2001년), 195명(2002년), 318명(2003년), 504명(2004년), 561명(2005년), 594명(2006년)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으로 오는 전체 결혼이주자의 약 2%에 해당하는 수치이지만, 몽골의 인구수가 2007년 현재 295만 정도이고 한국으로의 국제결혼이 짧은 시간 내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몽골 사회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몽골의 방송 및 주요 신문은 한국의 인터넷 결혼 중개 사이트에 올라 있는 몽골 여성들의 사진 및 신상 기록의 예를 들거나, 한국에 결혼 이주해 간 몽골 여성들의 겪는 인권 침해를 고발하면서 중개업자에 의한 국제결혼을 사회문제화 하고 있다. 특히 결혼 이주 여성은 몽골 전 지역에서 오지만 일단 울란바토르로 이주하여 지내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결혼의 중개 및 알선의 대부분이 울란바토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파급력이 아주 높은 편이다.

몽골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요인은 국가 간의 가까운 거리, 비슷한 외모, 이주노동의 증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인식의 증가, 몽골 내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증가, 한국에서 결혼중개업소를 통한 결혼이 합법적이기 때문이라는 요인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소소마 2006).

한국 남성을 몽골 여성과 결혼시키기 위해 한국의 결혼 중개업자들이 사용하는 전략 또한 국제결혼을 증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몽골 사회를 “전통적이고, 가난하며, 동양의 순수한 영혼을 간직한 사회”로 이미지화하고 몽골 여성의 순박성을 강조하며 한국 남성을 고객으로 끌어 모은다. 실제로 물질문명 자체가 한국 보다 매우 낙후된 몽골에 온 한국 남성들은 순박하고 복종적이지만 성적으로 매력적인 여성을 배우자로 맞아들인다는 것에 만족해하고 결혼을 서두르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몽골 여성들은 사회주의 교육의 영향으로 양성평등의식이 아주 강하고, 집안일과 사회적 일을 도맡아 하는 등, 진취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다. 또한 몽골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아시아인’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몽골 문화를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 ‘유럽적’이며, 세련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몽골 여성들이 결혼 이주를 결혼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보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1990년대 체제 개혁이후 사회, 정치적 불안정이 가속화되고 실업자가 증가했고, 임금 수준이 낮아지면서 가족의 생계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 상황에서 과도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몽골 남성들의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가족 해체가 증가했다. 부부간의 싸움에서 여성들이 종종 남편에 의한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박환영 2000). 이혼의 이유가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폭력인 경우가 많아지면서, 몽골 여성들은 부부 중심의 핵가족의 이상을 안정되게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대안적 결혼 형태’에 대한 상상력을 확장시켰다. 한국 드라마의 인기와 한국 기업과 제품의 진출 등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부상하면서 한국으로의 결혼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몽골 여성과 한국 남성과의 결혼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몽골 여성의 한국으로의 결혼 이주만큼 몽골에 진출한 한국 남성과 몽골 여성간의 사실혼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등록 및 정보센터>의

관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아버지와 몽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199명이고 이 중 4명만이 정식으로 혼인 등록을 한 관계에서 나온 아이들이다, 이 중 한국으로 돌아간 뒤 연락을 끊는 한국인 남성의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수속의 어려움 및 아이 양육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한다. 몽골에서 엄마의 손에 길러지는 한국인 2세 아이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과 인식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또한 전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울란바토르 시내의 유흥업소 50여개를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과 사업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몽골 여성들의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 주로 여름 한철 대규모로 몽골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몽골 여성들이 접대나 성적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관광업체, 유흥업소 등이 주로 몽골 여성을 성적 상품화하기 때문에 국제결혼 또한 몽골 여성의 성 상품화의 하나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사회주의 시대의 양성평등의식이 강하고 명예와 자존심이 강한 몽골인들에게 국제결혼의 중개를 포함한 한국인들의 행태는 자본주의로의 이행기에 나타나는 부정적 산물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는 한국으로 결혼 이주한 몽골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교육격차와 성별 인식의 차가 심하다는 점이다. 몽골의 경우, 딸은 고등 교육, 아들은 취업 및 목축이라는 성 구별적인 양육 전략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몽골 여성들은 대체로 학력이 높고,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몽골은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별로 없고, 경제 활동에서도 여성들의 참여가 더 높다 (이진안 2002). 남성들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부모들에 의해 학업을 중도 탈락하여 상업이나 목축 등 생계유지를 위해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도록 기대 받는다. 그러므로 남성들의 학업 중퇴율이 아주 높다. 한국으로 이주해 간 몽골 여성의 경우 고학력 여성이 많으며 한국 남편의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다. 몽골에서 전문직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하층 계층의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서 계층 하락을 경험할 뿐 아니라 단순직, 육체노동이라는 계층화된 직업군으로 편입되는 경향이 높다.

셋째는 결혼이주자로 한국에 갔다가 몽골에 되돌아 온 귀환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남편의 폭력이나 학대에 못 이겨 법적 수속을 제대

로 밟지 않은 채 몽골로 피신하거나, 남편에 의해 고의적으로 몽골에 되돌려 보내진 경우이다. 이들 귀한 여성에 대한 법적 지원 및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결혼 이주 관련 법률 및 제도

현재 몽골에서 결혼에 대한 규정은 1999년 가족법(Family Law of Mongolia)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법은 몽골 시민들 간 결혼뿐 아니라 외국인과 결혼을 함께 다루고 있다. 가족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결혼은 18세 이상 성인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제6조 1항),
- ② 결혼 등록 신청자의 건강검진(성병, HIV, 폐렴, 정신병 등)을 의무화하고(제8조),
- ③ 이혼 시 자녀 양육권에 대한 규정 중 자녀가 7세 이상이면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제14조 7항).

가족법 이외에 결혼 관련법은 1999년 제정된 시민 등록법(Civil Registration Law of Mongolia)이다. 이 법의 제13조 결혼 등록(Registration of Marriage)에 관한 조항은 결혼 등록 절차 및 제출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 ① 신청자는 성명, 주소, 출생일이 기재된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건강진단서, 재혼인 경우 이혼 증명서 사본, 법적 능력(full legal capacity)을 증명하는 검찰청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제13조 2항),
- ② 결혼 당사자들이 국가 시민등록 정보센터(State Center for Civil Registration and Information)에 직접 와서 증인의 참석 하에 결혼 등록하도록 되어있다(제13조 3항).

특히, 이 법은 몽골의 시민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 13조 2항이 규정하는

서류 이외에 몽골어로 번역 공증 받은 결혼 신청서 사본과 외국인 배우자 본국의 시민 등록 센터 혹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발급한 성명, 출생일, 주소, 결혼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 신원 증명서(reference document)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3조 8항), 또한 국가 시민등록 정보센터 공무원은 결혼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혼을 등록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 9항).

이처럼 몽골의 현행법은 외국인과 결혼 시 신원 보증서를 추가로 요구할 뿐 외국인과의 결혼을 조정할 법률상의 규제, 정책, 또는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외국인과의 결혼을 중개하는 중개업을 관리,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 또한 두고 있지 않다. 이는 몽골 정부가 2001년 해외 취업을 알선하는 중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중개업을 허가제로 관리해 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¹⁵⁾.

따라서 몽골에는 베트남과 같이 외국인과의 결혼을 주선하거나 결혼 관련 정보,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공식적인 정부 기관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역할을 위임받은 유일한 기관은 호스 바가나(Khos Bagana)라고 하는 민간단체다. 2000년 법무내무부(Ministry of Justice and Home Affairs)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이 단체는 비영리 단체로 회원제로 운영되며, 몽골인들 간 결혼뿐 아니라 러시아, 체코, 프랑스, 미국, 한국, 일본, 대만 등 외국인과 몽골인의 맞선을 주선하고 결혼과 가족 관련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터넷 홈 페이지에는 현재까지 80쌍의 결혼을 주선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인과 맞선을 보는 경우, 가족을 이룰 준비, 풍습, 예절에 관한 32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가정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10시간의 한국어 수업을 듣도록 한다는 것이다¹⁶⁾.

15) 몽골에서는 94년 해외여행과 이민이 자유화되면서 유학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몽골인들의 수가 급증하였고, 해외 취업 중개 활동을 규제 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이에 몽골 정부는 2001년 몽골인들의 해외 취업뿐 아니라 외국인들의 국내 취업 또한 규제하는 해외 취업 중개에 관한 법안(Law on Mediating International Employment)을 마련하였다. 이 법에 의해 몽골인들을 해외로 송출하거나 몽골로 외국 노동력을 도입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중개활동에 관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CHRD, 2004:45 - 6).

3. 한국행 결혼 이주 과정에서의 주요 문제점

초기 한국 남성과 몽골 여성의 결혼은 주로 통일교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중개업을 규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몽골에서는 중개업을 통한 결혼이 급증하는 추세다(CHRD, 2004:29 - 30; 소소마 2006: 101). 2005년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은 베트남과 함께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지만(설동훈 외, 2005:67)¹⁷⁾, 베트남과 같은 대규모의 조직화된 중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으며 보다 소규모의 결혼 중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1) 결혼 중개 구조

현재 한국 남성과 몽골 여성의 결혼은 한국인 중개업자와 몽골 현지 중개업자 양국의 초국적 하청식 연결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한국인 중개업자는 남성을 모집하고 몽골 현지 중개업자는 여성을 공급, match를 주선하는 것이 중개의 기본 구조다.

베트남과 달리 몽골은 인구가 적고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match에 동원할 수 있는 여성의 수가 많지 않다. 초국적 결혼 시장으로서 몽골의 이러한 제한 조건 때문에 결혼 중개업체 중 몽골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라면 몽골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다른 국적의 여성들과의 결혼을 동시에 중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몽골만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는 대부분 개인 중개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들 중 몇몇은 몽골 여성과 결혼한 후 중개업을 시작한 경우도 있다.

몽골의 현지 중개업자의 주요 역할은 여성을 모집하고, 몽골 현지에서 이루

16) 호스 바가나 사이트(http://www.owc.org.mn/xoc_bagana) 중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부록2>의 번역문 참조할 것.

17) 2006년 한국 남성과 결혼한 몽골 여성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실태를 조사한 몽골 양성 평등 센터 보고서『Main finding of "Human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of Mongolian girls and women" survey』에 따르면 연구 대상자 30명 중 26명이 중개업체를 통해 한국 남성과 결혼 하였다(2006:12).

어지는 맞선을 주선하며, 몽골에서의 결혼 등록과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번역 공증하는 서류진행이다. 이들은 결혼이 성사되면 한국인 중개업자로부터 성사 건당 2천불에서 3천 5백 불 정도의 커미션을 받고 고용된 형태이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수평적이라기보다는 위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몽골 현지 중개업자는 대부분 사무실을 두지 않고 핸드폰 번호만 가지고 활동하며, 상호 명을 사용하는 경우라 해도 상호 명을 자주 바꿈으로써 단속의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제가 통역 일했던 곳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도 없었고 달랑 핸드폰 하나 있어서.. 그래서 카페나 그런데서 여성들을 만나서 여성들의 프로필과 사진을 받는 거예요. 사진 없으면 뭐 자기(몽골 현지 중개업자)가 직접 카메라 들고 나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결혼이 성사되면 한국인 중개업자한테 저는 200불, 몽골 중개업자는 2000불 받았어요. (사례 K24)

따라서 여성에 대한 폭력,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는 NGO 활동가들(사례 M11)은 “중개업자들이 핸드폰 전화번호만 가지고 활동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 버리거나 핸드폰 번호를 바꾸기 때문에 결혼 중개가 인신매매에 이용된 경우라 해도 단속이 힘들다”고 지적한다.

2) 결혼 중개 과정에서의 문제점

몽골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중개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맞선과 결혼은 길게는 5박 6일에서 짧게는 3박 4일 만에 이루어진다.

① 몽골 현지 여성과 한국 남성 모집

2002년 제정된 몽골의 광고법(Law on Advertisements)은 해외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은 중개업체만이 모집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CHR, 2004:46 - 7). 그러나 이 법은 결혼 중개업체의 광고에 대해서는 허가를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소소마, 2006:101), 현재 정보지, 라디오, TV등 대중 매체의 광고는 한국 남성과 결혼할 몽골 여성들을 모

집하는 주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몽골 현지 중개업자들은 주변 젊은 여성들에게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도 하지만, 가장 일반화된 방식은 광고료가 저렴한 짜르미데(Zar Medee), 쇼르하짜르(Shuurhai Zar)와 같은 몽골의 주요 정보지 광고를 통한 모집이다¹⁸⁾. 일례로 2007년 10월 19일자 짜르미데와 쇼르하짜르는 각각 5건과 4건의, 2007년 10월 23일자는 9건과 4건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 광고를 싣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광고지나 라디오 이외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TV 광고가 새로운 모집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광고법이 허위 광고나 포르노, 몽골의 윤리와 전통에 위배되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CHRD, 2004:46 - 7), 대부분의 중개업자들은 “한국인과의 결혼 중매” “한국인과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는 사람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중매”라는 두 세 줄짜리 간단한 문구를 사용함으로써,¹⁹⁾ 법에 저촉되는 것을 피한다.

몽골 현지 중개업자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여성들에게 사진과 함께 이름, 생년월일, 학력, 직업, 가족 관계 등 인적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한국인 중개업자에게 건네준다. 한국인 중개업자는 건네받은 여성들의 사진과 프로파일 등을 인터넷 홈 페이지에 자사 회원으로 올리거나 홈 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라면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모집한 남성들에게 제공하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동의 없이’ 여성들의 사진을 웹사이트에 공개한다는 것이다.

② 맞선과 합방

맞선은 한국 남성이 몽골에 도착한 날 오후나 다음 날 울란바토르 시에서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몽골 정부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 중개 행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몽골에서는

18) 2004년 CHRD 보고서『Combating Human Trafficking Mongolia : Issue and Opportunities』는 Zar Medee, Onoodor, Mongoliin medee, Zuunii medee, Odriin sonin과 같은 정보지에 실린 “해외 취업, 해외 영주권 취득, 외국 남성과의 결혼을 알선 한다”는 내용의 광고들이 몽골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의 주요 모집 경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외국인과의 결혼을 알선한다는 광고의 경우에는 한국 남성뿐 아니라 일본, 독일, 영국, 미국, 캐나다 남성과의 결혼을 알선하고 있다(CHRD, 2004:25 - 31).

19) <부록3>에 첨부된 정보지 짜르미데(Zar Medee), 쇼르하짜르(Shuurhai Zar)에 실린 광고 번역문 참조 할 것

중개업자가 맞선을 주선하다가 단속되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는 없다. 그러나 몽골 법무 내무부 산하 <이주귀화 외국인청>의 소장인 Muren Dashdorj 씨는 “현재의 상업화된 중개 방식은 한국인 중개업자가 관광비자로 들어와 체류 자격 이외의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한다.

몽골은 1921년 중국으로부터 독립 당시 인구가 50만 명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적극적인 인구 증가 정책을 펴온 결과 2007년 7월 295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고²⁰⁾, 몽골인들 간 결혼과 자녀 출산은 인구 재생산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장려된다. 따라서 몽골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몽골에서 중개업자와 부모는 “돈을 받고 여성들을 외국에 팔아먹는”, 한국 남성과 결혼을 원하는 여성들은 “손쉽게 세상을 살려다가 불행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여성들”로 비난 받으며, 아래의 신문 기사는 결혼 중개업자나 여성들에 대한 몽골 사회의 반감과 부정적 인식을 잘 보여준다.

<한국 남자와 결혼하기 원하는 몽골 여자들의 사진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한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신속하게 중개 한다" "중류층 이상 한국인과 결혼하기 원하는 여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35세 미만의 건강한 여자가 한국인과 결혼하기 원할 때 소개를 시켜준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광고가 신문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몽골 여자들을 한국으로 결혼시키고 있는 중개인들이 이 광고의 주인공이다. 쉬운 방법으로 세상 살기를 원하는 여자들 아니면 두 번째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여자들이 이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외국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여성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거짓 광고와 달콤한 유혹에 속아 한국으로 가서 성적으로 억압당하고 강제 노동을 당한 후에 후회한다... (중략)

<몽골의 피는 몽골에 있어야 한다>

20) 매일 노동 뉴스 2007년 8월 9일자 기사와 Amnesty International 2007 몽골 리포트 중에서

Hanawed.com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몽골 여자들의 사진에 대해 독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자.

- 몽골 여자들아…. 늦기 전에 그만해라! 한국에 아무런 행복이 없다. 괜히 여러분에게 돈을 주겠다. 왜 이렇게 바보니! 몽골 피는 몽골에 있어야 한다. 힘들어도 몽골에서 사는 게 참 행복이다.

- 여성이 외국에 나간다는 것은 우리 조국을 외국인에게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네 부모를 사서 노예로 만든다고 생각해.

(МОНГОЛЫН МЭДИЭЭ (Mongolyn Medee) 2007년 10월 24일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하에서 울란바토르 시에서 진행되는 맞선은 구체적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인식이나 반감 등을 고려하여 매우 음성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더욱이 울란바토르 시는 인구가 백만 명 가까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맞선은 공개적인 장소를 피해 주로 남성이 투숙하고 있는 호텔 방이나 한국인 중개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혹은 몽골 현지 중개업자의 집 등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며, 좀 더 규모가 큰 맞선이라면 한국인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몽골은 베트남처럼 많은 여성을 동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남성은 소수의 여성들(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30명)과 맞선을 보며, 맞선 방식은 동원할 수 있는 여성들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남성 고객이 한국에서 미리 여성들의 사진과 프로파일을 받아보고 만나고 싶은 여성을 선택해 온 경우라면 맞선은 순차적인 일대일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 남성은 시간 간격을 두고 5명 내지 7명의 여성들과 30분 정도 일대일 맞선을 보고, 최종적으로 한 명의 여성을 자신의 배우자로 '선택'하는데, 이런 구조 하에서 배우자가 된 여성은 남편이 자신 이외에 다른 여성들과도 선을 봤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여성들 프로파일 보고 골라서 와서 그 다섯 명을 만나게 해줘요. 그러면 제가 통역하러 들어가요. 만나는 장소는 남자가 투숙하는 호텔이에요. 30분 간격으로 서로 겹치지 않게. 한 명하고 만나는 시간이 30분을 넘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여성 만나고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여성 만나고. 그러니

까 여성들이 서로 만나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 다섯 명 다 만나고 난 후에 남자가 어떤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사례 K24)

그러나 20명 이상의 여성이 동원되는 경우라면 맞선은 일대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개업자가 주선하는 맞선은 남성 고객이 3, 4명씩 차례로 들어오는 여성들 중에서 1차로 맘이 드는 여성을 선택하고, 1차로 선택된 여성들 중 다시 맘에 드는 여성을 선택하는 단계적인 남성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며, 여기에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우선적이고 일방적인 권한은 오직 남성에게만 주어진다.

남편을 만날 때 중개업자가 13구역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여성들을 불러서 맞선을 봤다. 한국 남자 3명이 왔는데, 여성들은 거의 20명 정도 왔다. 맞선은 5시간 정도 걸렸다. 처음에는 한국 남성 3명하고, 몽골 여성 20명하고 다 같이 봤다. 그 다음엔 남자 3명이 한 명씩 방에 들어가 있으면, 여자 3, 4명씩 나누어서 각 방으로 들어갔다. 남자 한 명에 여자 3, 4명씩 앉아 통역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나눈 후 밖에 나와 기다렸고, 중개업자가 선택된 여성들이 누군지 알려주었다. 20명 중에서 10명이 뽑혔고, 뽑힌 여자들은 (다시 같은 방식으로) 남자들과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례 M29)

이처럼 불과 몇 시간 만에 여러 명의 남성들과 여성들을 한꺼번에 매칭(matching)시킬 수 있는 맞선 절차는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은 이윤의 추구'라는 결혼 중개의 극단적인 상업성을 반영할 뿐 아니라, '불충분한 정보 제공'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언어적 소통이 불가능한 결혼 당사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정보나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맞선에 동석한 통역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통역 서비스의 미비로 여성들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며,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는 남성의 나이, 직업, 초혼 재혼 여부, 학력, 경제력, 가족 상황이 전부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는 이 빈약한 정보마저도 허위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²¹⁾. 일찍 아

21) 2005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보고서와 2006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

버지를 여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진학을 포기해야 했지만 저임금 단순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학에 들어가 변호사가 될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례 K19는 “대학을 보내준다”는 남편의 말에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결혼했다. 그러나 실제 그녀의 남편은 무직자였다.

(맞선 볼 때는 남편 직업에 대해) 확실하게 못 들었어요. 통역한 사람이 통역을 잘 못해서.. 확실하게 “이런 직업이다” 말 안 했어요. 우리는 서로 대화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그리고 남편이 “한국에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고 계속 일하고 있다”고 해서 사무실에 앉아 일하는 사람인줄 알았어요. 공무원? 그런 건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 약속들 하죠. “대학 보내 준다. 엄마랑 오빠한테 잘 해주겠다....” 한국에 와서 남편이 약속한 게 다 거짓이고 시내 가서 산다고 한 것도 거짓이고 대학 보내준다는 것도 거짓이고 직장도 없고..... 제가 완전히 속은 거 알았어요. (사례 K19)

이처럼 대부분의 여성들은 ‘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국남성과 결혼하며, 맞선에서 제공받는 남편에 대한 정보는 여성들이 결혼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사용된다. 따라서 허위 정보는 여성들이 입국 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결국 몽골에서 이루어지는 맞선은 베트남에 비해 소규모로 이루어지지만, 현재 상업화된 결혼 중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 즉, 남성에게만 일방적인 배우자 선택권이 주어지고,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거의 주어지지 상태에서 짧은 시간 안에 배우자 선택이 강제되며,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이 박탈된다는 점에서는 베트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중개업자들은 맞선 후 배우자로 선택된 여성에게 남성이 투숙하고 있는 호텔에 함께 묵을 것을 ‘권유’하며, 이러한 합방은 현재 중개업자가 추천하는 결혼 일정에서 비공식적인 절차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합방의 권유는 여성이 거부하는 경우 ‘강요’로 전환된다. 현재 상업화된 중개는 전 과정이 비용 전액을 지불하는 남성 고객의 이해와 욕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먼 중개업체를 통해 한국 남성과 결혼 한 이주 여성의 44%, 25.6%가 “결혼 전 자신이 알고 있던 남편에 대한 정보가 사실과 달랐다”고 응답했다.

때문에, 중개업자들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으며, 일방적인 순응을 강요한다.

결혼이 결정되고 나서, 남성들이 묵는 호텔에 같이 투숙하라고 강요했다. “남편이 한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같이 있으라”고 했다. 남편이랑 호텔에 투숙했을 때, 성관계를 거부해서 남편이랑 싸웠고, 한국인 중개업자가 들어와서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했는데, 한국말이어서 못 알아들었다. “싫다”고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통역(몽골 현지 중개업자)을 통해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 근데 통역은 항상 한국 남자 편이다. “결혼하면 어차피 할 거니까 하라”고 했다. (사례 M29)

결혼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의 의지에 반해 합방이 강요되는 이러한 상황은 결혼 중개의 왜곡된 상업성과 젠더 불평등 구조를 드러내며, 이러한 구조 안에서 여성들은 원치 않는 행동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라는 최소한의 자율성과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

③ 약식 결혼 또는 처가 방문

맞선을 보고 배우자가 결정되면 결혼식이나 처가 방문을 한다. 다른 국가와 달리 몽골 여성과의 중개 과정에서는 몽골 현지에서의 정식 결혼식을 생략하고 시내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울란바토르 시내에 예식장이 단 한 곳 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주위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몽골의 경우엔 결혼식 대신 ‘처가 방문’이 공식 일정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 중개의 경우엔 중개업자가 피로연이나 처가 방문 시 신랑으로 하여금 ‘지참금’ 명목으로 붉은 색 봉투에 돈을 담아 신부 부모님에게 드리게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이는 공식적인 결혼 비용 산출 내역에 포함된다. 반면 몽골에서는 부모가 결혼을 허락하면서 사위에게서 돈을 받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 받는 행동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처가 방문 시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²²⁾.

④ 결혼 등록과 비자 발급

약식 결혼식을 마치면 여성들은 국가 시민등록 정보센터에 결혼 등록을 하고 한국 대사관에서 배우자 비자(F-2-1)를 발급 받아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빠르게는 일주일에서 보통 두, 세 달가량 소요된다. 중개업자는 자금 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결혼 결정 후 비자 수속을 마치고 한국으로의 입국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중개업자들에 의한 위법적인 혼인 증명서 발급, 신체검사, 갈취, 불법 계약서 체결 강요와 같은 다양한 탈법적이고 범법적인 행위들이 자행되곤 한다.

○ 서류 진행 과정에서 위법적인 혼인 증명서 발급과 결혼 당사자의 배제

맞선 다음 날 중개업자는 법적인 결혼 등록과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 받고, 번역 공증 받는 이른바 ‘서류 진행’을 시작한다. 여성들은 중개업자의 지시에 따라 미혼 증명서, 건강 검진서, 검찰청 증명서등 결혼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혼인 신고를 하는데,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몽골의 시민등록 법은 “결혼 당사자들이 직접 시민등록 및 정보센터로 와서 증인의 참석 하에 결혼 등록을 신청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 신고는 결혼 당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몽골 현지 중개업자들은 결혼 당사자들을 대신해 결혼 등록을 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맞선 본 다음날 건강진단을 받았다. 나는 건강 진단서랑 미혼 증명서 두 개만 직접 가서 발급받았고, 시민 등록 센터에 혼인신고 하러 가지 않았다. 중개업자가 혼인신고하고, 결혼 증명서까지 발급받았다. (결혼 증명서를 보여주며) 여기 사인은 내가 한 게 아니다. 중개업자가 한 것이다.... 남편이 한국에 가서 혼인 신고하고 보낸 서류가 많았는데, 중개업자가 가지고 있었다. 한국에서 가져온 온 서류에 사인하고 손도장 찍으라고 해서 “무슨 서류냐?”고 물어봤다. 그 서류는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

22) 원래 몽골에서는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의 부모를 찾아가 “결혼을 부탁하는” ‘비르 고이흐’라는 전통적인 의식이 있다. 신랑은 아침 일찍 신부의 집을 찾아가 순수한 마음을 상징하는 흰 우유를 은그릇에 담아 ‘하다그’라는 하늘색 천으로 감싸서 신부 가족의 웃어른들께 드리는데, 이를 받아 마시면 “신랑이 맘에 들며 결혼을 허락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다. 중개업자는 설명 해주지 않고 그냥 “비자 받을 때 필요한 서류”라고만 했다. (사례 M31)

위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서류 진행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결혼 당사자인 여성들이 완전히 배제된다는 점이다. 현재 주 몽골 한국 대사관에서는 배우자 비자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 등본을 포함해 재직 증명서(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또는 전월세 계약서), 예금 잔고 증명서등을 요구하며, 이러한 서류들은 한국인 배우자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고 배우자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보내 온 모든 서류들은 결혼당사자인 여성이 아닌 중개업자가 보관, 관리하며, 이는 일반적인 중개서비스 차원의 서류대행을 넘어선 과도한 권력 행사라 할 수 있다. 여성들은 배우자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하며,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사인을 강요당한다.

○ 중개업자에 의한 신체검사

몽골 현지 중개업자들은 한국 중개업자의 요구에 따라 몽골의 가족법이 요구하는 건강 검진 이외에 ‘선택된’ 여성에 대한 자체적인 신체검사를 실시하는데, 이는 여성의 출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5년 간 몽골 여성과의 결혼을 주선했던 한국인 중개업자(사례 K16)는 “아이가 있는 여성들이 한국으로 오기 위해 이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체검사는 한국 남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일”이라고 말한다. 중개 과정에서 ‘여성의 몸’은 경제적 이윤이 발생하는 출처이기 때문에 중개업자들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여성의 몸을 상품화시킬 뿐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비인격적인 절차를 강요하며, 여성에 대한 신체검사는 현재 결혼 중개 방식의 극단적으로 왜곡된 상업화 경향을 상징한다.

○ 갈취와 불법 계약서 체결 강요

그러나 중개업자에 의해 자행되는 불법 행위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다. 중개업자들은 여성들에게 성혼 후 사례비를 요구하거나 남편이 주고 간 용돈을 중간에서 갈취하기도 한다. 또한 결혼 당사자들에게 불법 계약서 체결을 강요하는데, 그 내용은 심각한 인권 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주 노동의 경우에는 표준 근로 계약서가 존재하지만 결혼 중개의 경우에는 이러한 표준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자신의 편의대로 계약서를 만들며, 그 내용은 중개업자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편파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당사자들은 이러한 편파적인 내용의 계약서 체결을 강요받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 중개업체들은 '신부가 결혼 후 입국을 거부하거나, 입국 후 2, 3개월 내에 무단가출하거나 신랑의 잘못 없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결혼을 재추천한다'는 이른바 '신부 보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혼을 재추천하는 경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중개업자들은 아래와 같이 "위장 결혼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1만 불, 합방이나 약혼식을 한 후 결혼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2천 불, 혼인 신고 후 결혼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4천 불의 위약금을 중개업체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체결을 강요한다.

1. 만약 위장결혼을 하였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이혼을 강요할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 1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몽골에서 결혼을 전제로 합방이나 약혼식을 진행한 다음 결혼을 거부할 경우 거부하는 측에서 결혼을 주선한 결혼정보회사에 위약금 2000\$를 지급하여야 한다.
6. 신랑과 신부가 몽골에서 혼인신고를 한 다음 결혼을 거부할 경우 거부하는 쪽에서 결혼을 주선한 결혼정보회사에 위약금 4000\$를 지급하여야 한다.

(한국어로 된 국제결혼 계약서의 일부, 계약서 전문은 <부록4> 참조)

이러한 계약서는 표피적으로는 남녀 모두에게 결혼에 대한 동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성이 결혼 구조에서 빠져 나갈 수 없게 만드는 일종의 통제 장치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2007년 현재 몽골의 월 평균 임금은 16만 투그릭(약 13만원)²³⁾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결혼할 의사가

23) 몽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몽골의 월 평균 임금은 2005년 10만 투그릭에서 2006

없어졌다고 해도 월 평균 임금의 15배에서 30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고 중도에 결혼을 파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중개업자들은 결혼 당사자인 여성뿐 아니라 신부 부모에게 연대 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이러한 불법 계약서를 이중의 통제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다. 중개업자가 몽골 여성 및 보증인인 여성의 부모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한국으로 입국 후 여성이 도망가면 보호자인 부모가 중개업체에 5천불의 벌금을 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으며²⁴⁾, 계약서 사인을 거부하면 중개업자는 협박과 회유를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계약서 체결을 강요한다. 사례 M31의 어머니는 중개업자로부터 ‘입국 후 여성이 도망가면 부모가 450만 투그릭(약 370만원)을 변상한다’는 계약서에 사인할 것을 요구받았다. 사인을 거부하고 결혼을 파기하려고 하자 중개업자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비자를 못 받는다’며 협박 하였고, 협박이 효과가 없자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라며 회유를 시도한다.

중개업자는 계약서를 들고 와서 나하고 남편한테 사인을 하라고 했다. 몽골어로 되어 있는 계약서였는데, “한국에 가서 내 딸이 도망을 가면 450만 투그릭을 낸다”는 내용이였다. “우리가 왜 이런 돈을 내야 되냐? 없던 일로 하자”고 했더니, “부모님이 사인을 하지 않으면 비자를 못 받는다”고 했다. 그런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놀라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안 하겠다”고 했다. 남편이 화를 내면서 “안 한다. 그만 하라”고 했다. 그 다음 날 딸이 중개업자한테 전화해서 “결혼 안할 거니까 취소해 달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중개업자는 자기 남편까지 데리고 와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니까 걱정 할 것 없다”며 설득하려고 했다. (사례 M31 어머니)

이처럼 현재의 중개 시스템은 여성들이 ‘발을 들여 놓은 이상 빠져나가기 힘든’ 구조적 강제가 존재하며, 이는 결혼 당사자의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박탈한

년에는 13만 투그릭으로, 다시 2007년에는 16만 6천 투그릭으로 인상되었다.

24) 몽골어로 된 국제결혼 계약서 중에는 “12. 결혼한 여자가 도망갈 경우 보호자 ……은/는 국제중매업체에 5.000\$를 벌금으로 낸다”는 항목이 들어있다. 계약서 전문은 <부록 4>의 몽골어 계약서 번역문 참조할 것

다는 점에서 중개 방식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고찰한 바와 같이 몽골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결혼 중개는 '최대 이윤의 추구'라는 시장의 논리에 구조화되며, 이 체계 안에서 여성은 상품화될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통제와 강요, 협박과 갈취에 노출될 위험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몽골 양국 정부 차원의 규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현재의 결혼 중개 방식은 인신매매의 통로로 손쉽게 이용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인신매매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몽골의 NGO 단체들은 '사기에 의한 외국인과의 결혼이 몽골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CHR, 2004, MGEC 2006). 현재 몽골 양성 평등 센터(MGEC)는 중개업자에 의한 사기성 결혼(false marriage)으로 이주하는 여성을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인신매매로 규정하는 이유는 모집 과정에서의 정보 부재, 사기, 거짓 정보의 문제와 이주 과정의 강제성, 이주 후 한국에서 성적 착취와 노동 착취를 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팔레르모 프로토콜의 인신매매의 정의에 부합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2007년 1월부터 10월 13일까지 센터가 지원한 인신매매 피해 사례 95건 중 한국은 17건으로 모두 중개업자에 의한 사기성 결혼이었으며, 센터에 접수된 구체적인 피해 사례의 예는 다음과 같다.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3년 동안 한국에 산 몽골 여성이 있었다. 그 여성의 남편은 세일즈맨이었는데, 일 년에 2번만 집에 방문했다. 여성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었고,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의 부모를 돌봐야 했다. 임신을 했는데, 강제로 낙태를 당했다. 마취 상태에서 낙태를 당했기 때문에 여성은 자신이 낙태를 당하는지도 모르고 낙태를 당했다. 남편은 "너를 데리고 온 이유는 돈 벌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필요 없으니까 몽골로 돌아가"라며 몽골로 돌려보냈다. 한국에 있는 동안 그 여성은 집에서 요리, 청소, 모든 집안일을 다 했다. (몽골 양성 평등 센터에 접수된 사기성 결혼에 의해 한국으로 인신매매된 피해 사례)

몽골은 인신매매 방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신매매 방지법이 존재하지 않지만, 형법(Criminal Law) 113조에 인신매매 조항이 마련되어 있

다²⁵⁾. 그러나 관련 NGO 활동가들은 “피해자들이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꺼려할 뿐 아니라,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으로 인신매매되어 성산업에 유입되었던 피해자들도 보호를 받기는커녕 위조여권으로 처벌받는 상황에서 인신매매 범을 기소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한다. 실제 몽골에서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되거나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²⁶⁾.

4. 결혼 이주 후 정착 과정에서의 문제점

국제결혼이든 한국인끼리의 결혼이든 결혼 후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중개업을 통한 결혼의 경우, 결혼 이후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의 문제가 드러나고,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다양한 갈등을 경험한다. 또한 여성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족 등 사회 네트워크가 없고, 한국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나 접근도가 떨어짐으로써 무기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경우, 많은 문제들이 은폐되거나 개인 여성의 인내 하나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으로 결혼 이주를 해 살고 있는 몽골 여성들의 심층 면접을 통해, 여성들이 한국으로 이주한 후 경험하는 어려움 등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5) <형법(Criminal Law)의 113조> 다음과 같은 범죄를 자행함으로써 사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 강제노동,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혈액, 피부,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②성매매를 목적으로, ③반복적으로, ④2인 이상을, ⑤미성년자를. 이러한 행위가 조직화된 집단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의 징역에 처한다. 조직화된 집단이나 범죄조직에 의한 인신매매 또한 동일하며, 만약 심각한 해를 입힌 경우라면 10년에서 15년의 징역에 처한다.

26) 실제 몽골에서는 인신매매로 고발되면 민사상 문제로 간주되어 약 25만원의 벌금을 내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신매매 범에 대한 구속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МОНГОЛЫН МЭДИЭЭ (Mongolyn Medee) 2007년 10월 4일자 기사에 따르면,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24건의 인신매매 사건이 몽골 검찰청에 접수되었는데, 이 중에서 22%가 재판 거부, 60%가 기각, 2%가 집행유예, 5%가 수사 중으로 11%만이 판결 받았다. 또한 최근 검찰청에 신고 되어 수사된 인신매매 건은 2005년 3건, 2006년 6건에 불과하다. 올해 9월까지 9건이 신고되었고 이 중 6건을 수사하여 처벌을 받았다.

1) 사회적 고립 및 이동의 자유 제한

남편과 시어머니를 비롯한 남편의 친족들은 철저한 이방인인 ‘외국인’ 며느리를 빠른 시간 내에 한국식으로 동화시키고자 한다. 몽골 여성들은 자신의 식습관, 외모관리, 몸가짐, 예법, 노동 방식, 그리고 심지어는 잠자리에 이르기까지 시부모나 남편 친척, 동네 사람들의 정교한 관리와 통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통제는 여성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문 밖 출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초기 정착 과정에는 중개업자가 깊이 관여한다. 중개업자는 결혼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이후, ‘사후관리’라 불리는 것을 통해 부부간의 일어나는 문제들을 처리하고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 남성들이 중개업자에게 쏟아낸 비난과 불평을 무마하기 위해 남편들에게 여성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전수한다. 실제로 한국 남성들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여성들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는 여성들이 늘 ‘도망갈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개업자들이 전수하는 한, 두 가지 전략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전략이 ‘빨리 아이를 갖게 하라’ 또는 ‘집 밖으로 내돌리지 마라’, ‘같은 나라 출신들과 전화로든, 직접적 만남이든 어울리지 말게 하라’이다. 여성들은 남편 뿐 만 아니라 가족들에 의해 감시를 당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내가 사는 동네에 9명의 몽골 여자가 시집와서 살고 있다. 나를 포함해서 이들 모두 M 이라는 중개회사를 통해 왔다. 다 가까이 살고 있다. 그 중 한 명은 새벽 5시부터 논밭에 나가 일했고, 다른 한명은 술 취한 남편에게 맞고 산다. 시어머니가 애 못 낳는다고 때린 여자도 있다. 마을에 있는 몽골 여성들은 집에서 나가지도 못한다.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몽골 여성 만나지 말라”고 했다. 나는 쇼핑도 가고 구경도 하러 나왔지만, 다른 여성들은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사례 M30)

2) 체류 자격 및 권리 제한에 있어 남편의 일방적인 권한 행사

한국으로 ‘시집 온’ 외국인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한국에서의 체류 자격이나 결혼 파기를 통한 귀환의 모든 과정에서 남편에게만 권리가 집중되었고, 여성들이 이 과정에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결혼 생활 2년 후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이나 국적도 남편의 동의나 승인이 없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성들은 최소한의 체류 자격을 보장 받기 위해 남편들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국 사회의 부계 혈통주의나 부거제 관습에 의해, 여성들은 아이에 대한 권리나 양육권 문제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결혼 한지 8년이나 되었는데) 남편이 국적 안 해 줬어요. 지금 영주권도 없어요. 해달라고 했더니 계속 안 해주다가 2008년에 비자기간이 끝나서 비자 만료 끝나면 해준다고... 제 생각엔 이혼하면 위자료 줘야 되니까 그래서 국적도 안 해줘요 (사례 K19)

남편이랑 중개업자가 통역까지 데리고 와서 “양육비를 안 받겠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게 했다. “이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몽골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사인을 했고, 공증까지 받았다. 서류는 한국어를 몽골어로 번역한 것이어서,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인을 안 하면, 몽골로 보내주지 않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 (사례 M29).

여성들의 한국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행사하는 전면적인 통제는 여성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3) 학대와 폭력

여성을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킨다는 명목 하에 남편이나 남편의 친족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수단은 육체적 폭력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육체적 폭력은 구체적인 이유 때문에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몸을 지배함으로써 타자에 대한 권력 감을 발휘하고 복종시키는 수단일 뿐이다.

“몽골에 계신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전화하면 안 된다. 돈이 너무 비싸다. 몽골에 보내지도 않고 전화도 못하게 하겠다”며 화를 냈다. 남편이 발로 찼다. 때리기 시작했다..... 서 있으니깐 앉으라고 해서 안 앉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배를 아프게 발로 찼다. 자동으로 꿇어앉게 되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팔 한쪽을 형이 다른 한 쪽 팔을 잡고 남편이 계속 때렸다. 여기서는 이 세 명 뜻대로 안하면, 죽을 것 같아서 많이 울었다 (사례 K11)

남편은 자기 말을 따르라고 많이 때려요. 저만 때리는 게 아니라 아기도 때리고 많이 싸웠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왜 우냐고 때리고 웃으면 왜 웃냐고 때리고 이유가 없어요. 화내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2003년에 너무 힘들어서 나와서 심하게 싸우고 그래서 쉼터에 연락했어요. 술 안 먹고 그래요. 화낼 때 너무 심해요. (얼마나 자주 그래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때리고 그래요 (사례 K19).

한국 남성들의 외국인 부인에 대한 폭력은 자주 보고되지만, 지역 사회나 경찰 모두 내국인 부부 사이에 일어난 폭력의 경우보다 미약한 방식으로 다룬다는 것이 문제이다. 즉, ‘부부간의 지극히 사적인 문제’로 취급되거나 신고한 외국인 여성이 참아내야 할 문제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감히 한국 남편을 경찰에 신고한 불경스런 외국 여성’으로 취급되어지기도 한다.

친구가 휴대폰 카메라로 맞아서 멍이 든 사진을 찍었다. 나는 얼굴, 이마, 눈과 팔에 멍이 들었다.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경찰에 가져갔더니, 그것은 ‘가족의 일’이라며 돌려보냈다 (사례 M 30)

여성들은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맞는 몸’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이러한 폭력이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고 견디는 경우가 많다. 폭력을 피해 ‘쉼터’나 ‘친구 집’으로 도피한 여성들에게도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다. 남편의 약속이나 협박을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남편이 나아지기를 희망할 수밖에 없다. 또한 남편이 ‘도망간 외국인 신부’나 ‘위장결혼자’로 신고하여, 한국에서의 체류 자격 자체를 박탈당하고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는 여성의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4) 문화적 박탈

국제결혼한 부부들의 갈등 요인은 '문화적 차이'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이질적인 문화권에서 생활해 온 두 성인 남녀 간의 물이해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며,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한국의 강력한 '동화'이데올로기는 여성들의 문화적 정체감을 '없어져야 할 것' 또는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등으로 의미화 함으로써 여성들의 정체성을 구성해 왔던 '민족 정체감'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여성들은 자기 문화의 좋은 점을 소개하거나 알리면서 존재감을 획득하기 보다는 자신의 큰 결점으로 인지하여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여성들과의 면접에서 빨리 한국식에 적응해야 된다는 이유로 밥과 김치만 먹이거나, 아침, 저녁으로 문안인사를 하는 것이 한국식이라고 강조하는 시어머니의 예가 자주 등장한다.

무조건 한국 음식만 먹으라고 한다. 좀 천천히 적응할 수 있는데 무조건 강요한다. 빵 먹고 싶은데 "왜 빵을 먹냐? 빵 비싼데 왜 먹냐?"면서 밥과 김치만 먹으라고 한다. 빵을 못 먹게 하면서 한국 음식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도 않는다 (사례 K17).

실제로 몽골에서 결혼 이주한 여성 중 몇몇은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고 고기를 먹던 습관 때문에 한국의 김치와 쌀밥 위주의 식단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호소한다. 늘 일상적으로 먹었던 양고기, 호쇼르(몽골만두), 수테차이(우유차)를 전혀 먹을 수 없는 문화 환경 때문에 한국에서 와서 '끓주린' 경험이 많다. 63kg의 몸무게였던 사례 K11은 한 달 만에 몸무게가 57Kg으로 줄었다고 한다. 위의 사례는 기본적인 문화적 권리조차 박탈당하면서 한국에 동화해야 하는 결혼 이주 여성의 현실에 대한 지극히 일상적인 사례이다.

결혼 이주자에 대한 문화적 편견중 하나는 한국식에 빨리 동화될수록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한다고 생각하는 믿음이다. 실제로 이주자들이 이주한 지역에서 가장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갖는 경우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감을 유지한 채 새로운 문화를 체득해간다는 자기 확장적 인식을 가질 때이다.²⁷⁾ 이렇듯 민족 정체감이나 문화적 정체감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에게 확인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치이다. 향후 결혼이주자의 사회통합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이들의 문화권이다. 현재 결혼이주자에 대한 정부 정책이 동화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결혼 이주자 여성들의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법무부에서 제정한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안>의 제18조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에 대한 조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에 관한 세계선언'(2001.11)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의하면, 문화다양성은 개개인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는 다원성의 원리이며 창조의 자원이다. 개인은 특정의 사상, 이념, 제도에 의한 문화의 획일화에 종속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하여 개인은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삶의 양식을 강요받지 아니할 권리, 자신의 판단에 반하여 특정의 가치, 믿음, 관행에 대한 순종과 충성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매체의 다양성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이 조약의 핵심은 문화적 권리에 대한 정의가 소득, 지역, 계층, 성별, 신체 조건, 집단 등의 차이를 넘어 모든 개인이 누려야 할 평등한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결혼 이주 여성의 향후 사회 통합 정책의 핵심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체반 사항들을 제거하여 신체 이동의 자유, 체류자격 선택 (F-2,

27) 민족정체감은 자기가 속한 민족 집단의 구성원이나 지식과 관련하여 생기는 자기 개념의 일부이며 민족구성원으로 느끼는 가치와 정서적 의미가 포함되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민족 정체감은 ① 소속감과 태도로서 민족적 배경에 대한 긍지, 좋은 감정, 만족도 등이 포함된 확인과 소속감(affirmation and belonging), ② 자기민족의 전통과 역사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는 민족정체감 성취(ethnic identity achievement), ③ 고유한 민족적 행동과 관습에 관심을 두는 민족관습(ethnic behaviors)등으로 구성된다. (Tajfel, 1981, 노충래·홍진주 2006:135~135에서 재인용)

영주, 귀화), 폭력에서의 방어, 노동할 권리,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보존 등에 대한 다문화주의 관점의 정책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5. 귀환한 여성의 사회적 '낙인화'와 경제적 결핍

한국에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린 여성들이나 남편에 의해 고의로 몽골로 돌려보내진 여성들은 몽골로 귀환한 이후에도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몽골 사회에서 '되돌아온 여성'은 갖은 추측과 소문을 통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뿐 만 아니라, 국제결혼의 대한 경제적 기대를 가족에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몽골 사회에 재통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요구된다.

처음에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그런 일을 당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몽골로 다시 돌아와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다. 그 기억 때문에 많이 울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기 시작했다. 스스로를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 남편이 너무 무서웠다. 남편이 소리 지르면서 야단치고, 섹스를 강요했던 기억이 계속 되살아난다.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 한다고 해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든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다시 결혼한다고 생각 하면 무섭다. 결혼이나 남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 (사례 M30).

연구자들이 인터뷰를 위해 만난 순간부터 귀환여성들은 '우울'해 보였다.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급작스런 국제적 이동과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폭력과 학대의 경험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항상 피곤하고 우울증이 심해서 온몸에 힘이 없고 어지럽다. 지금은 많이 좋아 졌지만 피곤하지 않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2년 정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그래서 일을 계속 하지는 못했다. 쇼펍센터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고기를 파는 판매원으로 일을 하기도 했다. 지금은 특별히 하는 일은 없다 (사례 M36)

향후 이들의 심리적 장애와 정신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 보장의 지원
책이 요구된다. 또한 한국인 2세들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내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은 사는 형편이 어렵다 보니 앞으로 딸이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할까 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이다. 몽골 법에 따르면
이혼한 경우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데, 한국 남편한테 아이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사례 M 29의
어머니).

특히 임신한 채로 귀환한 위의 M29를 포함한 여러 여성들의 사례는 향후
한국 정부가 결혼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법적 해석
을 정립함으로써 중개업자와 한국 남성의 무책임한 결혼 행태를 처벌해야 함
을 보여준다.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과정에서 나타난 실태와 문제점: 베트남



제4장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과정에서 나타난 실태와 문제점: 베트남

제1절 베트남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배경과 이주

1. 개혁 개방이후의 베트남 사회의 변화와 이주

베트남의 공식명칭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이다. 행정구역은 수도인 하노이를 포함한 5개의 직할시 호치민, 하이퐁, 다낭, 께터와 총 59개의 성(tinh)으로 구성된다. 베트남의 기본적인 국가체제는 사회주의 공화제이며 공산당이 유일 정당으로서 헌법에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를 영도하는 유일 세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베트남은 1954년 제네바 협정에 의해 남북으로 분할된 후 북베트남에는 사회주의 체제가 확립되어 국영 및 집단 경영에 의한 생산 단위가 구축된 반면, 남베트남에서는 사유 재산과 이윤 추구를 허용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시행되었다. 1975년 사이공의 함락으로 30년간의 긴 전쟁에서 벗어난 베트남은 독립과 국가 통일을 이루었지만 전쟁에 따른 국토의 황폐화, 장기간의 남북 분단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질화 등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전역에 걸쳐 구소련의 계획 경제를 급속히 추진하게

되었다. 경제의 모든 부문에 전시 관리 체제(戰時管理體制)가 도입되어 기업 운영에 대한 정부 개입, 정부 보조금 정책 등이 실시되었다. 베트남은 1986년 개혁·개방을 위한 “도이머이” 정책 도입 이후 꾸준한 경제성장을 지속해 오다가 아시아 경제 위기에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및 수출부진 등으로 경제 성장률이 5% 전후로 하락하였다. 하지만 2000년 이후 회복세로 전화하여 최근 2001 - 2005년 평균 GDP 성장률 7.5%대를 유지하는 고도성장을 하고 있다. 2001년 제9차 공산당 전당 대회 당시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 체제”를 공식화하고, 2006년 제10차 전당대회(4.18 - 25)시 당원의 사영 기업 활동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장경제를 토대로 한 대외개방 경제 정책 적극 추진 중이다.(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2007).

베트남의 해외이주노동은 1980년대 초반, 구소련과 체코슬로바키아에 진출하면서 노동송출의 ‘제1의 물결’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베트남 노동자들과 유입국 노동자들 간의 사회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송출규모가 감소했고 결국 이 지역으로의 이주노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1980년대 후반 ‘제2의 물결’ 시기엔 수천 명의 베트남인들이 동독,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등 동유럽국가로 이주했는데, 1989년은 그 수가 최고에 이르렀으며 그 중 여성이주노동자가 45%를 차지했다. 그러나 유입국의 사회적 변화로 인력수입이 중단되었고, 베트남 계약노동자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대두하면서 대다수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계약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귀국하였으며, 1990년 초반까지 베트남과 구동구권 국가 간 노동협약은 모두 무효화되었다.

1994년부터 시작된 ‘제3의 물결’은 베트남 정부가 노동송출을 재개할 수 있는 시장을 찾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때부터 쿠웨이트,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 및 한국, 일본으로의 이주노동이 시작되었다. 1990년대 35개 국가에 9만 명의 베트남인들이 이주노동을 떠났고, 2000 - 2003년 기간 동안에는 40개국으로 약 20만 명이 이주노동을 했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05).

베트남 정부의 개방 정책으로의 변화는 또한 여성의 ‘이주’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고현웅 외 2005:9). 개혁 개방 이후 베트남 국민의 생활수준은 향

상되었지만, 도시와 농촌 간 경제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의 소득수준 상위 10%와 하위 10%를 각각 비교할 때, 소득 격차는 1996년 10.6배, 1999년 12배, 2002년 12.5배, 2004년 13.5배로 그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재, 2007). 도시와 농촌 간 경제격차는 농촌지역에 있는 남성들을 도시로 이주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 농촌지역의 성비 불균형이 초래됨으로서 농촌 지역의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결혼이주를 선택하게 된다. 초기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국제결혼은 시골의 가난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 베트남 여성에게 빈곤탈출과 가족 부양 등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로 이해될 수 있다.

2. 한국·베트남 교류 현황

1992년 수교 이후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심화 발전되고 있으며, 2001년 8월 Tran Duc Luong 베트남 국가 주석이 방한하여 양국관계를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04년 10월 ASEM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한 계기로 양국관계 강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에 관해 베트남 정부는 1998년 1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 당시 "과거는 묻어두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는 자세를 견지했고, 베트남 국민 대부분도 한국의 경제 발전 기적, 한국과의 경제 협력, 한국의 對베트남 의료·교육 등 각종 지원 사업 추진과 최근 "한류" 등으로 현재 한국에 대해 우호적 또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2007).

주 베트남 대사관에 의하면 한국과 베트남 간 투자도 활발하여 한국은 2006년 한해 26.8억불(인가 기준)을, 2007년 7월말 현재 기준으로 103.3억 불을 투자하여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현재 베트남에 약 1,000여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고, 20 - 30만 명의 베트남인을 고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매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 대상국 중 1 - 2위를 차지한다. KOICA의 對베트남 프로젝트는 중부 지역 병원, 학교 건축, 한국 베트남

산업기술 학교 지원, 증권거래소 설립, 직업 훈련원 지원, 한국 베트남 과학기술 센터 건립 등 활발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도이머이 이후, 한국과 베트남간의 인적교류도 매우 활발하다. 자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한국의 임금수준이 알려지면서 이주노동에 대한 욕구가 높다. 베트남은 1993년부터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자격으로 자국민을 한국으로 노동 송출을 하기 시작했고 2006년에는 연수생 도입국가 중 최고위를 기록했다. (고용허가제 실태 조사 보고서 2006:64). 2004년 한국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신설하면서, 베트남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송출이 시작되었다. 베트남은 2006년 기준 한국으로 13,166명의 노동자를 송출했는데 연도별로 볼 때 2004년엔 104명, 2005년 8,641명 그리고 2006년 6월까지 3,861명을 송출했다. 한편, 베트남 공공 송출기관 해외노동자센터에 따르면 베트남 인력송출 비율이 다른 송출국에 비해 높은 이유는 한국인 사업주들이 베트남 노동자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이주노동자인권연대 2006:65)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 증가의 가속화 역시 한국과 베트남 간 활발한 인적 교류의 한 형태이다. 2003년 95건에 불과하던 국제결혼이 2006년 10,131건으로 증가했다.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혼인건수를 지역별 거주지를 중심으로 보면, 서울 880건, 부산 596건, 대구 526건, 인천 291건 광주 249건 대전 225건 울산 381건 경기 1,565건 강원 347건 충청북도 387건 충청남도 604건 전라북도 578건 전라남도 888건 경상북도 1,139건 경상남도 1,355건 제주도 114건이다. 또 베트남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은 농어촌 종사자와의 결혼이 주축을 이루면서 거주 지역 또한 대도시보다는 지방이나 시골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이주해 간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편으로부터의 폭력,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는다는 것이 베트남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국남성과 국제결혼에 대한 현지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2006년 4월 21일자 조선일보 기사는 베트남에서 번역되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베트남 처녀들 희망의 땅 코리아로”라는 제목의 기사는 ‘한국 왕자님, 저희를 데려가 주세요’ 설명과 함께 여성들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내보내면서, 현재 베트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남성들과 베트남 여성들의 match 과정을 선정적으로 보도하였고, 이에 국내 베트남 유학생들과 NGO 그룹은 이에 항의하는 시위와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 기사 전문이 베트남어로 번역되어 베트남 일간지에 게재됨으로써 베트남에서는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고, 상업화된 결혼 중개에 대한 비판과 반한 감정이 전국 규모로 확산되었다.

제2절 노동이주

1. 베트남의 노동이주 관련 공식 절차 및 제도

1) 베트남 이주노동의 특징

베트남에서 본격적인 해외노동송출이 시작된 것은 타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비교적 늦다. 그렇지만 1980년대, 90년대의 심각한 실업난과 저성장을 겪으면서 베트남 정부는 노동송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이를 주요 국가정책의 하나로 확립했다. 베트남에서의 노동 송출은 기아근절과 빈곤퇴치를 위한 국가 정책의 일부로 사용된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업률이 높은 지역 출신 노동자들에게 해외에서 노동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더불어 유입국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한국으로의 인력송출의 경우, 한국 고용주들이 요구하는 사항, 즉 기술, 노동윤리, 작업장 이탈 금지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직업학교에서 정규교육을 받은 노동자들을 선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 일본으로의 노동이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특히 일본, 한국은 다른 유입국에 비해 고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로 인한 이주노동에 대한 욕구가 높다. 그러나 한국, 일본의 경우 비공식 송출비용이 높아 이를 감당할 수 없는 빈곤층은 주로 말레이시아나 대만으로의 이주노동을 선택하고 있어 이주노동의 분절현상

(segmentation)이 나타나고 있다. 2003년 베트남 빈곤층에서 말레이시아나 대만 등 송출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 노동이주를 떠난 비율은 전체 베트남 노동송출의 81%에 달한다. 이로 인해 베트남정부는 이들 빈곤층의 이주 노동에 관심을 더 집중하고 있다(이주노동자인권연대 2006).

2) 한국으로의 노동이주 현황

베트남은 1993년부터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으로 노동송출을 시작했다. 처음엔 그 수가 적었으나 1994년 산업연수생제도가 시행된 후 한국의 중소기업협동중앙회(KFSB, 중기협)를 통해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송출되는 것을 비롯하여 중기협 외에도 건설협, 수협 등을 통한 노동이주가 대폭 증가해 연수생 도입국가 중 최고위를 기록하였다.

2004년 한국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베트남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송출이 시작되었다. 현재의 한국으로의 인력송출 방식은 베트남 정부기관의 직접 관리 하에 송출하는 고용허가제 방식이다.

2004년 6월 2일 양해각서(MOU)를 체결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MOLISA) 산하 해외노동국(Department for Overseas Labour, DOLAB)이 고용허가제 업무를 위임받았고, 해외노동국 산하 해외노동자센터(Overseas Workers Center, OWC)가 한국으로의 노동력 송출을 위해 신설되었다.

2007년 10월 현재까지 베트남은 한국으로 24,018명의 노동자를 송출하였고, 연도별로는 2004년엔 704명, 2005년 8,619명, 2006년 5,712명, 2007년 10월 현재 4,394명 을 송출했다. 이는 고용허가제 도입 10개국 중 가장 많은 노동자를 한국에 송출하고 있는 수치이다. 베트남 공공송출기관 해외노동자센터(OWC)에 따르면 베트남 인력송출 비율이 다른 송출국에 비해 높은 이유는 한국인 사업주들이 베트남노동자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006년 7월 24일, 양해각서 유효기간 2년이 만료되면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 한국 노동부 장관은 이를 갱신했다. 양해각서에는 1) 송출비용

산정내역의 사전제공 2) 입국준비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전산정보 공유 확대
3) 고용허가제 현지홍보 강화 등 송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3) 고용허가제에 따른 베트남 노동송출과정

해외노동자센터(OWC)는 신문, TV등 대중 매체를 통해 고용허가제를 홍보한다. 64개 지방 노동사무소에서는 한국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전한국어시험에 대한 홍보를 맡고 있다. 고용허가제 신청방법이나 절차 등은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한국어능력시험(KLPT)이 필수과정으로 도입된 이후 한글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기 전에 해외노동자센터(OWC)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인원을 각 부처와 64개 지방노동사무소에 할당한다. 각 부처에는 총 응시가능인원의 30%를 배정하고, 나머지 70%의 응시인원을 지방노동사무소에 인구수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8,000여명이 시험을 본다고 하지 않았다. 그 중에서 30%를 각 부처에 떼어준다. 국방부가 제일 많다. 그러면 2,400명 정도를 떼어주게 된다. 나머지 5,600명을 64개성에 인구에 비례해서 분배한다. 이 쿼터는 시험 볼 수 있는 쿼터이다. (사례 V5: 산업인력공단 베트남사무소)

각 부처에서는 부처 산하 직업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지역 내 한국으로의 노동송출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한국어시험을 실시한다. 사전한국어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한글학회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각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한글학회의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기 1개월여 전에 실시한다. 사전한국어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한글학회가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베트남 일부 지역에서는 사전한국어시험 시 빈곤층과 국가유공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다.

<그림 4 - 1> 베트남 현지 고용허가제 인력송출 공식 절차

| | |
|---|--|
| 1 | 고용허가제 홍보 |
| 2 | 지방노동사무소 및 각 부처에 한국어능력시험(KLPT) 응시 쿼터 배분 |
| 3 | 지방노동사무소 및 각 부처 산하 직업학교에서 사전한국어시험 실시 |
| 4 | 사전한국어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KLPT) 실시 |
| 5 | 한국어능력시험(KLPT) 결과 발표 및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청서 취합 |
| 6 | 건강검진 실시 및 신청서류검토 |
| 7 | 구직자 명부 작성, 한국으로 전송 |
| 8 | 근로계약서 체결, 사전교육 |
| 9 | 구직자 출국, 주한 베트남 노무관들이 국내 사후관리 담당 |

한국어 시험은 64개성에 나눠서 140~80명 정도로 시험을 치른다. 어떤 지방에서는 2,000명이 신청을 하기도 했다. 시험을 통해 지방에서 직접 선발을 하고, 이후 한국어 시험을 또 다시 치른다. 우대되는 사람(빈곤층, 국가유공자)은 가산점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100점이 합격점이라면 우대되는 사람은 80점을 받더라도 합격을 시켜주는 것이다. (사례 V1: 베트남 해외노동자센터)

한국어능력시험(KLPT)에 합격한 사람은 건강검진을 받은 이후 신청서를 각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다.

해외노동자센터(OWC)는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올라온 모든 신청서를 취합한 후 서류를 검토하여 구직자 명단 데이터를 한국으로 송부한다. 한국의 사업주가 베트남 노동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해외노동자센터(OWC)는 해당 노동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사전교육(정신교육, 한국어교육)을 실시한다.

베트남은 총연장 2,300km에 이른다. 하지만 2주간의 사전교육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이 때문에 북부(하노이), 중부(빙), 남부(호치민)으로 나누어 2주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교통비등의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2주간의 교육과정에서는 한국법과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요구하는 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례 V1: 베트남 해외노동자센터)

한국어교육은 베트남 노동부산하 교육기관에서 담당한다. 이후 해외노동자센터(OWC)는 계약이 성사된 노동자들의 입국 비자를 한국대사관에 신청하고, 이것이 확정되면 항공표 등 기타서류 준비를 진행한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0월 현재 항공료, 비자 발급비, 교육비 등을 포함한 공식 송출비용은 미화 729달러이다. 그러나 베트남 노동부는 공식송출비용을 654\$로 명시하였고, 출국할 때 보험가입료로 500불을 준비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송출비용은) 사업주와 계약이 체결될 때 노동자들은 654\$를 지불하면 되며, 추가로 한국입국후 보험료로 500\$를 마련해서 한국에 입국하고 있다. (사례

V1: 베트남 해외노동자센터)

한국어능력시험이 필수과정으로 도입된 2005년 8월 31일부터 한국어능력 시험이 실시되었고, 2006년에는 4월 9일과 10월 15일에, 2007년에는 4월 22일과 10월 22일에 시험이 실시되었다. 4회에 걸친 한국어능력시험에는 총 25,520명의 인원이 응시했으며 그중 19,534명이 합격을 해서 공식적인 합격율은 76%를 기록하였다. 사전한국어능력시험이 실시된 후에 치뤄진 2007년 4월 22일 한국어능력시험에는 8,142명이 응시하였고 총점 200점 중 120점 이상자(제조업구직대상자)가 5,604명, 60점 ~ 120점 사이의 점수를 받은 자(농,축산업구직대상자)가 2,325명으로 총 합격자가 7,929명에 이르러 합격률이 97.3%에 달했다. 해외노동자센터(OWC)에 따르면 2007년도 베트남구직자명부작성인원은 12,000명이라 한다.

<표 4 - 1>: 베트남 공식송출비용 세부항목

| 구분 | 금액 (단위: USD) |
|-------------|--------------|
| 여권발급수수료 | 15 |
| 비자발급수수료 | 50 |
| 항공료(편도) | 350 |
| 공항이용료 | 14 |
| 건강검진비용 | 30 |
| 사전교육비 | 80 |
| 한국어능력시험응시료 | 30 |
| 이력서증명 | 10 |
| 기타(관리비및수수료) | 150 |
| 총계 | 729 |

출처: 노동부.

4) 고용허가제를 통한 베트남 송출과정의 특징

① 지방노동사무소 및 각 부처에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쿼터 배분

베트남 노동부는 년 간 고용허가제 구직자명부 작성 계획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 접수자 수가 정해지면 한국어능력시험 접수대상자를 각 지방노동사무소 및 각 부처에 적정인원을 할당하고 있다. 접수자 수를 할당함으로써 실제로 구직자명부등재 대상자를 부처 및 지역별로 안배하고자하는 것이 베트남 노동부의 의도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는 총 접수대상자의 30%의 인원을 배정하고, 각 지방노동사무소에는 나머지 70%의 인원을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할당하고 있다. 각 부처에 배정된 접수대상인원은 부처산하 직업학교 학생들에게 배분된다.

베트남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이후에도 군제대자 및 직업학교 학생들을 송출하고자하는 송출 방식의 운영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훈련되지 않은 인력을 해외로 송출하는 것은 선진기술습득 및 이탈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2004년 조사를 해보니 한국에서 일을 하던 연수생이 60%가 이탈을 하였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베트남 정부에서는 한국으로 송출하는 노동자의 선발기준에 조건을 추가하였다. 그 조건은 첫 번째로 군제대자 일 것, 두 번째로는 대학졸업자 일 것 이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인력은 한국에 송출을 하더라도 이탈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례 V1: 베트남 해외노동자센터)

전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한국에 간다는 것에 대해 베트남사람들에게는 좀 그런 것 같다. 이 나라의 기본적인 해외송출방식은 베트남에서 직업훈련을 시켜서, 어느정도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한국에 가서 더 나은 기술을 배워서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와 베트남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직업학교를 통해 해외송출을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사례 V5: 산업인력공단 베트남사무소)

한국어능력시험 만을 통해 구직대상자를 선발하라는 한국 노동부의 통지에

도 불구하고, 베트남 노동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군제대자 및 직업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어 능력 시험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② 지방노동사무소 및 각 부처 직업학교에서 한국어능력시험(KLPT)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사전한국어시험 실시

각 지방노동사무소 및 각 부처에 배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접수대상자 수에 맞춰 접수가능인원을 선발하기 위해 지방노동사무소와 부처산하 직업학교 단위로 사전한국어시험을 실시한다.

사전한국어시험은 각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해외 노동자센터(OWC)나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글학회 등의 개입 없이 시험을 실시한다. 따라서 각 단위마다 시험문제 및 시험문항수가 상이하며, 시험출제자도 각 단위의 실정에 맞춰 선정하고 있다.

(사전한국어시험의) 문제는 누가 출제하는지 물어봤었다. 한국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베트남인들 중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출제를 하고, KOICA 에서 온 양호선생님, 컴퓨터선생님, 한국어선생님 등이 문제를 출제하고 있었다. 빙폭성에 갔을 때 문제를 출제한 한국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다. 문제를 잘 출제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신경을 써서 잘 출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 시험문제 관리하는 것을 봤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시험문제를 출제만 하고 관리하는 것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 시험 관리가 과연 어떻게 될 지는 장담을 할 수는 없다. (사례 V5 : 산업인력공단 베트남 사무소)

사전한국어시험은 보통 공식 한국어능력시험이 실시되기 1개월 전에 치러지며 각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시험일정에 대한 홍보를 지역신문 및 TV광고를 통해 하고 있다. 사전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료는 하이즈엉 지역의 경우 4만 5천 동으로 조사되었다.

③ 빈곤층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대정책

베트남에서 노동이주정책을 빈곤퇴치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인식한다. 때

문에 노동이주와 관련된 정책들에서 빈곤층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를 우대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 때문에 한국노동부와 30%의 쿼터를 빈곤층과 국가유공자에게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서 30% 쿼터는 무조건 30% 쿼터를 주는 것이 아니다. 학력수준과 한국어능력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사례 V1: 베트남 해외노동자센터)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입장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통한 한국으로의 인력송출에서도 이들 계층에 대한 우대책이 실시되었다. 2004년에 체결한 인력송출 양해각서(MOU)에 빈곤층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대책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2006년에 갱신한 인력송출 양해각서(MOU)에는 한국어능력시험의 통과가 유일한 자격 기준이 되면서 빈곤층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대책의 내용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베트남 노동부는 한국어능력시험이 실시된 이후에도 빈곤층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계층에 대한 우대책의 내용은 지방노동사무소 및 각 부처 직업학교에서 실시되는 사전한국어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송출비용의 일부를 대출해 주는 등 각 지방마다 차이가 있다.

빈곤층과 국가유공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있다. 각 성마다 절대빈곤자, 국가유공자, 군제대자에게 성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가산점을 준다. 베트남은 우리처럼 병역을 의무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대학을 못 갔거나 하면 군대를 간다. 군대 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국가에서 보호해 줘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다. (사례 V5: 산업인력공단 베트남사무소)

빈곤층의 경우는 돈을 대출해준다. 시험을 치를 때에는 별도의 가산점을 주고 있지는 않다. 동등한 조건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고 있다 (사례 V6: 베트남 노동부하이퐁사무소)

2. 노동이주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경향과 실태

1) 모집

① 홍보

베트남 해외노동자센터(OWC)에 따르면 신문이나 방송, 라디오 등 언론매체 및 인터넷을 통해 고용허가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고 하며, 64개 성 단위의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인터뷰 대상자들 중 상당수가 TV나 신문광고를 본 적이 있었으나 이를 통해 고용허가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는 없었다고 했다.

지역 신문과 지역 tv뉴스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으며, 신청시 필요서류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으로 송출되는 인원은 2년에 2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신청자는 많다. 초창기에는 많은 광고를 했다. 하지만 현재는 노동부에 문의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한국에 간 사람들에게서 대부분 정보를 얻고 있다. 때문에 특별히 홍보를 하지 않고 1년에 2번 정도 홍보를 하고 있다. (사례 V6 : 베트남 노동부하이풍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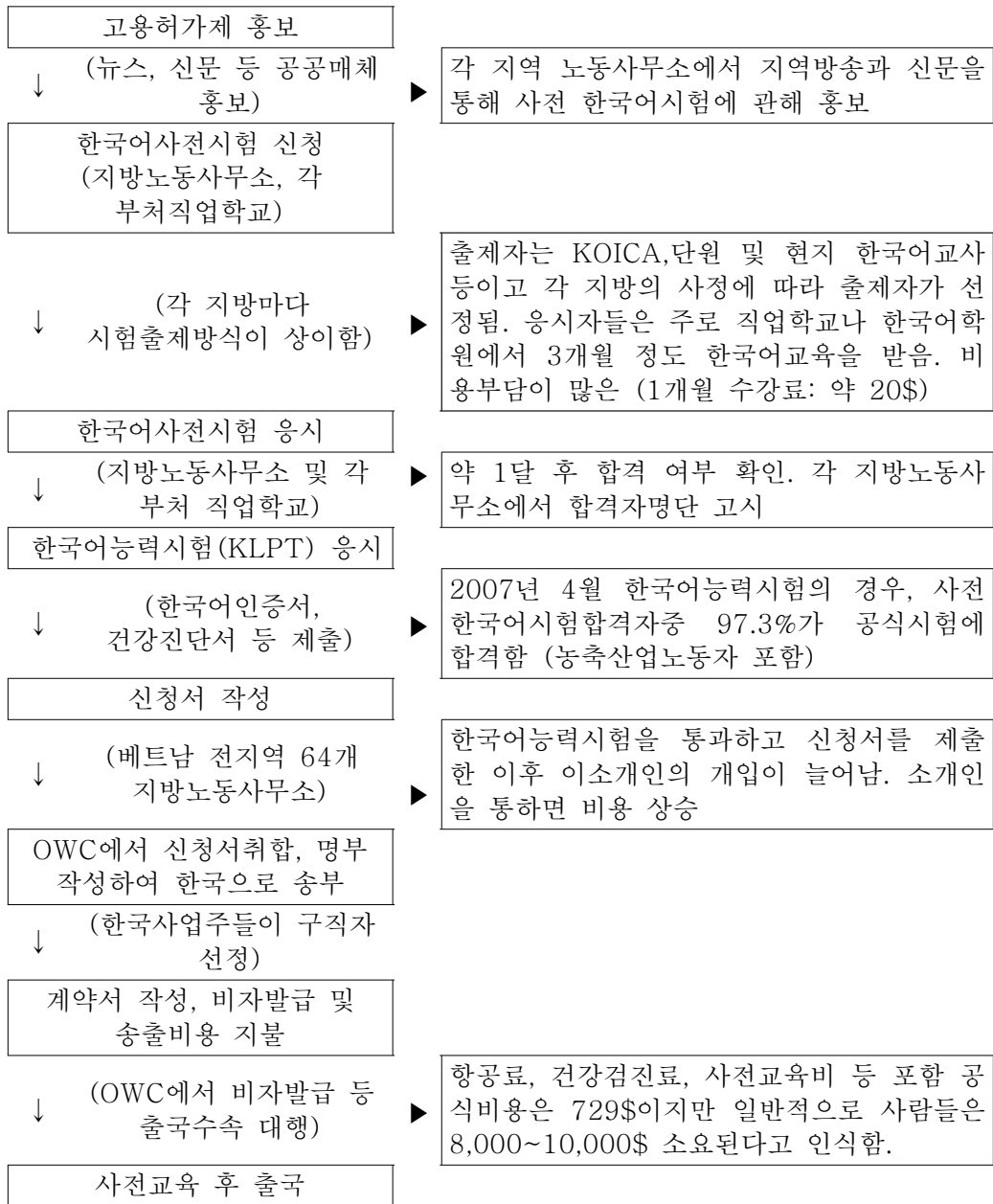
인터뷰대상자들은 주로 개인적인 통로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능력시험이 실시된 후, 시험실시 이전보다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정보가 많이 공개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시험을 응시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역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 방송에서 보고,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알았다. 친형님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알게 되었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가는 절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한국말 증명서가 나와야 한국에 갈 수 있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이즈영에서 한국어 선생님께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사례 V12)

<그림 4 - 2> 송출 공식신청과정과 현지 실태의 차이점

< 공식적인 신청 과정 >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진 점>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원래 시골에서는 그런 것을 잘 모른다.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 한국에 가면 좋다. 한국어시험을 통해 한국에 가는 방법을 현재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사례 V22)

② 고용허가제 신청자격

현재 한국 노동부는 세계한국말인증시험위원회(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Committee, KLPT), 즉, 한글학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한 베트남 한국행 희망자들에게 고용허가제 신청자격을 주고 있다. 듣기 100점, 읽기 100점 총 200점 만점에 12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 인증서를 받을 수 있으나, 현재는 12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인원이라도 8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제조업을 제외한 농,축산업으로의 구직자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공식 한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하기 전에 각 지방노동사무소와 각 부처 직업학교에서 사전한국어능력시험을 치러 응시인원을 선발하고 있었다.

한국행 희망자들은 사전한국어시험 및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비하여 한국어를 습득하기 위해 고액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있었다. 이는 해외노동자센터(OWC)에서도 한국행 노동이주를 위해 공식송출비용 외에도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노이의 경우, 한국어학원의 1개월 수강료가 20\$에 달하고 있으며, 보통 3개월 과정으로 한국어를 수강하고 있어 총 60\$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있었다. 그나마 하노이 이외의 지역의 경우는 한국어 수강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었다.

한국어 학원비는 3개월에 100만동(62\$) 가량이다. 한국어를 배우지는 2개월 정도 되었고, 일단 한국어를 공부한 다음에 하이즈영 노동부에서 첫번째 시험을 보고, 하노이에서 두번째 시험을 본다. 시험은 하이즈영 노동부 시험은 몇 천명정도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 주변에서 시험에 통과해서 한국에 가는 사람은 없다. (사례 V12)

남편은 2007년 초부터 한국 가는 준비를 하기 위해 일을 그만 두었고, 지금은 5,6개월째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 그래서 현재 수입이 없어서 힘들다. 남편 월급은 나오지 않는데, 아이들 학비는 나오고 해서 힘이 든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학원비로 1,000만동(623\$)을 지불했다. 학원비와 교통, 식사비가 포함된 돈이다. (사례 V21)

지금 다니고 있는 직업학교에 (사전한국어능력시험을) 신청을 하면 신청 후 한국어 시험을 본다. 직업학교에서 먼저 시험을 보고 이 시험에서 통과하면 바로 하노이 가서 하노이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학교 학생이 모두 110명 정도 되는데, 하노이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은 한 100명 정도 된다. 나는 아직 시험 보지 않았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50명정도 한국에 간 것 같다. 만약 100명이 신청 했다면, 그 중 50명 정도 갈 수 있다. 이번 에 간 사람은 50명 정도 인데 그 중에 여성은 6-7명 정도이다 (사례 V25)

그 밖에 신청조건으로는 '건강검진통과자', '범죄 경력이 없는 자', '한국에서의 미등록체류경력이 없는 자',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등이다.

2) 신청서 접수

한국어능력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은 전국 64개 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관련서류는 고용신청서, 이력서, 범죄여부에 대한 경찰 확인서, 건강검진 확인서,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이다. 인터뷰 대상자들 중 대부분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한국행을 대기하게 되는 이 과정에서부터 '소개인'이 개입하게 된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의 경우는 신청과정을 '소개인'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 외에는 확실한 한국행을 위한 급행료를 '소개인'에게 지불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인터뷰대상자들은 고액의 비공식비용을 '소개인'에게 지불하더라도 한국행이 확실하다면 한국행을 통해 얻게 되는 급부가 이를 초과하기 때문에 감수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한국행을 위한 비공식 송출비용에 대해 얼마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적게는 6,000\$에서 많게는 10,000\$에 달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으로의 송출비용이 높다. OWC 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중간과정에서 브로커들이 돈을 많이 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OWC

에서는 관련서류를 간소화해서 브로커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례 V1: 베트남 해외노동센터)

한국으로 가는 송출비용은 확인할 수 없다. 똑바로 가는 사람은 적게 들고, 빙빙 돌아가는 사람은 많이 든다. 공식 송출비용은 광고에도 나오지 않는다. 송출비용은 7,000~8,000 달러 정도 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주변에서 그 정도의 돈을 주고 한국에 간 사람이 많다. 돈은 아는 사람에게 빌려서 마련할 예정이다. (사례 V12)

오빠가 한국 갈 때 7천 5백 만동 들었는데, 은행에서 빌려서 갔다. 지금 남동생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한 달 됐다. 이번에 남동생이 한국 갈 때는 9천 달러 들었는데, 오빠랑 부모님이 함께 4천 5백 달러 만들어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은 은행에서 빌렸다 (사례 V24)

한국에 가는 돈이 많이 들지만 준비하려고 한다. 1억 5천 ~ 6천만 동 (9,963\$)을 마련하려고 한다.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겨 돈을 빌리고, 친척들에게 조금씩 빌려서 마련할 생각이다 ... 한국 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 하니깐 그 정도 들 것이라 생각한다. (사례 V21)

3) 신청서 취합 및 명부작성

해외노동자센터(OWC)는 전국 64개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보내온 고용허가제 신청서류를 취합하고 서류 심사한다. 해외노동자센터(OWC)에서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보내오는 신청서류를 취합하지만, 신청서류를 직접 받지 않는다. 해외노동자센터(OWC)가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한국 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하면, 한국 측에서는 사업주들이 필요한 인력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베트남 해외노동자센터(OWC)의 경우 명부작성 과정에 대해 연간 한국으로 송출할 수 있는 인원의 최대량이라고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해외노동자센터(OWC)에서는 한국 노동부가 베트남의 송출쿼터를 확대해주시기를 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도입인원이 결정되는 고용허가제

시스템에서는 연간 송출인원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각국에 정해진 송출쿼터를 배정할 수 없다.

베트남의 한국행희망자들은 구직자명부에 등록되더라도 '소개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한국으로 가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때문에 한국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개인을 거쳐야 하며 소개인에게 고액의 비공식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모든 장사에는 자본금이 필요하다. 어차피 한국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해도 그 정도 돈은 필요하다. 그런데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인데 2,000\$, 3,000\$ 가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다 할거다. 그 정도 돈을 내도 한국에 가도, 일단 한국에 가면 그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은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사례 V10)

(한국으로의 송출비용에 대해) 방송에서 본 바로는 원래 650\$가 들고, 보험 문제로 500\$ 정도 든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베트남에서 보통사람이 절대로 한국에 갈 수 없다. 무조건 중간에 사람이 있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한국으로 가려면 6,000달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사례 V15)

4) 사전교육 및 출국 준비

구직자 명부에서 한국 사업주가 선택한 베트남 노동자는 해외노동자센터(OWC)에서 한국 측에서 보내온 계약서를 확인하고 사업주와 노동계약을 체결한다. 베트남 노동자들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후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은 북부(하노이), 중부(빙), 남부(호치민)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근로계약서 내용, 근로조건, 업무 설명, 한국문화 등을 배우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한국어교육을 한다.

계약이 성사된 베트남노동자들의 출국 준비는 해외노동자센터(OWC)에서 일괄 담당한다. 송출이 결정된 노동자들은 출국 전 다시한번 건강검진을 받는다. 입국한 후에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 노무관들이 이들을 인계하며 사후관리 역할을 담당한다. 베트남 노동자들은 공식송출비용 외에 500\$의 귀국보증보

힘료를 준비해서 출국을 한다.

고용허가제 시행규칙에 의하면 고용허가제로 취업하는 이주노동자는 근로계약 발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보험에 들도록 하고, 귀국보증보험의 경우 80일 이내 가입하여 일시납하게 되어 있다.

3. 한국행 노동이주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문제점

1) 고질적인 브로커 시스템

베트남 사회에 일반화 되어 있는 커미션 문화가 고용허가제 이후 한국으로의 노동이주과정을 왜곡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미화 10,000불 에 달하는 고액의 비공식송출비용은 한국 이주노동의 상징이 되었다. 베트남의 한국행 희망자들은 높은 수입을 위해서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소개인'을 통한 위험천만한 한국행을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행이 좌절된 베트남인들은 그 동안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가기위한 대기기간)10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자고 했다. 그동안 돈 낸 회사 사장이 찾아와서 몇번 만났다. 사장은 대기하고 있는 200명중 몇 %는 자동차기술을 배우고, 몇 %는 전자회사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10일 지난 후에 1,500\$를 숙식비로 공제했다. 그래서 15,000\$만 돌려받은 것이다.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른 사람의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의 경우 현금으로 몇 천달러만 내고 나머지는 통장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중간소개인이 돈을 쓰지 못해서, 돈을 돌려받기 쉬웠다. 한국에 가게 되면 통장에서 돈을 뽑아서 지불하는 걸로 했다. 그렇게 했음에도 돈을 돌려받기 위해 2개월 동안 계속 소개인을 찾아가서야 돈을 돌려받았다. 나와 같이 통장으로 돈을 지불한 사람은 200명 중에 10명 정도였다. 나머지 사람들은 현금으로 지불했다. 현금으로 돈을 지불한 사람은 돈을 돌려받기가 힘들 것이다. (사례 V22)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으로 이주노동에 성공한 베트남 노동자들을 한국에서의 이주노동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자신들이 투입한 시간

적 경제력 노력으로 인해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16,500\$를 지불하지만 한국에서 월급 700\$에 잔업까지 하면 한달에 1,000\$ 정도 벌 수 있으니, 벌린 돈은 1년 정도면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다녀온 사람이 돈을 갚고 나서도 많은 돈을 벌어난 것을 보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비자 가지고 일하고 계약이 끝나면 미등록으로 일을 하면 된다 (사례 V22)

또한, 높은 송출비용으로 인해 베트남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서 노동하는 3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하는 욕구가 높을 수밖에 없다. 2007년 6월 1일자로 고용허가제 재고용조치가 실시되어 3년의 기간이 끝나고 사업주와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다시 3년간 노동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주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노동기간은 3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인터뷰를 한 대부분의 베트남 한국행 희망자들은 6년 이상의 체류를 원했으며, 재고용이 무산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미등록신분을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2) 송출과정의 불투명성

한국어능력시험(KLPT)시행과 관련하여 베트남 노동부는 각 지방노동사무소와 각 부처에 시험응시자 쿼터를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인권연대가 실시한 '2006년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당시 각 부처에 할당된 쿼터가 브로커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는 조사결과에 미뤄보면 한국어시험응시 쿼터에 브로커의 개입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사전한국어시험을 통과한 인원의 공식한국어능력시험의 합격률이 97.3%에 이르고 있어, 한국어응시쿼터에 포함되는 것이 한국행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로커의 개입여지가 더욱 높다고 할 것이다. 한국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응시쿼터에 대한 관리의 투명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별써 한국 간 친구들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국에 갈 수 있었지만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까지 못 간 것 같다. 한국 가려면 돈도 있어

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힘 있는 사람을 알아야 한다. 가는 걸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보통은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그런 사람 알고 있다. 나를 밀어주는 사람은 직업학교 선생님이다. 큰 아버지 아는 사람이다. 큰 아버지 부탁으로 밀어주기로 했는데, 신청이 너무 늦었던 것 같다(사례 V25)

또한, 사전한국어시험에 대한 시험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시험의 공정성이 우려가 된다. 사전한국어시험을 실시한 각 단위에서 한국어 시험 출제, 문제지관리, 시험관리 감독 등이 모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시험관리가 부실한 정황을 현지 주재원이 목격한 바가 있는 등, 전반적인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전한국어시험과정에서의 외부개입의 여지도 높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미 언급했다시피 공식적인 한국어능력시험의 합격률이 97.3%에 이르고 있어 사전한국어시험이 실질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공식 한국어능력시험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겠다.

사전시험에 합격하면 거의 다 합격하는 것이다. 120점 이상이라면 평균 65~7%대로 보고 있는데, 농축산업, 건설업 등으로 가는 사람들의 경우는... 200점 만점에 60점이상이면 뭐... 찍어도 맞는 수준 아닌가(사례 V6: 산업인력공단 베트남사무소)

제3절 결혼이주

1. 한국행 결혼 이주의 경향과 특징

베트남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1986년 개혁개방이후 글로벌 경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서 성장해왔다²⁸⁾. 시장

28) 1994년 미국은 베트남에 취했던 경제적 제재 조치를 해제하였고, 1995년 베트남은 ASEAN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2000년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면서 급속히 글로벌 체제로 편입된다. 이 과정에서 국영기업의 사유화가 일어나고 사기업이 도입

경제의 도입으로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하던 주택, 교육, 의료 서비스가 사유화되고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족은 경제적 생존이라는 짐을 떠안게 되었는데(Kelly, 2003:11), 이러한 상황은 여성들, 특히 저학력 농촌 여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

농업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여성의 참여 비율이 높은 반면 소득은 낮아, 베트남 전체 노동자의 약 57%가 농업에 종사하지만 GDP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하다²⁹⁾. 더욱이 국제결혼의 주요 송출지역인 메콩 델타 지역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2003년 남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80%인데 반해 여성은 64%에 불과하다. 이 지역은 여성의 실업률도 높아 같은 해 남성의 실업률이 3.27%인데 반해 여성의 실업률은 7.29%였고, 연령별로는 20세에서 24세에 이르는 결혼 적령기 여성의 실업률이 14.73%로 가장 높아 평균 실업률의 3배에 이른다(Gender Statistics book, 2004 : 50 - 53, 131 - 133)³⁰⁾.

농업은 다른 노동에 비해 가족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농촌에서의 생활은 필연적으로 여성의 육체노동을 요구한다.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고등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젊은 여성들은 농촌에 남아 고된 노동에 종사하거나, 이른 나이에 결혼을 통해 가족노동에 편입된다. 여성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지만, 그들 대부분은 저숙련 생산직 노동이나 카페나 레스토랑, 호프집과 같은 저임금 서비스 부분에서 일하게 된다(UNESCO, 2007: 41 - 43). 한국 남성과 결혼했던 베트남 여성 후인 마이(Huynh Mai)

되었으며, 국가 소유였던 토지가 개인들에게 할당되고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었으며, 다국적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진출 하였다.

29) 2005년 7월 베트남 전체 노동력의 56.8%가 농업 분야에 37%가 산업 분야에 6.2% 서비스에 종사하지만 2006년 베트남의 GDP중 농업 분야는 20%, 산업 분야는 41.9%, 서비스분야는 38.2%를 차지하였다(CIA 베트남 Fact Sheet 중에서).

30) 2003년 베트남의 성별에 따른 경제 활동 참여율은 남성이 75.8% 여성이 68.5%였다. 성별에 따른 실업률을 살펴보면, 2000년 남성의 실업률은 6.5%, 여성의 실업률은 6.16%로 여성의 실업률이 더 낮았다. 그러나 남성의 실업률은 낮아진 반면 여성의 실업률은 높아져, 2003년 남성의 실업률은 4.4%로 감소한 반면 여성의 실업률은 6.9%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또한 지역 및 성별에 따른 실업률을 살펴보면, 농촌의 실업률은 남성이 6.99% 여성이 7.96%로 도시의 실업률 남성 4.55% 여성 3.86% 보다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실업률은 높아진다(Gender Statistics book, 2004 : 50 - 53, 131).

가 남편에게 썼던 아래의 편지 글은 공적 노동의 시장에서 고된 노동에 참여하지만 경제적 자립을 이루거나 미래를 위한 경제적 자원을 축적 할 수 없는 저학력 여성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당신은 내가 좋아서 나를 선택했고 결혼했다. 나는 결혼하기 전에 호치민에서 일 했다. 당신은 알았다. 당신은 베트남 우리 집에 왔었잖아. 그때 내 가족은 어려웠다. 나는 가족을 위해 힘든 일을 많이 했지만 월급은 적었다. 어떤 때는 냉동식품 회사에서 일했고 어떤 때는 가구 공장에서 일했고, 어떤 때는 고무 공장에서 일했다. 일이 없으면 남의 논밭에서 일했다. 벼도 베고, 탈곡도 하고 벗짚단도 말리고.. 베트남에서 힘든 일을 많이 했지만 생활비로 다 쓰고 남는 돈이 없었다³¹⁾.

국제결혼은 이러한 베트남 여성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 글로벌 체제라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여성의 삶에 대한 기대나 자아인식은 달라지고 있지만, 베트남 농촌 남성과의 결혼은 열악한 삶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재생산할 뿐 '더 나은'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남성과의 결혼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여겨진다.

개혁개방이후 외국 남성과의 결혼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90년 대 중반 이후 대만 남성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해 1995부터 2002년까지 대만 남성 결혼한 베트남 여성의 수는 약 6만 3천명에 이른다(Heeswijk & Kamphuis, 2003: 39). 이처럼 대만 남성과의 결혼이 확산되면서 베트남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 공급하는 결혼 중개 시스템 또한 상업화 조직화 된다. (고현웅 외 2005). 따라서 현재 베트남 중개 시장은 다른 국가와 달리 여성을 대규모로 모집, 기숙, 관리하는 현지 중개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으며, 수백 대 일의 대규모 맞선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베트남 통계에 의하면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약 3만 2천명의 베트남 여성이 외국인과의 결혼하였으며, 주요 대상국은 한국, 대만,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등이다³²⁾. 그러나 최근 한류의 영향과 한국으로의 이주 노동이 확산되면

31) <http://blog.daum.net/mrkimkissoo/11826111>

32) 2007년 8월 22일자 토이체 신문기사 중에서

서 한국은 대만을 앞질러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을 가장 많이 유입하는 국가가 되고 있다.

최근 베트남 결혼 중개 시장의 또 다른 변화는 모집 지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외국인과의 맞선과 결혼은 주로 호치민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하노이를 중심으로 북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이 증가하여, 2005년 하노이 한국 대사관 결혼 비자 발급건수는 720건에서 2006년 1,666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중개비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동안 한국 남성이 약 1천만 원에 이르는 결혼 비용 전액을 지불해 왔지만, 모집 지역이 북쪽으로 확장되면서 북부 지역에서는 베트남 현지 중개업자들이 여성들에게 10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소개비'를 요구하는 새로운 경향 또한 나타나고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대만 남성과의 결혼이 증가하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그 동안 베트남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그러나 전장에서 언급한 2006년 조선일보 기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베트남에서는 한국 남성과의 결혼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확산되었다. 이에 7월 베트남 정부는 명령 69(Decree 69)를 신설 외국인과의 결혼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불법 맞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베트남 여성 연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베트남 정부 차원의 이러한 조치들은 초국적 결혼 시장으로서 베트남 중개의 수익성을 감소시켰다. 새로 신설된 명령 69(Decree 69)는 법무부에 결혼 등록 시 결혼 당사자에 대한 인터뷰를 의무화함으로써 한국인 배우자는 베트남을 한 번 더 방문해야 하고, 이로 인해 경비가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몇몇 지방 정부의 경우엔 외국인과의 결혼 등록을 받아 주지 않거나 일정 기간 중단하였고, 어떤 지방 법무부는 명령 69에 따라 중개업을 통해 결혼한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 등록을 거부하였다³³⁾.

33) 베트남 전문 중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개업자들은 여성들의 주요 송출지역이었던 파이닌, 동탑, 까마우, 동나이등은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 등록 자체를 안 받아 주어 중개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동탑주 법무부는 올해 4월 중개업을 통한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 등록을 거부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부록5>의 '동탑 법무부의 결혼 등록 거부 공문'을 참조할 것.

베트남 결혼 중개 시장의 안정적인 이윤 창출을 위협하는 요인은 베트남 측 뿐 아니라 한국 측에서도 발생하였다.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호치민 영사관에 제출했던 결혼 증명서중 상당수가 위조 서류로 판명됨으로써³⁴⁾, 호치민 영사관과 하노이 대사관에서는 비자 발급 시 구비 서류와 인터뷰를 강화하고, 각 지방 법무부에 직접 연락하여 결혼 증명서 사실 확인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자연히 비자 발급기간이 길어지게 되었다(사례 V2, V9).

위와 같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베트남 중개 시장의 수익성이 감소하였고, 2006년 말 이후 베트남에서 활동을 하던 한국 중개업자들이 캄보디아로 대거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국내에서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캄보디아 여성의 수는 2006년 451명에 불과했지만,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접수된 비자 신청 건수는 1천 3백 여건으로 증가하였다³⁵⁾.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베트남의 중개 시스템과 중개 방식이 캄보디아로 그대로 이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정부가 중개업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개업자들은 베트남에 이어 캄보디아를 새로운 초국적 결혼 중개 시장으로 개척하고 있다.

2. 결혼 이주 관련 법률 및 제도

1) 결혼 관련 법률

34) 주 베트남 한국 호치민 영사관 자료에 의하면 2006년 9월 중순에서 10월초까지 적발된 위조 결혼 증명서는 38건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조 결혼 증명서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위조 결혼 증명서를 통해 비자를 발급 받고 한국으로 입국해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다. 이들은 베트남 본국에서 결혼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35) 2006년 출입국 통계 관리 연보와 2006년 한겨레, 2007년 11월 2일자 기사 중에서

국제결혼에 관한 공식적인 제도와 절차를 규정하는 법은 2000년 제정된 결혼과 가족법이다. 베트남 정부는 2002년 이 법안에 68호 명령을 첨가하여 시행하다가, 다시 2006년 7월 21일 68호 명령의 일부조항을 수정, 보충한 69호 명령을 시행하였다.

현재 베트남에서 결혼에 대한 규정은 결혼과 가족법(Marriage & Family law)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법은 외국인과의 결혼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다. 외국인과의 결혼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결혼은 20세 이상 남성과 18세 이상 여성의 자발적인 의사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누구도 결혼을 강요하거나 속여서는 안 되며(제9조).
- ② 베트남인과 외국인과의 결혼 및 가족 관계는 보호되고 존중되며(제100조 1항),
- ③ 베트남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베트남 법률이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제100조 2항).

2002년 7월 10일 발표된 68호 명령(Decree No. 68)은 결혼과 가족법 중 외국인과의 결혼이나 해외 입양 등 국외 요소와 관련된 조항의 시행 규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 ① 외국인과의 결혼을 통한 인신매매, 노동착취, 성폭행, 기타 착취행위를 금지하고(제2조 1항),
- ②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 중개를 엄중히 금지하며(2조 2항),
- ③ 각 지방 또는 중앙 인민 위원회가 결혼 등록을 담당하고(제3조 1항), 결혼 등록시 건강진단서(정신병, HIV등)를 제출해야 하며(제13조 1항),
- ④ 여성 동맹(Vietnam Women's Union)만이 결혼 지원 센터(Marriage Support Center)를 설치하고 이를 통한 국제결혼 중개만을 허용한다(21조~27조).

특히 이 법은 외국인과의 결혼등록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결혼 등록 신청을 받은 각 지방 법무부는 20일 이내에 인민 위원회 사무실에 7일간 결혼등록을 공지하고,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 결혼등록을 허가 하도록 되어있다(제16조). 따라서 베트남에서 여성 동맹 이외에 결혼 중개는 불법이며, 정부 관계 당국이 이러한 불법 조직을 발견한 경우에는 베트남인과 외국인 모두 벌금형에 처한다(고현웅 외, 2005:1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일보 보도 사건이 베트남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결혼 중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2006년 7월 21일 베트남 정부는 68호 명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 보충한 69호 명령(Decree No. 69)을 시행하게 된다. 69호 명령의 주요 내용은

- ① 정신병 환자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서류 위조를 방지하기 결혼 등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공중 반도록 규정하며(제3조 1항),
- ② 결혼 당사자 양자에 대한 직접 인터뷰를 의무화하고(제16조 1항),
- ③ 불법적인 중개업을 통한 결혼이나 베트남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결혼, 다른 목적을 위한 결혼인 경우 결혼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제18조 2항),

이는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인과 외국인간의 결혼 관련 절차를 강화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2) 베트남 여성 동맹과 결혼 지원 센터

68호 명령에 의해 외국인과의 결혼을 주선하거나 결혼 관련 정보,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위임받은 유일한 기관은 베트남 여성동맹(Vietnam Women's Union)이다. 여성동맹만이 결혼지원센터(Marriage Support Center)를 설립할 수 있고, 결혼지원센터의 결혼 지원 업무는 인도적이고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외국인과의 결혼을 원하는 개인은 센터에 자발적으로 등록하고, 센터의 주요 역할은 이들에게 결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³⁶⁾.

2003년 호치민 시 단 한 곳에 시범적으로 설치되었던 결혼 지원 센터는 2007년 9월 12개소로 증가하였다³⁷⁾. 2007년 8월 여성 동맹은 한국의 비정부 기구인 베트남 여성 문화 센터(Vietnamese Women Culture Center in Korea)와 5년 기간의 협정을 체결하고, “결혼 지원 센터가 국제결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들에 대한 상담, 결혼 지원서 접수 및 사전 정보 조사, 외국인 소개, 법적 행정적인 절차 지원 등 국제결혼 관련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2012년까지 센터를 40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사례 K1)³⁸⁾. 그러나 재정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결혼 지원 센터들은 아직은 실질적으로 국제결혼 지원 업무를 수행할 만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힘들며, 대부분의 결혼은 소위 ‘사이드 맞선’이라고 불리는 불법 중개업자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결혼 지원 센터는 베트남 법률이 인정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최근 여맹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합법적인 결혼 통로를 ‘선점’하려는 중개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통과된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안은 “외국 현지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어 이후 합법적인 통로를 선점하려는 중개업체들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3. 한국행 결혼이주 과정에서의 주요 문제점

베트남의 결혼 중개 시스템은 몽골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조직화 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한국 중개업자와 현지 중개업자간 초국적 하청식 연결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중개의 기본 구조는 동일하지만, 이들 이외에 호텔, 서류대행

36) 68호 명령 21조~27조

37)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남쪽에 9개 북쪽에 3개(하이정, 하이퐁, 하노이)의 결혼 지원 센터가 설립되었다.

38) 베트남 중앙 여맹과 한국의 베트남 여성 문화 센터 사이에 체결된 협정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6>에 실린 <VWCC - 여성 연맹의 협력 하에 진행되는 결혼 절차, 의의> 참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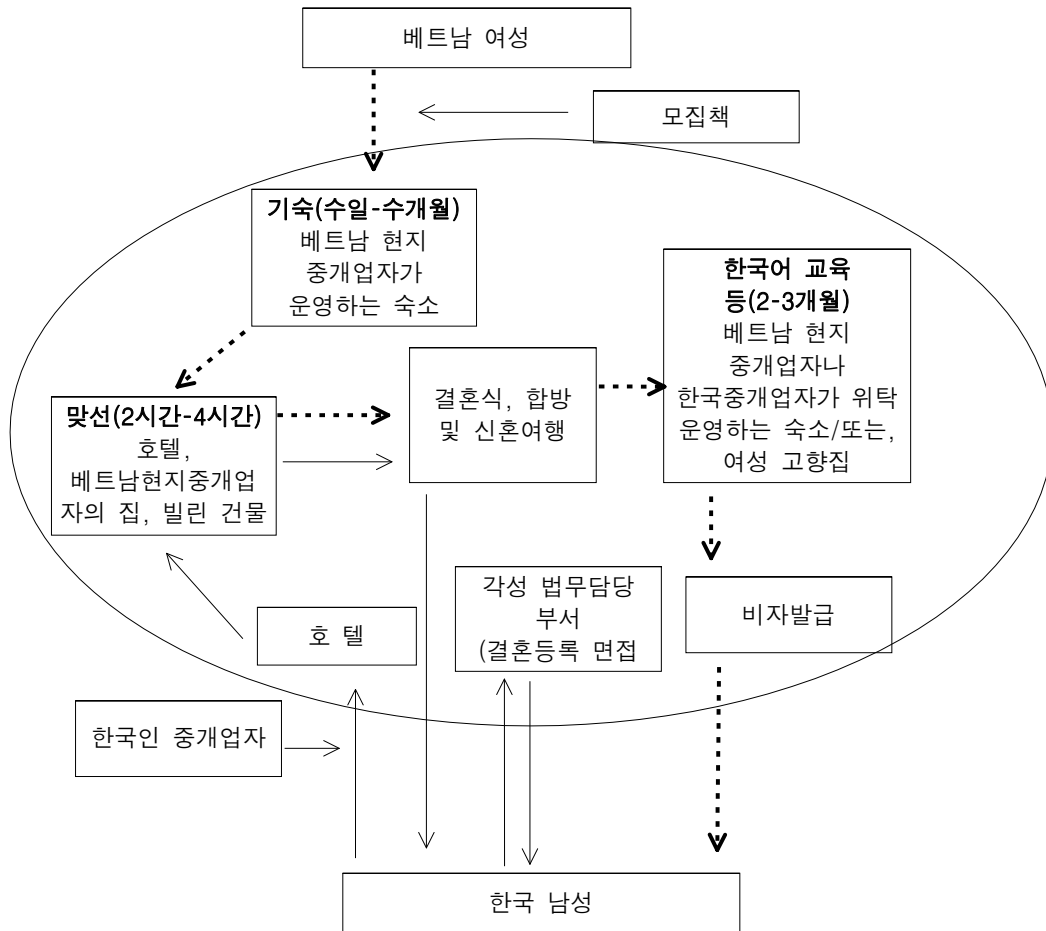
업자, 웨딩 산업, 여행사, 관광업체 등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결합되어 보다 중층적인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1) 결혼 중개 구조

한국 중개업체는 베트남뿐 아니라 다른 국가 여성들과의 결혼을 동시에 중개하는 경우와 베트남 여성만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로 분류될 수 있다. 2003년 이후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베트남 전문 업체의 수가 증가하였지만, 최근에는 이들 업체가 캄보디아 중개도 병행하는 경향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흔히 규모면에서 ‘지사’ 또는 ‘협력업체’를 두고 활동하는 조직화된 중개업체와 개인 중개업자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실제 그 경계는 모호하며 중개방식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갖는 것은 아니다. 한국 중개업자(조직화된 중개업체, 개인중개업자)의 주요 역할은 중개 비용 전액을 지불할 남성 고객을 모집하는 일이다. 이들은 개인적인 인맥을 활용하거나 전단지, 현수막, 인터넷 광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남성을 모집하는데, 최근에는 온라인 상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흔히 ‘지사’로 불리는 베트남 거주 한국인 중개업자와 베트남 현지 중개업자는 여성 모집, 기숙 관리하고 맞선, 결혼식 및 결혼 관련 서류 진행 등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맞선과 결혼 일체를 담당한다. 한국 중개업자가 결혼 성사 건당 일정 금액(350만원 - 420만원)을 주고 현지 중개업자에게 ‘위탁’ 내지 ‘고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협력적인’ 관계일 수도 혹은 ‘위계적인’ 관계일 수도 있다.

<그림 4 - 3>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결혼 중개 과정³⁹⁾



39) 이 도표는 호치민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 지역의 결혼 중개 과정을 나타낸다.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 지역의 경우엔 맞선 전 기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베트남은 대만 남성과의 오랜 결혼 중개 경험을 통해 이미 여성들을 모집, 공급할 수 있는 현지 중개 시스템, 소위 ‘마담 문화’가 발달되어져 있다(고현웅 외, 2005:16). 베트남 현지 중개 시스템은 소위 대마담, 소마담, 모집책이라 불리는 다단계 구조로 이루어지며, 역할에 의해 구분된다. 모집책은 여성들을 모집하고, 소마담은 이들을 기숙 관리하면서 맞선에 동원하고, 대마담은 한국인 중개업자와 함께 맞선을 진행한다. 따라서 대마담은 맞선뿐 아니라 결혼, 서류 일체를 진행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베트남인일 수도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일 수도 있다.

2) 결혼 중개 과정과 중개 과정에서의 문제점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은 배우자 선택과 결혼식을 위한 1차 방문과 결혼등록에 필요한 인터뷰에 참석하기 위한 2차 방문⁴⁰⁾ 두 번의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흔히 ‘관광형 맞선’이라고 불리는 결혼 일정 자체는 짧게는 3박 4일에서 보통은 5박 6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속성’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베트남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중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베트남 현지 여성의 모집과 기숙 관리

국제결혼의 주요 송출지역은 남부의 경우에는 Tay Ninh, Can Tho, Dong Thap, Ca Mau, Tra Vinh, Bac Lieu 등 호치민 주변이나 메콩 델타 지역의 농촌 마을이고, 북부의 경우에는 하노이, 하이퐁, 하이정 인근의 시골 마을이다. 모집된 여성들은 대부분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가사나 농업에 종사하던 19세에서 25세까지의 젊은 여성들로, 베트남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국가와 달리 베트남은 현지 중개업자들이 여성을 기숙, 관리하면서 맞선에 동원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뚜쟁이’라고 불리는 모집책은 호치민 주변이

40) 2006년 제정된 명령 69호는 베트남에서 결혼 등록 시 결혼 양 당사자에 대한 직접 인터뷰를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결혼식을 마치고 귀국한 한국 남성들은 인터뷰를 위해 베트남을 한 번 더 방문해야만 한다.

나 메콩 삼각주 지역의 농촌 마을에서 외국 남성과 결혼 할 여성들을 모집한 후 호치민 시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마담에게 인계하고, 자신이 모집한 여성이 결혼이 성사되는 경우 소정의 커미션을 받는다.

여성들은 호치민 시에서 마담이 운영하는 숙소에서 맞선을 보며 생활하는데, 결혼이 성사될 때 까지 기숙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 걸린다. 그런데 맞선 전 기숙 기간 동안 여성들은 신체 이동의 자유를 제한 받을 뿐 아니라, 기숙 자체가 일종의 '부채 연속'의 상황을 만들어 낸다. 현지 중개업자들은 여성이 숙소에서 머무는 동안 생활비를 '빚'으로 계산하다가 성혼이 되면 남편에게서 받는 '지참금'에서 제한다. 생활비가 자동적으로 '부채'로 전환됨으로써 여성들은 중도에 맞선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며, 오랜 동안 숙소에서 생활한 여성이라면 생활비는 이미 갚기에 너무 큰 '빚'이 되어 여성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인 거부권마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어떤 여성은 4개월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기다리다가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선보는 중간에 포기하면 하루 밥값을 계산하여 내놔야 해요. 한 1000 원 정도. 한 달에 삼 만원 정도 더 자세한 내용은 잘 모겠어요. (마담한테) 주민등록증 맞기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지 못해요. 밥값 가져가야 주민등록증 받을 수 있어요. 저도 계속 선을 보았는데 합격하지 않으니깐 계속 마음이 불안했어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려서 밥값 내기도 힘들고 해서 눈 딱 감고 결혼 했어요.” (고현웅 외, 2005: 29)

그러나 남부와 달리 북부의 경우에는 맞선 전 기숙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맞선 당일 전문 모집책은 이미 모집해 놓은 여성들을 맞선 장소로 동원한다. 봉고차를 이용해 수십 명의 여성들을 한꺼번에 맞선 장소로 이동시키는 경우라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야 한다. 자신의 딸을 한국 남성에게 소개해준 한국인 중개업자와 함께 3년간 중개 활동하는 온 베트남 현지 중개업자는 북부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의 모집과 맞선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각 동네마다 결혼할 여성들을 모아 주는 아줌마들이 있다. 5-6명 정도 있는

데 이들과 함께 일한다. 혼인이 성사되면 여성을 데리고 온 아줌마에게 회사에서 200만동을 주고, 아줌마들이 이 중에서 50만동을 나에게 준다.... *사장(한국인 중개업자)이 한국 남성들과 오는 날짜를 말해 주면 아줌마들에게 연락하고, 여성들을 모아 주면 (모집된 여성들과) 함께 하노이로 간다. 최근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노이를 가는데, 갈 때는 하이퐁, 광린, 하이정 등지에서 30명에서 100명의 여성들을 모아서 간다. 차를 임대해서 가는데, 여성이 100명일 경우에는 버스 3대를 임대 한다. 이렇게 여성들을 버스에 태우고, 하노이에 도착하면 새벽 4시이다. 그리고 맞선은 6시부터 시작 된다 (사례 V18).

중국과 달리 베트남의 경우엔 그 동안 남성 고객이 중개 비용 전액을 지불하여왔다. 그러나 최근 북부 지역으로 모집지역이 확장되면서 북부 지역 현지 중개업자들이 여성들에게 1천 5백 만동에서 3천 만동(100만원에서 200만원)의 중개비를 요구하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인 중개업자들이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결혼 중개 시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남성에게 받는 중개 비용을 낮추었고, 이로서 이윤이 감소하게 된 현지 중개업자들이 여성에게 소개비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이윤을 보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중개비를 마련할 수 없는 가난한 여성들은 집이나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이자가 높은 사채를 빌려 비용을 마련하며, 이는 결과적으로는 결혼 과정에서 여성들이 그 구조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강제적 기제로 작동한다.

200만원을 빌려서 결혼식이 끝나고 5일 이내에 소개자(베트남 현지 중개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100만원은 소개자에게 주는 돈이고, 나머지 100만원은 (결혼등록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하는데 사용하였다. 만약에 이 돈을 주지 않으면 한국에 갈 수 없다. 또 소개자는 베트남에서 남편과 만날 때, “남편에게 이야기 하면 절대 안 돼... 만약 이야기 하면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하지 못해”고 협박했다. ... 돈이 없어서 부모님이 돈을 빌렸다. 100만원이면 한 달에 2만원, 200만원이면 한 달에 4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이미 돈을 빌려서 내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 한국에 가지 않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한번 돈을 내면 만난 남자가 싫더라도 한국에 꼭 가야 한

다. 돈을 내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다. 도망가더라도 그 돈을 어떻게 갚겠는가... 한국에 와서 내가 소개자에게 돈을 주었다고 했더니, 남편은 처음에 믿지 않았다. 남편은 “왜 돈 줘? 여기서 한국 소개자에게 다 약속했어. 아내는 돈 낼 필요 없어.” 남편과 시어머니는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했고, 내가 매일 “돈돈돈” 한다고 무시했다. 많이 속상했다. (사례 K7)

또한 위 여성의 이야기처럼 입국 후 여성들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만들어 낸다. 대부분의 국제결혼 부부들은 결혼 초기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부족과 언어적 소통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빈번한 오해가 발생하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의 ‘돈 요구’는 부부 간 갈등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여성들은 높은 이자 때문에 빚을 갚아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에 시달리지만, 남편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가정불화로 전환되곤 한다.

② 맞선과 합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 법률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 중개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주선하는 맞선과 결혼은 항상 공안의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히 2006년 이후 불법 결혼 중개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인 중개업자가 주관하던 불법 맞선이 공안에 의해 단속되는 사건이 수차례 발생하였고, 이는 Thanh Nien News, Peace and Freedom, AFP과 같은 베트남 국내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⁴¹⁾. 이 사건들은 인신매매로 간주되지는 않았지만, 베트남의 NGO 그룹은 “중개업을 통한 결혼은 많은 경우 노예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인신매매로 범주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고 지적한다(MRSC, 2003:33). 실제 올해 7월 베트남에서는 126명의 젊은 여성들을 싱가포르 남

41) Thanh Nien News 2007년 4월 10일자, 4월 23일자, 9월 24일자, 10월 17일자 Peace and Freedom 2007년 4월 10일자, AFP 2007년 9월 23일자는 모두 베트남 공안이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인 중개업자가 주관하던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불법 맞선을 급습해 단속하고 현지 중개업자를 구속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Peace and Freedom 2007년 4월 10일자는 이를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로 규정한다.

성과 결혼 시켜 준다고 모집 한 후 싱가포르의 나이든 남성이나 '장애'남성에게 팔아넘긴 베트남 현지 중개업자 여섯 명이 인신매매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⁴²⁾.

보통 맞선은 남성의 도착 다음날 오전부터 이루어지며, 임대 건물이나 중개업자의 사무실이나 뿐 아니라 호텔이나 레스토랑이 맞선 장소로 이용된다. 맞선은 대마담의 총괄적인 지휘 하에 진행되며, 그와 거래하는 소마담들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여성들을 맞선장소로 이동시키는데, 이 때 동원되는 여성의 수는 대마담의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맞선에서 남성 고객은 적게는 20명에서 30명, 많게는 200명에서 300명의 여성들과 맞선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 맞선은 마담들이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의 여성들을 기숙 관리하면서 맞선에 동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맞선의 형식은 다양하여 여러 명의 남성이 한 방에서 함께 맞선을 보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맞선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2시간에서 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

맞선은 차례로 2명에서 10명의 여성들이 들어오면 남성이 마음 드는 여성을 선택하고, 1차로 선택된 여성들을 중 다시 마음에 드는 여성을 선택하는 2차 선택, 2차로 선택된 여성들 중 또 다시 여성을 선택하는 3차 선택 등 단계적인 '남성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여성은 소외된다. 여성에게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선택한 남성의 선택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만이 허용되지만, 앞서 언급한 '부채 연속'으로 인해 이마저도 행사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이처럼 젠더 불평등이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극대화된 맞선은 여성에게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밖에 없다. '대만 남성과 결혼한 마을 언니들이 친정 부모님에게 새 집도 지어드리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외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례 25는 맞선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친구들이랑 같이 기숙사 있다가.. 다른 기숙사도 있어요. 기숙사 많아요. 한 백 명, 백 오십 명. 친구들이랑 남자들 선보러 오면 갔다 왔다하고. 맞선 볼

42) BBC News 2007년 7월 7일자 보도

때는 두 명씩 두 명씩 (차레로) 들어가 봐요. 남자가 맘에 안 들어 하면 나오고, 또 두 명씩 들어가고 그렇게 해요. 남자들이 “좋다”고 하면 기분 좋아요. 기뻐요. 남자가 좋다고 안한 친구들은 울고... (왜 우는 거예요?) 시집 빨리 가고 싶고 빨리 가면 엄마 아빠 도와주고, 맘에 안 들어 하면 울어요. 나도 운 적 있어요. 남편 만나기 전에... 나는 싫는데 남자가 맘에 들어하면 속상해서 울어요. 또 저는 그 사람 좋았는데 딴 여자 맘에 들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 울어요. ‘내 인생은 언제 좋은 남자 만나나’ 그것 때문에 울었어요... (사례 K27)

차별적인 맞선 상황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이러한 감정들은 상황에 의해 구조화되는 감정, 어떤 특수한 지위를 가지는 감정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임을 무시하고 타인의 ‘선택의 대상’이 된 자아의 존재를 승인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들이기 때문이다. 위의 이야기처럼 이 준비물을 마련할 수 없어 ‘결혼’이라는 가장 무력한 방식으로 국경을 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선택권 없이 일방적으로 선택을 당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맞선에서의 무기력은 고통을 수반하는 경험이 된다.

이처럼 베트남에서 맞선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방식이나 짧은 시간 안에 배우자 선택이 ‘강제 된다’는 점뿐 아니라⁴³⁾, ‘불충분한 정보’ 혹은 ‘허위 정보’ 제공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몽골과 마찬가지로 맞선에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거의 주어지지 않으며, 정보가 부재하고 한국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여성들은 극단적인 폭력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올해 6월 천안에서 남편의 무차별적인 폭력에 의해 사망한 20세의 베트남 여성 후인 마이(Huynh Mai)의 남편은 폭력 전과 6범이었지만, 그녀는 결혼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⁴⁴⁾.

앞장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중개 과정에서 여성의 몸은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근원적인 출처이기 때문에, 여성의 육체는 상품화된다. 신체적 조건보다

43) “일생의 반려자를 선택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더욱이 물건을 고르듯 수십 명의 여성들을 세워놓고 맞선을 보는 방식은 곤혹스러웠다.” (2007년 7월 26일자 joins.com에 실린 국제결혼 한 한국 남성의 이야기)

44) <http://video.naver.com/2007082408011670007> 경향신문 2007년 7월 7일자, 한국일보 2007년 8월 21일자 기사 참조 할 것

는 경제력이 우선시되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몸’ 그 자체로 상품화되는데, 중개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산부인과 검사’는 이를 극단적으로 상징한다. 중개업자들은 베트남 법률이 요구하는 건강검진 이외에 출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산부인과 검진을 받도록 하는데, Thanh Nien News 2007년 4월 23일자는 맞선 과정에서 한국 남성에게 의한 여성들에 대한 ‘몸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여성의 처녀성을 확인하기 위한 이와 같은 산부인과 검진과 몸 검사는 중개 과정에 깊게 각인되어져 있는 가부장제적인 이데올로기를 드러낼 뿐 아니라, 여성 또한 고유한 인격을 가진 존재임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여성 인권에 대한 침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는 중개업자에 의한 ‘처녀막 재생 수술’이라는 또 다른 인권 침해를 낳는다⁴⁵⁾.

③ 결혼식과 결혼 등록

현재 중개업체가 주선하는 결혼 절차는 증명서 발급이전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합방’을 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있으며, 이는 공식적인 결혼 절차의 하나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되기도 한다. 중개업자들은 “한국에서도 혼인신고 전에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지 않나? 결혼식 올리면 합방하는 것이 베트남의 전통”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실질적으로 합방은 결혼 당사자인 여성과 남성이 자신의 결혼의사를 번복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 이용되며, 중개업자는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합방을 강요한다.

신혼 방에서 잠자리가 어떠했는지, 다음 날 아침에 꼭 확인을 한다. 첫 날밤에 여성이 잠자리를 거부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남자 친구가 있거나.... 아님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한국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같이 지내는 몇 일 동안 성관계 갖는 여부를 유심히 지켜보기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

45) 한 베트남 여성의 경우엔 한국남성과 선을 보고 합방을 하였으나 한국으로 돌아간 남성이 초청하지 않아, 이후 중개업자가 돈을 대주어 처녀막 재생수술을 하였다. 베트남에서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 돈 20만원을 내고 이혼수속을 한 후 다시 한국인 중개업자가 주선하는 맞선에서 현재의 남편과 맞선을 보고 결혼하여 2005년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고현웅 외, 2005 :35).

려고 하기도 한다. (사례 K28)

이처럼 사적인 문제이자 성인 당사자들의 자율성에 맡겨져야 할 합방을 공식적인 중개 절차의 한 단계로 만드는 것은 단속의 위험 뿐 아니라 다양한 피해와 부작용을 낳을 위험을 지닌다. 아래의 사례는 결혼 증명서 발급 이전의 합방이 결혼 당사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 준다.

숙소에서 생활을 할 때 한국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후 초청장을 보내지 않아서 임신한 채로 혼자 베트남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성을 본적이 있어요. 그 여성은 임신 4개월이었는데, 베트남에서 미혼모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고현웅 외, 2005:36)

④ 결혼 후 입국 전까지 교육과 기숙 관리

배우자 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으로 입국할 때 까지는 약 2개월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개업자들은 다시 이 기간 동안 숙소에서 성혼이 된 여성들을 기숙, 관리한다. 중개업자들은 “이러한 기숙 관리는 한국으로 입국 전 한국어와 한국 음식과 문화를 배우는 기간”이라며 남편들로부터 별도의 ‘교육비’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체계적인 입국 전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더욱이 한국 중개업자들은 베트남 현지 마담들로부터 “신부가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을 경우나 한국으로 입국 후 3개월 이내 무단가출하는 경우 신부 부모가 3천 만동(약 200만 원 가량)을 변상하고, 부모가 변상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부를 관리하고 있던 현지 중개업자가 변상 한다”는 내용의 불법 각서를 받는다(고현웅 외 2005: 37, 138). 따라서 베트남 현지 중개업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여성들을 더욱 엄격하게 감시, 통제하며, 이 기간 동안 여성들은 신체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한다.

결혼 통역 일을 3번 정도 해 주었다. 하노이에 있는 한국인이 사장인 회사인데, (결혼이 성사된) 베트남 여성들이 3개월 정도 합숙을 한다. 관리는 하는 사람은 베트남 여성인데, 베트남 여성들과 함께 합숙을 한다. 하노이에 있는

이 회사는 여성들이 집에도 가지 못하게 한다. 만약 여성들이 고향집에 가야 하면 관리언니가 따라 간다. 베트남 여성이 시장을 가도 관리 언니가 따라간다. 관리 언니가 따라가는 이유는 다른 남자를 만나면 복잡해지기도 하고 (여성들이) 마음을 바꾸면 안 되기 때문이다. (사례 V17)

그러나 위와 같은 '불법 각서'의 문제는 단순히 신체 이동의 자유가 제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아래의 이야기처럼 이는 궁극적으로는 맞선에서 자신을 선택한 남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성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결혼 후 의사를 번복할 수 없는 구조적 강제로 작동한다.

베트남에서 나를 선택한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한국으로 오는 것을 포기할까도 생각했으나 서류가 다 된 상태에서 내기 혼인을 파기 하면 1,500만 (약 100만원)동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포기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사례 K29)

입국 후 남편으로부터 일상적인 폭력을 당했던 한 베트남 여성은 '한국에 들어와서 3개월 안에 별다른 이유 없이 집을 나올 경우에는 친정부모가 2,500달러를 내야 한다'는 계약서 때문에, 남편에게 맞은 날이면 버스를 타고 몇 시간 거리에 있는 한국인 중개업자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몸에 든 멍을 보여 주어야 했다⁴⁶⁾.

결국 현재 베트남의 중개 방식은 현지 중개업자에게 소개비를 내기 위해 진 빚 뿐 아니라 맞선 전 기숙과정에서는 생활비가 '빚'으로 계산됨으로서, 또한 성혼 후 기숙과정의 불법 계약서 체결로 여성들은 이중, 삼중의 부채 예측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 안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신에게 강제되는 다양한 요구들을 수용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고찰한 바와 같이 이주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여성들은 중개업자에 의존해 국경을 넘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은 상품화될 뿐 아니라, 통제와 강요, 부채 예측, 착취와 폭력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위험을 지닌다. 또한 최근 불임인 한

46) <<http://www.sarangbang.or.kr/bbs/view.php?board=hrweekly&id=252&page=6&category1=21>> (인권운동사랑방『인권 오름』에 게재되었던 사례 중에서)

국인 부부에 의해 대리모로 사용되고 이혼 후 베트남으로 돌려보내진 투하씨 사건⁴⁷⁾에서 드러나듯이, 현재의 중개 방식은 인생의 반려자를 만난다는 의미로서의 결혼이 아니라, 단지 돈을 내고 한국 가부장제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동력'을 사오는 방식으로 손쉽게 악용될 가능성을 지닌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의 중개 방식 자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 '못한' 남성들에 대한 온정주의적 정서와 결혼 이민자 사회 통합 담론에 가려져 피해 여성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겨지고 있다.

4. 결혼 이주 후 정착 과정에서의 문제점

1) 한국 입국 후 한국인 중개업자에 의한 '사후 관리'의한 통제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의 역할은 단순히 베트남 여성과 한국인 남성을 소개시켜 주는 것에 멈추지 않고,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입국 후에 이들 부부들의 초기 정착과정에서 '사후관리'의 이름으로 이들의 관계에 개입한다.

10조. 결혼생활 정황에 대한 책임 및 사후관리

신부가 한국에 입국한 후 결혼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황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단 갑의 원인제공 없이 신부가 입국 후 2개월 내에 무단가출하여 1개월 이상 행방을 모를 때는 갑은 200만원의 경비를 부담하고, 을은 갑의 결혼을 재추진한다. 갑이 재 결혼을 원치 않을시 현금 환불은 없다. 을은 갑의 원활한 결혼생활을 위하여 1년간 사후 관리의 차원에서 통역업무를 지원한다. (고현웅외 2005:137)

위의 계약서에도 나타나듯이 그 '사후관리'의 의미는 주로 '통역업무'⁴⁸⁾를

47) 한겨레 2007년 7월 6일자, 7월 17일자 기사

48) 조사자료에 의하면,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은 결혼이후에 민원이 발생하면 응답자의 78.3%는 부부에게 화해할 것을 설득한다고 답하였고,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방법은 전화상담이 전체 응답에 69.4%에 이르렀다. (한건수 외 2006:58 - 61)

지원하는 것으로, 이들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주 역할은 결혼 초기 단계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해 주기 위한 역할 (한건수의 2006:60)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후관리'의 주 목적은 중개업자들이 계약서 내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일정기간(3개월-6개월) 어떤 이유에서건 여성들의 이탈을 막거나, 이들 부부가 합법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여, 자신들의 이윤을 보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은 친절하게 남편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여성들을 '강제하는 방식'을 교육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협박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돈을 목적으로' 도망가기 위해 '결혼할 수 도 있다는 편견에 면역력이 약한 일단의 남성과 그 가족들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여성들을 억압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남편은 나를 계속 때리면서 힘들게 했다. ...나는 회사 사람에게 신랑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으니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한 적이 있었는데, 회사 사람은 결혼을 할 때 신랑이 돈을 많이 들었는데... 왜 그러냐며 화를 내었다'(설동훈외 2005:117)

친정식구들에게 시택전화번호를 알려 주지 못하게 한다. 친정에서 한국에 오는 연수생과 같은 사람들에게 전화번호를 주고 전화를 한번 해 보라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 한국인 중개업자 - (김민정 2006:10)

누가 신분증을 뺏고 싶어서 그랬나....중개 한 사람이 (여성이) 도망갈지도 모른다고 신분증 등을 보관해 두라고 했다. 우리가 그냥 달라고 하면 주지 않을 거니깐 미스터 박에게 줄 거라고 하면 된다고 시켰다. - 한 시택식구 - (김민정 2006:10)

중개업자들은 여성들이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렵고, 모국으로부터의 정서적인 사회적인 연결망을 잃은 상태에서, 한국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보가 없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여성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기도 한다.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베트남 출신 여성들에게 나누어 준

자료의 일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3. 한국에서 무단가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⁴⁹⁾

- 한국 생활 중에 문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마담에게 도움을 청하면 문제해결에 반드시 도움을 줄 것이다.
- 본인이 임의로 무단가출을 하면 한국에서는 위장결혼으로 판단하여 형사고발되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만약 무단가출로 검거되어 형사처벌을 받으면 한국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 참고로 한국은 베트남과 달리 경찰청 범인 검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무단 가출자는 쉽게 검거될 수 있음을 명심 할 것

이러한 사실과 다른 정보들로 인하여, 특히 가정 폭력 등의 심각한 위협에 노출된 여성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2)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 폭력의 일상화 그리고 절망

국제결혼중개과정은 결혼과정에서 고액의 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한 남편과 그 가족은 여성을 '교환 가능한 존재'로 격하 시키고 '자신의 귀속된 존재'로 인식하여 상식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못한 일들이 가능하게 한다. 고현웅 외(2005)는 국제결혼중개업의 중층적인 하청구조가 여성의 결혼 선택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결혼과정 자체에 존재하는 권력의 위계화는 이후, 여성들의 결혼생활 전반에 다양한 폭력 상황을 만들어 낸다. 가정 폭력은 한국사회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지만, 한국사회 내에서 자신들을 지지 해주는 인적 사회적 연계망을 가질 수 없는 외국 여성들은 한국남성의 잦은 폭력에 노출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남편은 자주 저녁에 운동을 하러 간다고 나가 밤 12시가 넘고 새벽이 되어

49) 자세한 내용은 <부록7>을 참조할 것

서야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나에게 욕을 하고 때리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나를 대한다. 평소에는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다가 밤이 되면 성관계를 요구한다. ...내가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그는 내 뺨을 때리거나 발로 엉덩이를 차고 목을 조르거나 한다. 만약 남편이 더 힘을 주게 그렇게 한다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여경순 2006:101)

어떤 경우에는 '성관계의 강요'의 도를 넘는 '성도착증'같은 행태를 보이는 사례도 있다. 성적인 경험이 거의 없는 20대의 젊은 여성은 남편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강간'을 혼자서 견뎌야 한다. 왜냐하면 국제결혼중개업자나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편이 요구하는 성관계를 거부하면 머리채를 끌고 강제로 베란다로 내 쫓았고 추운 겨울에도 이불 한 장 없이 그곳에서 자라고 한다... 제일 무서웠던 것은 남편이 밤에 성관계를 요구할 때였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무르고 입으로 빨아달라고 해서 너무 무서워 무릎을 꿇고 빌기도 여러 번 했다. 야한 비디오를 보고 여러 체위를 요구 했으며 이리로 돌리고 저리로 돌리고 360도로 돌리면서 비디오와 똑같이 해 달라고 요구한다... 싫다고 하면 때리고 옷을 다 찢어 버린다. 남편은 동물 같다.(김민정 2006:9)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은 자신이 어떤 형태로 취급되어 지는 지에 대해 인식을 하지만, 이들의 인식은 그들이 처해진 '힘의 약세'로 인해 그저 '강요된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한국에 온지 2달 만에 이혼을 했다. 남편은 시댁의 지시에 의해 이혼한 것이다. 남편은 나를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매일 성관계를 요구 하였고, 어찌다가 피곤해서 안 된다고 하면 밥상과 의자를 던지면서 마구 화를 내었다. 그리고 남편은 자신의 삼촌에게 연락을 했고, 삼촌은 소개자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부부 생활을 거부 한다고 다른 여성을 소개 시켜 줘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나 보고) 이혼을 해서 마음대로 살던가, 아니면 함께 살려면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하던가,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웃긴다는 생각이 들어 '헛웃음' 이 나왔다. 마치 주인이 하인 대하듯 하는 느낌이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시댁식구들과 합동으로 마구 화를 내고, 고모들은 위협을 하고... 짐도 챙기지 못하고 이혼을 했다. (사례 K2)

국제결혼을 통해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으로 한국에 입국한 여성들 중 일부는 이러한 일상화된 유형, 무형의 폭력으로 절망하여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남편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⁵⁰⁾

(한국에 입국하여)일 년이 지난 지금 나의 몸무게는 10kg이나 줄었다. 나의 결혼생활에 희망이 없음을 느끼고 너무 슬펐다. 암울한 결혼 생활을 계속할 자신도 없고 부끄러워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나는 죽고 싶은 생각이 두 번이나 약을 먹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번다 남편에게 발견되어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가서 살아났다. (여경순 2006:102)

5. 귀환 이후의 문제점

1) 공적인 지원 부재

① '강요당하는' 협의이혼

200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남성과 이혼을 하는 베트남 여성의 수는 2005년에 289건이던 것이, 2006년에는 610건으로 111.1%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이혼한 외국인 처의 전체 이혼 중, 이들의 평균 동거기간은 3.2년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혼을 하는 것으

50) 나는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많이 노력했어요. 따뜻한 가족을 원했어요. 당신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나도 다른 여성들처럼 남편에게 잘해 주고 싶었어요... 나의 꿈은 한국에서 행복한 가족과 슬플 때나 기분이 좋을 때, 어려울 때 서로 의논하는 것이 예요... 내가 당신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정을 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아요...(남편에게 살해된 베트남 여성, 죽기 전날 쓴 편지 공개 - 오마 뉴스, 2007년 8월7일)

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혼 건수의 증가는 이들 여성들의 이혼과정과 관련하여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이들 여성들이 협의 이혼을 할 때,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협의이혼이 이루어 졌는가하는 부분이다.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 아마도 더 노력을 했더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베트남으로) 돌아 온 것을 후회한 적은 없다. (사례 V30)

위 사례와 같이 자신이 선택에 대해 후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과 중개업자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여성들의 취약한 사회적 연결망, 심리적인 취약함과 만나면서 여성이 '협의이혼'을 강요당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시댁식구들과 합동으로 마구 화를 내고, 고모들은 위협을 하고... 짐도 챙기지 못하고 이혼을 했다. (사례 K2)

'남편은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돌아가려면 이혼과 낙태를 하고 돌아갈 것을 강요하였고, 여성은 낙태한 다음 날 협의이혼을 하고 같은 날 비행기로 베트남으로 돌려 보내 졌다.(고현웅외 2005:71)

협의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혼여부를 신중하게 선택하게 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혼 숙려제도 내 '협의 이혼 전 상담제도'⁵¹⁾는 가끔씩 이들 여성들을 하루라도 빨리 귀국시키려는 남성과 그 가족들에 의해 악용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51)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전에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는 협의이혼 전 상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을지 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주일 후로 확인일을 지정받게 되고 상담을 받는 경우에는 확인일을 지정하는 기간이 3주일에서 1주일로 단축됩니다.

<http://suwon.scourt.go.kr/suwon/sosong/sosong_09/sosong_09_01/index.html>

‘협의 이혼 전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통역인이 없었던 사례도 있었다.(김민정, 2006:19)

특히 협의이혼 당사자가 협의이혼 확인 후 국외로 영구적으로 출국할 경우 비행기표등과 같은 소명자료가 있으면 숙려기간제도 적용의 예외로 인정이 되는 현재의 관행은 사회적,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역부족인 이들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다. 이들 여성들이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남편이나 가족의 이해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높다.

② 이혼과 이혼신고의 어려움

어떤 경우는 베트남 내에서 이혼하는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또는 현실적으로 베트남 내에서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발급이 가능하지 않은 한국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 어떤 경우는 한국에 있는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이혼을 하고 또는 하지 못한 채 돌아간 여성들 중 일부는 베트남에서 이혼신고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베트남에 귀국한 이후 ‘기혼여성’인 상태로 3년을 지낸 귀국 여성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인터뷰 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협의이혼을 했음에도, 이혼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받지 못해 아직 이혼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혹시 이혼에 도움이 될까 보관하고 있었다며 면접자에게 보여준 서류 중에는 한글로 된 협의이혼 판결문이 있었다.

이 서류(협의이혼 판결문)이 무슨 서류인지 몰랐다. 한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혼했다는 증명서인지 알지 못했다.... 이 서류를 가지고 (베트남)시청에 있는 공무원에게 물어 보았는데, 이혼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영사관에 물어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 한국어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해서 아직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사례 V30)

이혼판결문을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을 한 서류가 있더라도 베트남에서 이혼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도 있는데(V27), 이 경우는 베트남 주 정부 이혼 담당 관서에서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한 판결문의 진위 여부를 주 호치민 한국 총

영사관에 가서 다시 증명을 받아 오라고 했다. 그러나 영사관에서는 이혼여부가 기재된 '호적등본'을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 여성은 한국에서 알던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을 통해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한국 내 호적관청에서 호적등본을 발급할 때 남편 또는 본인이 아니면 발급이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이미 베트남에 귀국한 경우에는 여성스스로 남편의 도움 없이 호적등본을 발급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영사관의 '호적등본'요구는 현실에 맞지 않은 행정관행으로 보여 진다.

이혼을 하지 못하고 돌아간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많은⁵²⁾ 돈을 변호사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베트남에서 이혼을 할 수 없고,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남편이 이혼해 주기를 바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거부 하거나, 재판을 통해 이혼을 했더라도 관련 서류를 남편이 베트남 여성에게 보내 주지 않는다면 여성이 베트남 내에서 혼자의 힘으로 이혼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베트남에서 이혼신고를 하지 못한 여성들은 자신들이 앞으로의 새로운 삶을 선택할 기회를 제한받게 되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한다.

한국에서 돌아 온 후에 대만에 일하러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혼을 안했기 때문에 가지 못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이혼을 해야 한다. (사례V29)

베트남에서 이혼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다거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지금 일하는 공장에서 재봉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 가서 일 할 기회를 주었는데 이혼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가지 못했다. 빨리 베트남에서 이혼 수속을 하고 싶다. (사례V30)

3)'아이와 함께 하기'위한 이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업적인 국제결혼중개업의 성격 상 여성들이 일

52) 2005년에 연구자가 만난 한 귀국 베트남 여성은 베트남에서 혼자 이혼을 하는데 700만동(약 430\$)을 지출하였다고 함. 이는 귀국한 여성(사례28)의 월급이 80만동으로 이 여성의 9달치 월급과 맞먹는 비용임.

상적인 폭력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가출, 이혼 등을 선택 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는⁵³⁾, 자녀와의 이별을 두려워 하며 이로 인해 여성들은 이혼 등의 차선택을 결정하는데 심각한 제약을 받는다.

남편은 새벽에 돌아와 나를 심하게 구타했다. 아이도 울었다. 남편을 피해 방문을 잠그고 있으면서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보다 일찍 이혼 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아이 생각을 해서라도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국적을 취득하지도 못했고 남편이 이와 관련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만들 수 있는데도, 남편은 도와주지 않았다. (사례 K26)

한국에서 한국 국민의 배우자로 산다는 것은 한국국민인 남편이 어떠한 심성을 가졌는가에 달려있다.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의 규정으로 인해 여성들은 자녀와 함께 살 권리마저 박탈당한다.

현재,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은 이혼할 때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이주여성에게 증명해야 하고, 또는 이혼할 때 자녀에 대해 '친권자⁵⁴⁾'자로 지정돼야 한국 내에서 합법적인 지위가 보장된다.

그러나 성적, 언어적 폭력과 같이 물리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나 언어적인 한계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남편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또는 자녀에 대한 '친권자'로서 지정 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들 여성들은 이혼 한 후에는 한국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귀국준비'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귀국을 해야 한다.⁵⁵⁾

53) 2007년 통계청자료를 보더라도, 2006년에 이혼한 결혼이주여성 중 7.7%는 이혼 당시에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이혼한 베트남 여성 610명 중 45명이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4) 국적법 간이귀화와 관련된 법 조항인 제6조 2항 4호에 의하면, 그 배우자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양육'의 의미는 간이귀화를 심사하는 법무부에서는 '친권'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보여 진다.

55)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관한 체류지침 (법무부 2005. 9.25) 3. 체류허가 방법 및 처리 절차....나.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이혼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나 양육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서 체류하

사례 K26인 여성은 이혼소송에서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하려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져야했다. 여성에게는 베트남으로의 귀국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체류연장만이 가능하였고, 이는 곧 아이와의 이별을 의미했다. 결국 여성은 아이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만난 또 다른 여성 역시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이혼을 하고 싶었으나 이혼은 자녀와의 영원한 이별⁵⁶⁾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⁵⁷⁾ 더 이상 남편과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여성은 이혼을 선택하는 대신 아이와 함께 베트남으로 귀국하였다.

남편 집을 나온 후에, 한국에서 아이와 함께 살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나 여자 혼자 힘으로 (한국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 힘들었다. 한국에서 한 달을 별면 모두 쓰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이의 기억에 남고 싶다.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아이는 금방 엄마 존재를 잊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이를 아빠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은 거의 없다. 지금 생각으로서는 아이가 나중에 커서 대학생 때 까지 잘 키우고 싶다. 아이가 10살이 넘어서라도 아빠에게 가겠다고 하면 아이의 선택이니깐 말리지는 않을 것이다.(사례 V37)

현재의 출입국 관리법 상으로는 이 여성은 남편과 재결합 이외에 자력의 방법으로 한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낮다.

더욱이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도, 이혼 이후 자녀의 친권자가 친

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체류허가 *국내의 결혼동거 기간이 2년 미만일 때 1회1년 범위 내 체류허가, *국내의 결혼동거 기간이 2년 이상일 때 1회2년 범위 내 체류 허가 (공감 2007:223 - 재인용)

56) 현재의 출입국관리법상, 이혼을 하고 돌아간 여성은 경제적인 조건 등이 되지 않으면 한국으로 '본인의 힘으로' 재입국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57) 이주여성들이 이혼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에 대한 친권문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아이는 한국 사람이 키워야 한다는 인식과 아이는 좀 더 잘 사는 나라에서 커야 한다는 등의 일반인의 인식으로 이주여성들이 재판을 통한 친권 획득은 현실적으로 이들 여성에게는 큰 모험이다.(김민정2006:16)

권자로서 능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사망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현재와 같이 국적취득 전 자녀가 있는 이주여성의 출국조치는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녀를 본국으로 귀국시키는 과정에서도, 자녀들은 자신의 아버지와의 또 다른 이별을 경험한다.

4) 심리적인 어려움: 나쁜 기억, 가난 그리고 ‘수근거림’

남편과 헤어져서 베트남으로 돌아간 후에도 여성들은 한국에서의 폭력적인 경험으로 인해 많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상처를 많이 받았고 마음이 많이 아픈 경험이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다 털어 놓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많이 아프다.(사례 V29)

이런 아픈 경험을 한 여성들에게 귀국 후 가족과 주위로 부터의 정서적인 지지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옆에 가족이 있으니깐 괜찮다. 엄마는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수 없었다면 베트남으로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그리고 기쁘다고 했다.(사례V30)

베트남에 돌아오니 주위에서 왜 돌아왔는지 물어보기도 하지만, 당당하게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해 주었고, 지금은 주위에서 잘 도와준다. 형제들이 7남매가 있는데, 서로들 푹푹 뭉쳐서 서로 잘 도와주고 있다. 만약에 내가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면 형제들이 서로들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살고 싶다.(사례 V31)

여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는 주위에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가족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도 취약한 상황에 놓여진다. 조사과정에서 만난 귀국여성 중 한명은 자신의 현재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다.

너무 가난하고 외롭고 슬프다. 꿈에서도 무서운 꿈을 꾸다.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더라도) 남편과 같이 사는 것은 무섭다. 그러나 시아버지가 같이 살아 준다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사례 V28)

귀국한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주위에서의 ‘수근거림’이다. ‘돈 때문에 국제결혼을 하더니 그 나라에 가서 무슨 일을 당했구나’ 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잘사는데 너는 왜 베트남으로 돌아왔는가’와 같은 주변의 반응은 단순히 ‘이혼을 해서 친구들에게 창피하다’⁵⁸⁾는 것을 넘어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이 베트남 사회에서 싸워나갈 ‘편견’의 장벽을 잘 보여준다.

호치민 공항을 나올 때 남자직원들 줄에는 서지 않는다. ‘너 한국남자들이 그렇게 좋냐. 이제 베트남도 잘 산다. 얼마 못가서 학대 받고 돌아올 것이다. 그 인물 갖고 왜 가냐? 나이 많은 남자가 그렇게 좋으냐 등등’이런 말 들을 한다. (사례 K25)

최근 몇 년간 국제결혼을 하는 베트남 여성과 관련된 언론 보도는 ‘여성들은 무지하고, 가난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들을 교육하고 보호해 주어야 하지만, 동시에 쉬운 삶을 얻기 위한 열망을 지닌, 물질을 쫓는 기회주의자’라는 것이다. (Belanger, Hong & Wang 2007)

언론 등에 의해 반복되어지는 이들 여성들의 고착화된 몇 가지 이미지는 결국 여성들이 주위에서 피부로 느끼게 되는 ‘수근 거림’으로 현실화 되게 되고 여성들 개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에서 사망한 베트남 여성인 ‘후인마이’씨를 추모하는 아래의 노래에는 이들 여성들에 대한 베트남 사회의 양가적인 감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목 : 불쌍한 내 인생⁵⁹⁾

58) 각각 사례V29, 사례V28, 사례V30

엄마 아파요. 객지에서 왜 이렇게 생활을 해야 하나요. 하느님은 우리의 아픔을 알고 있나요. 낮에는 논에서 힘들게 일하고, 밤에는 성적 파트너, 하느님은 이런 아픔을 알고 있나요. 돈이 눈이 멀어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요. 고향에도 못 돌아가는 내 인생. 고향 연못물에 목욕하세요. 자기 나라사람과 결혼을 하세요.

59) 연구자는 2007년 9월16일, 한국 여성가족부의 후원으로 국제이주기구와 베트남 여성동맹(Women's Union)이 함께 주최한 '안전한 이주'를 위한 홍보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 이 홍보 활동 중 베트남 지역 여성동맹 회원이 한국에서 사망한 '후인마이'씨를 추모하는 노래를 함.

한국행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과정의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분석



제5장 한국행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과정의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분석

제1절 이주과정과 관련한 국제인권기준과 분석의 틀

1. 이주의 과정과 분석의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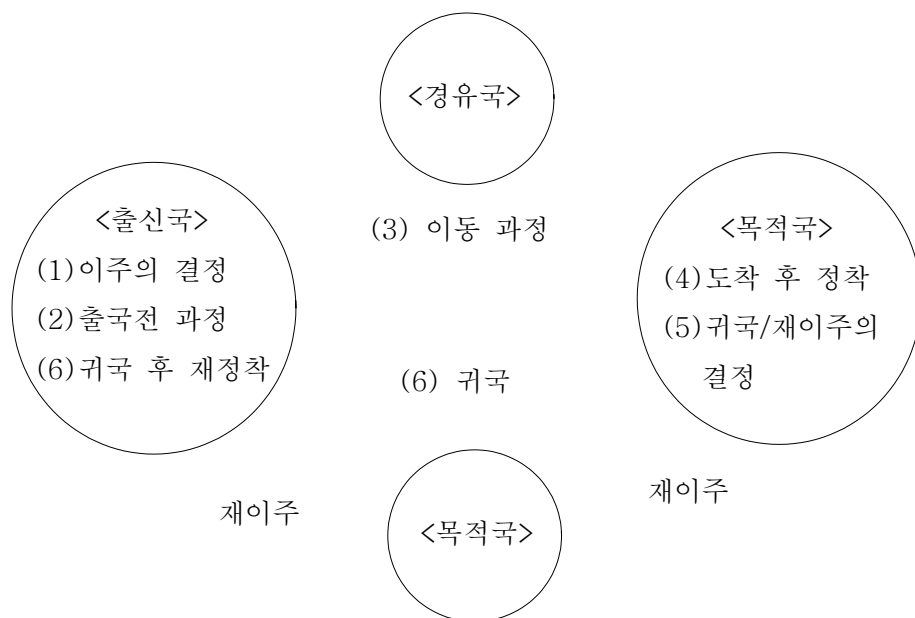
앞서 설명된 몽골과 베트남에서 결혼 혹은 노동을 목적으로 한 한국행 이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제적 이주의 과정은 대체로 다음의 6단계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 (1) 이주를 선택하기까지의 과정,
- (2) 이주준비를 시작하여 출신국(country of origin)을 출국하기 전까지의 과정,
- (3) 출신국을 출발하여 목적국(country of destination)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으로 경유국(country of transit)을 거치는 경우도 있음,
- (4) 목적국에 도착하여 정착하는 단계,
- (5) 출신국으로의 귀국 혹은 제3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하는 단계,
- (6) 출신국 귀국 후 재정착(reintegration)하거나 재이주를 준비하는 단계.

귀국의 결정 및 재정착 단계(5~6단계)와 관련하여 노동이주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 등 이주자가 이주의 선택과정 단계(1단계)에서부터 계획할 수 있는 단계인 경우가 많지만, 결혼이주의 경우 애초에 정주를 계획하고 이주를 선택하는 특성상 이혼 등의 이유로 귀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 몇몇 이주자는 출신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재이주를 선택하여 위의 6개 단계를 다시 반복하기도 한다.

이 보고서는 몽골과 베트남의 현지 방문조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주로 출국 전 단계(2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이때 발생한 문제들이 이후 단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방문조사 중 귀국 후 재정착 단계(6단계)에 있는 이주자들과의 면접의 기회를 통해 이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점 혹은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결과로 이 단계에서 드러나는 실태에 대해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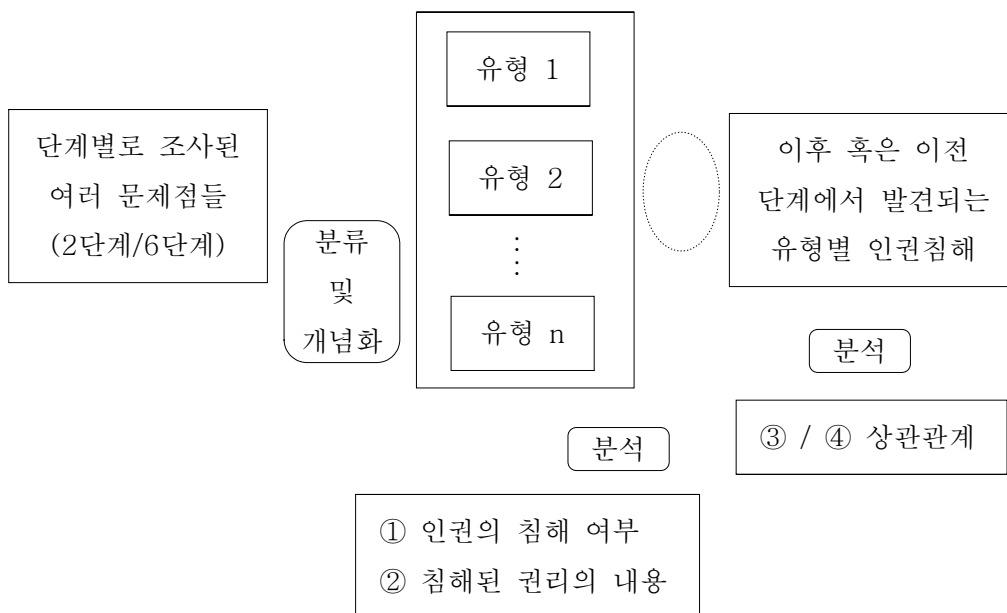
<그림5 - 1> 이주의 과정



이 장에서는 이렇게 발견된 문제점들 가운데 출국전단계(2단계)와 귀국단계(6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개념화하고, 각 유형별 문제점들을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① 인권의 침해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② 어떠한 권리들이 침해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출국전단계(2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③ 이후 단계에서 어떠한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지, 또한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④ 귀국단계(6단계)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를 유발하는지를 분석했다.

한편 분석의 도구로는 국제인권기준 가운데 국제연합(UN, 이하 UN)을 통해 가입 당사국의 이행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춘 7대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활용하였다. 아울러 몽골과 베트남 정부의 국제인권기준 이행 사항에 관하여 UN 현장기구 및 조약기구들이 권고 및 논평한 사항, 기타 이주자 인권과 관련된 주요한 국제조약, 선언 등이 검토되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이하 ILO) 협약 가운데 노동이주와 관련된 일부 협약도 검토되었다.

<그림5 - 2> 분석의 틀



2.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관련 주요 국제인권기준

다수의 국가들이 폭넓게 가입한 대부분의 주요 국제인권조약들은 인권보호의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이주자들은 국제인권법의 보호를 받는다(Mattila 2001: 54). 물론 정치참여권(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5조)이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권리(같은 조약 제12조) 등 해당국의 시민이나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으로 제한되는 권리들도 있지만, 자기결정권(같은 조약 제1조 및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조),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기타의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위에서 언급한 두 개의 같은 조약 제2조 및 제3조)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권리는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보장받는 권리이다.

따라서 많은 이들에 의해 국제관습법의 일부라고 이해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과 함께(홍성필 2007: 29) 7대 주요 인권조약으로 흔히 불리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이하 경제·사회·문화권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하 시민·정치권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CERD, 이하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 이하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CRC, 이하 아동권리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MW, 이하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모두가 노동이주자 및 결혼이주자들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마지막의 이주자의 권리를 다루는 협약은 이전에 만들어진 다른 대부분 조약들의 권리 사항들이 집대성되어 있으며, 이주자의 권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중요한 조약이다(UN Document E/CN.4/2006/73, para. 21).

또한 이탈리아 팔레르모(Palermo)에서 채택된 인신매매방지의정서라 불리는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억제·처벌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이하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신매매’의 정의 역시 UN의 주요 인권보장 시스템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검토된다(UN Document E/CN.4/2006/73, para.22).

동 협약의 또 다른 보충의정서인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육상·해상 및 항공에 의한 이주자의 불법이민 방지 의정서(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이하 불법이민방지의정서) 역시 일부 검토될 수 있다.

이주자인권에 관한 UN 특별보고관은 그의 보고서에서 ILO가 채택한 협약 가운데 일부 조약 역시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ILO협약 가운데 기본적인 인권협약이라고 간주되는 7대 협약⁶⁰⁾과 함께, 특별히 노동이주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고용이주에 관한 협약, 개정(ILO협약 제97호), 이주노동자협약(ILO협약 제143호), 민간고용알선업체협약(ILO협약 제181호) 등이 그러한 조약이다(UN Document E/CN.4/2006/73, para.23).

1995년 중국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과 200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관련 불관용에 관한 세계회의(이하 더반인종회의)에서 채택된 선언 및 행동강령 역시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 및 아동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에서 검토가 되었다.

한편 이주자들이 국경을 넘어 이동함에 따라 이주과정의 각 단계별로 국제인권조약의 관할권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선 이주자가 출신국 내에 있는 이

60) 강제적 혹은 의무적 노동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29호), 집회의 자유와 결사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87호), 결사권과 집단교섭권의 원칙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98호),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00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11호),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38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82호) (UN Document E/CN.4/2006/73, note 3).

주의 결정 및 출국 전 단계(1~2단계)와 귀국 후 단계(6단계)에서는 출신국의 정부가 자국민의 인권보호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국의 국민 혹은 정주민으로서 모든 종류의 권리를 제한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주자가 목적국에 도착해서 귀국 혹은 재이주를 하기 전까지 단계(4~5단계)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제인권조약은 이주자가 체류 중인 목적국이 일부의 권리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출신국 역시 자국민의 보호 차원에서 해외에 있는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주자가 이동 과정 중 경유국을 거치는 경우 이동의 단계(3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유국이 자국의 영역 내에 체류 중인 이주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할 수 있다.

3. 몽골 및 베트남의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 현황

국제인권조약의 경우 해당국이 그 조약에 비준하여 적용이 되면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며, 특히 주요 7대 국제인권조약은 가입당사국의 조약 이행사항을 보고할 의무와 국가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논평 및 권고를 담당하는 위원회(조약기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이 어떠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이주자들이 출신국 혹은 목적국에서 어떠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몽골의 경우 이주노동자권리협약(CMW), 베트남의 경우 이주노동자권리협약(CMW)과 고문방지협약(CAT)을 제외한 주요 7대 국제인권조약에 모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인신매매 금지에 관한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경우 양국 모두 가입하지 않았다. 한편 대한민국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제외한 모든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였으며,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경우 서명은 하였으나 비준은 하지 않았다.

비록 출신국인 몽골과 베트남이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나 인신매매방지의정서와 같이 이주자의 인권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 조약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그 외의 대부분 국제인권조약에는 가입하였다. 이는 이 두 국가

가 자국민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보호에 대한 책임을 자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목적국인 대한민국 역시 이주자를 포함한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즉 몽골, 베트남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이주를 하는 모든 노동이주자 혹은 결혼이주자들은 출신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목적국인 대한민국에 도착해서도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실사 해당국들이 일부 국제인권조약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 내용 가운데 세계인권선언 혹은 그 일부에 규정된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 증진과 보호에 책임이 있다. 일부의 견해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 국제관습법의 일부라고 이해되고' 있고(홍성필 2007: 29, Schachter 1991),⁶¹⁾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인권선언의 전체가 아니라 'a) 집단살해, b) 노예제, c) 살인 및 실종, d) 고문, e) 자의적 구금, f) 조직적 인종차별, g)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침해의 심각한 침해' 등 일부의 내용만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된다는 견해 역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American Law Institute 1987).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 고문방지협약(CAT)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세계인권선언 제5조에 따라 베트남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전히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몽골과 베트남 모두 인신매매방지외정서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세계인권선언 제4조에 따라 몽골, 베트남,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세 국가 모두 이주노동자협약(CMW)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세계인권선언 제24조에 따라 세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의 권리를 가진다.

61) 세계인권선언이 국제관습법의 일부라는 근거로는 대체로 1) 국제연합은 국제연합헌장의 인권조항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참조하였으며, 2) 1968년 국제연합이 주최한 세계인권대회의 결의(테헤란선언)로 세계인권선언이 "국제사회의 회원을 구속한다"고 인정하였으며, 3) 70개 이상의 국가들이 세계인권선언을 헌법이나 주요 법률에 편입하였고, 4) 각국 법원들이 세계인권선언을 국제관습법의 일부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5) 선언의 내용을 담고 있는 후속 조약들로 인하여 대부분의 내용이 법적 구속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들어지고 있다(홍성필 2007: 29).

한편 ILO협약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몽골은 ILO협약 가운데 기본적 인권 협약으로 알려진 주요 7대 협약에 모두 가입한 반면, 베트남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ILO협약 제100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ILO협약 제111호),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ILO협약 제138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 (ILO협약 제182호) 등 4개의 협약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노동이주에 관한 3개 협약에는 양국 모두 가입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7대 ILO 기본인권협약 가운데 베트남과 같은 4개의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노동이주에 관한 3개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표 5 - 1> 몽골, 베트남, 대한민국의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 현황

| 국제인권조약 | 가입연도 | | |
|--|------|------|--------------|
| | 몽골 | 베트남 | 대한민국 |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CERD) | 1969 | 1982 | 1979 |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 1974 | 1982 | 1990 |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 1974 | 1982 | 1990 |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 1981 | 1982 | 1985 |
|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CRC) | 1990 | 1990 | 1991 |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AT) | 2002 | 미가입 | 1995 |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ICMWR) | 미가입 | 미가입 | 미가입 |
|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억제·처벌 의정서 | 미가입 | 미가입 | 2000 (서명) |

출처: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ttp://www.ohchr.org>>

<표 5 - 2> 몽골, 베트남, 대한민국의 이주 관련 주요 ILO협약 가입 현황

| ILO협약 | 가입연도 | | |
|---|------|------|------|
| | 몽골 | 베트남 | 대한민국 |
| 강제적 혹은 의무적 노동에 관한 협약 (ILO협약 제29호) | 2005 | 미가입 | 미가입 |
| 집회의 자유와 결사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ILO협약 제87호) | 1969 | 미가입 | 미가입 |
| 결사권과 집단교섭권의 원칙에 관한 협약 (ILO협약 제98호) | 1969 | 미가입 | 미가입 |
|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ILO협약 제100호) | 1969 | 1997 | 1997 |
|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ILO협약 제111호) | 1969 | 1997 | 1998 |
|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ILO협약 제138호) | 2002 | 2003 | 1999 |
|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 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 (ILO협약 제182호) | 2001 | 2000 | 2001 |
| 고용이주에 관한 협약, 개정 (ILO협약 제97호) | 미가입 | 미가입 | 미가입 |
| 이주노동자 협약 (ILO협약 제143호) | 미가입 | 미가입 | 미가입 |
| 민간고용알선업체 협약 (ILO협약 제181호) | 미가입 | 미가입 | 미가입 |

자료: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ttp://www.ilo.org>>

다음 절에서는 이 같은 국제인권기준 및 노동기준에 근거하여 몽골 및 베트남에서 한국 행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석할 것이다.

제2절 노동이주 과정에서 발견된 인권침해 요소

1. 과도한 비공식 송출비용

노동이주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노동자들이 강요당하는 과도한 송출비용은 이후 목적국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체류를 유지하기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민간모집기관 혹은 송출브로커에 의한 불법적인 비공식 송출비용은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UN Document E/CN.4/2006/73, para.57).

대한민국의 고용허가제 도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공공기관의 송출업무를 통해 불법적인 과다 송출비용을 규제하여 이주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66조는 노동이주자의 모집업무는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나 국제기구가 맡도록 규정하고, 정부의 허가, 승인, 감독 하에서 대리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한국행 노동이주 과정의 관리가 각국 정부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베트남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공식적인 송출과정의 틈새에서 송출브로커들에 의한 비공식 송출비용들이 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례 V11, V21, V22, V23). 뿐만 아니라 과도한 송출비용이 부채가 되어 노동자들이 취업국 내에서 체류초가를 하고 결국 비정규이주 상태에서 권리보호에 취약한 상태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사례 V10, V24).

이와 관련하여 국제법에서도 각국 정부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이주에 관한 협약(이하 ILO협약 제97호) 제2조, 제7조 등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노동이주자의 고용에 관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고용알선업체 협약(이하 ILO협약 제181호) 제7조에서는 민간고용알선업체가 알선업무를 할 경우 노동자로부터는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사업주로부터 수수료 받도록 규정).

2. 공식절차에 대한 정보부족과 송출사기, 직업선택의 제한

위와 같이 이주노동자들이 과도한 비공식 송출비용의 요구에 노출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한국행 노동이주의 공식적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이었다(사례 V15). 고용허가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송출국 및 한국 기관의 정보 확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노동송출 절차에 대한 노동자들의 이해 정도는 국가별 및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사례 V15). 이러한 정보부족의 상황은 브로커들에 의한 각종 송출사기 행위와 노동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사례 M32, V22).

이와 관련하여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제33조에서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권리 및 관련 법률, 관행 등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제69조에서 이주에 관한 잘못된 정보의 유포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ILO협약 제97호 제1조부터 제4조까지 ILO회원국은 이주와 관련된 국가정책 및 법률, 특히 고용을 위한 이주에 관한 정보, 이와 관련한 국가 간의 협정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취업국에 입국하기 전에 자신이 일을 하게 될 직종, 직장, 노동환경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사례 K21, K22, M7, M34). 고용허가제 하에서 노동계약 전 이주노동자가 받는 표준근로계약서(<부록 9> 참조)가 자신이 직업선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공 받는 유일한 정보인데, '업종', '사업내용', '직무내용'이 영어나 한국어로만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설사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하더라도, 대기 중인 이주희망 노동자의 수에 비해 선발되는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한국으로 가려면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특히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 중인 노동자들로부터 이러한 호소를 많이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와 각종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잦은 작업장 이동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작업장 이동의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고용허가제 제도 상 취약한 비정규이주 상태로 빠지게 하는 위험요인이 되기도 한다.⁶²⁾

이주노동자가 출국 전 또는 늦어도 취업국에 입국할 때에 이러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37조, ILO협약 제 97호 제1조부터 제4조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경제·사회·문화권규약의 제6조가 규정하는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3. 균등한 고용기회의 제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며 인종, 성, 사회적 출신, 재산,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이 없음은 세계인권선언 제1조 및 제2조, 시민·정치권규약 제2조, 경제·사회·문화권규약 제2조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인 이념이다. 특히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는 협약 제6조에 관한 일반논평 제18호에서 노동의 접근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a: 209). 또한 ILO협약 중 기본인권협약인 ILO협약 제111호 제2항 역시 고용에 관한 차별철폐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고용허가제를 통한 한국행 노동이주에는 다양한 차별적인 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행 노동이주 희망자의 사전선별 과정에서 구직신청자를 일정 이상의 신장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을 한다고 알려졌다(사례 V24). 이는 제도적으로 차별을 조장하는 사례로 명백한 차별행위이다.

다양한 비공식적 송출절차 및 송출기관의 부패로 인한 과도한 불법 송출비용은 노동이주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송출과정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든다. 심지어 베트남에서는 빈곤층을 우대하기 위해 주어지는 노동이주의 우선권이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었다(이주노동자인권연대 2006).

이러한 관행은 비록 제도적으로 명문화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62) 작업장 이동의 제한에 관해서는 이미 국내 시민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이주노동자인권연대 2006) 참조.

국제인권기준은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가 일반논평 제18호에서 특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주변화 된 개인과 집단의 존엄한 삶을 위해 '고용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당사국의 '핵심업무'로 규정한 것은 그러한 예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6a: 215).

뿐만 아니라 이번 조사를 통해 고용허가제 하에서 여성노동자가 선발되어 한국으로 이주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사례 M6, M23). 한국의 노동이주 정책은 기본적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사업주들의 남성노동자 선호로 여성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고용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⁶³⁾

이와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16호를 통해 “협약 제6조와 관련하여 ... 법적으로, 관행상으로 남녀가 모든 수준과 직종의 직업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가질 것”을 당사국 의무의 구체적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a: 175). 또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일반권고 제25호에서 협약 제4조를 해석하면서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하는 잠정적 특별조치에 고용이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UN document HRI/GEN/1/Rev.7: 282 - 290).

또한 현재 한국에서 시행 중인 서비스업종에 대한 접근권을 중국, 구소련지역 동포로 제한하는 방문취업제도가 여타 국적의 여성노동자의 고용 접근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ILO협약 제11호의 제2조,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1조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진지한 평가가 필요하다.

4. 가족결합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의 문제

이번 조사에서 특별히 몽골에서는 현재의 한국행 노동이주 제도의 가족동반

63)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 등 일부 국가들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한 노동자 선발을 위한 한국어시험 실시 때 여성에게 응시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논의가 되어 여성차별 논란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금지원칙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몽골 노동사회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행 노동이주자의 이혼율이 상당히 높으며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사례 M3).

세계인권선언 제16조, 시민·정치권규약 제23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0조 등에서는 가정을 사회의 기초적 단위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민·정치권위원회는 규약 제23조와 관련하여 일반논평 제19호를 통해 ‘국내 차원에서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가족의 화합이나 재결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UN document HRI/GEN/1/Rev.7: 149 - 50). 또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44조, ILO협약 제143호 제13조 역시 당사국이 이주노동자 가족들의 결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인권에 관한 UN 특별보고관 부스타만테(Jorge Bustamante)는 이러한 가족의 “해체”로 인해 출신국에 남아 있는 아동의 권리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제도적으로 금지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밀항(smuggling) 등 비정규적인 이주방식에 의존하게 되고, 이로 인해 특히 아동은 인신매매 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UN document E/CN.4/2006/73).

또한 아동권리협약 제8조, 제9조, 제10조와 제18조에서는 아동의 가족결합과 부모에 의한 양육에 대한 권리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견해 제6호를 통해 출신국의 외부에 있는 미동반 혹은 분리된 아동의 대우에 대해 상세한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c: 90 - 123).

이번 조사에서도 몽골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의 문제가 다수 제기되었다. 몽골에 부모의 미동반 상태로 남아 있는 아동들의 경우 경제·사회·문화권규약과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건강권(규약 제12조, 협약 제24조, 제25조), 교육권(규약 제13조, 협약 제28조, 제29조), 사회보장의 권리(규약 제9조, 협약 제26조) 등과 관련하여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알려졌다.

비정규 이주의 과정을 통해 한국 내에 체류 중인 이주아동의 수도 상당히 많다고 알려졌는데, 이들 역시 비정규 체류 상태로 인해 위에서 지적한 다수

의 권리들을 누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특히 일부 몽골출신 이주아동들은 경제적 여건과 교육의 부재 등으로 인해 어려서부터 노동에 투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아동노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경제·사회·문화권규약 제10조, 아동권리협약 제32조, ILO의 최소연령협약(ILO협약 제138호)의 규정들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또한 한국 내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시민·정치권규약 제24조와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국적취득, 출생 후 등록 등에 대한 권리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5. 비정규이주에 의한 각종 인권침해의 위험

한편 몽골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한국행 노동이주의 통로가 노동이주 희망자의 수에 비해 턱없이 좁기 때문에 관광 비자를 이용한 비정규적인 방식의 노동이주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례 K14, K23).

불법이민방지의정서는 전문(前文)에서 “이주자를 불법이민 시키는 것(smuggling)은 관련 이주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형사범죄화하고 있다(의정서 제 6조).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역시 제68조와 제69조에서 비정규 노동이주를 규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 이주를 통해 취업국 내에서 ‘불법체류’를 하는 노동자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보호에 있어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는 일반논평 제18호에서 노동자가 비공식경제(informal economy)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선택이라기보다는 생존의 필요성” 때문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당사국들은 공식경제(formal economy) 밖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6a: 208).

6. 기타

이번 조사에서 노동자들이 해외노동이주를 선택하는 배경은 출신국 내에서 생존권의 위협(경제·사회·문화권규약 제11조), 사회보장의 부재(동 규약 제9조), 교육의 기회 부족(동 규약 제13조), 노동의 기회 부족(동 규약 제6조) 등 여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이유로 이주를 선택하지만 이주의 과정에서 오히려 또 다른 권리의 침해에 직면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2007년 몽골에서는 고용허가제를 위한 한국어시험 접수와 관련하여 다수의 인파를 관리하던 경찰에 의해서 폭력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사례 M15, M32, M34). 이러한 문제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시민·정치권규약 제7조와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관리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양국의 정부 간의 협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이주 절차인 만큼 운영의 개선을 위한 양국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제3절 결혼이주 과정에서 발견된 인권침해 요소

1. 혼인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의 침해

남녀가 혼인을 하는데 있어서 양 당사자가 ‘자유로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상호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따라’ 혼인을 결정하고 성립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6조2항을 비롯하여 시민·정치권규약 제23조3항과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1항(b) 등 여러 국제인권기준에서 이러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94년에 발표한 일반권고 제21호(General Recommendation 21)에서 협약 제16조1항(b)에 대해 논평하면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자유로이 혼인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는 여성의 삶과 한 인간으로서

의 여성의 존엄과 평등에 있어 핵심 요소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과 관련하여 “당사국들의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 가난한 여성들은 재정적 안정을 위하여 외국인과 결혼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UN Document HRI/GEN/1/Rev.7: 256 - 7).

이러한 국제사회의 규범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한국형 결혼이주과정 중 혼인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나 완전한 합의에 대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개업자에 의해 맞선이 주선되는 과정에서 한국인 남성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몽골인 및 베트남인 여성들이 자유로운 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몽골에서는 중개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맞선과정에서 소수(2~3명)의 남성이 다수(20~30명)의 여성 가운데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결혼이주 여성들은 대부분 자신이 많은 여성들 가운데 ‘뽑혔다’는 표현을 쓰면서 한국인 남성들에 의한 일방적인 선택권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사례 M17)

베트남에서는 몽골에서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결혼중개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혼을 원하는 한국인 남성들조차 배우자 선택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2~3명의 결혼희망남성들은 하루 동안 100여명의 결혼희망여성을 만나 선택해야하고, 선택이 어려울 경우 결혼중개업자가 선택을 ‘도와주는’ 경우까지 발견되었다(고현웅 외 2005).

이렇게 결혼중개업을 통한 맞선 과정은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맞선대상자 가운데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해야하는 불합리한 관행이며, 이로 인해 혼인 당사자들은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와 강압적인 조건 하에서 배우자 선택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도는 혼인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 인신매매, 예속상태,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

2000년 UN총회에서 채택되고 2003년 발효된 인신매매방지협약의 정서는 기존

의 ‘매춘알선 및 유괴’⁶⁴⁾에 한정되어 있던 인신매매의 규정을 획기적으로 확대시켰다. 동 의정서 제2조에서는 인신매매의 정의를 1) 행위를 규정하는데 있어 “모집, 운송, 양도, 은닉, 인수”로 확대시켰으며, 2) 수단에 있어서는 “위협적 수단, 강제력이나 기타 형태의 협박의 사용, 유괴, 사기, 기만, 권력남용, 취약한 지위의 악용, 비용이나 이익의 수수를 통해 해당인에 대한 지배력이 있는 사람의 동의를 얻는 방식” 등 현재 발생하는 거의 모든 유형을 다 포함시켰다. 또한 인신매매의 3) 목적이 되는 착취를 규정하는 데 있어 “타인의 매춘 혹은 기타 형태의 성착취, 강제 노동 혹은 서비스, 노예제 혹은 노예제 유사행위, 예속상태, 장기이전”을 포함시켰다. 또한 피해자가 위의 착취상황에 동의를 하는데 위에 설명된 수단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사용되었으면 그것은 동의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성폭력에 관한 UN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는 인신매매의 정의에 관하여 위 협약의 정의에 따라 설명하면서, 특히 “결혼, 입양 및 기타 형태의 친인척관계(intimate relationship)”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형태를 지적한 바 있다(UN Document E/CN.4/2000/68, para.17).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과정의 인신매매성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연구를 통해 보고된 바가 있다(고현웅 외 2005, 김민정 2006 등). 대한민국과 몽골, 베트남을 비롯한 다수 국가의 결혼 제도는 ‘형식적’ 상호동의와 법률에 따른 절차를 충족시킨 경우 합법적 결혼으로 인정하지만, 그 결혼이 성립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사적영역’으로 간주하여 국가의 감시나 개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 가운데 목적국에 도착한 이후 성착취, 강제노동, 노예제와 유사한 상태, 예속상태 등에 놓이게 되고, 그 여성이 사기나 기만 등의 방식으로 배우자에 대한 거짓된 정보를 받아 혼인에 적절치 않은 방식으로 동의했다면 이것은 인신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몽골 조사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결혼이주여성이 ‘택시회사 사장이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소개받고 결혼한 남편이 택시 운전기사이고 음주와 폭행이 심한 남성으로 드러난 사례가 그러한 것이다(사례 M30).

64) 1950년에 채택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를 위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제2조.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결혼과정 중 자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님이 결혼중개업자에게 큰 액수의 비용을 지불하고, 결혼 이후 빚이 되어 결국 예속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 역시 국제법상 인신매매에 달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사례 K7).

한편 노예제는 최초의 국제인권협약으로 세계인권선언의 성립에도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1926년 노예제협약에서부터 금지되어 온 기본적인 인권침해이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4조, 시민·정치권규약 제8조에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한편 기존의 노예제에 대한 정의를 확장하여 1956년에 채택된 “노예제, 노예 무역, 노예제와 유사한 제도 및 관행의 철폐에 관한 보충협약⁶⁵⁾에서는 부채에 의한 노예상태(debt bondage), 노예적 형태의 결혼(servile forms of marriage), 아동 및 청소년의 착취와 같은 관행과 제도”를 노예제의 정의에 포함시켰다(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1991).

이 협약은 제1조에서는 “어떤 여성이 자신의 부모, 보호자, 가족 혹은 기타의 사람이나 집단에게 현금이나 호의를 제공한 대가로 결혼이 약속되거나 행해지는” 경우 노예제와 유사한 제도 및 관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노예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UN인권특별절차인 현대적노예제에 관한 UN워킹그룹(UN Working Group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역시 ‘강요에 의한 결혼’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UN Document A/HRC/Sub.1/58/25, para.27).

결혼의 선택과정에서 심각한 부채의 문제가 관련이 되는 경우(사례 K7) 사실상 노예적 형태의 결혼이나 부채에 의한 노예상태에 달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몽골에서는 심지어 결혼중개업자가 결혼 전에 계약서를 통해 이혼을 요구하거나, 결혼 직전에 결혼을 취소하거나 할 경우 거액의 벌금을 내도록 강요하거나, 결혼중개에 소요된 비용의 채무를 명시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부록 4> 참조, 사례 M31).

이렇듯 국제결혼중개업에 의한 결혼이주과정 가운데 국제법상 인신매매, 예속상태,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 등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건들이 몽골, 베트남

65) 몽골 1968년 비준. 베트남, 대한민국은 미가입.

현지조사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한편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여성차별철폐의 이행 사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5차 및 제6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에서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 및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행 인신매매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 하면서, 여성들을 결혼 브로커 및 인신매매범, 배우자 등에 의한 착취와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UN Document CEDAW/C/KOR/CO/6, para.21 - 2).

3.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

한편 몽골과는 달리 베트남의 경우 국제결혼중개업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중개업자들이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여성들을 집단적으로 합숙 관리시키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합숙 과정 중 여성들의 신체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 되는 경우가 많았다(사례 V17). 이러한 사례는 비록 해당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한 결혼이주를 선택하였으나, 그 과정 중에 발생하는 신체의 자유 제한까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 시민·정치권규약 제9조에서는 모든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선언 제13조, 동 규약 제12조는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이러한 조항들이 국가에 의해 형사사건 등의 목적으로 구금되는 경우 가운데 불법적 혹은 자의적인 구금이 발생할 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된다(일반논평 제8호, UN Document HRI/GEN/1/Rev.7: 130 - 1). 그러나 동 규약의 해당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가장 최근에 발표한 일반논평 제31호(General Comment 31)에서 제2조에 따라 “규약상 권리를 보장하라는 당사국에 대한 적극적 의무는 ... 사인이나 사적 단체에 의한 규약 상 권리의 향유를 손상시키는 행위로부터 개인을 국가가 보호하는 경우에 비로소 온전히 수행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HRI/GEN/1/Rev.7: 194).

따라서 국가는 위와 같이 사인(私人)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침해를 국내법을 통해 규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중개업자에 의한 여성들의 신체의 자유 제한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⁶⁶⁾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혼중개업자에 의한 맞선 대기 기간 중 결혼이주 희망 여성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 문제는 이후 혼인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발견되었다(사례 V17). 신체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편 몽골에서 활동하는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여성의 여권 및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을 계약서 상 명시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부록 4). 이러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심각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 제 12조, 시민·정치권규약 제17조가 규정하는 사생활의 침해라 볼 수 있다.

4. 여성에 대한 폭력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는 여성인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룬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이 채택되었다. 행동강령에서는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성차에 근거한 모든 종류의 폭력행위로서 여성에게 육체적, 성적, 심리적 가해나 고통의 결과를 낳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며, 그러한 행위에 대한 위협, 협박이나 자유의 자의적 박탈이 포함되고, 공적 혹은 사적 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UN Document A/CONF.177/20,

66) 한편 기업과 같은 비정부행위자(non-state actor)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인권법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최근 UN 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UN 사무총장 특별대표 러기(John Ruggie)는 국제인권협약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UN조약기구들이 제출한 권고 및 견해를 검토한 보고서에서 “여기에서 논의된 국제인권문서들이 현재 기업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국제인권매커니즘의 비판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UN Document A/HRC/4/35, para.44).

para.113)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폭력에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구타, 지참금과 관련한 폭력, 혼인상태의 강간, 결혼관계가 아닌 사람에 의한 폭력 등이 포함되며, 강제불임 및 강제낙태, 피임의 강제 혹은 협박 등 역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UN Document A/CONF.177/20, para.114 - 7).

또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92년 발표한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일반권고 제19호에서 성차에 근거한 폭력은 “일반 국제법 또는 인권 협약 하의 여성의 인권과 기본권을 향유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무화시키는 것으로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의 해석 하에서 차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폭력으로 인해 누리지 못하게 되는 권리로 생명권,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인간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가족 내에서 평등할 권리,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있어서 획득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열거하였다(HRI/GEN/1/Rev.7: 247).

또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및 제5조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가족 내 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형태 중 가장 악의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남성의 가족에 대한 책임 회피 역시 폭력과 강요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HRI/GEN/1/Rev.7: 249 - 50).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 후 한국에 입국하여 다양한 방식의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에서 역시 구타, 결혼상태에서의 강간, 강제낙태, 남성의 가족에 대한 책임 회피 등의 경우들이 발견되었다(사례 M28, M29, M36).

또한 심지어 결혼이 성립되기 전 혹은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 몽골과 베트남에서부터 결혼중개업자 혹은 배우자예정자에 의해 성관계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사례 M29). 이러한 사례들은 출신국에서 출국하기 전부터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동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5차 및 제6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정부가 “외국인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와 구제방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 및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UN Document CEDAW/C/KOR/CO/6, para.22).

5.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평등권과 가족결합권 침해

한편 동 위원회는 일반권고 제21호에서 협약 제16조1항(e)을 해석하면서 “자녀의 수와 터울이 여성의 생활에 유사한 영향을 미치고, ... 이러한 이유로, 여성은 자신의 자녀들의 수와 터울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요된 임신이나 낙태 혹은 불임시술과 같이 여성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강압적인 관행”을 지적하면서 “자녀를 가질지 여부는 가급적 배우자나 파트너와 상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배우자, 부모, 파트너, 정부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HRI/GEN/1/Rev.7: 258).

이렇게 임신 및 피임 등의 여부에 대해 여성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배우자나 파트너와 상의 하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몽골의 경우 결혼중개업자가 계약서를 통해 여성의 피임의 금지를 강요할 소지가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아래의 내용은 결혼 전에 결혼중개업자가 결혼 당사자 여성에게 강요하는 계약서의 내용인데, 결혼의 성립과 결혼이주의 출국 이전 단계부터 불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요하는 사례이다. 이러한 내용은 협약을 위반할 소지가 많다(<부록 4> 참조).

한편 동 일반권고는 협약 제16조1항(g)를 설명함에 있어 배우자 각각의 일방은 “동 협약 제11조(a), (c)에 규정된 대로, 자신의 능력과 목표에 가장 적합한 직업이나 고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이 결혼 후 목적국에 입국한 이후 결혼생활 중에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사례 K17).이 같은 사례는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17조와 경제·사회·문화권규약 제6조에 따른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이다. 규약에 따르면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련 규정 상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유지 및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남편의 보증을 요구하는 제도는 남편으로 하여금 여성의 대한민국 내 체류자격에 대한 사실상의 결정권을 갖게 함으로써 가족관계에

있어 불평등을 초래하기도 한다(사례 K19).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이 이혼할 때 자녀에 대한 친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체류 및 입국에 제한을 갖게 되고 결국은 면접교섭권마저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사례 V32, K26).

이러한 제도가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를 비롯하여 세계인권선언 제16조, 시민·정치권규약 제23조 등 결혼 후 가족관계의 평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권의 차별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을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7조, 시민·정치권규약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5조,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18조 등 국제인권법에서 가장 강조되는 기본적 인권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이주민과 관련해서는 2001년 더반인종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에서는 “언어 ... 등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데, ... 사법제도에의 접근을 포함하여 ... 여러 문제들과 관련하여 인종적 차별을 종식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UN Document A/CONF.189/12: 16 - 7).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권 가운데 절차의 진행이 ‘이해하는 언어’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적 소수자에 있어 필수적인 권리이다.⁶⁷⁾ 결혼이주여성에 있어 이혼절차는 이후 이주의 과정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것으로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내에서 몽골 및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사례가 발견되었다(사례 M29, V30).

이러한 사실은 또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1항(c)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

67) 시민·정치권규약 제14조3항은 형사절차에 있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보를 받거나 재판 과정 중 무료통역이 제공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형사절차로 한정시켜 이혼과 같은 민사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동 규약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에 따른 권리의 제한적 해석에 대한 반대에 위배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인 해소시의 평등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귀환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재혼, 노동권 등 또 다른 권리의 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사례 V30).

7. 기타

아울러 이번 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이주를 선택하는 배경은 노동이주와 마찬가지로 출신국 내에서 생존권의 위협(경제·사회·문화권 규약 제11조), 사회보장의 부재(동 규약 제9조), 교육의 기회 부족(동 규약 제13조), 노동의 기회 부족(동 규약 제6조) 등 여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이유로 이주를 선택하지만 이주의 과정에서 오히려 또 다른 권리의 침해에 직면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몽골과 베트남 양국 모두 한국행 이주에 대한 열망이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높는데 비해, 현재 한국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이주노동의 수급에 관한 제도 역시 이러한 수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들이 노동이주 대신 결혼이주를 선택하는 경향이 감지되었다(사례 M23). 현 고용허가제 하에서 한국의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절차와 관련한 제도 및 관행이 국제인권법 상 고용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여성차별철폐협약 제11조),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결혼이주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결 론



제6장 결론

본 연구는 몽골과 베트남의 현지 조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노동이주자와 결혼이주자들이 이주를 결정하고 이주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인권 침해의 사례들을 분석하고자했다. 이주는 인간의 생애에 한 순간에 일어나지만 이주 경험과 그 영향력은 이후의 삶의 성격을 결정한다. 이주자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주하지만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권리와 자원의 부재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경험하기도 한다. 노동이주자와 결혼이주자가 모두 출신국에서 생존권의 위협, 사회보장의 부재, 교육 기회 부족, 노동 기회 부족, 성적 억압 등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주한다. 권리가 보장되지 못해 이주를 선택하지만 이주의 과정에서 오히려 또 다른 권리의 침해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각 국 정부는 더 향상된 이주 정책을 제도화하는 노력을 보여 왔다. 2004년 이후 도입된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 또한 '향상된'이주 제도이지만, 송출국의 특수한 사회적 맥락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다. 몽골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오는 노동이주자들은 여전히 민간 브로커들에 의해 과도한 송출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신속한 이주를 위해 급행료 등의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이주를 통해 돈을 벌기 전에 이미 빚을 지게 되는 경제적 예측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한 노동이주자들은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이주 절차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송출 사기를 당함 위험에 노출돼 있다. 무엇보다도 노동 이주자들이 취업 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주로 3D 업종에 집중돼 있음으로써 이들은 계토화된 직업군으로 내몰리게 된다. 또한 여성보다는 남성을 선호하는 고용주의 선택의 결과로 여성들은 한국에 들어와서도 취업을 하지 못해 귀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몽골의 경우 결혼 적령기 남성들이 대규모로 한국에 입국하면서 현지 결혼 시장에서의 성비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주 정책이 송출국에 어떤 영향력과 파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무엇보다도 한국 노동 이주 정책의 반인권적 요소는 '가족이주'를 불허한다는 점이다. 가족결합을 금지하는 한국법은 이주자의 가족 해체를 조장하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

결혼이주의 경우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잠재적 결혼 인구의 지역적 불균형과 저 출산 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결혼중개업자들에 의해 외국 여성들이 조직적으로 '이동'된다는 점에서 국제결혼은 결혼당사자들만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몽골과 베트남에서 조사된 형태의 국제결혼은 '유도된 이주'(induced migration)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즉, 정확하지 않은 거짓 정보와 자유로운 선택이 허락되지 않은 결혼 중개 구조를 통해 여성들은 한국으로의 이주를 유도 당한다. 이 과정에서 혼인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침해를 받는다. 결혼이주자의 경우는 한국으로 이주 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부부간의 사적인 문제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간주되면서 이들이 구조적으로 경험하는 차별, 폭력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비가시화된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못하고 귀환한 여성은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장애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무엇보다도 한국 남성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들의 국적 및 사회보장권의 문제가 향후 두 나라간의 사회 문제로 등장하게 될 소지가 높다.

이주는 지역 간, 국가 간 인간의 이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이주 정책은 타국가의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주자의 인권 문제는 국가 간 협력 사업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 한국과 몽골, 한국과 베트남 등 송출국과 목적국간 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주자의 문화적 특성과 조건에 맞는 사회통합의 방식을 논의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 한국과 몽골은 향후 인권현안에 대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 NGO 들 간의 상호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이주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 민간 NGO들 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사업은 이주의 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초국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로컬에서 유연하고 시의적인 서비스를 이주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민간 NGO들은 이주자들이 경험하는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각 국 정부에게 제안할 수 있다. 또한 UN 등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인권기준에 근거한 협약이나 조약 등을 각 국 정부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신(2007),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몽골학』, 22호, 147~168쪽.
- 경향신문 2007년 7월 7일자 "베트남 새댁 '스무살 閑', 결혼 반년만에 주검으로 지하방서 열흘 만에 발견"
- 고현웅, 김현미, 소라미, 김정선, 김재원 (2005),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 : 베트남, 필리핀 현지 실태조사』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6a),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6b),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6c),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아동권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6d),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국계통계포털 <www.kosis.kr>
- 김민정(2006a)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상담 및 지원활동을 통해서 본 한국살이의 어려움 -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살이., 한국

- 인권재단., 2006년 8월3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김민정 (2006b) "한국의 여성결혼이주자" 2006년 11월2일, <2006년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정기심포지움> “정부의 이주정책 돌아보기와 뛰어넘기” 자료집 pp.65 - P85
- 김민정 (2006c), “이주여성들의 ‘꼬이고 꼬인’ 인생”, <인권오름>, 제27호, 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bbs/view.php?board=hrweekly&id=252&page=6&category1=21>>
- 김민정, 유명기, 이혜경, 정기선 (2006),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39집 1호, pp.159 - 194 한국문화인류학회
- 김선호 (2006), “몽골 ‘한류’의 문화사회학적 분석”, 『몽골학』, 20호, 231~253쪽.
- 김선호 (2005), “한국 온라인 속의 몽골”, 『몽골학』, 19호, 175~198쪽.
- 김선호 (2002), “동아시아의 ‘한류’: 몽골 ‘한류’의 특성과 전망”, 『동아연구』, 42호, 59~72쪽.
-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영옥(2007) “결혼이민자 여성과 다문화가족” 한일연속 심포지움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본 이주 결혼> 자료집
- 김재원(2006) “상업화된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주자의 유입에 관한 정부 정책 고찰”<정부의 결혼이민자 가족 정책 다시보기> 자료집
- 김정선(2007) “공동체 경험을 통해 본 이주 여성의 귀속(belonging)의 정치학 : 한국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들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제9회 서울여성영화제 국제포럼 <제국, 지구화, 아시아 여성들의 이주> 자료집
- 김지은(2006) “적응과 세력화의 경계에 선 외국인 아내들 : 농촌 지역의 베트남 결혼이민자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미간행
- 김지은(2007) “한국인 아내 만들기 : 베트남 여성 사례를 통해 본 결혼이민의 제도화” 비교문화연구 제13집 2호, pp.41 - 72
- 김현미 (2001), “글로벌 사회는 새로운 신분제 사회인가?”, 『진보평론』2001년

참고문헌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2006년 여름호 제70호, pp.10 - 37
- 김현미(2007) “국가와 이주여성 :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족’ 만들기의 갈라지는 희망들” 2007년 11월1일~2일 <지구지역 시대 지식생산과 여성연구의 도전> 학술대회 자료집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 김현재 (2007), “베트남 여성의 한국으로의 결혼이미: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고찰”, <동아연구> 52.
- 김홍진(2007), “체제전환이후 몽골의 거시경제 성과분석과 전망”, 『몽골학』, 23호, 263~289쪽.
- 노동부(2007), 고용허가제 도입노동자의 각 국가별, 성별, 계약체결 현황(10월말 기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접수번호 : 416636호)
- 노충래·홍진주(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서울경기 지역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22호, 127~159쪽.
- 두레방(2005) 『국제인신매매방지과 필리핀 여성이주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필리핀 - 한국 인터넷 프로그램 자료집』
- 레이버투데이(2006), “몽골로 간 노동부장관 1.2부” 2006. 8. 9 - 10. 보도자료.
- 머니투데이(2006), 몽골인 ‘한국취업 티켓’올스톱, 2006. 10. 9일자 보도자료.
- 문경희(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21세기정치학회보 제16집 3호, pp.67 - 93
- 박선영(2006)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 한국법학원 주최 <이주여성과 자녀의 인권> 자료집
- 박환영(2007), “다문화주의와 에스니시티 그리고 유목문화: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회, 한양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주최 국제학술대회 <에스닉과 다문화주의 인류학>, 발표문. 11월 16~17일. 한양대학교
- 박환영 (2006), “탈사회주의 몽골에서 과거의 이해와 친족관계”, 『한국문화인

- 류학』, 39(1)호, 43~71쪽
- 박환영 (2000),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본 현대 몽골의 가족과 민속에 대한 일고찰”, 『한국문화인류학』, 33(2)호, 239~270쪽
- 법무부(2007), “체류외국인 100만명 돌파”, 2007. 8. 24. 보도자료.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www.klaw.go.kr>
- 보건복지부 (설동훈 외)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정책 방안』, 미래인력연구원
- 설동훈, 이해경, 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설동훈, 김현미, 한건수(2005), 『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 중개업자』, 보건복지부
- 소소마 출란바토르(2006) “국제결혼 속의 인신매매” 2006년 11월 21~24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주최<매매혼적 국제결혼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시아 이주여성 전략회의> 자료집 pp.96 - 111
- 소라미(2006) “정부의 탈법적 국제결혼 중개 방지를 위한 정책 검토”<정부의 결혼이민자 가족 정책 다시보기> 자료집
- 소라미(2007) “유입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주여성의 인권실태 및 법, 제도적 문제점” 2007년 11월1일~2일 <지구지역 시대 지식생산과 여성연구의 도전> 학술대회 자료집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2007),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위한 법률 매뉴얼』
- 아이 (2007), 추모식 중 위령무
<<http://video.naver.com/2007082408011670007>>
- 여경순(2006), "결혼이민여성의 긴급지원과 현실보호 - 가정폭력 이주여성 상담사례 중심으로<정부의 이주정책 돌아보기와 뛰어넘기> 토론회 발표문, 이주노동자인권연대, 2006년 11월2일. 대전
- 위흠(안양전진상 복지관 이주여성쉼터 위흠) (2003),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2003년 6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 유길상(2007), 『고용허가제 3주년 기념 동아시아의 저숙력 외국인력정책』.
- 윤정숙, 임유경(2004) “성별화된 이주방식으로서의 국제결혼과 여성에 대한 폭력:필리핀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창립20주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윤형숙(2003)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사회학회/한국문화인류학회 공동 심포지움 자료집
- 윤형숙(2004)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4년 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금연(2003) “국내 국제결혼과 그 이해 - 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 이일청(2006), “지구촌 돋보기 : 몽골 노사관계에 관한 소고: 체제 전환, 중층적 구조, 사회적 교섭”, 『노동사회』, 106호, 130~137쪽.
- 이주노동자인권연대(2006),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보고서』.
- 이진안(2002), “한국과 몽골의 문화 및 교육교류”, 『몽골학』, 12호, 183~239쪽.
- 이해영(2007),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 재한몽골학교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 이중언어학회 창립 25주년 국제학술대회 기획발표문, 『이중언어학』, 33호, 469~496쪽.
- 임안나(2005)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의 가족 관계와 초국가적 연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미간행
- 정기선 외 (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 제74회 국정과제 회의자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의 사회통합방안. 2006년 4월26일., 청와대
- 조은경(2004), “몽골의 부패 현황 및 반부패 정책”, 『한국부패학회』, 19(3)호, 207~228쪽.
-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2007), 대사관 웹사이트
<<http://vnm-hanoi.mofat.go.kr/index.jsp>>
-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2007), ‘후인마이의 편지’

<<http://blog.daum.net/mrkimkissoo/118261111>>

최순영 (2007) 전국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정책 현황, [토론회]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 2007년 6월7일, 국가인권위 배움터

하밍타잉 (2005),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 : 베트남 여성의 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미간행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제39집 1호 pp.195 - 243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건수. 설동훈(2006), 『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겨레 2007년 7월 6일자 "베트남서 시집온 투하의 '고밭장' /꽃가마 타고 온 한국 땅서 "난 씨받이로 이용당했다"

한겨레 2007년 7월 17일자 "'씨받이 신부 고소장' 베트남 사회 '부글부글'"

한국염 (2006),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현황과 과제" <매매혼적 국제결혼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시아 이주여성전략회의> 자료집

한국일보 2007년 8월 21일자 "남편에 살해당한 열아홉살 베트남 신부 추모 행사 열려"

홍기혜 (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미간행

홍성필 (2007), "국제인권과 결혼이주", <<저스티스>> 96, 27 - 42.

AFP (2007. 9. 23.) "Three held in Vietnam for brokering marriage" Asian Migrant Centre, Ateno Human Rights Center, Canadian Human Rights Foundation, Asia Pacific Forum on Women,

BBC News (2007. 7. 7.)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6918952.stm>>

American Law Institute (1987), 'Restatement (Third)', The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nited States, Vol. 2, 161, in Henry J. Steiner

- and Philip Alston (2000),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Context*, 2nd Ed., Oxford, 233–6.
- Belanger, Daniele, and Khuat Thu Hong, Hong zen Wang(2007), "Threatening Nationalism, Patriarchy and Masculinity : Constructions of Transnational Marriages between Vietnamese Women and East Asian Men in Vietnamese Mass Media", PAK/IPAR Conference on International Marriage Migration in Asia, Seoul
- CHRD (2004) 『Combating Human Trafficking Mongolia : Issue and Opportunities』
- Chun, Christine S.Y. (1996) " Comment: The Mail - Order Bride Industry - The Perpetuation of Transnational Economic Inequalities and Stereotypes".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CIA (2007), *The World Fact Book*
 <<https://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
- Constable, Nocole (2003) *Romance on a Global Stage*, London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ang, Nguyen Anh (2005), "Cross - border migration and sexuality in Vietnam" *Family and Women Studies*, Vol. 7, pp 34 - 44.
- Do Thi Nhu Tam(2003) "The System For Cross - border Marriage" 2003년 MRSC report.
- Freeman, Caren (2005), "Marrying Up and Marrying Down: The Paradoxes of Marital Mobility for Chosonjok Brides in South Korea," In Nicole Constable, ed. *Cross - Border Marriages: Gender and Mobility in Transnational Asia*,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p. 80 - 100.
-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2004), *Gender Statistics book in Vietnam*.
- Hsia, Hsiao - Chuan (2004), "Internationalization of Capital & the

- Trade in Asian Women : The Case of "Foreign Brides" in Taiwan
181" *Women & Globalization*
- Heeswijk & Kamphuis(2003) "Fact & Figures Cross - border
Marriages" 2003년 MRSC report.
- Hung, Cam Thai (2002) "Clashing Dreams : Highly Educated Overseas
Brides & Low - Wage U.S. Husbands" *Global Woman*.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05), *A Survey on the
Labour Emigration Management Systems of 12 Countries of Origin
to the Republic of Korea: Indonesia, Mongolia, Philippines, Sri Lanka,
Thailand, Vietnam, Cambodia, China, Kyrgyzstan, Pakistan, Timor
Leste, and Uzbekistan*, Seoul.
- Kim, Cheong - Seok(2007), Micro - Level Analysis of International
Marriage between Men in Korea and Women from Four Major
Countries., PAK/IPAR Conference on International Marriage
Migration in Asia, Seoul
- Law and Development (2004), *A UN Road Map: A Guide for Asian
NGOs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tem and Other
Mechanisms*, 2nd ed., Montreal, Canada.
- Mattila, H. S. (2001), "Protection of Migrants' Human Rights:
Principles and Practice", in R. Appleyard (ed.),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IOM and UN: Geneva, 54 - 71.
- MGEC (2006) *Main finding of "Human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of Mongolian girls and women" survey*.
- MRSC(2003) *Marriage of Convenience : Context, process & result of
cross - border marriages between Vietnamese young & Taiwanese
men*
-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1991), *Fact Sheet No.14,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h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FactSheet14en.pdf>>
- Ong, Aihwa (1999) *Flexible Citizenship : The Cultural Logics of Transnationality*, Durham & London : Duke University Press
- Paula - Frances Kelly (2003) "Marriage in History & Society" 2003년 MRSC report.
- Peace and Freedom (2007. 4. 10.) "Human Trafficking In Vietnam: An Update"
<<http://johnib.wordpress.com/2007/04/10/human-trafficking-in-vietnam-an-update/>>
- Piper, Nicola (1999) "Labor Migration, Trafficking and International Marriage : Female Cross - Border Movement in Japan" *AJWS* Vo. 5, No 2
- Piper, Nicola and Roces, Mina (2003), *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Sassen, Saskia "Global City & Survival Circuits" *Global Woman: Nannies, Maids &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Barbara Ehrenreich and Arlie Russel Hochschild, N.Y.: Metropolitan Books, Henry Holt & Company.
- Schachter, Oscar (1991), *International Law in Theory and Practice*, in Henry J. Steiner and Philip Alston (2000),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Context*, 2nd Ed., Oxford, 226-31 .
- Thanh Nien News (2007. 4. 10.) "Illegal marriage bureau busted in Vietnam metro"
- Thanh Nien News (2007. 4. 23.) "Police catch 66 girls in marriage selection ring"
- Thanh Nien News (2007. 9. 24.) "Vietnam - Korea marriage racketeer busted"
- UNESCO (2007) Country Profile Chapter 5. Gender Equality - UNESCO

<http://www.unescobkk.org/fileadmin/user_upload/arsh/Country_Profiles/Viet_Nam/Chapter_5.pdf>

United Nations/ECOSOC/Commission on Human Rights (2006),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document E/CN.4/2006/73.

United Nations/ECOSOC/Commission on Human Rights (2000),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Ms. Radhika Coomaraswamy, on trafficking in women, women's migrat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7/44*, document E/CN.4/2000/68.

United Nations/Committee on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2007), *Concluding comment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Republic of Korea*, document CEDAW/C/KOR/CO/6.

United Nations/Economic and Social Council (2006),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Jorge Bustamante*, (document E/CN.4/2006/73).

United Nations/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1995), *Report of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Beijing, 4 - 15 September 1995)*, document A/CONF.177/20.

United Nations/Human Rights Council (2007),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 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John Ruggie*, document A/HRC/4/35.

United Nations/Human Rights Council/Sub - 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6),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on its thirty - first session*, document A/HRC/Sub.1/58/25.

United Nations/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2004), *Compilation of General Comment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adopted by Human Rights Treaty Bodies*, document HRI/GEN/1/Rev.7.

United Nations/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2001), *Report of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Durban, 31 August - 8 September 2001)*, document A/CONF.189/12.

UNFPA(2006), *The Status and Consequences of Mongolian Citizens Working Abroad*, Fact Sheet.

Wang & Chang (2002) "The Commodific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 Cross - border marriages bussiness in Taiwan & Vietnam", *International Migration*, Vol.40 (6)

몽골사회보장노동부 등 (2005), (『몽골인의 해외취업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몽골어)

СУДАЛГААНЫ ТАЙЛАН(몽골 해외중소산업진흥협회) (2007), БҮГДНАЙРАМДАХ СОЛОНГОС УЛСАД АЖИЛЛАЖ БУЙ МОНГОЛ ИРГЭДИЙН ЗАРИМ ЭРХИЙН ХЭРЭГЖИЛТ, (『한국에서 근로 중인 몽골인의 일부권리 실태조사 보고서』). (몽골어)

Tuổi Trẻ (또이체) 2007년 8월 22일자 “한국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의 50 - 60%정도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베트남어)

부 록



<부록 1> 대한민국 대법원 호적예규 제715호: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예규 제정의 취지

최근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국제혼인이 증가하고 있는 바, 현행 「신분관계를 형성하는涉外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호적예규 제596호)만으로는,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국제혼인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으로 부족하므로, 해당 베트남인에 대한 혼인성립요건 심사의 기준이 되는 베트남 「혼인·가족법」 중 혼인관련규정을 소개하고, 위 국제혼인신고를 할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와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명백하게 규정함으로써 호적공무원의 통일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함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1. 호적공무원은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해서는 「신분관계를 형성하는涉外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호적예규 제59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2.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혼인하는 경우,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게 되므로(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호적공무원이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해당 한국인에 대하여는 민법 제813조에 의하여, 해당 베트남인에 대하여는 베트남 「혼인·가족법」 중 혼인관련규정(제9조 내지 제17조, 한국어번역문은 별지1과 같음)에 의하여 혼인성립요건의 구비여부를 각 심사하여야 한다.

3. 베트남에서 베트남 방식에 의하여 혼인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절차
 - 가. 혼인의 당사자인 한국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이나 본적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지원장) 또는 베트남주재 한국대사나 영사에게 초적등(초)본을 첨부하여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호적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초적부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초적등(초)본 제출 생략 가능)
 - 나. 시(구)·읍·면의 장이나 지방법원장(지원장) 또는 베트남주재 한국대사나 영사는 초적등(초)본 또는 호적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해당 한국인이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법률적 장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 다. 위 “가”의 청구서는 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에 접수하고 “나”의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본 1부와 함께 초적민원청구서편철장에 편철한다.
 - 라. 혼인의 당사자인 한국인이 호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베트남에서 베트남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을 등록하고, 베트남인의 혼인당시 주소지(또는 거주지)를 관

[별지 1] 베트남 혼인·가족법(제9조 내지 제17조)

제9조(혼인의 조건) 남녀가 결혼할 때 아래의 조건이 준수되어야한다.

1. 남자는 만 20세, 여자는 만 18세가 혼인적령이다.
2.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의거하여 성립하며, 누구라도 혼인을 강요하거나 또는 사기,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3. 그 혼인은 제10조 각호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혼인금지) 아래의 경우에는 결혼은 금지된다.

1. 중혼(重婚)
2. 정신병에 의하여 자기행위의 인식능력이 없는 자의 혼인
3. 직계혈족 사이, 부모의 쌍방 혹은 일방이 같은 형제자매 사이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사이의 혼인
4. 양친자(養親子) 사이의 혼인
5. 동성(同性) 사이의 혼인

제11조(혼인신고)

1. 혼인은 신고하여야 하고 이 법 제14조에 따른 국가기관(결혼등록기관)에 의해 실현한다.
모든 혼인의식은 이 법의 제14조에 따르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다.
남녀가 혼인등록하지 않고 부부처럼 생활하면 법에 의해 공인받지 못한다.
이혼한 부부가 재혼하면 혼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오지의 결혼등록은 정부가 규정한다.

제12조(혼인의 공인) 혼인은 당사자 일방이 상주하는 촌(村), 구(區), 시(市)의 인민위원회가 국가가 결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인하며, 혼인등록을 함으로써 성립된다.
베트남공민 사이의 외국에서의 혼인은 그 나라에 있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외교대표기관이 공인한다.

제13조(혼인절차)

1. 법률의 규정에 맞는 서류를 받은 후, 혼인기관이 혼인신고서류를 검사하고 만약 쌍방의 혼인조건이 충분하면 혼인을 공인하도록 한다.
2.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혼인기관은 혼인의 공인을 거부하고 문서로 명확하게 설명한다. 거부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진정할 권리가 있다.

제14조(혼인등록) 혼인을 등록할 때는 쌍방인 남녀가 함께 출석하여야 한다. 혼인기관 대표가 쌍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쌍방이 혼인에 동의하면 혼인기관대표가 혼인증서를 교부한다.

제15조(법률에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

1. 강요(強要)나 사기(詐欺)를 당한 자는 법원이나 검찰에 청구하여 이 법의 제2장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혼인을 취소하도록 할 권리가 있다.
2. 민사소송에 대한 법의 규정에 따라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여 이 법의 제1장 제9조와 제10조에 위반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다음의 개인, 기관, 조직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나 검찰에 청구하여 이 법의 제1장 제9조와 제10조에 위반한 혼인을 취소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 a. 혼인 당사자의 부, 처, 부모 혹은 자녀
 - b. 어린이 보호위원회
 - c. 여성연합회
4. 다른 개인, 기관, 조직은 검찰이나 법원에 법률에 위반되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제16조(법률에 위반되는 혼인의 취소) 이 법의 제15조에 따라 법원은 법률에 위반되는 혼인을 검사와 취소를 결정 내리며 혼인기관에 결정등본을 송부한다. 법원결정에 근거하여 혼인기관이 혼인등록부에 혼인을 취소한다.

제17조(법률에 위반한 혼인취소의 효과)

1. 법률에 위반되는 혼인이 취소될 경우에는 혼인생활을 종료하여야 한다.
2. 부부이혼의 절차와 유사하게 자(子)에 대한 양육권도 해결하여야 한다.
3.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개인재산의 소유권은 당사자가 가지며, 공유재산은 각 당사자의 공헌에 따라서 분배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에 의하고 각 당사자의 공헌을 고려하며 여성과 자녀의 정당한 권리를 우선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 신청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 신청서

1. 호주의 성명 : ()

2. 본 적 :

3. 주 소 :

4. 사건본인의 성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건본인이 국적 ○ ○ (국명)의 ○ ○ ○ (성명)와 혼인을 함에 있어 한국법상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사건본인 ○ ○ ○ (인)

(주) 이러한 신청을 지방법원장(지원장)이나 재외공관의 장(대사, 영사, 공사)에게 할 경우, 지방법원장(지원장)이나 재외공관의 장(대사, 영사, 공사)이 호적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호적부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반드시 사건본인의 호적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증명서

교부번호 제 호

증 명 서

1. 사건본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성 명 ○ ○ ○ ()
생년월일 년 월 일생

1. 본 적 :

1. 주 소 :

1.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 : 의 ○ ○

1. 부모의 성명

부 : ○ ○ ○ ()

모 : ○ ○ ○ ()

위 사건본인은 (혼인성립요건 구비여부등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한 사람으로서 국적 ○ ○ (국적명)의 ○ ○ ○ (성명)와 혼인을 함에 있어 한국법상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군 ○ ○ 읍(면)장

○○ 시 ○ ○ 구 청 장 ○ ○ ○ 직인

○ ○ 시 장

(주) 교부번호는 일반 행정증명서 발급대장의 발급번호에 의하여 부여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증명서

교부번호 제 호

증명서

1. 사건본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성명 ○ ○ ○ ()

생년월일 년 월 일

1. 본적 :

1. 주소 :

1.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 : 의 ○ ○

1. 부모의 성명

부 : ○ ○ ○ ()

모 : ○ ○ ○ ()

위 사건본인은 (혼인성립요건 구비여부등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 한 사람으로서 국적 ○ ○ (국명)의 ○ ○ ○ (성명)와 혼인을 함에 있어 한국법상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지방법원장 (○○법원○○지원장) ○ ○ ○ 직인

○○ 주재 대한민국 대사 (영사, 공사) ○ ○ ○ 직인

(주) 교부번호는 일반 행정증명서 발급대장의 발급번호에 의하여 부여한다.

[별지 제5호 서식] 혼인증서(베트남)

ỦY BAN NHÂN DÂN
Tỉnh/thành phố _____

CỘNG HÒA XÃ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
(BẢN SAO)

| | |
|--|--|
| Họ và tên chồng: _____ | Họ và tên vợ: _____ |
| Ngày, tháng, năm sinh: _____ | Ngày, tháng, năm sinh: _____ |
| Nơi sinh: _____ | Nơi sinh: _____ |
| Dân tộc: _____ | Dân tộc: _____ |
| Quốc tịch: _____ | Quốc tịch: _____ |
| Nơi cư trú: _____ | Nơi cư trú: _____ |
| Hộ chiếu/CMND/Giấy tờ hợp lệ thay thế: _____ | Hộ chiếu/CMND/Giấy tờ hợp lệ thay thế: _____ |
| Số: _____ | Số: _____ |
| Nơi cấp: _____ | Nơi cấp: _____ |
| Ngày, tháng, năm cấp: _____ | Ngày, tháng, năm cấp: _____ |

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 này có giá trị kể từ ngày ghi vào Sổ đăng ký kết hôn

Chồng

Vợ

(Đã ký)

(Đã ký)

_____ ngày _____ tháng _____ năm _____

T/M ỦY BAN NHÂN DÂN tỉnh/thành phố _____

CHỦ TỊCH

Vào sổ đăng ký kết hôn
Số _____ Quyển số _____
Ngày _____ tháng _____ năm _____
Cán bộ đăng ký

(Đã ký)

(Đã ký)

Sao từ Sổ đăng ký kết hôn: quyển số _____, mở ngày _____ tháng _____ năm _____

Ngày _____ tháng _____ năm _____

GIÁM ĐỐC SỞ TƯ PHÁP

(Ký, ghi rõ họ tên và đóng dấu)

[별지 제6호 서식] 혼인증서(번역문)

혼인증서(번역문)

남편성명 : 처 성명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출생장소 : 출생장소 :

민 족 : 민 족 :

국 적 : 국 적 :

거주주소 : 거주주소 :

여권/ 주민등록번호/ 기타 증명서 여권/ 주민등록번호/ 기타 증명서

번 호 : 번 호 :

발급장소 : 발급장소 :

발급일시 : 발급일시 :

이 결혼증명서는 혼인신고대장에 기입하는 날로부터 유효합니다.

남편
(사인과 성명기록)

처
(사인과 성명기록)

.....년/월/일
인민위원회 위원장
(사인, 성명기록과 도장 찍기)

혼인신고대장에 기입
서식번호 :
서식대장번호 :
.....년월일
접수관리자
(사인과 성명기록)

혼인신고등록대장에 서부터 복사합니다.

등록대장 번호 :, 복사일시 :년월일
.....년월일
사법청 청장
(사인, 성명기록과 도장 찍기)

[별지 제8호 서식] 혼인상황 확인서(번역문)

인민위원회
리, 읍
군, 구
성, 도
번호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

혼인상황 확인서
(해외를 위한 이용)

인민위원회
확 인

남/여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 출생지 :

민 족 : 국 적 :

주민등록증/ 여권/ 법리적인 교체서류 :

번호 : 발급일자 : 발급장소 :

현거주지 :

출국전 거주지 :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지방에서 거주기간 동안

혼인상태 :

본 확인서는 외국인과의 결혼을 목적으로 발급되었으며, 발급일로부터 6개월 간 유효합니다.

.....년월일

○ ○ ○ 인민위원회 위원장

○ ○ ○

(사인, 성명기록과 도장 찍기)

[별지 제9호 서식] 혼인요건인증서(베트남)

주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양식: 35/NG-L6
대사관 독립 - 자유 - 행복
번호: _____/CNDE&E 서울, _____년 _____월 _____일

혼 인 요 건 인 증 서

주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대사관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현재의 기점법에 의거하여 혼인상태를 아래와 같이 인증합니다.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출생지: _____
종족: _____ 국적: _____
현재 혼인상태: 독신, 이혼했음, 배우자사망
현주소: _____
여권번호: _____ 발급일: _____ 발급기관: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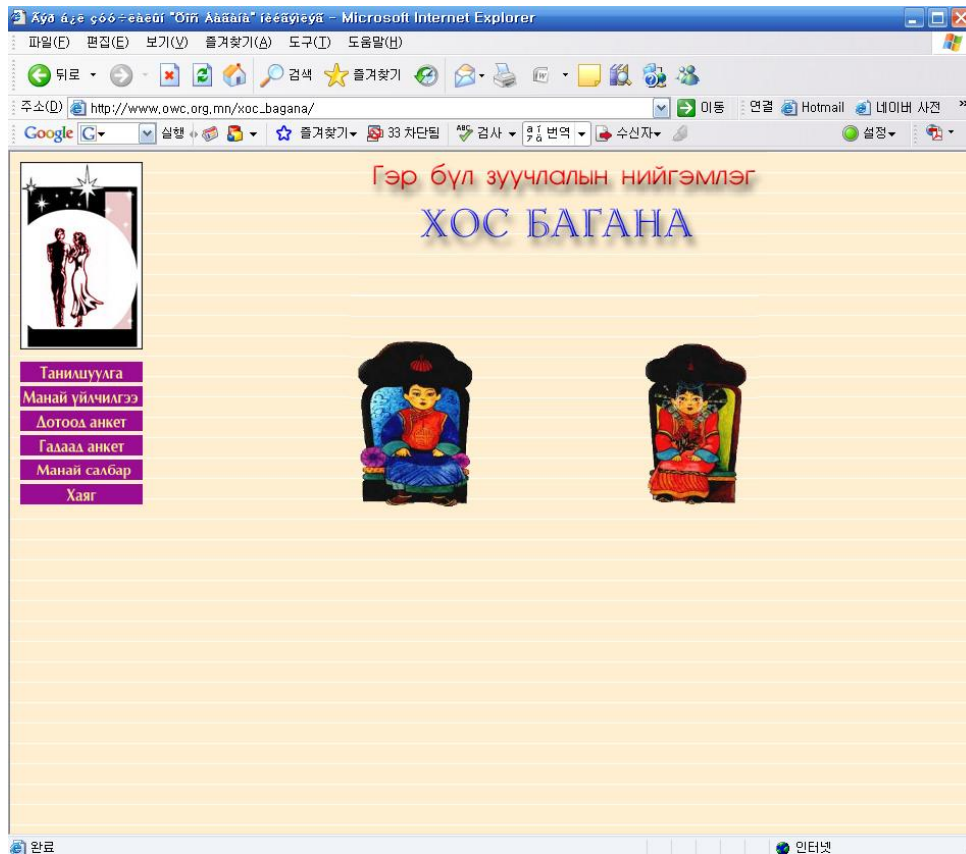
위 사람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현재의 기점법에 따라 아래의 사람과 혼인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인증합니다.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출생지: _____
국적: _____ 여권번호: _____
현주소: _____

이 인증서는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
() 등서기관

<부록 2> 몽골 단체 Khos Bagana 웹사이트



<Khos Bagana 사이트 번역본>

http://www.owc.org.mn/xoc_bagana

결혼 주선 “호스 바가나” 소개서

본 협회는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지만, 정부 기관은 아닙니다.

본 협회는 몽골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몽골의 발전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수가 많아짐으로 써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협회 주요 활동은 분야 연구, 교육, 문화, 외국과의 협력이다.

2000년 1월 3일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1,1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회원의 53.3%가 대졸, 46.2%가 고졸, 0.5%가 중졸이고, 50여 가지의 전공자들이다.

지금까지 본 협회를 통해 80쌍(160명)이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었다. 주로 울란바토르시에 거주하고 다르항, 바가노, 고비 -알타, 바앤 울기, 아르항가, 델랭크, 벤티, 톱, 홉스쿨 뿐 아니라 모스크바, 체코, 프랑스, 일본, 미국, 한국 등에 거주한다. 본 협회는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회원들과 자주 연락을 한다.

회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는 범죄자나 알콜 중독자, 성매매, 정신지체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관리, 심사하고 있다.

본 협회의 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들은 법률 활동, 조사 연구, 문화, 외국과의 협력에 대해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해 한 달에 1 - 2번 논의 회의

세계 평화를 위한 가정 협회, 국제 교육 단체와 협력 하에 가정, 교양, 인생의 목표에 관한 세미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한다.

협회의 규칙

본 협회는 몽골의 가족 법 내에서 활동한다.

협회의 목적

1.1 법적인 틀 안에서 성인들에게 어떻게 가정을 만들고 어떻게 배우자를 선택하며, 어떻게 하면 가정의 수가 많이 질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이 목적이다.

회원의 권리와 역할

2.1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본 협회의 규칙과 계약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2.2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에서 독립

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2.3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협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4 가입을 위해서는 증명 사진 2장, 일반 사진 1장, 주민등록증, 4000 투그르크를 냈다는 영수증, 회원증이 있어야 한다.

2.5 가입을 위한 신청서는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허용한다.

2.6 회원은 협회를 통해 선 볼 사람에게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2.7 회원은 협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와 활동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2.8 본 협회를 통해 얻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되며, 알리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9 회원은 협회의 실수에 대해 인정할 능력을 지녀야 한다.

협회의 권리와 역할

3.1 협회 직원들은 정직하고 친절하게 일해야 하며, 특히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3.2 협회 직원들은 회원 정보(직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등)를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3.3 협회 직원들은 회원들 간의 만남을 주선해 준다.

3.4 a) 협회는 회원들의 신청서를 이성 회원에게 알려준다.

b) 협회는 회원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와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수 있다.

3.5 회비와 세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3.6 a) 협회는 회원들이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찾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과는 보증하지 않는다.

b) 회원들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협회는 책임지지 않는다.

3.7 본 협회에서 탈퇴하는 경우나 결혼 한 경우 신청서를 돌려준다.

3.8 회원들이 서로를 알 수 있도록 21일마다 행사(파티, 소풍, 체육대회, 관광, 만남)를 주최한다.

3.9 회원들이 생활하는데 상호간 도움을 줄 수 있는 클럽을 만든다.

관계에 대해

4.1 같은 목적으로 일하는 국내의 다른 단체들과 협력해서 활동한다.

4.2 해외 단체들과 관계를 맺고 활동한다.

4.3 관계를 맺은 해외 기관들에 대해 조사하고, 그 기관들의 활동과 방법을 경험삼아 좋은 것들을 배운다.

4.4 관계를 맺은 해외 단체들의 회원들에 대한 정보, 사진을 보내고, 통역을 제공하며, 또한 회원을 대신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등 연락을 주선한다.

4.5 같은 목적으로 활동하는 해외 단체들과 계약을 맺고, 해외 단체의 대표들과 회원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서로의 문화와 예절에 대해 소개한다.

기타

5.1 본 협회는 회원들이 낸 회비랑 세금으로 운영된다.

5.2 위의 재정이 부족한 경우, 제안서 만들어 해당되는 공공 단체와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거나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다.

5.3 회원들은 회비를 내야하며, 내지 않는 경우 협회의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5.4 협회와 회원의 활동이 불미스러운 결과를 초래한 경우, 사법기관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비회원 방문객에 대한 공지 사항

준비 자료

1. 주민등록증
2. 증명사진 2장
3. 9*12 사진 1장
4. 가입비, 회원증 발급비

5. 회원주소를 받을 때 200 투그르크
6. 회비는 한 달 마다 1000 투그르크

회비는 광고, 우편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습니다.

외국인들과의 맞선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한다.

한국인. 한국인과의 맞선 시에는 32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한다.

- 1.1 증명사진 6장
- 1.2 일반 사진 13*18사이즈 사진 1장, 전신사진(교복, 제복 착용 안 되며, 평상복)
- 1.3 몽골 주민등록증
- 1.4 위의 세 가지를 준비해서, 32시간의 가정 준비와 풍습, 예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동안에는
- 1.5 에이즈 검사
- 1.6 정신병 검사
- 1.7 폐렴 검사
- 1.8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 1.9 결혼 경력 증명서(미혼증명서와 이혼증명서)
- 1.10 여권을 3년~ 5년 연장하여야 한다.

한국인하고 맞선 시 32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한다.

- 2.1 증명사진 4장
- 2.2 최근 찍은 일반 사진
- 2.3 주민등록증
- 2.4 회비

- 2.5 신청서와 위의 네 가지를 준비한다.
- 2.6 에이즈 검사
- 2.7 정신병 검사
- 2.8 폐렴 검사
- 2.9 결핵 검사
- 2.10 결혼 경력 증명서(미혼증명서와 이혼증명서)
- 2.11 책임에 관한 계약
- 2.12 여권을 3년~ 5년 연장하여야 한다.

가정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한국에 수업을 10시간 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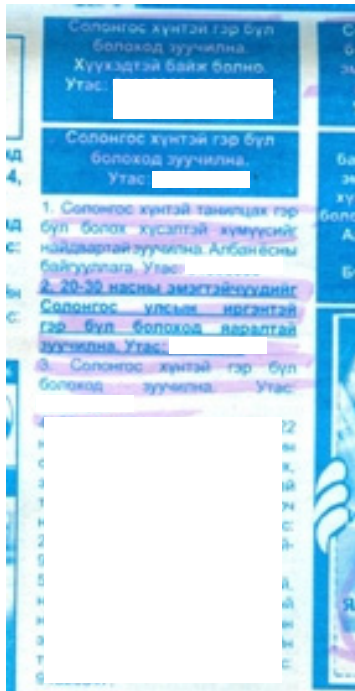
일본인.

- 3.1 증명 사진 2장
 - 3.2 일반 사진 1장
 - 3.3 주민등록증
 - 3.4 회비
 - 3.5 신청서와 위의 네 가지를 준비한다.
 - 3.6 에이즈 검사
 - 3.7 정신병 검사
 - 3.8 폐렴 검사
 - 3.9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 3.10 결혼 경력 증명서(미혼증명서와 이혼증명서)
 - 3.11 책임에 관한 계약
 - 3.12 여권을 3년~ 5년 연장하여야 한다.
- 초급 정도의 일본어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p.7 협회에서 주최하는 일본어 수업에 참석해야 한다.

대만인, 러시아인, 필리핀인 맞선 시 준비할 서류는 1.1과 동일하다.

<부록 3> 몽골 정보지 한국행 국제결혼 중개 광고 (번역)



한국인과 가정을 이루고 싶은 이를 위한 중매. 아이가 있어도 좋음. 연락처 XXXXXXXX, 00000000, \$\$\$\$\$\$\$\$

한국인과 가정을 이루고 싶은 이를 위한 중매. 연락처 00000000

1. 한국 사람과 사귀어 가정을 이루고 싶은 사람을 위한 정확한 중매. 공식사무소 XXXXXXXX
2. 한국인과 가정을 이루고 싶은 사람을 위해 신속히 중매함. 연락처 XXXXXXXX
3. 한국인과 결혼 중매. 연락처 XXXXXXXX



한국인과 가정을 이루어 살고 싶은
여자들을 위해 신속 정확 중매. 연락처:
000000, XXXXXXXX

20 - 35세 사이의 미혼, 아이가 없는
미혼여성들을 한국인과 법적인 가정을
이루어 정착하게 중매. 한국 남자 와
있음. 여성들의 신청을 수시 접수. 공식
사무소 0000 0000

한국인과 가정을 이루고 싶은 사람을
위해 정확 신속하게 중매.
연락처 000 00000.
몽골 한국 관광 회사
XX.XX.Tour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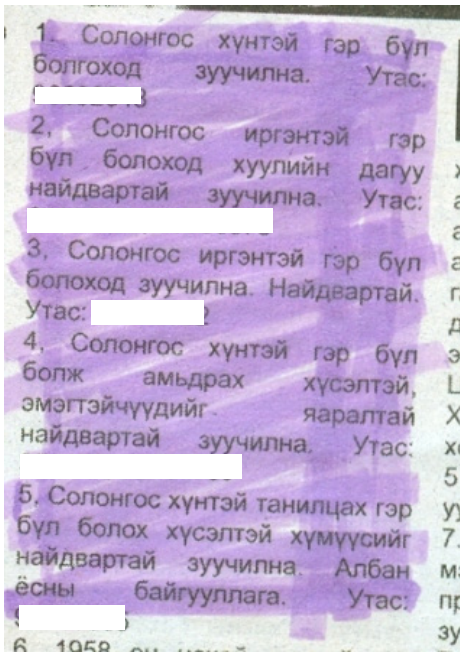
한국인과 사귀어 가정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중매 공식 사무소
연락처
XXXX XXXX



정보지 <짜르미데>

(정보알림)

2007. 10. 19 -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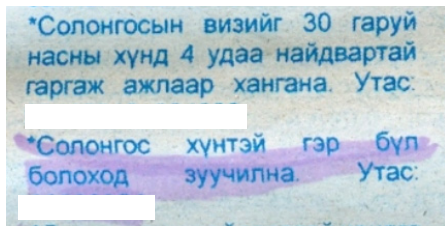
1. 한국 남자와 결혼 중매. 연락처: 00000000
2. 한국 남자와 결혼. 법적으로 정확하게 중매. 연락처: XXXXXXXX, 00000000
3. 한국 남자와 결혼. 정확. 연락처: XXXXXXXX
4.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같이 살고 싶은 꿈이 있는 여성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매. 연락처: 000000, XXXXXXXX.
5. 한국 사람이랑 사귀어서 결혼 하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들 위해 정확하게 중매, 공식 허가 사무소. 연락처: 0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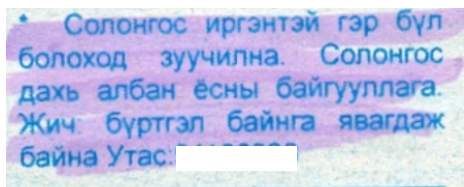
정보지 <쇼르하짜르>

(신속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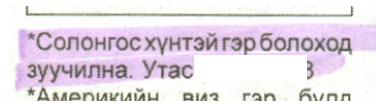
2007.1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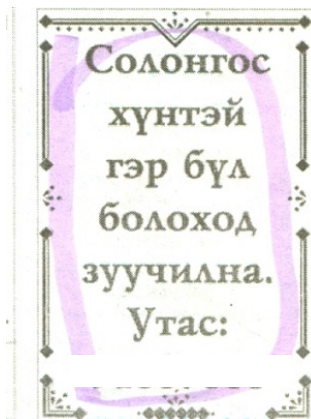
* 30세 이상 된 사람에게 한국에 4번 왕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주고, 일자리도 만들어 줍니다. 연락처: 00000000, XXXXXX
* 한국남자와 결혼 중매. 연락처: 00000000



* 한국남자와 결혼 중매. 주 한국 공식 사무소. 연락처: XXXXXXXXX



한국 사람과 결혼 중매 연락처 00000000



한국사람이랑 결혼 중매 연락처 XXXXXXXXX

정보지 <쇼르하짜르>

(신속정보)

2007.10.19

***Солонгос хүнтэй гэр бүл болоход зуучилна.**
 Утас: _____

한국 남자와 결혼 중매 연락처
 00000000

ий *Солонгос иргэнтэй гэр бүл болоход зуучилна.
 ах Найдвартай. Утас: _____

한국인과 결혼 중매 연락처
 XXXXXXXX

* 40 настай, 168 өндөртэй, эелдэг зантай үйлдвэрийн эзэн Солонгос эрэгтэй, 20-30 насны үнэхээр гэр бүл болох хүмүүжил боловсрол сайтай эмэгтэйг хайж байна. 34 настай менежер ажилтай Англи эрэгтэй, 20-30 насны үнэхээр гэр бүл болох хүмүүжил боловсрол сайтай эмэгтэйг хайж байна. Гэр бүл зуучлалын Хос багана нийгэмлэг. Хаяг: Мэдээлэл технологийн үндэсний парк 426 тоот. Утас: _____

*40세, 키 168cm이고 성격이 친절한 한국인 공장장 남자가 20 - 30세 사이의 교육도 받고 성격이 좋은 여자와 정말로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33세 영국인 매니저가 교육도 받고 20 - 30세 좋은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가정중매 호스바간 협회. 주소. 전화 000000, XXXXXXXX

20-30 насны эмэгтэйчүүдийг Солонгосын иргэнтэй гэр бүл болоход яаралтай зуучилна.
 Утас: _____ ;

20 - 30세 사이 여성 중 한국 남자와 결혼 원하는 사람 신속 중매, 연락처 00000000

<부록 4> 몽골 국제결혼중개업체 계약서

결 혼 서 약 서

신랑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신부 성명 : [] 생년월일 : []

신부가 다른 문화와 관습의 차이에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협조할 것이며, 신부의 가족도 내 가족처럼 보살피겠습니다.

신랑은 결혼생활 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신부도 신랑을 위하여 평생 부부로서 가정과 가족을 위하여 충실하고 열심히 평생 살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신부도 위장결혼 의도 및 국외 출입 목적으로 입국후 가족, 이혼 요구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본인은 남편 역할을 충실히 하겠으며, 결혼생활 중 부부사이의 발생한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본인 책임임을 명하며, [] 결혼정보하는 국민항을 금주와 알과 동시에 자주 방문하여 모든 문제와 단점등을 알리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몽골 현지에서 신부와 본인신부 가족의 입국후의 약속의 본화가 성취할 시에는 신부에게 위자료 \$7,000를 지불하고 몽골현지의 집합후 반의 본의 이용 하겠다.

또한 국내 결혼생활 중 신부와 협의이혼 시 신부의 출국 권도 항등으로 및 이혼 위자료 \$7,000를 신랑이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제반경비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할 것이며, 기 집행된 비용에 대해서는 [] 결혼정보에 일체의 환불요구나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시 모든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입회인과 신부 앞에서 엄숙히 명시 하오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본인이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에 서명날인 합니다.

2007년 10월 5일

서약인 한국인 신랑 : []
 몽골인 신부 : []

입회인 [] 결혼정보 대표 []

국제결혼 계약서

신랑: []

신부: []

1. 신랑 [] 과(와) 신부 [] 는 서로 원하여 거짓없이 결혼을 하였으며 단약 위장결혼을 하였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이혼을 강요할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 1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신부는 신랑의 허락없이 피임을 하여서는 안된다.
3. 신랑과 신부는 혼인신고 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결혼을 주선한 결혼정보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혼정보회사는 혼인신고 수속을 한다.
4. 신랑과 신부는 서로 거짓없이 신체의 건강상태를 알려 주어야 한다.
5. 신랑과 신부는 동골에서 결혼을 전제트 합방이나 약혼식을 진행한 다음 결혼을 거부할 경우 거부하는 쪽에서 결혼을 주선한 결혼정보회사에 위약금 2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신랑과 신부가 동골에서 혼인신고를 한 다음 결혼을 거부할 경우 거부하는 쪽에서 결혼을 주선한 결혼정보회사에 위약금 4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7. 신부는 신랑의 허락하에 직업을 가질 수 있다.
8. 신랑은 결혼생활에 지장을 주는 지나친 음주와 신부를 폭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9. 신랑은 신부를 감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0. 신부는 지나친 음주와 흡연을 하여서는 안된다.
11. 신부는 한국에 갔을 때 결혼을 주선한 한국의 결혼정보회사에 신부의 여권과 의국인 등록증(체류증)을 1년간 보관시킨다.

Олон улсын хуримийн гэрээ

Нөхөр:

Хаяг:

Эхнэр:

Хаяг:

Дээрх 2 хүний ОУ хуримын дагуу Доорхтой адилаар гэрээ хийж байна.

1. Нөхөр [] ба эхнэр [] гэр бүл болох хүсэлтийн үндсэн дээр худал зүйлгүйгээр мэдэгдэх, хэрэв аль нэг тал нь худал хэлэх санаатайгаар нуух, онцлох шалтгаангүйгээр салах хүсэлт гаргавал нөгөө талдаа 10,000\$ төлнө.
2. Эхнэр нь нөхөртөө үнэнч бус байдал гарган нөхрийн зөвшөөрөлгүйгээр жирэмслэхээс татгалзаж болохгүй ба хэрэв ийм тохиолдол гарвал гэрэлтийг цуцална.
3. Нөхөр [] болон эхнэр [] хурим хийхэд шаардлагатай бичиг баримтуудыг бүрдүүлж хуримыг зуучлаж буй байгууллага нь гэрэлт бүртгэлийн албанд өгч гэрэлтийг бүртгүүлнэ.
4. Эхнэр болон нөхөр нь эрүүд мэндийн талаар нуух, хоорондоо хуурмаг зүйл байхгүй байх.
5. Сүй тавьсаны дараа цуцлах боломж байхгүй. Хэрэв цуцлах тохиолдолд сүйг цуцлах хүсэлт гаргаж буй тал нь сүйн зардалд 2000\$ –г зуучлаж буй байгууллагад нөхөн төлнө.
6. Нөхөр болон эхнэр нь Монголд гэрэлт баталсаны дараа аль нэг тал нь салах хүсэлт гаргах тохиолдолд зуучлаж буй байгууллагад 4000\$ –г нөхөн төлнө.

7. Эхнэр нь нөхрийн төвшөөрсөний үнсэн дээр ажил хийж болно.

8. Нөхөр нь хуримласны дараа архи хэтрүүлэн хэрэглэх ба эхнэртэйгээ зүй бусаар харьцах, гар хүрэхийг хориглоно.

9. Нөхөр нь эхнэрээ гэрийн хорионд байлгахыг хориглоно.

10. Эхнэр нь архи хэтрүүлэн хэрэглэх ба тамхи татаж болохгүй.

11. Уг гэрээ нь хийсэн өдрөөс эхлэн хүчин төгөлдөр үйлчилнэ.

12. Эхнэр болон нөхөр, солонгосын зуучлаж буй байгууллага нь уг гэрээг тус тус нэг хувь үйлдэн авна.

Нөхрийн нэр:

Эхнэрийн нэр:

1 Эхнэрийн батлан даагч:

Хаяг:

Утас:

Үнэмлэхний дугаар:

2 Нөхрийн батлан даагч:

Хаяг:

Утас:

Үнэмлэхний дугаар:

2007 оны 5 сарын 26 өдөр

**Олон улсын танилцуулах албаар зуучлуулан гэрлэж буй
эмэгтэйтэй байгуулах гэрээ**

№ _____

200_ оны __ дугаар сарын __ны өдөр

Энэхүү гэрээг нэг талаас
төлөөлөн нөгөө
талаас..... оршин суух
иргэн-ий үнэмлэхтэй..... регистрийн
дугаартай нар нь 200.. оны ...
сарынны өдөр харилцан тохирч дараах нөхцлөөр байгуулж байна.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 овогтой нь
БНСУ-ын иргэн тэй өөрийн хүсэлтээр гэрлэж буй тул
дээрхи заалтуудыг зөвшөөрсөн болно. Үүнд:

1. БНСУ-ын нутаг дэвсгэр дээр амьдарч эхэлсэн өдрөөс БНСУ-ын хууль үйлчилнэ.
2. БНСУ-ын иргэн тэй гэрлэсэн тохиолдолд солонгос эмэгтэйн ёс жаягийг дагаж, БНСУ-ын зан заншлыг хүдэтгэн сахин биелүүлнэ.
3. Гэр бүлийнхээ өмнө гэргийн ёсоор гэр бүл, гэр орноо авч явж үр хүүхдээ халамжлан хүмүүжүүлнэ.
4. Зочин гийчин угтаж, шашны болон баяр ёслолын бусад арга хэмжээнд оролцох болно.
5. Өөрийн нөхрийг ажилдаа явахад нь өглөөний хсол ундыг бэлдэж, сэтгэл санааны дэм үзүүлнэ.
6. Нөхрөө орой ажлаас ирэхэд нь угтан, цэвэр цэмцгэр тухтай орчинг бүрдүүлнэ.
7. Нэхрийн зөвшөөрөлгүйгээр жирэмслэлтээс хамгаалах хэрэгслүүд хэрэглэхгүй байх болно. (эм уух, спираль тавиулах гэх мэт)
8. Нэхрийн зөвшөөрөлгүйгээр гадуур хонохыг хориглоно.
9. Нөхрөөсөө 3 сарын дотор их хэмжээгээр мөнгө нэхэж дарамтлахгүй байна.
10. Монгол дахь гэрийнхэнтэйгээ байнга холбоотой байх болно. (утсаар ярих гэх мэт)
11. Монголд байгаа гэр бүлийн хүмүүсээс Солонгост урих эрхтэй.
12. Гэрлэсэн эмэгтэй гэрээсээ оргон зугтаасан тохиолдолд батлан даагч нь Олон улсын танилцуулах албанд 5 000 ам.долларын торгууль төлөх болно.
13. Гэр бүл болсны дараа нөхрийн буруутай үйлдлээс гэр бүл салахад хүрвэл нөхрийн зүгээс тодорхой хэмжээний төлбөр гаргуулж төлүүлнэ.

Гэрээг хүлээн зөвшөөрсөн

1. МУ-ын иргэн (эхнэр)

2. (эхнэрийн талаас, эхнэрийн юу болох)

<몽골어 계약서의 번역>

국제결혼계약서

이 계약을 한 측에서대표하여
다른 측에서거주하는.....주민등록번호.....
.....

상기에 명기한 두 사람은 200..년 ..월..일 상호 합의하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몽골인.....는 대한민국인와/과 본인의 청원으로 결혼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인정한다.

1.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부터 대한민국의 법을 따른다.
2. 대한민국인와/과 결혼한 경우에 한국 여성의 예의를 지키며, 대한민국의 풍속을 존중하며 준수한다.
3. 가족들 앞에서 가정 주부 역할을 할 것이며 가정과 자녀를 부양한다.
4. 손님을 맞이 하고 종교 및 각종 행사에 참가한다.
5. 남편이 출근할 때 아침을 준비해 주며 마음속으로 격려를 해 준다.
6. 남편이 퇴근해 돌아올 때 마중을 하며, 깨끗하고 편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
7. 남편의 허락 없이 피임 하는 것을 금한다. (피임약 복용, 자궁 내 피임용 기구 장치 등)
8. 남편의 허락 없이 외박하는 것을 금한다.
9. 3개월 안에 남편에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 등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10. 몽골에 있는 가족과 자주 연락을 한다. (전화 통화 등)
11. 몽골에 있는 가족을 한국에 초청할 수 있다.

12. 결혼한 여자가 도망갈 경우 보호자은/는 국제중매업체에 5.000 \$를 벌금으로 낸다.

13. 결혼한 후에 남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 측으로부터 일정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계약을 인정한

1. 몽골인(아내)
2.(아내 측 보증인)

<부록 5> 베트남 동탑 법무부의 결혼등록거부공문(번역)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2007년 4월 21일, 00 시

공 지

- 결혼기록 등록의 각하-

- 베트남 결혼과 가족법에 의거하여
- 외국인과 관련된 결혼과 가족법을 자세하게 규정하는, 베트남 정부의 2002년 7월 20일에 발효된 훈령 68/2002/ND-CP의 규정을 첨가하고 개정한, 2006년 7월 21일에 발효된 훈령 69/2006/ND-CP에 의거하여
- 2005년 시민지위 등록과 관리에 관해 2005년 12월 27일에 발효된 훈령 158/2005/ND-CP에 의거하여
- 1983년 0 월 0일 출생 베트남 국적의 00씨 와 1971년 출생 한국국적의 00씨 와 사이에 2006년 6월 14일에, 한국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발급되고 호치민시 외교부에서 2006년 6월 25일에 합법화된 등록번호 ---/LS-HPH의 결혼기록과 관련하여 Mrs ----의 보고와 인터뷰 화일을 검토한 결과
- 동탑주 법무부는 위의 양 당사자 간의 결혼은 2002년 베트남의 결혼과 가족법의 2조 4항에 의거, 그리고 훈령 68/2002/ND-CP의 조항을 첨가하고 개정한 2006년 훈령 69/2006/ND 5조 1항에 따라 적절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두 당사자 간의 결혼기록등록을 각하한다.

위원장
(서명)

참조

- 주 호치민 한국 총영사관
- An Hoa Ward 인민위원회
- 위 양 당사자

<부록 6> VWCC: - 여성 연맹의 협력 하에 진행되는 결혼 절차, 의의

VWCC - 여성연맹의 협력 하에 진행되는 결혼 절차, 의의

1. Project의 개요

□ 목적

- 장기적으로 국제결혼을 하는 베트남 여성과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 하고, '결혼 및 가족에 관한 법'을 따르도록 이바지 하기 위함.
- 단기적으로 베트남 여성연맹 산하 결혼지원센터의 효과적인 상담활동 및 베트남 법에 준거한 국제결혼 지원 활동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여, 베트남 내에서의 불법 국제결혼 활동의 제한 및 근절에 기여하고, 국제결혼 지원 활동을 위한 새로운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국제결혼으로 야기 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제한하기 위함

□ 기본 내용

▶ 베트남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 국제결혼 업무 지원을 위해 관련 법 절차에 따라 각 성의 여성연맹 산하에 결혼지원센터 (MSC; Marriage Support Center) 설치
- 현재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프로젝트 기간 중 40 개소 설치 예정
- 이 MSC가 베트남 내에서 국제결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들에 대한 상담, 결혼 지원서 접수 및 사전 정보 조사, 외국인 소개, 법적, 행정적인 절차 지원 등의 제반 국제결혼 지원 업무를 담당함.
- 기타, MSC 직원들의 업무역량 증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실시
- 결혼 후 한국으로 이주 전 베트남 여성들에 대해 한국어, 한국 문화, 요리, 예절 등에 대한 기본 교육 과정 설치 운영
- 베트남 내에서의 프로젝트를 총괄하기 위해 연맹 본부에 "국제결혼 지원사무소 (IMSO: Intermarriage Support Office)" 설치 운영

▶ 한국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 베트남 여성들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한국 남성들의 결혼지원 서류를 VWCC가 연맹으로부터 파견되어 오는 상담원과 함께 접수
- VWCC는 접수된 서류에 대해 그 기본 정보를 검사하고, 진위 여부를 체크한

후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연맹으로 송부

▶ 양국간 결혼 진행 절차

- 한국 내 VWCC에 접수되고 사전 검사를 마친 한국 남성들에 대한 정보와, 베트남 내 MSC에 접수되고 사전 검사를 마친 베트남 여성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양측이 공동 관리, 운영하는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만남 주선. 이를 위해 VWCC와IMSO간 업무 협조
- 이 후 한국 배우자 후보들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결혼 절차 진행

2. 프로젝트 실시의 의의

-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베트남 간 국제결혼의 대부분이 각 배우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정보를 거의 알지 못한 진행되어 왔으며, 더욱이, 거짓 정보를 주고 받아 실제 결혼 생활에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해 왔음.

-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자는 뜻으로 도입한 제도이며, 이제부터는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 개인의 의사와 책임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되어왔었던 사기 결혼이나 신부의 가출 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

- 즉, 이 시스템에 의거 국가기관인 결혼지원센터가 베트남 배우자의 결혼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그 신분 및 개인 정보를 보장되게 되며

- 또한 현재 이미 결혼을 한 많은 수의 베트남 신부들이 베트남 내 혼인 등록이 원활하지 않아 한국 입국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등의 문제도 전혀 발생되지 않을 것임.

<부록 7> 베트남 결혼중개업체가 소개하는 한국에서의 생활

1. 한국 생활을 빠른 시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 De song thich nghi voi cuoc song ben Han Quoc trong thoi gian nhanh nhat thi phai co gang no luc het minh

- 한국어를 빨리 배운다
- Hoc tieng Han that nhanh
- 한국식 인사 예절을 배운다.
- Hoc cach chao hoi le nghi theo cach Han quoc
- 가족관계 및 미용, 나이, 생일, 좋아하는 음식등을 확인한다.
- tim hieu ve quan he gia dinh, ten, tuoi, sinh nhat va nhung mon an ua thich..v.v
- 식사예절 및 음식 조리방법등을 학습한다.
- hoc tap cach nau an va cach thuc, phong tục an uong ..v.v
- 집에 있는 전자제품등의 사용방법 등을 익힌다.
- Lam quen voi cach cach su dung do dung dien tu ..v.v co trong nha.
- 생필품 쇼핑 방법 및 쇼핑센터 위치등을 익힌다.
- Lam quen va tin hieu cach mua sam vat dung sinh hoat cung nhu vi tri trung tam mua sam ..v.v
- 한국돈의 개념 및 싸고 비싼 물건에 대한 가격의 판단력을 키운다.
- Hoc ve cach tieu tien Han cung nhu tao cho minh nha nang phan doan ve gia ca cua cac vat xem la dat hay re
- 물건은 품질이 좋으면서 값이 싼 물건이 좋다.
- Hang hoa vua re ma chat luong lai tot thi cang tot

2. 한국에 와서 얼마되지 않아 친정집에 도와달라 하거나 직업을 갖는다고 하면 안된다.

2. Khi moi sang Han quoc chua duoc lau thi ko nen doi giup do gia dinh hay la doi di lam

- 한국에 오면 우선적으로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Neu sang Han quoc viec truooc tien la phai co gang het minh de co the thich nghi voi cuoc song ben do

- 본인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가정에 최선을 다하면 당신의 배우자도 처갓집이

어려우면 도우려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Neu nhu ban than minh co gang het minh vi gia dinh,va thich nghi nhanh voi cuoc song ben Han thi nguoi chong cung se co y dinh giup do gia dinh nha vo va vo cung ko can phai qua lo lang ve dieu do

- 한국에서 자녀를 가지고 자녀양육이 끝나서 본인이 원하고 남편이 허락한다면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그때 본인의 일부수입으로 친정집을 도울수가 있으니 급하게 행동해서는 안된다.

- Neu sang Han quoc khi da co con cai ,va viec nuoi duong con cai co phan nao on dinh roi thi neu muon co the xin y kien cua chong va khi do tu minh cung da co the kiem tien va giup do cho gia dinh, nen cung ko can phai gap gap trong chuyen do lam.

- 한국에 오자마자 친정집을 도와 달라 하거나 직업을 갖는다고 하면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을 돈 때문에 결혼한 여성으로 오해하여 가정불화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할 것.

-Neu moi vua sang Han quoc ma da doi di lam hoac la doi giup do gia dinh thi hay de y vi co the nguoi chong se hieu lam la minh la nguoi con gai vi tien ma ket hon voi nguoi ta va nhu vay co the gay ra su bat hoa trong gia dinh

3. 한국에서 무단가출을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3. Tuyet doi khong nen bo tron ra ngoai o ben Han quoc

- 한국생활중 문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마담이나 후엔에게 도움을 청하면 문제

해결에 반드시 도움을 줄 것입니다.

- Neu khi o Han quoc co van de gi say ra thi truoac tien phai yeu cau su giup do cua ba cho va hyuen ,thi chac la se duoc co loi cho viec giup giai quyet van de do.

- 본인이 임의로 무단 가출을 하면 한국에서는 위장결혼으로 판단하여 형사고발되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Neu nhu ca nhan tu y bo di ra ngoai thi o ben Han quoc co the se bi to cao voi toi ket hon gia va se bi su phat truc xuat neu nhu bi phat hien.

- 만약 무단가출로 검거되어 형사처벌을 받으면 한국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Nen nho rang neu da bo nha ra ngoai ma bi phat hien hay bi bat thi o ben Han quoc se chang ai co the giup do duoc ca.

- 참고로 한국은 베트남과 달리 경찰청 범인 검거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 무단가출자는 쉽게

검거될 수 있음을 명심할 것.

- Noi them de tham khao thi he thong canh sat ben Han quoc khac voi ca vietnam nen nhung nguoi cu tru bat ho phat rat de bi phat hien

- 무단가출하여 취직을 하려고 해도 한국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사업부가 처벌이 두려워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음을 명심

것.

- Va cung nen nho rang nhung nguoi da bo ra ngoai lam nhung ke ca khi da di lam roi thi van la nhung nguoi cu tru bat hop phap nen thuong thi cac cong ty se ko may khi su dung nhung nguoi bat hop phap nhu vay

- 만일 무단가출하여 취직중 적발이 되면 본인 및 사업주가 모두 형사처벌을 받으며 이때는

베트남 대사관에서도 본인에게 도움을 줄수 없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 Va neu nhu ke ca la dang di lam di nua,neu nhu bo ra ngoai cong ty bi phat hien su dung nguoi bat hop phap ngay ca dai su quan nhu Dai su quan cua vietnam cung ko the giup do duoc gi ca.

4. 한국에서 결혼하면 바로 자녀를 가져야 한다.

4. Neu da ket hon o Hanquoc thi phai nen co con cai luon

- 한국에서는 결혼을 한 여성은 바로 자녀를 가지고 자녀양육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Nhung nguoi da lay chong Han thuong nen co luon va deu phai co gang no luc trong viec nuoi day con

- 한국 여성도 결혼을 하면 자녀양육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대부분 그만 둔다.

- Con gai Han quoc phan lon neu da ket hon thi sau khi co con thuong nghi lam de nuoi day con cai

5. **부부간의 성격차이를 인정하고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5. **Vo chong thi thuong phai chap nhan nhung khac nhau ve tinh cach va co gang tao su hoa hop**

- 부부간의 성격은 다를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 Phai chap nhan viec du la vo chong nhung thuc te la tinh cach cung co nhieu diem khac nhau
- 성격은 쉽게 개선 되지 않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꾸준히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 Vi tinh cach ko de gi hop duoc nen can phai co su nhuong nhin cung nhu ton trong lan nhau va co gang tao su hoa hop cho nhau
- 성격차이로 가정의 불화가 되지 않도록 서로 주의해야 한다.
- Ca hai deu phai chu y de khong gay ra nhung bat hoa trong gia dinh do su khac nhau ve tinh cach

6. **한국 배우자의 현재 경제력 및 생활수준을 존중해야 한다.**

6. **Nen ton trong hoan canh song va hoan canh kinh te hien tai cua gia dinh chong ben Han**

- 배우자의 현재 경제력 및 생활수준을 인정하여 앞으로 행복하고 더 부유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

- Nen chap nhan muc song va kha nang kinh te cua nguoi chong hien tai va ca hai nen co gang de co duoc mot cuoc song hanh phuc va sung tuc hon sau nay.

7. **배우자의 경제력과 생활수준 및 성격 등을 다른 배우자와 비교하는 말이나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7. **Khong nen co nhung loi noi hoac la hanh dong so sanh nang luc kinh te,muc song va tinh cach cua chong minh voi ca nhung nguoi khac.**

- 한국 남성은 자존심이 강한 편이다.
- Con trai Han quoc thuong la co tinh tu trong cao
-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을 다른 배우자와 비교하여 격하시키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가정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Nen luu y khi noi hoac co hanh dong so sanh chong minh voi nguoi khac thi co the gay ra hiem khich,tu ai cung nhu lam cho khong khi gia dinh tro nen bat hoa

8. **한국에서 결혼한 여성이 담배를 피우면 절대로 안된다.**

8. **Con gai da ket hon ben Han quoc thi ko nen hut thuoc la.**

- 한국에서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 봅니다.
- O Han quoc thi nguoi ta nhin con gai hut thuoc voi con mat coi thuong va tieu cuc.
-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하기에 자녀에게도 건강상 문제가 됩니다.
- Va neu khi da ket hon thi de co the sinh con thi doi voi nguoi con gai giu gin suc khoe la ca mot van de
- 여성이 담배를 피우면 부부간에 불화가 될 수 있습니다.
- Neu con gai hut thuoc se co gay bat hoa den quan he vo chong

9. **한국 남편은 이런 여성을 좋아 한다 !**

9. Chong nguoi Han quoc thi thuong thich nhung kieu nguoi con gai sau!

- 남편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남편의 의견을 잘 따르는 여성
- con gai luon nghe lam theo y kien cua chong cung nhu that long ton trong chong minh
- 다정한 말 한마디에 애교있게 행동하는 여성
- con gai noi nhung loi tinh cam va hanh dong mot cach diu dang

- 부모 및 자녀를 잘 부양하는 여성
- con gai biet phung duong bo me va cham soc con cai tot
- 검소한 여성
- con gai khiem ton

- 한국생활에 잘 적응해가고 있는 여성
- con gai biet cach song sao cho thich nghi voi cuoc song ben Han quoc

10. 상기의 사항들을 학습할 때 노트에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10. De lam duoc nhung dieu tren thi can phai tap thoi quen ghi vao cuon so ghi nho

- 상기의 학습사항을 노트에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면 빠른 한국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 Neu co tap cho minh thoi quen de lam nhung dieu tren duoc thi se co loi rat nhieu cho viec thich nghi cuoc song ben Han.
 - 학습노트를 배우자나 가족이 혹시 보게되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당신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 Neu nhu nhung nguoi trong nha hoac la chong ban co the nhin thay quyen ghi nhung dieu tren thi moi nguoi se cam thay biet on ban vi biet ban that su dang co gang cham chi cho nhung dieu do.
-

THE GOVERNMENT

**DECREE No. 69/2006/ND-CP OF JULY 21, 2006,
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F DECREE No. 68/2002/ND-CP
OF JULY 10, 2002, DETAILING THE
IMPLEMENTATION OF A NUMBER OF
ARTICLES OF THE MARRIAGE AND FAMILY
LAW REGARDING THE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INVOLVING FOREIGN
ELEMENTS**

THE GOVERNMENT

*Pursuant to the December 25, 2001 Law on
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Pursuant to the June 9, 2000 Law on Marriage and
Family;*

At the proposal of the Minister of Justice,

DECREES: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To amend and supplement a number of articles of the Government's Decree No. 68/2002/ND-CP of July 10, 2002, detailing the implementation of a number of articles of the Marriage and Family Law regarding the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involving foreign elements as follows:

1. To amend Article 1 as follows:

"Article 1. Regulation scope

This Decree details the implementation of a number

of articles of the Marriage and Family Law regarding the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involving foreign elements, which include the marriage, the recognition of fathers, mothers or children, and the child adoption between Vietnamese citizens and foreigners or between foreigners permanently residing in Vietnam; the recognition of marriages, recognition of fathers, mothers or children as well as child adoption between Vietnamese citizens or between Vietnamese citizens and foreigners, which have been carried out at competent foreign agencies."

2. To amend and supplement Article 8 as follows:

"Article 8. Charges and fees

1. Those who apply for the registration of marriages, recognition of fathers, mothers, children or child adoption, or for annotations on marriages, recognition of fathers, mothers, children or child adoption into the registers, which have already been carried out at competent foreign agencies, must pay civil status fees as provided for by law.

2. Those who apply for adoption of Vietnamese children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Decree must pay charges for child adoption settlement. The charge and fee levels and the regime on management of collection, remittance and use of these charges and fees shall be provided for by the Finance Ministry."

3. To amend and supplement Clauses 1 and 2 of Article 13 as follows:

"1. The marriage registration dossier of each party shall comprise the following papers:

a/ The marriage registration declaration made according to a set form;

b/ The written certification of marital status of each party, made within 6 months to the date the dossier is received, by a competent agency of the country in which the applicant is a citizen, stating that such

applicant is currently unmarried.

Where the law of the country of which the marriage applicant is a citizen does not prescribe the grant of written certification of marital status, such certification may be replaced by a certification of oath taken by the applicant that he or she is currently unmarri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ncerned country.

c/ The written certification granted by a Vietnamese or foreign competent health organization within 6 months to the date the dossier is received, certifying that the applicant does not suffer from mental diseases or other diseases which render him or her incapable of being aware of and controlling his/her acts;

d/ The notarized or authenticated copy of the people's identity card (for Vietnamese citizens in the country), the passport or such substitute paper as laissez-passer or residence card (for foreigners or overseas Vietnamese citizens);

e/ The notarized or authenticated copy of the household registration book or the certificate of being collectively registered resident or temporary resident (for Vietnamese citizens in the country), the permanent residence card or temporary residence card or temporary residence certificate (for foreigners in Vietnam).

2. In addition to the papers prescrib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Vietnamese citizens being on active service in the armed forces or performing jobs directly related to state secrets are required to submit written certifications by their respective managing agencies or organizations of the central or provincial level that their marriages with foreigners shall not affect the protection of state secrets or contravene regulations of the concerned branches.*

4. To amend and supplement Clause 1 of Article 16 as follows:

*1. Within 20 days after receiving complete and valid dossiers as well as fees, the provincial/municipal

Justice Services shall have the responsibility:

a/ To conduct at their offices face-to-face interviews with the involved men and women in order to examine and clarify the voluntariness of their marriages, their capability of communicating with one another in a common language and their understanding about each other.

The interviews must be recorded in writing. Interviewers must state their opinions and suggestions and sign interview records.

b/ To post up marriage notices for 7 consecutive days at their offices, and at the same time to send official written requests to the commune-level People's Committees of the localities where the involved parties being Vietnamese citizens permanently reside or temporarily reside or where the foreigners in Vietnam permanently reside for posting up such notices. The commune-level People's Committees shall, after receiving official letters from the provincial/municipal Justice Services, have to post up marriage notices for 7 consecutive days at their offices. Within this time limit, if there is any complaint or denunciation about, or law-breaking act detected in relation to, the marriages, the commune-level People's Committees shall have to immediately send reports thereon to the provincial/municipal Justice Services.

c/ To study and verify the marriage registration dossiers. In cases where there is any doubt, complaint or denunciation that the involved parties enter into marriages through illegal brokerage, make sham marriages, take advantage of the marriage for the purpose of trafficking in women or for other self-seeking purposes or where they deem that the personal identification of the involved parties or papers in the marriage registration dossiers need to be clarified, the provincial/municipal Justice Services shall conduct the verification for clarification.

d/ To report on the results of interviewing the involved parties and examining the marriage dossiers

and submit proposals on the settlement of marriage registration to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s for decision, enclosed with one set of the marriage registration dossier."

5. To amend and supplement Clause 2 of Article 18 as follows:

"2. The marriage registration shall also be refused if the interview, inspection and verification results show that the marriage is conducted through illegal brokerage or is sham, not for the purpose of building a prosperous, equitable, progressive, happy and sustainable family, is not suitable with the fine traditions and customs of the nation; or aims at trafficking in women, sexually abusing women or other self-seeking purposes."

6. To amend and supplement Article 19 as follows:

"Article 19. Marriage registration at Vietnamese diplomatic missions or consular offices

1. Within 20 days as from the date of receiving complete and valid dossiers as well as fees, the Vietnamese diplomatic missions and consular offices shall have the responsibility:

a/ To conduct right at their offices face-to-face interviews with the involved men and women in order to examine and clarify the voluntariness of their marriages, their capability of communicating with one another in a common language and their understanding about each other.

The interviews must be recorded in writing. Interviewers must state their opinions and suggestions and sign interview records;

b/ To post up marriage notices for 7 consecutive days at Vietnamese diplomatic missions or consular offices;

c/ To study and verify the marriage registration dossiers. Where there is any doubt, complaint or

denunciation that the involved parties enter into the marriage through illegal brokerage, make the sham marriage, take advantage of the marriage for the purpose of trafficking in women or for other self-seeking purposes or where they deem that the personal identifications of the involved parties or papers in the marriage registration dossiers need to be clarified, the Vietnamese diplomatic missions or consular offices shall conduct the verification for clarification;

d/ In cases where they deem that the issues to be verified fall within the functions of the concerned agencies in the country, Vietnamese diplomatic missions or consular offices shall send official letters to the Foreign Ministry, clearly stating the issues which need to be verified for coordination in verification with the concerned agencies according to their specialized functions.

Within 20 days as after receiving the official letters from Vietnamese diplomatic missions or consular offices, the concerned agencies in the country shall verify the requested matters and reply the latter in writing.

e/ If deeming that the involved parties fully meet the marriage conditions and do not fall into one of the cases of marriage registration refusal prescribed in Article 18 of this Decree, the heads of Vietnamese diplomatic or consular offices shall sign marriage certificates.

In case of refusal to register the marriage, Vietnamese diplomatic missions or consular offices shall notify such in writing to the involved parties, clearly stating the reasons therefor.

2. A marriage registration ceremony shall be organized within 7 days as from the date the head of a Vietnamese diplomatic mission or consular office signs the marriage certificate, except where the involved parties, for plausible reasons, request other time, but such time limit shall not exceed 90 days; past this time limit, if the involved parties request the

organization of the marriage registration ceremony, they must restart the marriage registration procedures.

3. Marriage registration ceremonies shall be solemnly held at Vietnamese diplomatic missions or consular offices. When a marriage registration ceremony is organized, both marriage partners must be present. The representative of the concerned Vietnamese diplomatic mission or consular office shall preside over the ceremony, requesting the two parties to make final statement on their voluntary marriage. If the two parties agree to marry each other, the representative of the Vietnamese diplomatic mission or consular office shall record the marriage into the marriage register, request each party to sign the marriage certificate and the marriage register, and hand to the husband and the wife each one original marriage certificate.

4. A marriage certificate shall be valid from the date the marriage registration ceremony is organized and the marriage is recorded in the marriage register as provided for in Clause 3 of this Article. The granting of copies of marriage certificates from the original registers shall be effected by Vietnamese diplomatic missions or consular offices or the Foreign Ministry at the request of the involved parties."

7. To amend Article 20 as follows:

"Article 20. Recognition of marriages already carried out overseas

1. Marriages between Vietnamese citizens or between Vietnamese citizens and foreigners, which have been registered at competent agencies of foreign countries according to the laws of those countries, shall be recognized in Vietnam, if by the time of marriage such Vietnamese citizens have not violated Vietnamese legal provisions on marriage conditions.

Where there are violations of Vietnamese law regarding the marriage conditions but by the time of

requesting the recognition of marriages, the consequences of such violations have already been redressed or the recognition of such marriages is favorable for the protection of interests of women and children, such marriages shall still be recognized in Vietnam.

2. The marriage recognition prescrib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shall be annotated in registers according to the legal provisions on civil status registration. Where a Vietnamese citizen is absent from the competent foreign country for filing in the marriage registration procedures, upon a request for recognition of such marriage in Vietnam, the concerned provincial/municipal Justice Service shall interview the marriage partners to verify the voluntariness of their marriage."

8. To amend and supplement Article 35 as follows:

"Article 35. Principles for child adoption settlement

1. The letting of children to be adopted and the adoption of children can be carried out only in the spirit of humanitarianism, aiming to ensure the best interests for children and the respect for their fundamental rights.

It is strictly forbidden to take advantage of child adoption for the purposes of exploiting child labor, sexually abusing or trafficking in children or for purposes other than child adoption; it is also strictly forbidden to abuse the introduction, settlement and registration of child adoption for self-seeking purposes or illicit material benefits.

2. Foreigners permanently residing overseas and applying for adoption of Vietnamese children shall be considered for settlement if Vietnam and the foreign countries where such foreigners permanently reside are contracting states to a bilateral or multilateral international agreement on child adoption cooperation.

3. Foreigners permanently residing overseas and

applying for adoption of Vietnamese children but the countries where they permanently reside and Vietnam have not yet been contracting states to a bilateral or multilateral international agreement on child adoption cooperation, may also be considered for settlement if they fall into one of the following cases:

- a/ Having worked or studied in Vietnam for 6 months or more;
- b/ Their wives, husbands, or fathers or mothers being Vietnamese citizens or of Vietnamese origin;
- c/ Being next-of-kin or relatives of the to-be-adopted children or their currently adopted children being blood siblings of the to-be-adopted ones.
- d/ Foreigners falling into cases other than those mentioned at Points a, b and c of this Clause but applying for adoption of handicapped or disabled children, children having lost their civil act capacity, children being victims of toxic chemicals or affected by HIV/AIDS or infected with other dangerous diseases, who are living in lawfully set up nurturing establishments, or children defined in Clause 3, Article 36 of this Decree shall also be considered for handling;
- e/ Other cases as decided by the Justice Minister.*

9. To amend and supplement Article 36 as follows:

*Article 36. Children to be adopted

1. Children to be adopted must be aged fifteen or younger. Children aged between over fifteen and under sixteen can be adopted only if they are disabled or have lost their civil act capacity.

Children can only be adopted by one person or two persons being husband and wife. Such husband and wife must be persons of different sexes and bound together by marital relations.

2. Children to be adopted are those living in nurturing establishments lawfully set up in Vietnam, including:

- a/ Abandoned children;
- b/ Orphans;
- c/ Handicapped or disabled children;
- d/ Children who have lost their civil act capacity;
- e/ Children being victims of toxic chemicals;
- f/ Children affected by HIV/AIDS;
- g/ Children suffering from other dangerous diseases;
- h/ Other children who are admitted to nurturing establishments under the provisions of law.

3. Children living in families may also be considered for adoption by foreigners if they are orphans; handicapped or disabled children; children who have lost their civil act capacity; children suffering from other dangerous diseases; children being victims of toxic chemicals; children affected by HIV/AIDS; children who are relatives or next-of-kin of the applicants or who have blood siblings being adopted by the applicants.

4. Handicapped or disabled children, children being victims of toxic chemicals, children affected by HIV/AIDS or infected with other dangerous diseases who are being treated overseas shall be considered for adoption if there are foreigners wishing to adopt them.*

10. To amend and supplement Article 41 as follows:

*Article 41. Child adopters' dossiers

1. The dossier of a foreign applicant for adoption of a Vietnamese child (children) shall comprise the following papers:

- a/ The application for adoption of a Vietnamese child (children), made according to a set form;
- b/ The notarized or authenticated copy of the applicant's passport or substitute paper such as laissez-passer or residence card;

c/ The valid permit granted by the competent body of the country where the applicant permanently resides, allowing him/her to adopt children. In cases where this type of permit is not granted by the country of permanent residence of the applicant, it shall be substituted for by a written certification of full satisfaction of conditions for child adoption according to the law of that country;

d/ The investigation report on psychological, family and social conditions of the applicant, granted by the competent organization of the country where such applicant permanently resides;

e/ The written certification issued by a competent health organization of the country, where the applicant permanently resides, or by a Vietnamese health organization of the provincial or higher level within 6 months counting to the date the dossier is received, which states that such person is in good health and not suffering from mental diseases or other diseases which render him/her incapable of being aware of or controlling his/her acts, or infected with contagious diseases;

f/ The written certification of the applicant's income, proving that he/she can afford child adoption;

g/ The applicant's judicial record card, issued by the competent agency of the country where he/she permanently resides, within 12 months counting to the date the dossier is received;

h/ The copy of the applicant's marriage certificate, in cases where he/she is a spouse in the marital period;

i/ Child adoption applicants in the cases defined at Points a, b and c, Clause 3, Article 35 of this Decree must have suitable papers as proof, issued by the competent agency of Vietnam or the country where he/she permanently resides.

2. The papers prescrib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shall be compiled in 2 sets of dossier.

Where foreigners applying for adoption of Vietnamese children fall into the cases defined in Clause 2, Article 35 of this Decree, their child adoption

dossiers must be submitted by the concerned foreign competent agencies or organizations to the International Child Adoption Agency.

Where foreigners applying for adoption of Vietnamese children fall into the cases defined in Clause 3, Article 35 of this Decree, they must personally submit their child adoption dossiers to the International Child Adoption Agency.

11. To amend and supplement Clause 1 of Article 42 as follows:

*1. Within 7 days a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complete dossiers and charges, the International Child Adoption Agency shall examine and consider the entire dossiers.

In cases where the dossiers are incomplete or invalid, the International Child Adoption Agency shall notify the child adoption applicants thereof for supplementation and finalization of the dossiers."

12. To amend and supplement Article 44 as follows:

*Article 44. Dossiers of to be-adopted children

1. The dossier of a to be-adopted child shall comprise the following papers:

a/ The notarized or authenticated copy of the child's birth certificate;

b/ The written agreement to let the child be adopted, signed by the persons defined in Clause 4 of this Article;

c/ The written certification by the health organization of the district or higher level of the child's health conditions;

d/ Two color photos of the child, taken at full-length, of 10cm x 15cm or 9cm x 12cm size.

2. For children living in lawfully set up nurturing establishments, in addition to the papers prescrib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the to be-adopted children's

dossiers must also include decisions of agencies or organizations competent to admit such children in nurturing establishments, written records on the consignment of the children into nurturing establishments and papers corresponding one of the following cases:

a/ For an abandoned child, the report on the affair, made by the person that has detected the abandoned child; child abandonment record (certified by the local police or local administration); the paper evidencing that the child abandonment has been announced on the mass media (of the provincial or higher level) for 30 days but no relative has come to receive the child;

b/ For an orphan, the notarized or authenticated copy of the death certificates of his/her natural parents;

c/ For a child whose parents have lost their civil act capacity, the notarized copy of the court's legally effective judgment or decision, declaring that his/her natural parents have lost their civil act capacity.

3. For children living in families, in addition to the papers defin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there must also be notarized or authenticated copies of household registration books or definite temporary residence certificates of their natural parents or guardians who are nurturing such children.

4. The following persons can sign written agreement on child adoption:

a/ The heads of the nurturing establishments lawfully set up in Vietnam voluntarily agree to let the adoption of children living in such establishments. In cases where the father and/or mother of a child are/is still alive, there must also be the written voluntary agreement of the father and/or mother of that child, except for the cases defined at Points a and c, Clause 2 of this Article or when such child was consigned into the nurturing establishment with his/her parents' written agreement to voluntarily let him/her be adopted;

b/ The natural parents of a child may voluntarily

agree to let their child who is living in their family be adopted. If a parent of the child has died or lost his/her civil act capacity, only the agreement of the surviving parent is required. Where both parents of the child have died or lost their civil act capacity, there must be the consent of the guardian of that child.

c/ For children of full nine years of age or older, his/her written consent on adoption is required (which can be stated in the paper defined at Point a or b of this Clause).

5. For handicapped or disabled children, children being victims of toxic chemicals, infected with HIV/AIDS or other dangerous diseases defined at Point d, Clause 3, Articles 35 and 36 of this Decree, there must be written certifications issued by competent medical establishments according to regulations of the Health Ministry and relevant provisions of law. For children having lost their civil act capacity defined at Point d, Clause 3, Article 35 and Article 36 of this Decree, there must be notarized copies of the legally effective court ruling that such children have lost their civil act capacity."

13. To amend and supplement Clauses 2 and 3 of Article 47 as follows:

"2. Within 30 days a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of the provincial/municipal Justice Service, a foreigner applying for adoption of a Vietnamese child (children) must be present in Vietnam to pay fees to the latter and complete child adoption procedures. If for objective reasons they cannot present themselves within the said time limit, they must send written requests to the provincial/municipal Justice Service for extension thereof but the extension duration shall not exceed 60 days, counting from the date the provincial/municipal Justice Service issues written permission for such extension.

Foreigners applying for adoption of Vietnamese children must make written commitments (according

to a set form) to notify once every six months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and the International Child Adoption Agency of the development of the adopted children in the first three years, then notify such once a year in the subsequent years till the children reach full 18 years of age.

Where for objective reasons, the foreigners applying for adoption of Vietnamese children cannot be present in Vietnam, they may sign in advance the written commitments (made according to the set form) and authorize in writing the Vietnam-based foreign child adoption agencies which apply for child adoption on their behalf, to pay fees and submit written commitments to provincial/municipal Justice Services for completion of child adoption procedures. Foreign applicants for adoption of Vietnamese children must commit not to refuse to adopt the children who are recommended for adoption.

3. Within 7 days as from the date a foreign applicant for child adoption or the Vietnam-based foreign child adoption agency authorized by such applicant pays fees and sign the written commitment to notify the development of the adopted child, the provincial/municipal Justice Service shall report the verification results and make proposals on processing of the foreigner's application for adoption of the Vietnamese child, then submit them together with one set of the child's dossier and one set of the child adoption applicant's dossier to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for decision.*

14. To amend and supplement Clause 1 of Article 79 as follows:

*1. The provisions of this Decree shall also apply to handle the registration of marriage, father, mother or child recognition and child adoption between Vietnamese citizens, either or both of them permanently residing abroad. In cases where Vietnamese citizens permanently residing overseas

apply for adoption of Vietnamese children defined in Article 36 of this Decree, their applications shall be considered for handling without any restriction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Clause 3, Article 35 of this Decree.

Where foreigners permanently residing in foreign countries apply for adoption of Vietnamese children defined in Clause 4, Article 36 of this Decree, their applications shall be considered for handling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2, Chapter IV of this Decree as for children without permanent household registration in the country.*

15. To add to the beginning of Clause 3 of Article 81 the following provisions: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Vietnam Women's Union shall coordinate with the Justice Ministry, the Home Affairs Ministry, the Finance Ministry and other concerned ministries and branches in guiding the implementation of a number of this Decree's provisions on marriage support centers.

16. To remove the word "divorce" in Article 7 and in the title of Section 2, Chapter II of the Government's Decree No. 68/2002/ND-CP of July 10, 2002.

Article 2.- This Decree takes effect 15 days after its publication in "CONG BAO." The Justice Minister shall have to guide and inspect the implementation of this Decree.

Article 3.- Ministers, heads of ministerial-level agencies, heads of the Government-attached agencies, presidents of provincial/municipal People's Committees, and concerned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shall have to implement this Decre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Prime Minister
NGUYEN TAN DUNG

<부록 9> 고용허가제 근로계약서 (몽골 노동자)

[별지 제6호 사의] (양쪽)

표준 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will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 | | | | |
|--------------------|-----------------------------------|------------|--|------------|
| 사원지(가) Employer |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 [Redacted] | 전화 Phone number | [Redacted] |
| |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 [Redacted] | | |
| | 성명 Name of the employer | [Redacted]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 [Redacted] |
| 취업지(을) Employee | 성명 Name of the employee | [Redacted] | 생년월일 Birth Date | [Redacted] |
| | 본국주소 Address in home country | [Redacted] | | |

| | |
|---------------------|---|
| 1. 근로계약기간 | * 수습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포함 (일국영농농민) <input type="checkbox"/> 1개월 <input type="checkbox"/> 2개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3개월 <input type="checkbox"/> 미함함 * 이 근로계약서의 기한 (수습기간이 포함된다면) 1년(1년)에 근로계약기간은 합쳐서 1년(1년) |
| 1. Contract period: | + Probation period: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cluded (for <input type="checkbox"/> 1 month <input type="checkbox"/> 2 months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months from entry date) <input type="checkbox"/> Not Included * The labor contract enters into effect on the date of entry and remains valid for one year. |
| 2. 취업의 장소 | 경기도 [Redacted] Gyeonggi-do [Redacted] |
| 3. 업무내용 | -업종: 제조업/정유제품 제조업/정채업/서비스업 -사업내용: 수건 표백기공 -직무내용: 생산보조 -Industry: Manufacturing/Manufacture of Textiles, Except Sewn Wearing Apparel -Business: 수건 표백기공 -Occupation: 생산보조 |
| 4. 근무시간 | (0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 일평균 시간외 근무시간 0 시간 (사업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교대제 <input type="checkbox"/> 2교대 <input type="checkbox"/> 조3교대 <input type="checkbox"/> 순3교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 ※ 가사사용민, 개인간병민은 대체할 생력형 : 야간, 중·후수선업 근로계약의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사업장으로 자동종류 가능 |
| 4. Working hours | from (08:30) to (17:30) ※ average daily overtime 0 hours (depending on an individual company) ※ shift system <input type="checkbox"/> 2groups 2shift <input type="checkbox"/> 3groups 3shift <input type="checkbox"/> 4groups 3shift <input checked="" type="checkbox"/> Other () * An employer of worker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omit the working hours. And an employer of workers in Agriculture and Stock Breeding can decide working hours at his/her discretion because the industry is exempted from the relevant regulations of working hours, off days and recess hours. |

210mc297(국)인(사)노(고)허(가)제(표)준(근)로(계)약(서)

(단독)

| | | |
|--|---|--|
| 5. 휴게시간 5. Recess hours | 1일 (60)분 (60) minutes per day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 가사실 생략함 / 영구, 근로기준법 제 61조의 농업, 축산, 양육, 수산업의 경우 노동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 6. 휴일 6. Holidays | 기타 (별외 1외) Etc | |
| 7. 임금 7. Payment | 1) 월 소득액: - 기본급 (786,480)원 - 고정급 ()원 - 특수승진급 ()원 ※ 수습기간 중 임: ()원 2) 연건, 비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1) Monthly Normal Wages - Basic Wages : Monthly wages (786,480)원 - Fixed Allowances : (0) won ※ Probation Period : Monthly wage 707832) Won 2) Additional pay rate for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ork. | |
| 8. 임금지급일 8. Payment date | 매월 (매주 15) 일 / 요일. 다만, 임금지급일에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전에 지급한다. (15) of every month/every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 |
| 9. 지급방법 9. Payment methods | 임금 및 수당은 "은행계좌입금"의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에 입금한다. "입금"을 증명하는 은행입금 도장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Wages and benefits will be paid to the employee or credited to the account of the employee.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 |
| 10. 기타 10. Other | 1) 거주, 세 제공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미제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비채 0 원 - 거주, 세 관리비, 비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부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주 부담 2) 식사 제공에 <input type="checkbox"/> 朝食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식 <input type="checkbox"/> 석식 <input type="checkbox"/> 미제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비채 0 원 3) 기타 사항 1) Room <input checked=""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 cash : 0 원 - Monthly Maintenance Bill paid by <input type="checkbox"/> Employee <input checked="" type="checkbox"/> Employer 2) Board : Paid by employer <input type="checkbox"/> Breakfa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Lunch <input type="checkbox"/> Dinner <input type="checkbox"/> in cash 0 원 3) Others | |
| 11. 이 계약에 정한 바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정한 바에 따른다.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할 때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 휴게 기타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업주와 자유롭게 계약 체결 가능하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의 농업, 축산, 양육, 수산업의 경우 노동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아니 함. 11.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worker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 worker.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1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 | |
| 2007 년 08 월 21 일 07/08/21 (YY/MM/DD) | | |
| (가) 사용자 : _____ Employer : _____ | | (인) 원본대조필 _____ (인) _____ (인) |
| (나) 취업자 : _____ Employee : _____ | | (인) 원본대조필 _____ (인) _____ (인) |

<부록 10> 조사 질문지: 몽골, 베트남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 NI간 인권현안 공동사업: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몽골 방문조사 계획 및 질문지

2007. 10. 19.

조 사 연 구 팀

1. 몽골 조사 일정표

| 일시 | 기관 | | | |
|-------|---------------|---|-----------------------------|-----------|
| 10/11 | 15.00 - 17.00 | 한국주재 몽골대사관 | | |
| 10/22 | 22.35 | 울란바토르 도착 (KE867) UB Continental Hotel 몽골외교부 (Contact point) | | |
| 10/23 | 09.00 - 10.30 | 국가 시민등록 및 정보 센터 (State Center for Civil Registration and Information): 법무내부부(MOJHA) 산하 | | |
| | 11.00 - 12.00 | 이주귀화외국인사무소 (Office of Immigration, Naturalization and Foreign Citizens): 법무내부부 산하 | | |
| | 14.00 - 15.30 | 노동사회복지부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Welfare) - (State Center for Work Force Enrollment?) | | |
| | 16.00 - 17.30 | 몽골국가인권위원회 (NHRC) Commissioner Oyunchimeg Purev | | |
| | 19.00 - | 몽골 외교부 / IOM 몽골사무소 | | |
| 10/24 | 10.00 - 11.30 | 해외인력센터 (Center for Overseas Employment) | | |
| | 14.00 - 15.30 | 몽골주재 한국대사관 (Korean Embassy) | | |
| | 14.00 - 17.30 | 한국산업인력공단 몽골사무소 (HRD Korea) / | | |
| | 19.00 - | NGO 활동가 및 여성 | 귀환 노동자 가정방문 | |
| 10/25 | 10.00 - 11.00 | 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 법무법인 한몽 | |
| | 11.30 - 13.00 | Gender Equality for Labour Development Center | 고용허가제 한국행 대기자 집단인 터뷰 (4) | |
| | 14.00 - 16.00 | National Center Against Violence | | |
| | 16.00 - 18.00 | 고용허가제 한국행 남녀 대기자 인터뷰 (3) | | |
| | 19.00 - | 현지 가정 방문 | MNB 다큐멘터리 감독 | |
| | 22.35 | | | |
| 10/26 | 10.00 - 11.00 | 국제앰네스티 몽골지부 (AI) | 몽골 중소기업노동자협회 | |
| | 16.00 - 17.00 | 몽골뉴스 | 한국대사관 영사 | |
| | 19.00 - | 결혼이주여성 인터뷰 | | |
| 10/27 | 오전 | 이주노동자 인터뷰 | 결혼이주여성 인터뷰 | 현지 결혼식 참관 |
| | 오후 | 이주노동자 인터뷰 | 결혼이주여성 인터뷰 | |
| 10/28 | 00.20 | | | |
| | | 이주노동자 가정 방문 (테르지) | | |
| 10/29 | 오전 | 이주노동자 인터뷰 | 결혼이주여성 인터뷰 | |
| | 17.30 | 울란바토르 출발 (KE868) | | |

2. 기관별 질문지 - 몽골 정부기관

<노동이주 관련기관>

○ 노동사회부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Welfare)

1.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귀 부처의 주요 업무내용은 무엇입니까?
2.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역할이 어떻게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는지 관련 부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3. 해외취업청(MBE)이 현재 존재하는지. 한다면 정부산하 기관인지 영리기관인지 궁금합니다. 또, 해외취업청(MBE)가 지난해 한국에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소를 개소할 예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후 진행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3. 몽골에서 해외 인력송출의 현황과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이며 한국으로의 인력송출 현황은 어떤가요?
4. 몽골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지역적인 분포는 울란바트로를 비롯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5. 한국으로의 노동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기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과열이나 브로커 개입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몽골 정부에서 이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6. 다른 나라 예를 보면 고용허가제 송출과정에서 공식비용 이외에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몽골의 경우 지금까지 송출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나 보고 된 내용이 있나요?

7. 해외에서 이주노동을 마치고 몽골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귀환 후 사회적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8. 2006년 한국의 노동부 장관이 방문하고 난 후 한·몽골 노동부 MOU를 체결하기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체결여부는 어떠한지, 그리고 체결되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9. 몽골정부는 고용허가제 개선방향으로 여성인력의 증대와 가족단위 송출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인 요구를 하시는 데 그 취지를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0. 마지막으로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나 한국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State Center for Work Force Enrollment (혹은 Mediation Bureau for Employment)

1. 귀 기관이 고용허가제 하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2. 몽골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거치게 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몽골의 해외 인력송출규모는 어떻게 되며 현재 한국에 고용허가제로 나가 있는 인원은 남·여 별로 어떻게 됩니까?
4. 몽골의 경우 영토가 넓기 때문에 고용허가제에 대한 홍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허가제에 대해 어떻게 홍보하고 있으며 성과는 어떻습니까? 또한, 홍보물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공식비용과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5. 한국에 오려는 사람은 많은 데 비해 기회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발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오.
6. 고용허가제 하에서 일반적인 선발인원 이외에 특별선발 인원이 있는지? 신청에서 선발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평균적인 송출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7. 몽골 내에서 한국어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부와 사설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한국어 시험 응시자를 사전에 몇 명으로 할 지 한국 정부와 사전 조율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응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9. 시험장소가 울란바토르에서만 실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먼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요.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10. 한국어 교육 비용이 100 - 300달러에 달한다고 들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11. 고용허가제로 선발된 후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사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있다면 어떠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12. 한국에서 고용허가제로 3년간 일하고 사업주가 원할 경우 다시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경우 재고용 실태는 어떠한지 몽골 정부의 입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13. 산업연수제와 비교해 고용허가제가 갖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4. 끝으로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더 나은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나 한국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혼이주 관련기관>

○ 이주귀화외국인사무소 (Office of Immigration, Naturalization and Foreign Citizens (혹은 Ministry of Justice and Home Affairs))

1. 국제결혼에 대한 특히, 중개업체나 특정 종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한국남성과 몽골 여성의 결혼 과정에 몽골 정부의 입장, 주요 정책은 무엇입니까?
2. 몽골의 국제결혼 중개 규제법이나 국제결혼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3. 중개업체나 특정 종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한국남성과 몽골 여성의 결혼 과정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고 계신지요.
4. 특히, 몽골 현지 중개업체와 한국 중개업자들의 활동 내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 몽골 현지 중개업체와 한국 중개업자들의 탈법적인 중개 활동이 보고되거나 단속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6. 중개업체나 특정 종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한국남성과 몽골여성의 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탈법적인 결혼 중개 방지를 위해 한국과 몽골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 결혼 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밖에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 한국남성과 몽골여성의 국제결혼 관련 자료가 있으시다면, 주실 수 있으신지요.

○ 국가 시민등록 및 정보 센터 (State Center for Civil Registration and Information)

1. 국가 시민등록 및 정보 센터 (State Center for Civil Registration and Information)의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2. 국가 시민등록 및 정보 센터 (State Center for Civil Registration and Information)의 국제결혼 관련 업무는 무엇입니까
3.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 혼인신고의 절차를 규정하는 몽골의 법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4. 외국인과 결혼 하는 경우 혼인신고를 위한 필요 서류 및 혼인 신고 절차는 어떠한습니까.

(국제결혼 필요서류와 혼인신고 절차 안내서 받아오기)

5. 혼인신고 시 혹은 혼인신고 후 혼인 증명서 수령 시 결혼 양당사자의 참석을 요구하거나, 인터뷰를 실시하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6. 혼인신고 후 혼인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7. 몽골 여성들의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몽골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하는 주요 대상 국가는 어떠한지,
 - 주요 대상국에 변화가 있습니까,
 - 몽골여성과 한국남성의 국제결혼 변화 추이는 어떠한지.
 -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여성들의 연령, 학력, 직업, 출신지등 성향은 어떠한 것입니까
8. 몽골인과 외국인과 혼인신고 시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9. 한국 남성과 몽골 여성의 혼인 등록 건수에 관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주실 수 있으신지요.

○ 몽골 국가인권위원회

1. 몽골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2. 최근 몽골에서 가장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인권문제는 어떠한 것인가요?
그 문제에 대해 귀 기관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3. 최근 몽골에서 가장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인권 문제는 어떠한 것인가요? 특히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몽골의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한 인권 문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주를 하기 이전 몽골 국내에서의 문제와 이주를 한 이후 외국에서의 문제를 나누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몽골인들이 해외이주를 선택하는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사실들(pushing effect) 가운데 인권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있을까요?
6. 앞서 설명하신 몽골사회의 인권 문제들이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7. 몽골정부는 비준한 UN의 인권보장시스템에서 몽골출신 이주민과 관련한 권고 혹은 코멘트를 받은 적이 있는가요?
8. 국제인권법의 기준으로 보아 몽골의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과정에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9.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 및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몽골인, 귀환한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3. 기관별 질문지 - NGO

○ NCAV(National Center Against Violence)

1. 몽골 내 여성에 대한 폭력(가정 폭력, 성폭력, 성희롱 등)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2. NCAV의 주요 목적과 활동 내용을 소개해 주십시오.
 - 법률 상담 지원의 내용
 - 심리적 상담 지원의 내용
 - 쉼터, transit house, hot-line 운영 상황
 - program 내용 등
3. 2004년 제정된 가정폭력 방지 법안(Law Combat Domestic Violence)의 제정 배경은 무엇입니까.
4. 법안 제정 이외에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몽골 정부의 정책이나 활동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5. 몽골 내 국제결혼의 역사를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또한 최근 국제결혼의 변화추이를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6. 국제결혼에 관한, 특히 중개업체나 특정 종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한국남성과 몽골 여성의 국제결혼에 관한 NCAV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형식의 국제결혼을 인신매매의 한 형태로 보시나요?

7. 한국남성과 몽골 여성의 국제결혼 및 국제결혼 중개업에 몽골 정부의 입장, 주요 정책이나 법률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8. 중개업체나 특정 종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한국남성과 몽골 여성의 결혼 과정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고 계신지요.
9. NCAV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활동을 한 적이 있다면 소개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10. NCAV에 한국남성과 결혼한 몽골 여성들의 피해 사례가 접수된 적이 있습니까,
11. 중개업체나 특정 종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한국남성과 몽골여성의 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결혼 당사자의 인권 보호와 탈법적인 결혼중개 방지를 위해, 한국과 몽골 정부 차원에서 혹은 민간단체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2. 2006년 NGO인 Center for Gender Equality Right에서 한국남성과 결혼한 몽골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13. 최근 몽골에서 가장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문제는 어떠한 것인가요? 그 문제에 대해 귀 단체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14. 최근 몽골에서 빈부격차, 성차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인권침해 문제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귀 단체의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15. 위에서 설명하신 사회문제들의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 CHRD(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1. CHRD의 주요 목적과 활동 내용을 소개해 주십시오.
2. CHRD는 몽골의 인권상황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몽골의 인권 상황 특히, 여성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3. CHRD는 여성과 아동에 관한 인신매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관한 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현황(인신매매의 특성, 주요 목적국,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4. 인신매매 방지하고 몽골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몽골 정부의 정책이나 활동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5. 몽골 내 국제결혼의 역사를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또한 최근 국제결혼의 변화추이를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6. 국제결혼에 관한, 특히 중개업체나 특정 종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한국남성과 몽골 여성의 국제결혼에 관한 CHRD의 입장은 무엇 입니까. 이러한 형식의 국제결혼을 인신매매의 한 형태로 보시나요?

7. 한국남성과 몽골 여성의 국제결혼 및 국제결혼 중개업에 몽골 정부의 입장, 주요 정책이나 법률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8. 중개업체나 특정 종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한국남성과 몽골 여성의 결혼 과정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고 계신지요.
9. CHRD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활동을 한 적이 있다면 소개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10. 한국남성과 결혼한 몽골 여성들의 피해 사례가 접수된 적이 있습니까,
11. 중개업체나 특정 종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한국남성과 몽골여성의 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결혼 당사자의 인권 보호와 탈법적인 결혼중개 방지를 위해, 한국과 몽골 정부 차원에서 혹은 민간단체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최근 몽골에서 가장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문제는 어떠한 것이가요? 그 문제에 대해 귀 단체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13. 최근 몽골에서 빈부격차, 성차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인권침해 문제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귀 단체의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14. 위에서 설명하신 사회문제들의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몽골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CGER(Center for Gender Equality Right)

1. CGER 의 주요 목적과 활동 내용을 소개해 주십시오.
2. 몽골 내 여성들의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몽골 여성들이 안고 있는 주요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3. 국제결혼에 관한, 특히 중개업체나 특정 종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한국남성과 몽골 여성의 국제결혼에 관한 CGER 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몽골 내 국제결혼의 역사를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또한 최근 국제결혼의 변화추이를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5. 한국남성과 몽골 여성의 국제결혼 및 국제결혼 중개업에 몽골 정부의 입장, 주요 정책이나 법률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6. 중개업체나 특정 종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한국남성과 몽골 여성의 결혼 과정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고 계신지요. 한국남성과 결혼한 몽골 여성들의 피해 사례가 접수된 적이 있습니까,
7. CGER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활동을 한 적이 있다면 소개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8. 2006년 NGO인 Center for Gender Equality Right에서 한국남성과 결혼한 몽골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하게 된 문제의식이나 배경은 무엇입니까. 또한 조사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9. 중개업체나 특정 종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한국남성과 몽골여성의 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결혼 당사자의 인권 보호와 탈법적인 결혼중개 방지를 위해, 한국과 몽골 정부 차원에서 혹은 민간단체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최근 몽골에서 가장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문제는 어떠한 것인가요? 그 문제에 대해 귀 단체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11. 최근 몽골에서 빈부격차, 성차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인권침해 문제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귀 단체의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12. 위에서 설명하신 사회문제들의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몽골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국제엠네스티 몽골지부

1. 엠네스티 몽골지부가 몽골사회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2. 최근 몽골에서 가장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인권문제는 어떠한 것인가요? 그 문제에 대해 귀 기관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3. 최근 몽골에서 가장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인권 문제는 어떠한 것인가

요? 특히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몽골의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한 인권 문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주를 하기 이전 몽골 국내에서의 문제와 이주를 한 이후 외국에서의 문제를 나누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몽골인들이 해외이주를 선택하는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사실들(pushing effect) 가운데 인권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있을까요?
6. 앞서 설명하신 몽골사회의 인권 문제들이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7. 몽골정부는 비준한 UN의 인권보장시스템에서 몽골출신 이주민과 관련한 권고 혹은 코멘트를 받은 적이 있는가요?
8. 국제인권법의 기준으로 보아 몽골의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과정에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9.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 및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몽골인, 귀환한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몽골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또 앰네스티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4. 기관별 질문지 - 한국 정부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1. 고용허가제 송출인원 규모는(누계 및 2007년10월 현재 송출인원)는 어떻게 되며, 남성과 여성의 성비는 어떠합니까?
2. 산업인력공단몽골지사의 구체적인 업무는 무엇입니까?
3. 몽골의 노동이주 송출과정 전반에 관해 말씀해주십시오.
4. 한국어능력시험 운영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5. 입국전 교육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또한 입국전 교육과정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6. 현재 산업인력공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평균 송출비용은 얼마입니까?
7. 한 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몽골노동자의 쿼터가 정해져 있는지, 있다면 국가 간 쿼터가 어떻게 정해지는 지 궁금합니다.
8. 베트남의 경우 MOU를 통해 일반 고용허가제 신청자와 함께 특례를 적용받는 쿼터가 있었습니다. 몽골의 경우에는 그런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9. 한국어 시험 응시자를 사전에 몇 명으로 할 지 한국 정부와 사전 조율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응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0. 지난 2006년 신문 기사를 보면 한국어능력시험과 관련해서 정해진 시험응시 인원인 10,000명에 추가로 몽골정부가 4,000명의 인원에 대해 시험을 치뤘던 문제가 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1. 몽골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3월까지에 일시적으로 한국으로의 송출이 중단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송출중단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2. 지난해 이상수장관이 몽골에 방문하였을 때도 몽골 노동사회부 장관은 그 당시 송출기관이었던 MBE의 민영화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13. 몽골사람들이 이전에 산업연수제 송출을 담당했던 '몽골뉴스'가 고용허가제 송출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에서도 '몽골뉴스'와 관련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4. 노동인력송출과정에서 몽골의 브로커 혹은 관리들을 통한 비합법적인 송출과정 개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 바를 말씀해주십시오.
15. 송출비리 및 노동이주송출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인력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16. 송출비리 척결을 위해 한국정부와 몽골정부가 추가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한국정부/ 몽골 정부 나눠서)

○ 몽골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결혼이주 관련>

1. 몽골에서의 한국으로의 국제결혼 현황은 어떠한지요? 최근 몽골에서 결혼 비자 발급 건수에 있어 변화가 있습니까? 증가, 또는 감소 추세인지요?
2. 국제결혼 관련 몽골 정부 정책에 관해 알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3. 결혼비자를 신청한 몽골 여성들의 지역이나 출신별 경향은 어떠한지요?
4. 결혼 비자 발급 절차 및 구비서류는 어떠한가요? 비자발급전 면담 등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혹은 설문지를 받고 계십니까?
5. 국제결혼과 관련된 비자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몽골 여성들이나 한국 남성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지요?
6. 몽골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국 중개업체의 수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사관 차원에서 한국인 중개업자들과의 간담회나 교육 등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7. 한국 정부나 대사관이 결혼 과정에서의 결혼 당사자 남녀의 인권 보호나, 탈법적인 결혼중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노동이주 관련>

1. 대사관에서 파악하고 계신 고용허가제 이후 송출인원의 규모는 어떠한지요?
2. 6월 1일 부터 고용허가제 재고용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

고용 관련 재입국비자 신청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3. 재고용조치이후 각 재외공관에서 재입국관련 비자 발급이 연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4. 고용허가제와 관련해서 대사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되며 민원의 주요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5. 몽골에서 한국으로의 노동이주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6. 대사관 입장에서 고용허가제가 몽골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7. 산업인력공단 몽골 사무소와 대사관은 어떠한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지요?
8. 송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송출비리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사관에서 노력하고 있는 점은 어떤 것입니까?
9. 대사관 입장에서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 NI간 인권현안 공동사업: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베트남 방문조사 계획 및 질문지

2007. 9. 7.

조 사 연 구 팀

1. 베트남 조사 일정표

| 일시 | 기관 | |
|------|---------------|------------------------|
| 9/10 | 13.15 | 하노이 도착 |
| | 16.00 - 17.00 | 노동부 해외노동자센터 |
| 9/11 | 09.00 - 10.00 | 베트남주재 한국대사관 |
| | 11.00 - 12.00 | 베트남여성연맹 |
| | 13.30 - 14.30 | IOM 하노이 사무소 |
| | 15.00 - 16.00 | 한국산업인력공단 베트남사무소 |
| 9/12 | 오전 | 하이퐁 행 |
| | 14.00 - 15.00 | 인민위원회 산하 하이퐁 노동부 |
| | 16.00 - 17.00 | 하이퐁 여성연맹 |
| 9/13 | 오전 | 여성연맹 산하 하이퐁 결혼지원센터 |
| | 오후 | 이주노동자/결혼이주여성 인터뷰 |
| 9/14 | 전일 | 이주노동자/결혼이주여성 인터뷰 |
| | 21.20 | 1팀 하이퐁잔류 2팀 호치민 행 |
| 9/15 | 오전 | 1팀 인터뷰 2팀 동탑 행 |
| | 오후 | 1팀 하노이 행 2팀 인터뷰 |
| 9/16 | 01.10 | 1팀 귀국 |
| | 전일 | 이주여성 IOM캠페인 참가 / 인터뷰 |
| 9/17 | 오전 | 호치민 행 이동 |
| | 오후 | 호치민 총영사관 |
| 9/18 | 오전 | IOM 호치민 사무소 |
| | 오후 | 여성연맹 산하 호치민 결혼지원센터 |
| 9/19 | 전일 | 베트남 결혼이주 IOM워크샵 참가 |
| 9/20 | 전일 | 베트남 결혼이주 IOM워크샵 참가 |
| 9/21 | 오전 | 안양 행 이동 |
| | 오후 | 결혼이주여성 인터뷰 |
| 9/23 | 오전 | 이주여성 IOM캠페인참가 / 인터뷰 |
| | 오후 | 호치민 행 이동 |
| 9/24 | 01.10 | 2팀 귀국 |

2. 기관별 질문지

○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

<결혼이주 관련>

1. 베트남에서의 국제결혼 현황은 어떠합니까?
2. 국제결혼 관련 베트남 정부 정책에 관해 알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특히, 최근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이 베트남에서 문제가 되면서, 베트남 정부 정책의 변화나 법 집행의 변화가 있습니까?
3. 최근 베트남에서 비자 발급 건수에 있어 변화가 있습니까?
4. 초기에는 주로 호치민에서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북부 지역 출신의 여성들이 많아지고, 북부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5. 배우자 결혼 비자 발급 절차 및 구비서류는 어떠합니까?
6. 국제결혼 증명서를 둘러싼 베트남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한국 대사관 제출한 혼인증명서의 10%가 가짜였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사관의 대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7. 하노이를 중심으로 결혼 중개를 하고 있는 한국 중개업체의 수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8. 대사관 차원에서 한국인 중개업자들과의 간담회나 교육 등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9. 비자발급전 면담 등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혹은 설문지를 받고 계십니까?

10. 최근 한국 중개업자들이 단속되거나 처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 대사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11. 한국 정부나 대사관이 결혼 과정에서의 결혼 당사자의 인권 보호나, 탈법적인 결혼중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노동이주 관련>

1. 대사관에서 파악하고 고용허가제 송출인원 규모는?

2. 6월 1일 부터 고용허가제 재고용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고용 관련 재입국비자 신청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3. 재고용조치이후 각 재외공관에서 재입국관련 비자 발급이 연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4.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대사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되며 민원의 주요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5. 베트남에서 한국으로의 노동이주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6. 대사관 입장에서 고용허가제가 베트남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7. 산업인력공단베트남지사와 대사관은 어떠한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지?

8. 송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송출비리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사관

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은?

9. 대사관 입장에서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여성연맹(Women's Union)

1. 국가조직으로서 여성연맹(Women's Union)의 조직 체계와 역할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2. 베트남에서의 국제결혼 현황은 어떻습니까? 국제결혼에 대한 베트남 정부 혹은 여성연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현행 국제결혼, 국제결혼 중개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 국제결혼 관련 베트남 정부 정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4. 국제결혼 관련 여맹의 주요 활동 내용은 무엇입니까?

5. 베트남의 <결혼과 가족에 관한 법령>은 국제결혼 중개업이 금지, 여맹 산하 결혼지원 센터만을 통한 국제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혼지원 센터는 몇 개이며, 어느 지역에 설치되어져 있습니까?

6. 여맹을 통한 국제결혼 관련 통계자료가 있으신가요?

7. 최근 2년 간 국제결혼과 관련 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8. 위의 상황 변화와 관련해 국제결혼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의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9. 여맹을 통한 국제결혼을 원할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0. 한국 내 베트남여성문화센터라는 NGO 단체는, 여맹과의 양해각서를 통해, 베트남의 합법적인 국제결혼을 위해서는 자신의 센터에 있는 여맹 파견 직원을 통해 결혼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베트남에서의 혼인 신고 등의 절차는 여맹 산하의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될 것이라고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입니까?

11. 베트남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 정부들과의 협조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2. 탈법적인 결혼 중개 방지와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나 한국 민간단체와 어떤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3. 국제결혼 관련 문헌이나 정부 보고서, 통계 자료 등을 가지고 계신가요?

○ 노동부 해외노동자센터(OWC)

1. OWC에 대한 소개를 해주십시오

2. 한국으로의 노동이주 현황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3. 노동자 선발기준은 어떠합니까?

4. 송출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5. 고용허가제를 모집공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6. 고용허가제 정보홍보 캠페인 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7. 빈곤퇴치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고용허가제 30% 우대쿼터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8. 베트남 송출비용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으로 한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높은 송출비용을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9. 각 지방 노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고용허가제 업무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10. 한국산업인력공단과는 업무협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 한국정부와 노동부에 고용허가제와 관련해서 요청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12. 한국주재베트남대사관에 노무관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관들의 구체적인 업무는 무엇입니까?
13. 고용허가제가 베트남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의의는 어떠합니까?

○ **한국산업인력공단**

1. 고용허가제 송출인원 규모는(누계 및 2007년 9월 현재 송출인원)
2. 산업인력공단베트남지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3. 베트남의 노동이주 송출과정 전반에 관해 말씀해주십시오.

4. 입국전 교육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5. 한국어능력시험 운영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6. 베트남에서는 일반 고용허가제 신청자와 함께 특례를 적용받는 30% 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30%적용쿼터 대상자는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7. 직업학교에도 일부 쿼터가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직업학교에 배정되는 쿼터의 규모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8. 직업학교 쿼터의 경우 MOU상에 명시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직업학교 쿼터를 한국노동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9.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고용허가제 입국희망자들의 민원 현황은?
10. 현재 산업인력공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평균 송출비용은 얼마입니까?
11. 노동인력송출과정에서 베트남의 전통적인 브로커조직의 역할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 바를 말씀해주세요.
12. 송출비리 및 노동이주송출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인력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13. 송출비리 척결을 위해 한국정부와 베트남정부가 추가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한국정부/ 베트남정부 나눠서)

○ 결혼지원센터(Marriage Assistant Center)

1. 전국에 결혼지원 센터는 몇 개나 설립되어져 있습니까? 결혼지원 센터의 역할과 목적, 주요 활동 내용은 무엇입니까?
2. 결혼지원 센터를 통한 국제결혼의 절차를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3. 결혼지원센터를 통한 국제결혼이 개인 중개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탈법적인 결혼 중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어 탈법적인 결혼 중개 시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4. 결혼지원센터의 향후 활동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5. 결혼지원센터를 통해 국제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자료나 통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 지방 인민위원회, (인민 위원회 산하) 법무부

1. 혼인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지방 인민위원회 산하 법무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2. 혼인 증명서 발급 절차에 대해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신지요?
3. 베트남 법에는 혼인 증명서 수령 시 결혼 당사자 2명 모두 참석 사인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동안은 한국 남성들이 1차 출국만으로 결혼이 가능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발 행 처 : 국가인권위원회

발 행 일 : 2007년 12월 26일

인 쇄 처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리드릭 ☎ 02)2269-1919
